

2024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일반 R & 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2024. 9.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2024. 9.



2024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2024. 9.



#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송호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2024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김 재 진



## 요 약

### 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도 개요 및 기대 효과

- (제도 개요) 현행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다음과 같이 확대
  - 일반분야 R&D 비용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p 상향
    - 상향 세액공제율은 2024년 1년간만 적용

<표 1> 현행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구분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당기분	증가분		
중소기업	25%	50% → 60%	30~40%	40~50%
중견기업	8~15%	40% → 50%	20~40%*	30~40%
대기업	최대 2%	25% → 35%	20~30%	

주: \*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25~40%, 그 외의 경우에는 20~30% 적용

- 기업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당기분 방식과 증가분 방식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음

<표 2> 기업 유형별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율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일반 연구·인력 개발	(3) ㉠와 ㉡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		
	㉠ 증가분 방식: (해당 과세연도 발생비용 - 직전 과세연도 발생비용) × ㉠		
	㉠ 50%	㉠ 40%	㉠ 25%
	㉡ 당기분 방식: 해당 과세연도 발생비용 × ㉡		
	㉡ 25%	㉡ 8%	㉡ Min ( $\frac{\text{연구개발비}}{\text{수입금액}} \times 50\%$ , 2%)

- (기대 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요구서』에 따르면 동 제도개편은 2024년도의 기업 R&D 투자 확대와 이를 통한 매출·GDP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제시된 근거는 다음과 같음<sup>1)</sup>
  - 연구개발활동조사(2020)의 자료를 활용한 노용환(2022)에 따르면 R&D 세액공제 1% 인상 시 우리 기업의 GDP 기여도는 최대 0.1%이며, 대기업의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추정함
    -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를 야기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켜 매출액과 부가가치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으로 세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고용 측면에서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 R&D 투자가 1조원 증가할 경우 고용률 0.0716%p 증가, 생산가능인구(25~49세) 1,940만명을 기준으로 할 때, 취업자 13,900명 증가(전용일 외, 2015)
    - 비R&D기업군과 R&D기업군을 비교한 결과 비R&D군보다 R&D군에 대한 세액 공제가 고용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남(Lucking et al., 2019)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조세지출을 통해 기업의 R&D 투자 여력을 증진시켜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새로운 시장 개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2. 해외사례 분석

- 해외 주요국은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별 상세한 제도 설계는 상이
  -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에 대해 조사하였음
  - 다만 국가별 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이와 재정지원 등의 의존도 차이가 존재하므로 국가별 비교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적절
- 해외 주요국 사례와 우리나라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 해외 주요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특정 기술 분야를 규정하여 조세지원 수준을 차등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

1) 『2024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요구서 - R&D투자 증가분 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건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 2024.

- 미국은 비상업적 기초연구, 공익을 위한 특정 에너지 관련 연구 등에 일부 우대 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음
  - 특정 분야에 대한 지원은 미국의 「반도체과학법」(2022년 8월), 일본의 반도체 산업기반 긴급강화 패키지(2021년 11월) 등과 같이 재정 및 금융지원 방식이 더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
- 해외 주요국의 공제율 수준은 대체로 우리나라의 일반 분야 공제율과 유사하고,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공제율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은 제도별 14~20%로 비교적 공제율이 높지만 특정에너지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제외하면 일정 금액 이상 지출한 ‘초과분’에 공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제율(일반 분야 증가분 기준 25~50%)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당기분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일본은 제도별 1~30%, 영국은 대기업의 경우 20% 세액공제, 중소기업은 186% 소득공제, 캐나다는 100% 소득공제와 15~30% 세액공제, 호주는 25~43.5%를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일반 분야 당기분 공제율과 대체로 유사하거나 조금 큰 수준인 것으로 판단
  - 다만, 미국, 영국 등 국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들에게 세액공제액의 환급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비해 실질적인 혜택이 더 클 가능성은 존재
- 다음으로 해외 주요국에서는 공제 한도를 설정하여 특정 기업이 과도한 조세 지원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미국, 일본은 세액에 연동된 공제 한도를, 영국은 정액의 감면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캐나다와 호주는 공제 한도를 설정하지 않음
  - 우리나라의 경우 별도로 적용되는 공제 한도는 없으며 일반법인에 대해서는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공제 한도는 존재하지 않음

### 3. 정책성 분석

#### 가. 정책 변화의 필요성

- 우리나라 민간 R&D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R&D에 대한 조세지원 수준도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 규모, GDP 대비 비중은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민간 R&D가 둔화되고 있다는 명확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음
    - 또한,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비 중 기업이 지출한 연구개발비 비중 역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 특히,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OECD 회원국 및 주요 비회원국<sup>2)</sup> 중 2위 수준
  - 민간 R&D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
    -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기업 R&D(business enterprise expenditure on R&D)에 대한 정부 지원 비중은 0.35%로 OECD 평균인 0.21%를 상회
  - 해외 주요국과 R&D에 대한 조세지원 수준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지원 수준은 낮지 않은 것으로 평가
    - 해외 주요국의 공제율 수준은 대체로 우리나라의 일반 분야 공제율과 유사하고,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공제율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조세지출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이는 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조세지출 실적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
  
- 『조세지출예산서』에서 구분하고 있는 R&D(연구개발) 관련 분야 조세지출은 2024년 5.2조원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감면총액의 6.9% 수준
  - 2019~2024년 동안 국세감면액에서 연구개발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5.3~7.3%를 기록
    - 2019~2022년 실적치는 5~6%대인 반면, 2023~2024년은 6~7%대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

2) OECD(2023),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23-September*에서 집계한 국가 기준

- 2019~2024년 연구개발 분야 총 조세지출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87.9~91.1% 수준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91.1%와 91.0%로 더욱 증가할 전망
- 다만, 본 제도의 조세지출 실적 증가는 주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 조세지출액 확대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2018~2022년 본 제도에 대한 활용기업 수 및 조세지출액 변화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조세지출액이 크게 증가한 반면, 일반 분야의 경우 큰 변화가 없었음
    - (일반) 30,121개, 2조 1,553억원 → 41,191개, 2조 2,858억원
    - (신성장·원천기술) 232개, 1,447억원 → 306개, 8,791억원
    - (국가전략기술) 24개, 4,524억원 (2022 신고연도 신규)
- 한편, 2023년 이후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유의미하게 악화되면서 민간의 혁신 활동 둔화가 우려되며 실제로 2024년 기업 R&D 지출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측면에서 동 제도개편을 통해 추가적인 R&D 지출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 특히, 미국, 일본, 대만 등 해외 주요국에서 투자, R&D 등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적극적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반 분야 증가분 공제율을 10%p 상향하는 본 제도개편에 대해서는 일부 필요성은 있으나, 최근의 어려운 세수입 여건 및 재정 건전화 필요성,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본 제도의 조세지출액 규모 등도 고려할 필요
- 또한, 본 제도 조세지출액 증가가 주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고 일반 분야에 대한 제도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다는 점은 추가로 고려될 여지가 존재
  - 특정 산업 혹은 기업군 등 비교적 소수의 기업이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의 혜택을 받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과 달리 일반 분야에 대한 조세지출은 보다 일반적인 기업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성격이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전반적인 연구개발 활동 촉진을 위해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정체되어 있는 일반 분야 연구·인력개발비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
    - 다만, 본 제도는 연구개발 개념의 모호함으로 인해 제도 오남용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적격 R&D 비용을 지출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제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무행정적 노력이 뒷받침되는 것이 전제될 필요
    - 「조특법」에서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으로 연구개발을 정의하고 있는데 특정 기업이 지출한 비용이 이러한 개념에 부합하는지는 정성적 판단 및 검증이 필요
    - 적절한 사전적·사후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 제도개편이 민간 혁신 활동의 제고로 이어지지 않을 소지가 다분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 혜택을 일부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일반 분야 공제율 상향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한편 정부 정책 운영의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정부가 기 발표한 정책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정부의 다른 정책들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도 중요

## 나. 정책목표와의 일치성

- 기본적으로, 동 제도개편은 민간 R&D 확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 정책수단인 것으로 평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R&D 지출과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이며, 해당 제도의 일부 공제율을 확대하는 동 제도개편은 기업의 R&D 수행 부담을 유의미하게 낮춤으로써 민간 R&D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적격 R&D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본 제도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R&D 수행에 들어가는 비용(가격)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어 기업의 R&D 지출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

- 실제로, 김학수 외(2018), 김빛마로 외(2021) 등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가 기업의 R&D 지출에 대체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
  - 동 제도개편이 기업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효과성 평가 부분에서 보다 상세히 논의
- 특히, 동 제도개편이 특정 기술이 아닌 일반적인 R&D에 적용되기 때문에 R&D 수행기업의 전반적인 세부담을 완화하고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 특정 분야 또는 산업 지원의 목적이 아닌 우리나라 기업의 전반적인 혁신 활동 촉진이 정책목표라면, 일반 분야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동 제도개편이 더욱 적절할 수 있음
  - 반면, 반도체 등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일부 분야에 대한 혁신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거나 관련된 재정사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

□ 다만, 적용 시점을 고려할 때 동 제도개편은 R&D 수행 기업에 대한 사후적 지원의 성격이 강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며 제도개편 발표 시점을 기점으로 R&D 지출 확대 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 있음

- 동 제도개편은 2024년 1년간 지출된 비용에 혜택이 적용되나, 2024년 7월 현재 까지 제도개편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
- 정부는 2024년 1월 “경제정책방향”에서 일반 분야 R&D 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을 10%p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법령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만약, 제도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발표 시점 이후가 아니라 실제 제도 변경 시점 이후에 기업들의 행태 변화가 주로 나타난다면 동 제도개편에 의한 R&D 증대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음
- 2024년이 절반 이상 경과한 현 시점까지 제도개편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기업들이 제도개편에 반응하여 행태를 변화할 여지가 있는 기간이 제도개편 확정 시점 이후부터 2024년 말까지 매우 제한적

- 제도개편의 확정 시점에 기업들이 주로 반응한다면 본 제도개편은 기업들의 R&D를 추가로 확대하는 효과보다는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R&D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사후적으로 보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
    - 즉, 전년 대비 R&D 지출을 확대한 기업들이 납부할 세액을 줄여주어 해당 기업들의 현금흐름 등이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
  - 반면, 제도개편 발표 시점, 즉 2024년 1월에 R&D 지출을 확대하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한다면 제도에 의한 R&D 지출 확대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음
  - 한편 현재 기업들은 당기분 방식과 증가분 방식 중 당기분 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어 증가분 공제율을 추가 상향하는 등 제도개편이 기업들 행태에 제한적인 영향만을 줄 가능성 역시 존재
    - 국세청 협조자료에 의하면, 증가분 방식 활용 기업 비중은 대기업 18.83%, 중견기업 8.26%, 중소기업 2.18% 수준<sup>3)</sup>
    - 다만, 이는 당기분과 증가분의 상대적 공제율 차이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기분 공제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증가분 공제율이 추가 확대될 경우 증가분 활용도는 유의미하게 높아질 것으로 판단
    - 실제로 당기분과 증가분 공제율 차이가 가장 큰 중소기업에서 증가분 활용 비중이 가장 낮은 반면, 공제율 차이가 가장 작은 대기업의 경우 증가분 활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상기 논의를 종합할 때 동 제도개편은 민간 R&D를 일부 확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주로 R&D 비용 지출 기업에 대한 사후적 지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

## 다. 제도설계의 적절성

### 1) 기업규모별 차등 지원

-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시장실패의 교정 및 납세협력비용의 완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지만 R&D 지출에 대해 중소기업에 추가적인 혜택을

3) 2015~2022 신고연도에 대한 국세청 표본 미시자료상 기업 수 기준이며, 실제 활용 비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

- 이러한 논의를 종합할 때, 동 제도개편은 기업규모에 따른 조세 왜곡을 추가로 확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 기업규모에 연동된 차등적 조세정책은 기업의 성장 유인을 왜곡하고 효율적 자원배분을 저해하기 때문에 가능한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추가적인 연구개발비 지출이 생성하는 긍정적 외부효과의 크기가 기업규모와 반비례한다는 실증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규모에 따른 공제율 차이를 추가로 확대할 필요성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
  - 앞서 필요성이 인정된 영세한 기업에 대한 지원은 금융지원, 세무행정 차원의 지원 등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 2) 한시적 도입의 적절성

- 동 제도개편은 확대된 공제율을 2024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본 소절에서는 이러한 한시적 도입의 적절성을 평가
- 동 제도개편은 확대된 혜택이 1년 동안만 적용되고 차년도부터 기존 공제율로 회귀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차년도에 계획했던 R&D 지출의 시기를 앞당겨 세제 혜택의 크기를 극대화할 유인이 존재
  - 제도개편을 통해 2024년 R&D 지출액이 일부 증가할 수 있으나 이 중 상당수는 단순히 R&D 비용 지출 시기만을 앞당기는 효과일 수 있음
- 반면, 동 제도개편을 통한 공제율 상향을 항구적으로 적용할 경우 동 제도에 의한 조세지출액이 크게 증가하여 정부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제도에 의한 기업의 행태 변화도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동 제도의 조세지출액은 최근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동 제도개편이 항구적으로 적용될 경우 조세지출 규모 증가속도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음
  - 또한 공제율 상향 조치가 항구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R&D 지출에 대한 기업의 행태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음

- 상향된 공제율이 지속된다면 기업들이 새롭게 R&D 비용을 지출하거나 R&D 시점을 앞당길 유인이 축소
- 따라서 정부의 정책 목적이 상대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2024년의 민간 R&D 확대라고 한다면 제도개편을 항구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1년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

- 우리나라의 민간 R&D 수준이 대체로 증가하다가 2023년 이후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본 제도 조세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 제도개편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평가
  - 만약, 제도개편을 시행한다면 최근 어려워진 영업실적과 기업 R&D 지출이 2024년에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1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라. 지원의 유사 및 중복 검토

- 본 소절에서는 주요 재정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본 제도와 유사·중복 정도를 간단하게 검토하고, 일반 R&D 분야의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본 제도개편의 적절성을 조세지원과 재정지원의 역할 분담 측면에서 논의
  - 본 예비타당성 평가는 기 운용되고 있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평가가 아닌 일반 분야 공제율을 상향하는 제도 변화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과제이므로 본 제도와 기타 제도의 유사·중복 여부에 대한 종합적 논의는 생략
- 조세지원과 재정지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반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 혜택을 추가로 확대하는 동 제도개편은 조세지원과 재정지원의 역할 분담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평가
  - 민간의 일반적인 혁신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재정 지원 방식보다는 본 제도개편과 같이 조세지원 방식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 앞서 제도 현황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동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의 숫자가 2022 신고연도 기준 41,191개<sup>4)</sup>로 매우 많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절차를 통해 국세청의 행정적 인프라 활용이 가능한 조세지원 방식이 더 적절한 측면

4) 일반 분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총 활용 기업 숫자이며, 개인사업자는 제외한 수치

- 반면 특정 분야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정절차가 내재되어 있는 재정지원 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에는 부합할 것으로 판단
- 다만, 세제지원은 이익을 창출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기업들에게 더욱 유효<sup>5)</sup>한 반면, 재정지원의 경우 기업의 이익 창출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하여 잠재성 있는 기업의 초기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상호보완적 성격이 존재하므로 두 가지 지원방식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
  - 실제로 다수의 국가들에서는 R&D에 대한 조세지원과 재정지원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4. 경제성 분석

- 2018~2022년 국세청 미시자료를 통해 추정된 결과, 정책 변화에 따른 조세지출 대비 경제적 효과는 약 1.548 수준으로 1,538.8억원의 추가적 순편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정책 변화에 따른 예상 조세지출은 2,806.8억원 수준이며, 이에 따라 연구개발비가 840.5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연구개발비의 증대는 4,346.1억원의 추가적인 매출 증대 효과 기대
    - 이에 따라, 조세지출 대비 기업 매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1.548(=4346.1/2806.8)$  수준으로 1보다 크게 산출되어 순편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파악됨
    - 순편익은 매출 증대 효과에서 예상 조세지출을 차감한 것으로 볼 때, 약 1,538.8억원 수준으로 파악됨
- 국세청 미시자료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추정된 결과, 정책 변화에 따른 직접적인 고용 효과는 약 283명의 추가적인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해당 추정은 추가적인 조세지출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해 추정하였

---

5) 공제 혜택의 이월 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납부할 세액이 있어 제도에 의해 즉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에게 보다 더 직접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할 여지가 있음

기에 매출액 증대에 따른 여러 파급효과들을 고려하면 정책 변화에 따른 경제적 실익은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됨

### 가. 정책 변화에 따른 조세지출 추정

- 국세청 제공 미시자료는 신고연도 기준 2015~2022년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수혜기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당기분 및 증가분 그리고 최종세액공제가 포함되어 있어 개별 기업의 선택을 식별할 수 있음
  - 개별 기업의 종류(중소, 중견, 일반기업)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별지서식 1호의 정보가 포함된 국세청 제공자료를 이용하여 매칭하여 분석
  
- 과거 분포에 기초하여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10%p 높이는 경우의 세액공제 규모 변화 분석
  - 이는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 분석의 기초가 됨
  - 동시에 이를 기초로 연구개발 증가 규모와 그에 따른 기업의 매출 증가 규모를 추정함으로써 편익 산출
  - 고려하는 연구개발비 증가분 제도의 세액공제율 상향 효과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음
    - 중소기업의 경우 공제율을 50%에서 60%로 상향시키는 것은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을 때 세액공제를 20% 증가시킴
    - 중견기업의 경우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시키는 것은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을 때 세액공제를 25% 증가시킴
    - 일반기업의 경우 공제율을 25%에서 35%로 상향시키는 것은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을 때 세액공제를 40% 증가시킴
  
- 이미 공제감면을 최대 한도로 받고 있는 기업을 제외한 경우의 효과 분석
  - 공제감면총액이 산출세액과 같아서 총부담세액이 0인 기업은 동 제도로 인한 추가적인 세액공제 수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가정
    - 그러한 기업은 ‘공제감면총액=산출세액’ 조건으로 식별

- 앞절과 유사한 방식으로 세액공제 확대 효과 산출
  - 공제감면총액이 산출세액보다 작은 기업에만 해당 제도 도입에 따른 세액공제 확대 수혜 적용

□ 제한 가정하의 분석 결과

- 2018~2021년(신고연도 기준)의 분포에 적용한 결과 전체 세액공제 규모는 약 923~7,538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추가 세액공제 수혜에 제약이 없었던 분석 결과의 범위 1,110~7,708억원 보다 하한과 상한이 모두 작아진 모습
  - 연도별 변동성은 여전히 큰 모습인데 이는 COVID-19 팬데믹의 영향에 주로 기인함
- 해당 기간 연간 평균적인 세액공제 증가 규모는 약 2,807억원임
  - 이는 기본 가정하의 연평균 세액공제 증가 규모인 3,030억원보다 약 223억원 축소된 크기임
- 제도가 도입되었다면 중소기업은 해당 기간 동안 연평균 약 86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기본 가정하의 중소기업 세액공제 증가 규모인 245억원에 비하여 크게 줄어든 것인데, 그 주된 이유는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공제를 이미 최대 한도로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 추가적인 세액공제 확대 효과에 한계가 있기 때문임
  - 해당 기간 세액공제 확대 규모의 범위는 약 58~121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약이 없었던 기본 가정하의 범위 192~348억원보다 상한과 하한이 모두 크게 줄어든 모습
- 중견기업은 해당 기간 동안 연평균 약 144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기본 가정하의 세액공제 증가 규모인 168억원에 비하여 24억원이 줄어든 모습
  - 해당 기간 세액공제 확대 규모의 범위는 28~238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약이 없었던 경우의 범위 99~271억원과 비교하면 하한이 크게 축소된 모습임
- 일반기업은 해당 기간 동안 연평균 약 2,576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기본 가정하의 연평균인 2,617억원에 비하여 약 40억원 줄어든 모습

- 해당 기간 세액공제 확대 규모의 범위는 637~7,178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본 가정하의 범위 779~7,171억원과 비교하여 하한은 줄어들었으나 상한이 아주 조금 높아진 모습
- 제한 가정하의 결과와 기본 가정하의 결과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일반기업 및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하여 세액공제를 최대 한도로 받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음

<표 3> 제한 가정하의 신고연도별 세액공제 증가 효과 요약

(단위: 억원)

신고연도	중소	중견	일반기업	총합
2018	86.6	109.1	726.8	922.5
2019	88.5	112.4	3,107.3	3,308.2
2020	121.3	238.1	7,178.2	7,537.6
2021	76.4	233.0	636.8	946.3
2022	58.1	28.1	1,233.0	1,319.2
평균	86.2	144.2	2,576.4	2,806.8

#### 나. 정책 변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추정

- 해당 제도 도입의 경제적 효과 산출을 위한 비용과 편익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음
  - 해당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세액공제 증가는 조세지출로서 비용으로 고려
  - 세액공제 증가에 따른 연구개발 규모의 증가와 그에 따른 기업의 매출 증가는 편익으로 고려
  - 이하에서는 해당 제도 도입의 편익을 2단계 방식으로 산출하고자 함
    - 1단계는 해당 제도 도입에 따른 연구개발 증가 규모를 추정
    - 2단계에서는 연구개발 증가에 따른 기업 매출의 증가 규모를 추정
- 연구개발 세액공제가 연구개발(‘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RnD)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국세청 제공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증가 규모 추산
  - 제한 가정하에서 산출된 세액공제 증가 규모를 기초로 하여 산출

- 제한 가정하에서 산출된 세액공제 증가 규모는 기본 가정하에서 산출된 것보다 작지만 세액공제 확대의 현실적인 제약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더 크기 때문
- 탄성치를 표본내 개별 기업에 적용하되 제도 도입으로 인한 수혜기업에만 적용하되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 탄력성  $\eta_{R,T} = \frac{\Delta RnD/RnD}{\Delta TC/TC}$ 이며  $\Delta TC/TC$ 는 제도 적용을 받는 기업의 경우에는 각각 0.2(중소), 0.25(중견), 0.4(일반)임
  - 따라서,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기업별로  $\Delta TC/TC$ 를 구하고, 추정된 탄력성과 기업별 연구개발비( $RnD$ )를 적용하여 연구개발비 증가분  $\Delta RnD = \eta_{R,T} \times (\Delta TC/TC) RnD$ 을 구하고, 제도 적용을 받는 기업에 한하여 표본내 증가분을 구하고, 배율(중소/중견/일반)을 적용하여 모집단 수준에서의 증가분을 추산
- 신고연도 기준 2018~2022년에 적용하는 경우, 해당 제도가 도입되었다면 발생하는 연구개발비 증가는 연평균 약 841억원으로 추정됨
  - 해당 기간 동안 제도 도입으로 인한 연구개발비 증가 규모의 범위는 약 353억원에서 2,076억원으로 추정됨
- 기업유형별로 보면 일반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순으로 총 연구개발 증가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제도 도입으로 일반기업은 연평균 약 633억원의 연구개발 증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 중견기업은 연간 평균적으로 약 122억원의 연구개발 증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 중소기업은 연간 평균적으로 약 86억원의 연구개발 증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그 규모가 가장 작음
  - 일반기업의 탄력성  $\eta_{R,T}$ 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 증가분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제도상 일반기업이 세액공제 증가율  $\Delta TC/TC$ 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데다 연구개발비( $RnD$ )도 중소/중견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임

<표 4> 연구개발비 증가 규모 추정

(단위: 억원)

신고연도	중소	중견	일반기업	총합
2018	86.2	88.2	178.9	353.3
2019	88.4	91.0	764.8	944.2
2020	121.3	192.8	1,761.6	2,075.7
2021	76.2	188.6	156.7	421.6
2022	58.1	47.3	302.5	407.8
평균	86.0	121.6	632.9	840.5

- 연구개발 세액공제 수혜기업의 연구개발 증가가 매출에 미치는 효과 추정
  - ‘세액공제 확대 → 연구개발 증가 → 기업의 매출 증가’라는 경로를 고려
    - 매출에 대한 대리변수로 기업수입을 이용
  
- 해당 제도 도입에 따른 매출 증가분을 추산한 결과,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신고연도 2018~2022년의 분포를 적용하면 연평균 약 4,346억원의 매출이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됨
  - 해당 기간 동안 매출 증가분의 범위는 약 2,638~7,288억원으로 추정
  - 일반기업의 연평균 수입 증가분은 약 3,216억원으로 추정되어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연평균 수입 증가분인 492억원 및 639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편익의 발생이 주로 일반기업에서 발생함을 시사

<표 5>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 매출의 증가 효과

(단위: 억원)

신고연도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전체
2018	550.2	570.0	1,517.4	2,637.6
2019	502.4	284.8	4,174.7	4,962.0
2020	1,060.1	647.7	5,579.7	7,287.5
2021	537.4	770.8	2,042.1	3,350.4
2022	542.2	185.0	2,765.7	3,492.8
평균	638.5	491.7	3,215.9	4,346.1

- (순편익 추정) 순편익의 규모는 연평균 1,539억원 규모로 추정됨
  - 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신고연도 기준 2018~2022년의 분포를 적용하면 발생하는 순편익의 범위는 -205.1~2,404.1억원으로 나타남
  - 최근 5개 연도 중 4개 연도에서 제도 도입 시 양의 순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1개 연도에서는 음의 순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 신고연도 2020년 음의 순편익 발생은 COVID-19 팬데믹 초기의 이례적인 연구개발의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확대에 주로 기인
    - 비용은 해당 연도에 당해년에 나타나는 반면, 편익은 다년간에 걸쳐서 발생

〈표 6〉 순편익 추정 결과

(단위: 억원)

신고연도	매출 증가분	조세지출	순편익
2018	2,637.6	922.5	1,715.1
2019	4,962.0	3,308.2	1,653.7
2020	7,287.5	7,537.6	-250.1
2021	3,350.4	946.3	2,404.1
2022	3,492.8	1,321.4	2,171.4
평균	4,346.1	2,807.2	1,538.8

#### 다. 고용영향평가

- 2022년 국세청의 표본 총합 자료와 연계해서 분석한 결과, 대략 222명의 추가 연구개발 인력의 고용이 예상됨
  - 2022년 기준 국세청 표본 내 일반 연구개발 인건비와 관련된 총 연구 인원(A)은 175,962명이며, 이에 증가분 선택률(B) 2.5%를 곱하여 증가분 선택 기업의 표본 내 총 연구 인원을 추정함
  - 이에 표본 대비 전수비율(C)을 곱하여 전체 인원을 추정한 후, 설문에서 파악한 해당 정책 변화 시 고용증가 선택률(D)과 이들의 고용 증가율(E)를 곱하여 최종적으로 추가 고용인원을 추정하여 222명을 산출함
    - 2015~2022년의 평균치를 사용하여도 유사한 수준인 283명으로 추정됨
  - 이러한 결과는 R&D 재정지원의 고용효과를 다룬 최근 연구인 장필성·황석원(2019)의 수치인 R&D 재정지원 고용효과(H)를 적용할 때와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추정되었음

- 앞서 추정된 정책 변화에 따른 예상 R&D 조세지출(G)을 장필성·황석원(2019)의 R&D 재정지원 고용효과(H)와 곱하여 산출하였으며, 2022년 기준 46~243명 수준으로 추정되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222명과 유사한 것을 확인
- 다만 이 경우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효과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는 가정이 전제됨

<표 7> 일반분야 증가분 방식 공제율의 10%p 한시적 향상 시 고용 증가 추정

본 연구 추정방식	(A) 국세청 표본 내 일반연구개발인력	(B) 증가분 선택율	(C) 표본 대비 전수비율	(D) 고용증가 선택율	(E) 고용 증가율	(F=A×B×C×D×E) 추정 추가 고용인원
평균(2015~2022)	178,007명	3.9%	6.3배	30.4%	2.13%	283명
2022년	175,962명	2.5%	7.8배			222명
장필성·황석원 (2019)	(G) 예상 R&D 조세지출		(H) R&D 재정지원 고용효과		(I=G×H) 추정 추가 고용인원	
평균(2015~2022)	2,807.2억원		0.035~0.184명/억원		98~517명	
2022년	1,321.4억원				46~243명	

## 5. 형평성 분석

- 이번 장에서는 동 정책 변화가 도입되었을 경우의 경제적 효과들을 형평성의 관점에서 분석함
  - 과세형평은 조세공평(주의), 조세형평(주의), 응능부담의 원칙(ability-to-pay principle), 조세정의 등으로 불리며, 수평적 형평(horizontal equity)과 수직적 형평(vertical equity)으로 나눌 수 있음
    - 수평적 형평이란 동일한 상황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은 동일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함
    - 수직적 형평은 보다 큰 부담을 능력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더 많은 세 부담을 요구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함
  - 본 보고서에서는 수평적 형평성 분석에서는 본 제도 변화에 따른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간 형평성과 업종 간 형평성을 분석하고, 수직적 형평성 분석에서는 본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규모별 형평성을 분석함

- 다만, 동 정책 변화의 목표가 기업의 연구개발비의 증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질성이 나타나고 이에 따른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른 조세특례제도와 마찬가지로 불가피함
  
- 수평적 형평성 분석 결과, 동 제도 변화의 도입은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사이의 형평성과 업종 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음
  - 다만, 동 정책 변화로 인하여 비수혜기업이 추후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맞춰 행동 변화를 야기시키는 것이 목적 중 하나이기에 이러한 관점에서 수혜 여부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차이는 필수적임
  
- 동 제도 변화는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에 일정 이상의 증분이 발생하고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기업에만 지원하는 정책이므로 수혜기업에 보다 많은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경향이 있음
  - 국세청 미시자료에서 최근 5개년(2018~2022년) 동안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수혜기업 중 증가분 방식을 선택하는 기업의 비율은 3.1%(1,337개)로 확인하였으며, 이는 매우 적은 수의 기업만이 동 제도 변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동 제도 변화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의 수 대비 국세통계의 총 신고법인의 비율을 살펴보면, 최근 5개년 평균 기준 이익법인 대비 0.24%, 신고법인 대비 0.15% 수준임
  
- 동 제도 변화의 가장 중요한 수혜 요건인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은 특정 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2015~2022년 국세청 표본 자료를 기준으로 파악한 결과, 특정 기술을 통해 영업활동과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들만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혜택을 수혜할 수 있음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16%)을 시작으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3.76%),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3.19%) 순으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분포하였음

- 반면 광업, 담배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표본 내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수혜 기록이 없었음
  - 동 제도 변화의 수혜기업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수혜받은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며, 이러한 기업 중 증가분이 유리한 기업들로 제한되기에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수혜 기록이 없는 산업군은 동 제도 변화의 수혜 가능성이 매우 낮음
- 수직적 형평성 분석 결과, 동 제도 변화의 도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경제적 혜택 차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음
- 동 제도 변화는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증가분 세액공제율의 10%p 증가이며, 이는 기존의 세액공제율 격차를 상대적으로 감소시켜 수직적 형평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sup>6)</sup>
    - 대기업(25% → 35%, 40% ↑), 중견기업(40% → 50%, 25% ↑), 중소기업(50% → 60%, 20% ↑) 순으로 세액공제의 상대적인 혜택이 큼
    - 전체 세액공제율의 합 대비 기업규모별 세액공제율이 차지하는 비율(세액공제율의 집중도)의 Herfindahl-Hirschman Index는 0.3573에서 0.3484로 낮아져 기업규모별 세액공제율 격차는 낮아짐
  - 기업당 순매출효과의 경우에도 5개년도 평균 기준 중소기업은 1.06억원, 대기업은 4.73억원 수준으로 대기업에 돌아가는 기업당 매출효과가 상대적으로 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경제적 혜택 차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음

## 6.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 (정책성 분석) 정책성 분석에서는 제도 도입에 있어 일부 필요성이 인정되나, 최근의 어려운 세수입 여건 및 재정 건전화 필요성,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본 제도의 조세지출액 규모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
- 2023년 이후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유의미하게 악화되면서 민간의 혁신 활동

6) 수직적 형평성의 개념은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조세부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누진세의 도입은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시킨다고 알려져 있음

둔화가 우려되고 실제로 2024년 기업 R&D 지출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측면에서 동 제도개편을 통해 추가적인 R&D 지출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 (경제성 분석) 2018~2022년 국세청 미시자료를 통해 추정된 결과, 정책 변화에 따른 조세지출 대비 경제적 효과는 약 1.548 수준으로 1,538.8억원의 추가적 순편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정책 변화에 따른 직접적인 고용 효과는 약 283명의 추가적인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해당 추정은 추가적인 조세지출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해 추정하였기에 매출액 증대에 따른 여러 파급효과들을 고려하면 정책 변화에 따른 경제적 실익은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됨
  
- (형평성 분석) 정책 목표와 설계상 수평적 및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할 요소들이 존재하나, 정책 변화의 목표가 기업의 연구개발비의 증대를 유도하는 것이므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질성이 나타나고 이에 따른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른 조세특례제도와 마찬가지로 불가피함
  
- (AHP 평가) AHP 종합평점과 개별 평가자들의 제도 도입에 대한 직접 설문 점수가 0.49로 회색 영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제도 도입에 찬성한 인원이 과반수 이상(71.43% = 5/7)이며, 종합점수가 제도 도입 반대인원의 극단값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있어 해당 결과를 단순하게 의사판단의 결정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목 차

I. 서론 .....	29
II. 조세특례 제도 개편안 .....	33
III. 해외사례 분석 .....	39
1. 해외 주요국 사례 .....	41
가. 미국 .....	41
나. 일본 .....	47
다. 영국 .....	54
라. 캐나다 .....	56
마. 호주 .....	61
2. 요약 및 시사점 .....	64
IV. 정책성 분석 .....	69
1. 제도개편의 필요성 .....	71
가. 우리나라의 R&D 현황 .....	71
나. 제도개편 필요성 평가 .....	79
2. 정책목표와의 일치성 .....	86
3. 제도설계의 적절성 .....	89
가. 기업규모별 차등 지원 .....	89
나. 한시적 도입의 적절성 .....	93
4. 지원의 유사·중복 검토 .....	94
V. 경제성 분석 .....	101
1. 비용 추정 .....	104

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수혜 현황 .....	104
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증가분 및 당기분 식별 .....	105
다. 제도 도입이 세액공제 규모에 미치는 효과 분석 .....	107
라. 기본 가정하에서의 세액공제 확대 효과 분석 .....	108
마. 제한 가정하에서의 세액공제 확대 효과 분석 .....	111
2. 경제적 효과 분석 .....	114
가. 해당 제도 도입에 따른 연구개발 증가 규모 추정 .....	115
나. 해당 제도 도입에 따른 매출 증가 규모 추정 .....	118
3. 고용영향평가 .....	121
<b>VI. 형평성 분석 .....</b>	<b>125</b>
<b>VII.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b>	<b>131</b>
1. 계층화 분석(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통한 종합평가 .....	133
가. AHP 분석의 개요 .....	133
나. AHP 분석을 활용한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종합평가 .....	136
2. 결론 및 정책제언 .....	146
<b>참고문헌 .....</b>	<b>148</b>
<b>부록 .....</b>	<b>153</b>

## 표 목 차

<표 II-1> 현행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	35
<표 II-2> 기업 유형별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율 .....	35
<표 II-3> 조세지출 규모 추이(2013~2022년) .....	37
<표 III-1> 미국의 연구개발 세액공제제도 .....	46
<표 III-2> 일본의 실험연구 제외 항목 .....	48
<표 III-3> 일본의 특별실험연구비 세액공제율 .....	53
<표 III-4> 일본의 연구개발 세액공제제도 .....	53
<표 III-5> 영국의 연구개발 세액공제제도 .....	56
<표 III-6> 캐나다의 연구개발 투자세액 공제율 및 환급률 .....	60
<표 III-7> 캐나다의 연구개발 세액공제제도 .....	60
<표 III-8> 호주의 연구개발 세액공제제도 .....	63
<표 III-9> 주요국의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 .....	66
<표 IV-1> R&D 분야 조세지원 추이 .....	80
<표 IV-2>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고 현황(2018~2022년) .....	81
<표 IV-3> 우리나라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및 이익률(2021~2023년) .....	82
<표 IV-4>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2022년 및 2023년 결산실적(12월 결산법인) ....	83
<표 IV-5> 2023~2024년 RSI 기업규모별 비교 .....	84
<표 IV-6> 2023~2024년 RSI 산업별 비교 .....	84
<표 IV-7>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	95
<표 IV-8> 정책수단으로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일반적인 적정성 판단 기준 .....	99
<표 V-1> 연구개발 세액공제 수혜기업 수 추이 .....	104
<표 V-2> 세액공제 합계 추이 .....	104
<표 V-3>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합계 추이 .....	105
<표 V-4> 당기분 및 증가분 세액공제가 식별되는 표본 .....	106

<표 V-5> 증가분 및 당기분 수혜 기업 분포 .....	107
<표 V-6> 제도 도입에 따른 세액공제 증가분 규모 추정 .....	109
<표 V-7> 중소기업 세액공제 증가분 추정(기본 가정) .....	110
<표 V-8> 중견기업 세액공제 증가분 추정(기본 가정) .....	110
<표 V-9> 일반기업 세액공제 증가분 추정(기본 가정) .....	111
<표 V-10> 제한 가정하의 신고연도별 세액공제 증가 효과 요약 .....	113
<표 V-11> 중소기업 세액공제 증가분 추정(제한 가정) .....	113
<표 V-12> 중견기업 세액공제 증가분 추정(제한 가정) .....	114
<표 V-13> 일반기업 세액공제 증가분 추정(제한 가정) .....	114
<표 V-14> 로그 연구개발(I_RnD) 회귀분석 추정 결과 .....	116
<표 V-15> 연구개발의 세액공제에 대한 탄력성( $\eta_{R,T}$ ) .....	116
<표 V-16> 연구개발비 증가 규모 추정 .....	117
<표 V-17> 로그 매출 회귀분석 결과 .....	118
<표 V-18> 매출의 연구개발비 탄력성 .....	119
<표 V-19>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 매출의 증가 효과 .....	120
<표 V-20> 순편익 추정 결과 .....	120
<표 V-21> 일반분야 증가분 방식 공제율의 10%p 한시적 향상 시 고용 증가 여부 ..	122
<표 V-22> 일반분야 증가분 방식 공제율의 10%p 한시적 향상 시 고용 증가 추정 ..	123
<표 VI-1>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 세액공제 활용 기업 비율 .....	128
<표 VI-2> 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기업당 순매출효과 .....	130
<표 VII-1>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평가결과 요약 .....	137
<표 VII-2> 가중치 산정범위 .....	138
<표 VII-3>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예비타당성평가의 AHP 평가항목 요약 .....	140
<표 VII-4> AHP 표준점수에 따른 제도 도입 적합도 .....	141
<표 VII-5>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	143
<표 VII-6> AHP 평가 결과 .....	144
<표 VII-7> 설문 응답에서의 제도 도입 점수 .....	145

## 그림 목 차

[그림 IV-1] 총 연구개발비 추이 .....	72
[그림 IV-2] 주요국의 연구개발비 규모 및 GDP 대비 비중 비교 .....	73
[그림 IV-3] 인구 및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 규모 추이 .....	73
[그림 IV-4] 2021년 OECD 회원국의 기업 R&D에 대한 재정 및 조세지원 규모 ...	74
[그림 IV-5]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 추이 .....	75
[그림 IV-6]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 비율 추이 .....	75
[그림 IV-7]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비 추이 .....	76
[그림 IV-8]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비 비율 추이 .....	77
[그림 IV-9] 기업유형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추이 .....	77
[그림 IV-10] 매출액 상위 기업 연구개발 집중도 현황(2022년) .....	78
[그림 VII-1]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예비타당성평가의 AHP 계층 구조 .....	139



# I. 서론





## I. 서론

- 본 보고서는 2024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중 하나인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의 일시적 상향에 대한 심층평가를 목적으로 함
  - 기존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중 일반 R&D 비용 부문에 대한 제도 개선안에 대해 심층평가를 실시
  - 제도 개선안에 대하여 정책성 분석, 경제성 분석, 형평성 분석, 고용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이에 대해 소규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계층화 분석(AHP)을 실시하여 동 세제개편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정책제언을 제시



## Ⅱ. 조세특례 제도 개편안





## II. 조세특례 제도 개편안

- 현행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다음과 같이 확대
  - 일반분야 R&D비용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p 상향
    - 상향 세액공제율은 2024년 1년간만 적용

<표 II -1> 현행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구분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당기분	증가분		
중소기업	25%	50% → 60%	30~40%	40~50%
중견기업	8~15%	40% → 50%	20~40%*	30~40%
대기업	최대 2%	25% → 35%	20~30%	

주: \*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25~40%, 그 외의 경우에는 20~30% 적용

- 기업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당기분 방식과 증가분 방식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음

<표 II -2> 기업 유형별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율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일반 연구·인력 개발	(3) ㉠과 ㉡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		
	㉠ 증가분 방식: (해당 과세연도 발생비용 - 직전 과세연도 발생비용) × ㉢		
	㉢ 50%	㉢ 40%	㉢ 25%
	㉡ 당기분 방식: 해당 과세연도 발생비용 × ㉣		
	㉣ 25%	㉣ 8%	㉣ Min ( $\frac{\text{연구개발비}}{\text{수입금액}} \times 50\%, 2\%$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요구서」에 따르면 동 제도개편은 2024년도의 기업 R&D 투자 확대와 이를 통한 매출·GDP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제시된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연구개발활동조사(2020)의 자료를 활용한 노용환(2022)에 따르면 R&D 세액공제 1% 인상 시 우리 기업의 GDP 기여도는 최대 0.1%이며, 대기업의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추정함
    -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를 야기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켜 매출액과 부가가치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으로 세수 확대에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고용 측면에서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 R&D 투자가 1조원 증가할 경우 고용률 0.0716%p 증가, 생산가능인구(25~49세) 1,940만명을 기준으로 할 때, 취업자 13,900명 증가(전용일 외, 2015)
    - 비R&D기업군과 R&D기업군을 비교한 결과 비R&D군보다 R&D군에 대한 세액 공제가 고용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남(Lucking et al., 2019)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조세지출을 통해 기업의 R&D 투자 여력을 증진시켜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새로운 시장 개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과기부는 제도 변경 시 2024년 기준 약 1조 4,141억원의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제시된 실적치와 비교하였을 때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연구개발활동조사(2023)의 자료에서 2018~2021년의 기업 R&D투자 연평균 증가율인 5.5%를 적용하고, 여러 비율을 활용하여 추정하였으나 해당 수치가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제시된 2022년 실적치 대비 37.98% 수준이라고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자체부담 연구개발비 비율(94.2%), 세액공제 수혜기업 비율(대기업·중견기업 77.3%, 중소기업 48.6%), 당해분과 증가분을 모두 적용할 때 유리한 경우를 바탕으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조세지출을 추정함
    - 더욱이 해당 추정은 대기업은 15%p, 중견기업은 10%p, 중소기업은 20%p의 세액공제율 상향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매우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또한, 해당 제도 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조세지출분에 대해서는 추정한 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예상 감면 규모를 제시하지는 않았음

7) 『2024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요구서 - R&D투자 증가분 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건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 2024.

- 『조세지출예산서』상의 현행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는 제도의 확대 및 경기 상황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대체적으로 확대되었음
  -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규모는 대체적으로 경기 상황에 따라 소폭의 변화가 관측되며, 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및 공제율 변화에 따라 보다 큰 변화를 보임
    - 일반기업의 당기분 공제율 축소(2014), 중견·대기업의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확대와 대상기술 적용대상 확대(2017), 적용대상 확대(2020),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공제 신설(2022) 등 요건 변화에 따라 조세지출 규모가 크게 변동함
    - 일반적으로 조세지출 규모는 대기업과 관련된 요건 변화(2018, 2022)에 보다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됨
    - 다만, 공개된 자료에서는 제도 개편안에서 제시하는 증가분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확인할 수 없어 아래의 경향성이 증가분의 경향성이라고 이해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은 “IV. 경제성 분석”에서 다룸

〈표 II -3〉 조세지출 규모 추이(2013~2022년)

(단위: 억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소득세	348	404	528	629	727	795	873	910	954	1,057
법인세	28,502	27,456	27,630	20,316	24,741	22,998	22,305	26,430	26,342	36,173
계	28,850	27,860	28,158	20,945	25,468	23,793	23,178	27,340	27,296	37,231

자료: 대한민국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Ⅲ. 해외사례 분석





### Ⅲ. 해외사례 분석

- 본 장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소개
  -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총 5개 국가의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논의

#### 1. 해외 주요국 사례

##### 가. 미국

- 미국은 연구개발활동(research activities) 관련 조세제도를 연구개발비 비용공제와 연구개발 세액공제로 구분하여 운영
  - 미국의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는 1981년 「경제회복세금법(Economy Recovery Tax Act)」에 의해 도입
    - 2015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의 「세금인상 방지법(The Protecting Americans from Tax Hikes Act, PATH)」 도입으로 인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일몰제가 폐지되고 영구적인 제도로 전환
  -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① 일반연구세액공제(Regular Research Credit, RRC) ② 대체간편세액공제(Alternative Simplified Credit, ASC) ③에너지연구세액공제(Energy Research Credit), ④ 기초연구세액공제(Basic Research Credit)로 구성
    - 수혜 대상자는 일반연구세액공제와 대체간편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
    - 두 가지 공제방식 모두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적격지출에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지만 일반공제는 고정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대체간편세액공제는 이동평균기준을 적용하는 공제방식
    - 에너지연구세액공제와 기초연구세액공제는 각각 에너지연구와 기초연구에 투자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일반연구세액공제 또는 대체간편세액공제에 추가로 공제가 적용되는 방식

-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IRC §4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항은 세액공제를 위한 적격연구개발비의 개념, 세액공제 유형과 공제율 등을 포함
-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한 적격 연구개발 활동은 다음과 같이 제시<sup>8), 9)</sup>
  - 사업 구성요소 또는 사업 구성요소의 적절한 설계를 개발 또는 개선하기 위한 기능 및 방법론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등의 초기에 존재하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
  - 공학, 컴퓨터 과학, 생물 또는 물리 등 어려운 과학에 의존한 활동
  - 납세자의 거래 또는 사업에 판매되거나 사용될 신규 또는 개선된 제품, 프로세스, 내부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sup>10)</sup>, 기술, 공식 또는 발명으로 정의되는 신규 또는 개선된 사업 구성요소의 개발과 관련된 활동
  - 실질적으로 기술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대안의 시험과 평가를 포함하는 실험과정을 구성하는 모든 활동
  - 다음의 활동은 적격 연구개발 활동에서 제외
    - 상업적 생산이 시작된 후 수행된 연구
    - 기존 사업 구성요소의 수정 또는 복제
    - 관리 기능 또는 기술과 관련된 설문조사, 연구 또는 활동
    - 시장조사, 테스트, 개발(광고 및 판촉활동 포함)
    - 일상적인 데이터 수집
    - 품질관리를 위한 정기 또는 일반 테스트나 검사
    - 내부용으로 개발된 경우를 제외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수행된 모든 연구
    - 사회과학에 대한 모든 연구
    - 보조금이 지원된 연구

8) 전병목 외, 『혁신성장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12.

9) Yair Holtzman, "U.S.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Credit," *The CPA Journal*, <https://www.cpapjournal.com/2017/10/30/u-s-research-development-tax-credit/>, 검색일자: 2024. 4. 17.

10) 연구개발 활동이 내부사용 소프트웨어(Internal Use Software, IUS)와 관련된 경우 다음 세 가지 조건의 추가 충족 필요 ① 소프트웨어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개선을 대폭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혁신성 필요 ② 소프트웨어 개발은 상당한 자원의 투입과 합리적인 기간 내에 회복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제적 위험의 수반 필요 ③ 소프트웨어는 상업적으로 이용이 불가해야 하며, 납세자는 처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상당한 개선을 하지 않고는 소프트웨어를 구입 또는 임대 등에 의해 의도된 목적에 사용 불가

- 연구개발 활동 지출(Qualified Research Expenditures, QREs)은 자체연구개발비와 계약연구개발비로 구분<sup>11)</sup>
  - 자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되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연구개발을 위해 제공되는 지급품(Supplies) 및 소모품 비용, 적격 연구 수행을 위한 컴퓨터 사용 권리(right to use computers)에 지출한 금액이 해당<sup>12)</sup>
    -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되는 서비스는 적격 연구에 종사하거나 연구활동을 직접 관리·감독하거나 적격 연구를 수행하는 자와 감독하는 자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를 의미
    - 임금이란 Code Sec.3401(a)에서 규정하는 현금 및 현물급여를 포함한 모든 보수를 의미<sup>13)</sup>
    - 연구개발을 위해 제공되는 지급품 및 소모품은 토지 또는 토지의 개량, 감가상각 관련 혜택의 적용을 받는 재산 이외의 모든 유형 자산을 의미
  - 적격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제3자에게 지급된 계약연구개발비는 연구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발생 비용의 65%를 적격지출로 인정<sup>14)</sup>
    - 과학연구 수행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사유재단에 의해 설립·운영되지 않는 교육기관 및 과학연구기관에 지급되는 기초연구비용은 실제 발생 비용의 75%를 연구개발비로 인정
    - 적격 소기업,<sup>15)</sup> Code Sec.3304(b)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에너지연구를 위한 연방연구소(Federal laboratory)에 지급되는 계약연구비는 전액을 연구개발비로 인정
  
- 직원의 임금에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은 적절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고용주는 적절한 문서의 제공이 필요<sup>16)</sup>

11) IRS §41(b) Credit for increasing research activities,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41>, 검색일자: 2024. 3. 21.

12) IRS §41(b), 「Qualified research expenses-in-house research expenses」,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41>, 검색일자: 2024. 4. 19.

13) 미국, 「U.S. Code § 3401 - Definitions」,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3401>, 검색일자: 2024. 4. 19.

14) IRS §41(b), 「Qualified research expenses-qualified research consortium」,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41>, 검색일자: 2024. 4. 19.

15) 적격 소기업이란 납세자가 해당 기업의 주식발행총수의 50% 미만을 보유하고, 연속되는 2개 역년의 평균 종업원 수가 500명 이하인 기업을 의미

16) 미국 ADP, “Qualified expenses for the R&D tax credit,” <https://www.adp.com/resources/articles-and-insights/articles/q/qualified-expenses-for-the-r-and-d-tax-credit.aspx>, 검색일자: 2024. 4. 17.

- 적격한 연구개발 활동은 다음과 같이 제시
  - 검증된 연구의 수행(예: 제조 프로토타입 테스트)
  - 자격을 갖춘 연구를 직접 감독(예: 소프트웨어 개발자 팀 관리)
  - 적격 연구를 직접 지원(예: 제형 시험에 대한 테스트 결과 정리)
  - 직원이 수행하는 일반·행정 서비스 또는 연구활동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타 서비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임금에 대한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고용주는 다음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 문서를 제공해야 함
  - 원천징수영수증(Employee Form W-2s), 급여 등록부(Payroll registers), 시간 추적 데이터(Time tracking data), 시간질문(Time questionnaires), 구두 증언, 회의록 등
- 일반연구세액공제(Regular Research Credit, RRC)는 기준금액(base amount)을 초과하는 적격 연구비지출(Qualified Research Expenditures, QREs)에 2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 1989년 12월 31일 이후 과세연도의 기준금액은 이전 4년 동안의 평균 연간 총 수입에 납세자의 고정비율을 곱하여 산출<sup>17)</sup>
    - 기존 기업(established firms)의 고정비율은 1983년 12월 31일 이후부터 1989년 1월 1일 이전 과세연도 동안의 총수입 대비 적격 연구비지출의 비율
    - 기존 기업은 1984년부터 1988년까지의 과세연도 중 최소 3년 동안 총수입과 적격 연구비지출이 발생한 기업을 의미
    - 1988년 이후 처음으로 적격 연구비지출과 총수입이 발생한 기업, 또는 1984년부터 1988년까지의 과세기간 중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총수입과 적격 연구비지출이 발생한 기업은 별도의 방식으로 고정비율을 산출
    - 기준금액은 기업의 정상적인 연구비 투자수준 또는 기대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소 기준금액은 당해 연도 적격 연구개발비의 50%
    - 고정비율은 최대 16%
- 대체간편세액공제(Alternative Simplified Credit, ASC)는 직전 3년 평균의 50%를 초과하는 당해 연도 적격 연구비지출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sup>18)</sup>

17) IRS §41(c)(3)

18) IRS §41(c)(4)

- 산출식은(당해 연도 적격 연구비지출- 직전 3년 평균 적격 연구비지출×50%)×14%
  - 직전 3년간 적격 연구비지출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적격 연구비지출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 기초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상업적 목적이 아닌 과학적 지식 진보를 위한 기초 연구<sup>19)</sup>를 수행하는 적격 기관에 적용
- 세액공제 규모는 적격 기관 기본비용(qualified organization base period amount)을 초과하는 기초연구지불액(basic research payment)에 2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출
    - 적격 기관 기본비용은 최소기초연구비용(minimum basic research amount)에 유지 보수액(maintenance-of-effort amount)을 합산한 금액
    - 기초연구지불액은 해당 과세연도 동안 기업이 기초연구를 위해 적격한 조직에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의미
- 특정에너지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공익을 위한 에너지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IRC §501(a)에 따라 과세가 면제된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s)에 지불하는 적격 연구비의 20%를 세액공제<sup>20)</sup>
- 대학(colleges, universities), 연방연구실(federal labs), 납세자가 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의 과반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 소기업(small firms)에 지불하는 적격 연구비에 대해서 청구
- 연구개발비 증가분을 보유했으나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려운 소규모 창업기업(Start-ups)은 소득세 대신 급여세(Payroll withholding tax, PWHT)로 환급 신청 가능
- 소규모 창업기업은 과거 과세연도 기간이 5년 미만이고 당해 연도 총수입액이 500만달러 미만인 기업<sup>21)</sup>
  -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금액은 50만달러이며 급여세 중 사회보장세의 고용주부분에 한해서 적용
- 연구개발세액공제는 IRS §38에 따른 일반사업 세액공제(General business credit)<sup>22)</sup> 중

19) IRS §41(e)(2)(A)

20) Tax foundation, "Reviewing the Federal Tax Treatment of Research & Development Expenses," 2021. p. 4.

21) <https://stip.oecd.org/innotax/incentives/USA1>의 Definition of young company 참조

하나에 해당하며 다른 세액공제와 합하여 일반사업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

- 일반사업 세액공제 한도는 잠정 최저한세(tentative minimum tax)와 2만 5천달러를 초과하는 순일반법인세(net regular tax liability)의 25% 중 큰 금액을 순법인소득세(net income tax)에서 차감한 금액
  - 순법인소득세는 일반법인세부담액(regular tax liability)에 대체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을 더한 금액에서 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 순일반법인세는 일반법인세부담액에서 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연구개발 세액공제액은 1년간 소급공제(carry-back)하거나 20년간 이월공제(carry-forward)가 가능

<표 III-1> 미국의 연구개발 세액공제제도

구분	일반연구세액공제	대체간편세액공제	기초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특정에너지연구 개발비세액공제
공제방식	증가분 (incremental)	증가분 (incremental)	증가분 (incremental)	당기분 (volume-based)
적격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연구개발비: 인건비, 지급품 및 소모품, 컴퓨터 사용 권리</li> <li>- 위탁연구개발비: 계약 대상에 따라 65~100%</li> </ul>			
세액공제율	20%	14% (3년간 적격연구 개발비가 0인 경우 6% 적용)	20%	20%
환급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창업기업 <sup>1)</sup> 은 50만달러까지 환급 가능 (급여세 중 사회보장세의 고용주 부분에 한해서 환급)			
이월공제	1년간 소급공제(carry-back) 또는 20년간 이월공제(carry-forward) 가능			
한도	연구 개발비 인정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자에게 지급한 연구개발비는 비용의 65%를 적격비용으로 인정</li> <li>- 과학연구를 위한 교육기관 및 과학연구기관에 지급한 기초연구비용은 75%를 적격비용으로 인정</li> <li>- 소기업, 특정 고등교육기관, 에너지연구를 위한 연방연구소에 지급한 계약연구비는 100% 적격비용으로 인정</li> </ul>		
	공제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정최저한세(tentative minimum tax)와 2만 5천달러를 초과하는 순일반법인세(net regular tax liability)의 25% 중 큰 금액을 순법인소득세(net income tax)에서 차감한 금액</li> <li>- 적격 소기업의 요건을 갖춘 경우 잠정최저한세(tentative minimum tax)는 0으로 취급되며, 일반세금 부과 기준에 따른 제한 사항은 계속 적용</li> </ul>		

주: 1. 과거 과세연도 기간이 5년 미만이고 당해 연도 총수입액이 5백만달러 미만인 기업을 의미  
 자료: OECD, Tax incentives for R&D and innovation, 검색일자: 2024. 3. 25.; IRS §41 참조하여 저자 작성

22) IRS §38(b)에 따른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포함한 41개의 세액공제

## 나. 일본<sup>23)</sup>

- 일본은 실험연구비 총액을 기준으로 실험연구비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구개발 세액공제제도를 운영
  - 일반적인 실험연구비에 대한 실험연구비 세액공제제도와 특별실험연구비에 대한 특별실험연구비 세액공제제도로 나뉘며 기업은 두 세액공제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것이 가능
    - 특별실험연구비는 대학 등과 공동·위탁 연구에 사용된 실험연구비를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실험연구비보다 더 큰 규모의 혜택을 부여
  - 실험연구비 세액공제제도는 적용 대상 법인이 중소기업 등인지 여부에 따라 다시 일반형과 중소기업기술기반강화세제형으로 분류하며 기업규모 및 조건에 따라 둘 중 하나의 제도를 적용
  - 일반 시험연구비와 중소기업기술기반강화 시험연구비에 포함된 시험연구비는 특별시험연구비와 중복 적용 불가
  
- 일본 「조세특별조치법(租税特別措置法)」 제42조의4 제19항 제1호 (가)목에서는 실험연구를 다음과 같이 규정<sup>24)</sup>
  - 실험연구는 사물·기능·현상 등에 대해 새로운 지견을 얻거나 이용 가능한 지견의 새로운 응용을 고안하기 위해 실시하는 창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수집·분석·기타 활동 중 공학 및 자연과학과 관련된 것을 의미
  - 신제품의 제조 또는 신기술의 개량·고안·발명과 관련된 것에만 한정하지 않고 실제로 생산 중인 제품의 제조 또는 기존 기술의 개량·고안·발명과 관련된 것도 포함
  - <표 III-2>의 16가지 활동은 실험연구에서 제외

23)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hojin/5442.htm>, 검색일자: 2024. 3. 25.; 일본 경제산업성, 「研究開発税制の概要と令和5年度税制改正について」, 2023. 4.; 전병목 외, 『혁신성장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12.

24) 일본 경제산업성, 「研究開発税制の概要と令和3年度税制改正について」, [https://www.meti.go.jp/policy/tech\\_promotion/tax/about\\_tax.html](https://www.meti.go.jp/policy/tech_promotion/tax/about_tax.html), 검색일자: 2024. 4. 17.

<표 III-2> 일본의 실험연구 제외 항목

일본 「조세특례조치법 통달(租稅特別措置法通達)」 제42조의4(1)-2

- (1)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에 관한 활동
- (2) 리버스엔지니어링(이미 실용화되어 있는 제품·기술의 구조나 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자사의 제품·기술에 그대로 활용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해석하는 것 및 기타 단순한 모방 목적의 활동)
- (3) 사무원에 의한 사무처리절차 변경·간소화·부서편성 편경
- (4) 기존 마케팅방법·판매방법 도입 등 판매기술 또는 판매방법 개량·판로개척
- (5)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개발 업무의 일부로서 실시하는 디자인의 고안
- (6) (5)에 의해 고안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실시하는 설계 또는 시제
- (7) 제품에의 특정한 표시허가를 받기 위해 행하는 데이터 집적 등 임상실험
- (8) 완성품 판매를 위한 마케팅 조사, 소비자 앙케트 수집
- (9) 기존 재무 분석 또는 재고 관리 방법 도입
- (10) 기존 제품 품질 관리, 완제품 제품 검사, 환경 관리
- (11) 생산 조정을 위해 실시하는 기계 설비의 이전 또는 제조 라인의 배치 전환
- (12) 생산 방법, 양산 방법이 기술적으로 확립하고 있는 제품을 양산화하기 위한 시작
- (13) 특허 출원 및 소송 관련 사무절차
- (14) 지질, 해양 또는 천체 등의 조사 또는 탐사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의 수집
- (15) 제품마스터 완성 후 기능 유지 관련 활동(시장판매 목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기능장애 방지 등)
- (16)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시스템 운영 관리, 사용자 문서 작성, 사용자 지원 및 소프트웨어와 명확하게 구분되는 콘텐츠 제작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研究開発税制の概要と令和3年度税制改正について」, [https://www.meti.go.jp/policy/tech\\_promotion/tax/about\\_tax.html](https://www.meti.go.jp/policy/tech_promotion/tax/about_tax.html), 검색일자: 2024. 4. 17.

일반적인 실험연구비는 제품·기술에 대한 실험연구비와 서비스 개발에 관한 실험연구비의 합으로 산출<sup>25)</sup>

제품·기술에 대한 실험연구비는 자연과학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다음의 세 가지 요건 충족 필요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① 손금으로 산입된 비용 ② 연구개발비로 손금 경리되어 소프트웨어 등의 취득가액에 산입되는 비용일 것
- 제품의 제조, 기술의 개량·고안·발명이 목적인 실험연구를 위한 비용일 것
- 실험연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원재료비, 경비, 위탁실험연구비, 기술연구조합에 지불하는 부과금일 것<sup>26)</sup>

25) 일본 중소기업청, <https://www.chusho.meti.go.jp/zaimu/zeisei/kenkyukaihatsu/index.html>, 검색일자: 2024. 3. 25.

26) TabisLand, 「税額控除の対象となる試験研究費(その1概要)」, <https://www.tabisland.ne.jp/column/2020/1127.html>, 검색일자: 2024. 4. 18.

- 인건비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실험연구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자의 임금, 제수당, 상여, 사회보험료, 퇴직금<sup>27)</sup> 및 연구보조자 인건비 등이 해당<sup>28)</sup>
- 원재료비는 실험연구를 위해 소비된 원료 및 재료의 비용으로 원재료비, 보조재료비, 부품비, 소모품비, 소모공구비, 기구비품비, 시제품비 등이 해당
- 경비는 실험연구를 위해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외주가공비, 복리후생비, 수도광열비, 여비 및 교통비, 도서비, 인쇄비 등이 해당
- 실험연구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지불한 연구개발비도 포함

□ 서비스개발 연구개발비는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신규 용역 개발에 관련된 비용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규 서비스를 개발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의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sup>29)</sup>

- 서비스개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네 가지 과정을 모두 거쳐야 적용 가능
  - ① 분석 대상이 되는 빅데이터의 준비
  - ② 데이터 분석: 법인 내에서 데이터 과학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된 자가 AI 등의 기술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 ③ 서비스 설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얻은 일정한 법칙성을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 설계
  - ④ 서비스 적용: 해당 서비스의 재현성 확인
- 서비스개발 대상 실험연구비는 앞선 네 가지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비, 인건비 및 경비
  - 인건비 대상 근로자는 정보 해석에 필요한 확률·통계학 지식, 정보처리 관련 필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로서 그 전문지식을 갖고 서비스 개발 관련 실험연구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자
  - 제3자에게 위탁하여 실험연구를 진행하는 법인이 위탁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 서비스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으로 일반적인 제조의 연구개발을 실시하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 IT 등 다양한 업종에서 세액공제의 활용이 가능

27) 퇴직금은 실제로 지급하는 총금액이 아닌 연구개발에 전적으로 종사하고 있던 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정 기준에 의해 배분·계산되는 부분의 금액으로 한정

28) TabisLand, 『税額控除の対象となる試験研究費(その2 人件費)』, <https://www.tabisland.ne.jp/column/2020/1130.html>, 검색일자: 2024. 4. 18.

29) 일본 경제산업성, 『研究開発税制の概要と令和5年度税制改正について』, p. 23.

- 특별실험연구비(개방혁신형, Open innovation activity-based)는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대학, 특별연구기관 및 그 외의 자와 공동연구 또는 위탁연구에 지출한 실험연구비로 일반실험연구비보다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
  - 특별실험연구비의 기본 요건 및 범위는 실험연구비와 대체로 비슷하지만 특별 실험연구에 지출한 실험연구비를 특별실험연구비로 간주
  - 특별실험연구는 다음의 총 14가지로 구성<sup>30)</sup>
    - 공동실험연구(5가지): 특별연구기관 등, 대학 등, 특정 신사업 개척사업자,<sup>31)</sup> 성과활용 촉진사업자, 그 외(민간기업, 민간연구소, 공설시험연구기관 등)와의 공동실험연구
    - 협동실험연구(1가지): 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실시하는 협동시험연구
    - 위탁실험연구(6가지): 특별연구기관 등, 대학 등, 특정 중소기업자 등,<sup>32)</sup> 특정 신사업 개척사업자, 성과활용 촉진사업자, 그 외(민간기업, 민간연구소, 공설 시험연구기관 등)에 대한 위탁실험연구
    - 지식재산권의 사용권(1가지): 특정 중소기업자 등(중소사업자 등에 한함)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의 설정 또는 허락을 받아 실시하는 실험연구
    - 고도연구 업무 종사자(1가지): 고도연구 업무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지출하여 실시하는 실험연구
  
- 일반형 공제율은 실험연구비를 지출한 경우 총액기준으로 일정 비율(1~14%)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되 증감실험연구비 비율의 12% 초과 여부에 따라 다른 세액 공제율 계산식을 적용
  - 증감실험연구비 비율 = (해당 과세연도의 실험연구비 - 과거 3년 이내 각 사업 연도의 평균 실험연구비) / 과거 3년 이내 각 사업연도의 평균 실험연구비<sup>33)</sup>
    - (a) 증감실험연구비 비율 12% 초과: 11.5% + (증감실험연구비 비율 - 12%) × 0.375, 최대 14%

30) 일본 경제산업성, 『特別試験研究費税額控除制度 ガイドライン[令和5年度]』, 特別試験研究の種類(政令第27条の4第24項), [https://www.meti.go.jp/policy/tech\\_promotion/tax/tax\\_guideline.html](https://www.meti.go.jp/policy/tech_promotion/tax/tax_guideline.html), 검색일자: 2024. 3. 25.

31) 신사업개척사업자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함. ① 「산업경쟁력강화법」 제2조 제5항에 규정된 신사업개척사업자로서 해당 인이 발행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인정특별신사업개척투자사업조합의 조합자산인 경우 ② 특정연구성과활용사업자를 의미

32) 특정 중소기업자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함. ① 중소기업 ② 「법인세법」 별표 제2에 열거된 법인 ③ 국가기관 ④ 지방공공단체 및 그 기관 ⑤ 「독립행정법인통칙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독립행정법인, 「지방독립행정법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독립행정법인

33)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270.htm>, 검색일자: 2024. 3. 25.

- (b) 증감실험연구비 비율 12% 이하:  $11.5\% - (12\% - \text{증감실험연구비 비율}) \times 0.25$ , 최소 1%
  - (c) 해당 과세연도가 설립연도이거나 비교 대상이 되는 기존 실험연구비가 0인 경우에는 8.5%의 공제율 적용
  - 매출 대비 실험연구비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의 공제율에 공제 할증률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 매출 대비 실험연구비 비율 10% 초과:  $\text{기존 공제율} + [(\text{기존 공제율} - 10\%) \times 0.5]$
    - 기존 공제율은 위의 증감실험연구비 비율에 따른 (a), (b), (c)의 공제율을 의미
    - 공제 할증률인  $[(\text{기존 공제율} - 10\%) \times 0.5]$ 의 상한은 10%
    - 매출 대비 실험연구비 비율이 10%를 초과하더라도 공제율 상한은 14%
  - 세액공제 한도는 법인세액의 25%가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감된 한도를 적용
    - 증감실험연구비 비율이 4% 초과:  $25\% + [(\text{증감실험연구비 비율} - 4\%) \times 0.625]$ , 법인세액의 최대 30%
    - 증감실험연구비 비율이 4% 이하:  $25\% + [(\text{증감실험연구비 비율} + 4\%) \times 0.625]$ , 법인세액의 최소 20%
    - 매출 대비 실험연구비 비율이 10% 초과:  $25\% + (\text{매출 대비 실험연구비 비율} - 10\%) \times 2$ , 법인세액의 최대 35%
    - 설립 10년 이내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벤처기업은 최대 한도를 법인세액의 40% 적용
  - 본 제도는 중소기업기술기반강화세제형 제도와 중복 적용 불가
- 중소기업기술기반강화세제형은 증감실험연구비 비율에 따라 12~17%의 공제율을 적용
- 공제 대상 법인은 청색신고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자 또는 농업협동조합<sup>34)</sup>
    - 세부적으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1억 엔 이하인 법인,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없는 법인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00명 이하인 법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00명 이하인 개인사업주 등이 해당<sup>35)</sup>

34) 일본 중소기업청, <https://www.chusho.meti.go.jp/zaimu/zeisei/kenkyukaihatsu/index.html>, 검색일자: 2024. 3. 26.

35) 다음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1억엔 이하라도 중소기업에 미해당 ① 대규모법인(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1억엔을 초과하는 법인, 자본 또는 출자를 갖지 않는 법인 중 상시 사용하는 중

- 증감실험연구비 비율의 12% 초과 여부에 따라 다른 세액공제율 산정 방식을 적용
  - 증감실험연구비 비율 12% 초과:  $12\% + (\text{증감실험연구비 비율} - 12\%) \times 0.375$ , 최대 17%
  - 증감실험연구비 비율 12% 이하: 일괄 12%
  - 매출 대비 실험연구비 비율 10% 초과: 기존 공제율 + [기존공제율  $\times$  (매출 대비 실험연구비 비율 - 10%)  $\times$  0.5], 최대 17%
    - (매출 대비 실험연구비 비율 - 10%)  $\times$  0.5의 상한은 10%
- 세액공제 한도는 법인세액의 25%가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감된 한도를 적용
  - 증감실험연구비 비율이 12%를 초과하는 사업연도의 한도는 법인세액  $\times$  (25% + 10%)의 상한액 적용
  - 매출 대비 실험연구비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사업연도에는 법인세액  $\times$  25% + (매출 대비 실험연구비 비율 - 10%)  $\times$  2
    - (매출 대비 실험연구비 비율 - 10%)  $\times$  2의 상한은 10%
- 특별실험연구비 세액공제율은 공동연구나 위탁연구를 수행한 기관의 종류 등에 따라 차등된 세액공제율을 적용
  - 특별연구기관 등 또는 대학 등과의 공동·위탁연구에 지출한 실험연구비는 30%, 신사업개척사업자 등과의 공동·위탁연구에 지출한 실험연구비는 25%, 그 외 실험연구비는 20%
  - 세액공제 한도는 법인세액의 10%

---

업원 수가 1,000명 초과인 법인 또는 대법인(※)의 100% 자법인 등이 발행된 주식 또는 출자총수·총액의 1/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② 2 이상의 대규모법인이 발행 완료주식 또는 출자총수·총액의 2/3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표 III-3〉 일본의 특별실험연구비 세액공제율

구분	대상 협력기관	세액공제율
공동실험연구 위탁실험연구	특별연구기관 등	30%
	대학 등	
	신사업개척사업자 등	25%
	성과활용 촉진사업자 등	
위탁실험연구	그 외(민간기업, 민간연구소 등)	20%
협동실험연구	특정 중소기업자 등	
지식재산권 사용	기술연구원조합의 조합원	
고도연구 업무 종사자 인건비 지출	특정 중소기업자 등	

자료: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hojin/5443.htm>, 검색일자: 2024. 3. 26.; 야마다 파트너, <https://www.yamada-partners.jp/reform/r05/h03-revision-of-the-rt-tax-system>, 검색일자: 2024. 3. 26. 참고해서 저자 요약·작성

〈표 III-4〉 일본의 연구개발 세액공제제도

구분	일반 실험연구비 세액공제	특별 실험연구비 세액공제	중소기업기술기반강화 세액공제
공제방식	당기분(Volume-based tax credit)		
적격 지출	- 제품·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 인건비, 원재료비, 경비(감가상각 자산의 감가상각비 포함), 위탁실험연구비 서비스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비 : 인건비: 원재료비, 위탁연구비		
세액공제율	- 1~14% : 증감실험연구비 <sup>1)</sup> 비율의 12% 초과여부, 매출액 대비 실험연구비 비율 10% 초과여부에 따라 세액공제율 차등 적용	- 특별연구기관, 대학과의 공동·위탁연구 30% - 신사업개척사업자와의 공동·위탁연구: 25% - 그 외 실험 연구: 20%	- 12~17% : 증감실험연구비 <sup>1)</sup> 비율의 12% 초과여부, 매출액 대비 실험연구비 비율 10% 초과여부에 따라 세액공제율 차등 적용
환급	없음		
이월공제	없음		
한도	연구 개발비 인정 한도	없음	없음
	공제 한도	- 세액공제 적용 전 법인 세액의 20~40% : 법인세액의 25%를 원칙으로 하되 증감실험연구비 <sup>1)</sup> 비율의 4% 초과여부, 매출액 대비 실험연구비 비율 10% 초과여부에 따라 공제 한도 차등 적용	- 세액공제 적용 전 법인 세액의 10%

주: 1) 증감실험연구비: (해당 과세연도의 실험연구비·과거 3년 이내 각 사업연도의 평균 실험연구비)/과거 3년 이내 각 사업연도의 평균 실험연구비  
자료: OECD, Tax incentives for R&D and innovation, 검색일자: 2024. 3. 26.; 일본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다. 영국

- 영국은 기업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은 연구개발에 대한 공제(Corporation Tax Credit for Research & Development), 대기업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 Credit, RDEC) 제도를 구분하여 운영
  - 해당 제도에서 중소기업은 직원이 500명 이하이면서 매출이 1억유로 이하 또는 자산이 8,600만유로 이하인 기업을 의미<sup>36)</sup>
    - 중소기업이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이미 750만유로 이상의 지원을 받았거나 정부의 다른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위탁받은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공제 신청이 불가
  
- 영국의 연구개발은 과학적·기술적 불확실성을 해결하여 과학·기술의 진보 추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활동을 의미하며 다음의 비용을 대상으로 조세지원<sup>37)</sup>을 제공
  -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 및 관리직의 인건비
    - 임금, 상여금, 연금 출연금 등의 급여(bonus, salaries, wages), 회사가 지불한 사회보장비용(Class 1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pension fund contributions) 및 모든 연금 기금에 지불한 기부금을 포함<sup>38)</sup>
    - 연구개발 직접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전문 청소 직원 등 관리 및 지원 직원의 급여도 적격비용에 해당
    - 외부용역업체(employment agency)를 통한 직원의 인건비는 기업과 연결된 업체일 경우 100%를 포함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65%만 연구개발 비용에 포함
  -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연료, 자재, 전력, 수도 등의 원재료 및 소모품비와 소프트웨어, 데이터 라이선스 및 클라우드 컴퓨팅 비용
  - 위탁연구비에 대해서 대기업은 연결되지 않은 회사(unconnected contractor)에

36) 연구개발세액공제에서 중소기업 기준은 과세관청이 법인세나 원천징수에서 사용하는 개념(직원수 250명 이하면서 매출액 5,000만유로 또는 총자산 4,300만유로 이하인 기업)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

37) 영국 정부, <https://www.gov.uk/guidance/research-and-development-rd-tax-relief-the-merged-scheme-and-enhanced-rd-intensive-support>, 검색일자: 2024. 3. 27.; 영국 정부, <https://www.gov.uk/guidance/corporation-tax-research-and-development-tax-relief-for-small-and-medium-sized-enterprises>, 검색일자: 2024. 3. 27.

38) 영국 정부, “CIRD83200 - R&D tax relief: categories of qualifying expenditure: staffing costs - measure of CTA09/S1123,”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orporate-intangibles-research-and-development-manual/cird83200>, 검색일자: 2024. 4. 22.

지출한 금액의 65%만 연구개발비로 포함하고 연결된 회사(connected contractor)는 추가 규정이 적용되며 조건이 충족될 경우 100%까지 인정 가능

- 연결된 회사는 해당 기업이 상대 회사에 대해 일정 수준의 통제권을 가진 회사이고 연결되지 않은 회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를 의미<sup>39)</sup>
- 영국 국세청(HMRC)에서는 연결된 회사를 상대 회사의 보통주 자본금에 대한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총회에서 50% 이상의 의결권을 통제할 수 있는 회사로 정의
- 중소기업은 위탁연구비의 65%만 연구개발비에 포함
- 제약산업 연구개발의 경우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지급된 대금도 비용에 포함
- 자본지출, 토지비용, 특허 및 상표 출원 비용, 임대료 등은 적격 연구개발비에서 제외

□ 공제율은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RDEC)의 경우 2015년 11%에서 2023년 4월 1일부터 20%를 세액공제하고 공제 한도는 미적용

- 세액공제율은 2015년 11%, 2018년 12%, 2020년 13%에서 2023년 20%로 상향 조정하는 추세
- 중소기업은 연구개발에 대해 총 186%의 소득공제를 허용<sup>40), 41)</sup>
  - 손실이 발생한 경우 모든 종업원에 대한 원천징수 및 국가보험부담금 납부 금액을 한도로 포기가능 손실(surrenderable loss)<sup>42)</sup>의 10%를 환급(refund)
  - 총지출에서 연구개발비 지출의 비율이 40% 이상일 경우 포기가능 손실의 14.5%까지 환급 허용
- 사용하지 않은 공제액은 무기한 이월이 가능

39) <https://easyrmd.co.uk/resource/connected-vs-unconnected>, 검색일자: 2024. 6. 5.

40) 영국 정부, <https://www.gov.uk/guidance/corporation-tax-research-and-development-tax-relief-for-small-and-medium-sized-enterprises>, 검색일자: 2024. 3. 27.

41) OECD(<https://stip.oecd.org/innotax/incentives/GBR1>)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대기업 세액공제율(RDEC)은 13%로 중소기업 소득공제 230%는 법인세 19%에 세액공제 24.7%를 적용하는 수준으로 중소기업 우대조항으로 간주 가능. 다만, 2023년에 대기업 세액공제율은 높이고 중소기업 소득공제율은 낮춰 그 차이는 축소되었을 것으로 추정

42) 포기가능한 손실이란 공제되지 않은 사업결손금과 적격 연구개발비의 186% 중 작은 금액(<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orporate-intangibles-research-and-development-manual/cird90500>, 검색일자: 2024. 3. 28.)

〈표 III-5〉 영국의 연구개발 세액공제제도

구분	중소기업 연구개발 공제	대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	대기업
조세지원 방식	소득공제(deduction)	세액공제(credit)
공제방식	당기분(Volume-based tax credit)	
적격지출	인건비, 원재료비, 무형자산, 위탁연구비, 기타	
세액공제율	소득공제 186%	세액공제 20%
환급	중소기업에 한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포기가능 손실 <sup>1)</sup> 의 10% 환급	없음
이월공제	미사용 공제액 무기한 이월 가능	
한도	연구 개발비 인정 한도	- 외부용역업체를 통한 직원의 인건비는 기업과 연결된 업체는 100%, 아닐 경우는 65%만 연구개발비에 포함 - 대기업의 위탁연구비는 65%만 연구개발비로 포함시키되 연결된 회사에 한해 추가 조건을 충족할 경우 100%까지 포함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65%만 포함
	공제 한도	프로젝트당 750만유로 세금감면

주: 1) 포기가능한 손실이란 공제되지 않은 사업결손금과 적격 연구개발비의 186% 중 작은 금액  
자료: OECD, Tax incentives for R&D and innovation, 검색일자: 2024. 3. 26.; 영국 정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라. 캐나다

- 캐나다는 과학연구 및 실험개발 세제혜택(Scientific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SR&ED) tax incentives)이라는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를 운영<sup>43)</sup>
  -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는 소득공제(deduction against income)와 투자세액공제(ITC)를 병행
    - 해당 연도에 발생한 적격 지출을 확인하고 공제가 가능한 지출의 풀(pool)을 계산하여 소득공제를 실시
    - 투자세액공제율은 기본적으로 15%이나 일부 법인에게 35% 제공
    - 지출 규모 및 기업 유형에 따라 공제액 전체 또는 일부의 환급이 가능
  - 일부 주 또는 지방 정부에서 운영하는 R&D 세제혜택 제도도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지원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43) 캐나다 정부,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scientific-research-experimental-development-tax-incentive-program.html>, 검색일자: 2024. 7. 12.

- 연구개발은 과학 지식 또는 기술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며, 실험 또는 분석을 통해 과학 또는 기술 분야에서 수행되는 체계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미
  
-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 사업을 적격사업이라고 하며 기초연구(basic research), 응용연구(applied research), 실험개발(experimental development), 지원사업(support work)이 이에 해당
  - 기초연구는 실제 적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과학 지식의 발전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사업
  - 응용연구는 실제 응용을 목적으로 한 과학 지식 발전을 목표로 수행하는 사업
  - 실험개발은 점진적인 발전을 포함한 재료, 장치, 제품, 또는 공정 등의 개발이나 발전을 위해 기술 지식 또는 노하우를 만들고 발견하는 사업
  - 지원사업은 기초연구, 응용연구, 실험개발 사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엔지니어링, 디자인, 운영 연구, 수학적 분석, 컴퓨터 프로그래밍, 데이터 수집, 임상시험, 심리학 연구가 해당
  - 다음 활동은 적격사업에서 제외되며 세액공제 청구가 불가
    - 시장조사 또는 프로모션 활동, 품질 관리 또는 재료, 장비, 제품 또는 공정에 대한 정기 검사, 사회과학·인문학 연구, 자원의 탐사·시추·생산 활동, 신제품 또는 개선 제품의 상업적 생산 또는 사용, 스타일 변화, 정기적인 데이터 수집은 적격사업에서 제외
    - 연구개발 활동이더라도 훈련, 직무 간 학습, 이미 알고 있는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전문가 고용, 지적재산권 구입에 대한 비용은 세액공제 청구 불가
  
-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다음 비용은 과세소득에서 감면하여 세금 부담을 감소
  - 연구개발 활동에 참가한 직원들의 급여 또는 임금
    - 직업과 관계없이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직원의 급여나 임금은 모두 포함
  - 연구개발 활동 전반에 사용된 재료비로 원자재, 물질 또는 다른 물품을 소비하고 변형하는 데 사용된 지출
  - 연구개발 활동에 연관된 위탁연구자에게 지급된 비용
    - 위탁연구비의 80%만 반영

- 임대비 또는 장비 사용료와 같은 간접비와 기타 비용
  - 제3자 지급
- 소득공제를 계산한 연구개발비용에 일부 비용을 조정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적격지출(eligible expenditure)을 계산
- 적격지출을 증가시키는 비용에는 이전 연도에 지급되지 않은 비용, 프록시 금액, 이전받은 적격지출이 존재
  - 적격지출을 감소시키는 비용에는 주 또는 지자체 등의 지원금, 계약 지급금 또는 제3자 지급금의 20%, 비독립적 거래 또는 비독립적 공급자로부터의 재화 및 서비스 구매, 이전한 적격지출, 비독립적 SR&ED 계약 지출 등이 존재
- 캐나다에서는 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기업을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
- 적격기업이란 특정 과세 연도의 캐나다 내국인 소유 비상장 기업(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 CCPC)이며 다음 두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함
    - 이전 과세연도의 과세소득이 당해 과세연도의 적격소득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하나 이상의 법인과 연계된 경우, 이전 연도에 종료된 마지막 과세연도 동안 해당 법인 및 연계된 법인의 과세소득 총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적격소득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제외기업이란 연중 어느 시점에 캐나다 소득세법 Section 149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는 한 명 이상의 개인 또는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공공기관, 또는 이들의 조합과 같은 주체에 의해 통제되는 법인을 의미
  - CCPC는 과세연도 말에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사기업
    - 캐나다에 거주하는 법인으로 캐나다에서 설립되거나 1971년 6월 18일부터 과세연도 말까지 캐나다에 거주한 법인
    - 한 명 이상의 비거주자, 하나 이상의 공기업(규정된 벤처캐피탈 법인은 제외), 또는 외국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캐나다 법인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통제되지 않아야 함
    - 앞에 언급된 세 가지 주체의 조합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통제되지 않아야 함

- 비거주자, 공기업(규정된 벤처캐피탈 법인은 제외), 또는 지정된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이 소유한 모든 주식을 한 명의 개인이 소유한다고 하여도 그 개인이 법인을 통제할 만큼의 충분한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어떤 종류의 자본 주식도 지정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야 함
  - 이외에 ‘앞의 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개인, 특정 신탁, 법인 미등록 기업’, ‘파트너십의 파트너’로 구분
- 조정을 완료한 적격지출에 대해 기업 유형과 지출한도(threshold)인 300만CAD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율을 다르게 부여
- 적격지출에 대해 모든 기업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투자세액공제율은 15%이며 CCPC와 제외기업은 35%의 상향된 공제율을 제공
  - 기업 유형에 관계 없이 지출 금액이 300만CAD를 초과하면 기본 공제율인 15%만 적용
- 납부세액보다 공제세액이 클 때 초과공제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률도 기업 유형과 지출한도의 초과 여부로 구분
- CCPC는 기본적으로 초과공제액의 100%를 환급받으며 지출한도를 초과하면 적격기업은 초과공제액의 40%를 환급받으며, 그 외의 CCPC는 환급이 불가
  - 제외기업, 개인, 특정 신탁, 법인 미등록 기업, 파트너십의 파트너는 지출한도와 관계없이 40%의 환급률이 적용
  - 단, 대기업(CCPC, 제외기업, 개인, 특정 신탁, 법인 미등록 기업, 파트너십의 파트너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초과공제액에 대해서 환급
- 사용하지 않은 공제세액은 최대 3년간 소급공제(carry-back) 및 20년간 이월공제(carry-forward)가 가능

<표 III-6> 캐나다의 연구개발 투자세액 공제율 및 환급률

기업 유형	지출한도 <sup>1)</sup> 이하		지출한도 초과	
	공제율	환급률	공제율	환급률
제외기업이 아닌 적격기업(CCPC)	35%	100%	15%	40%
제외기업	35%	40%	15%	40%
CCPC (적격/제외 기업 제외)	35%	100%	15%	0%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15%	0%	15%	0%
개인, 특정 신탁, 법인 미등록 기업	15%	40%	15%	40%
파트너십의 파트너	15%	40%	15%	40%

주: 1) 지출한도는 회계연도 기준 300만CAD  
 자료: 캐나다 정부,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scientific-research-experimental-development-tax-incentive-program/investment-tax-credit-policy.html#ppx1>, 검색일자: 2024. 7. 9.; 캐나다 정부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III-7> 캐나다의 연구개발 세액공제제도

구분	과학기술 및 실험개발(SR&ED) 세제혜택	
대상	세부적으로 CCPC와 그 외의 기업을 구분하여 지원	
조세지원 방식	소득공제(deduction) 및 세액공제(credit)	
공제방식	당기분(Volume-based tax credit)	
소득공제 지출	급여 및 임금, 재료·제조비용, 위탁연구비, 간접비, 제3자 지급	
적격지출	연구개발 활동비용에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일부 조정을 거쳐 공제율을 적용하는 지출	
세액공제율	소득공제 100%, 세액공제 15% ~ 35%	
환급	기업 유형에 따라서 환급 여부가 결정되며 40% 또는 100%	
이월공제	3년간 소급공제(carry-back) 또는 20년간 이월공제(carry-forward) 가능	
한도	연구 개발비 인정 한도	위탁연구비는 80%만 연구개발비로 인정되어 소득공제
	공제 한도	없음

자료: 캐나다 정부,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scientific-research-experimental-development-tax-incentive-program.html>, 검색일자: 2024. 7. 24.; 캐나다 정부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마. 호주

- 호주는 기존의 연구개발 조세감면 제도(Research and development tax concession)를 폐지하고 연구개발 조세지원 제도(Research and Development tax incentive)를 2011년부터 7월부터 시행하였으며 2021년 7월 개편하여 시행<sup>44)</sup>
  -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과 산업과학자원부(Department of Industry, Science and Resources)가 함께 관리하며 기업은 조세지원을 신청하기 이전에 반드시 산업과학자원부에 R&D 활동을 등록
  - 호주 경제 전반에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
  
- 호주는 R&D 세제혜택을 제공받는 대상을 연간 R&D 지출 비용이 2만AUD를 초과하는 기업 중 다음 조건의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기업으로 제한하며 이를 적격기업으로 규정
  - 호주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업
  - 외국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나 소득세 목적으로 호주에 거주하는 기업
  - 외국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나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호주와 고정사업장이라는 정의를 포함하는 이중과세 조약을 맺은 국가의 거주 기업
    - 이중과세 조약으로 정의된 고정사업장을 통해 호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개인, 기업 유한 파트너십, 비과세 기업(소득세 전액 비과세)은 적격기업에서 제외
  
- 적격 R&D 활동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최소 하나의 R&D 핵심 활동을 수행하거나 계획
    - R&D 핵심 활동(core R&D activities)이란 실험 활동의 결과가 현재 지식, 정보, 경험을 바탕으로 미리 알지 못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것을 의미
    - R&D 핵심 활동은 기존의 과학 원리를 기반으로 가설부터 실험, 관찰, 평가로 진행되며 논리적인 결과를 이끄는 작업의 체계적인 진행을 적용함으로써 결정

44)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income-deductions-and-concessions/incentives-and-concessions/research-and-development-tax-incentive-and-concessions/research-and-development-tax-incentive>, 검색일자: 2024. 7. 23.

- R&D 지원 활동(supporting R&D activities)은 반드시 R&D 핵심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하며 등록할 때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
  - R&D 핵심 활동에서 제외된 활동, 상품 및 서비스 생산 활동, 또는 상품 및 서비스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이 R&D 핵심 활동을 지원하는 지배적인 목적을 위해 수행되었을 때 적격 R&D 활동에 해당
- 다음의 활동들은 R&D 핵심 활동에서 제외
  - 시장 조사, 시장 평가, 시장 개발, 판매 홍보, 소비자 조사
  - 광물 또는 석유에 대한 예측, 탐사 또는 시추
  - 관리 연구 또는 효율성 조사
  - 사회과학, 예술, 인문학 분야의 연구
  - 상업적, 법적, 행정적 측면에서의 특허, 라이선스 또는 기타 활동
  -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
  - 상품이나 공정의 재생산과 관련된 모든 활동
  -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수정, 커스터마이징 및 내부 관리용 소프트웨어
- 등록된 R&D 활동에서 발생한 지출에만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가능 금액을 적격 명목 공제액(eligible notional deductions)이라 표현하고 다음 지출 항목들을 포함
  - R&D 활동에서 발생한 지출(인건비, 위탁연구비 등)
  - R&D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사용된 자산 가치의 하락
  - 상품 가능 제품을 생산하는 R&D 활동 내에서 변형 또는 가공되는 물건과 재료에 관한 지출
  - 협동연구센터(Cooperative Research Centres) 프로그램의 금전적 기여금<sup>45)</sup>
- 연구개발 세액공제율과 환급 여부는 R&D 기관의 연간 총매출(aggregated turnover) 규모에 따라 결정
  - 연간 총매출이 2,000만AUD 미만일 경우, 법인세율에 18.5%의 프리미엄을 더하여 공제율이 결정되고 초과공제액은 환급이 가능

45) 협동연구센터 보조금은 산업, 연구 및 커뮤니티를 단기 또는 중·장기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일부로 최소 1개의 호주 산업 조직과 1개의 호주 연구기관 간의 협업을 대상으로 적격 보조금 프로젝트 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제도(<https://business.gov.au/grants-and-programs/cooperative-research-centres-crc-grants>, 검색일자: 2024. 7. 25.)

- 연간 총매출이 2,000만AUD 이상일 경우 총지출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R&D 집중도)에 따라 단계적 프리미엄을 더한 공제율이 결정되며 공제액은 환급이 불가
    -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이하인 연구개발비는 법인세율에 8.5%의 프리미엄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
    - 총지출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법인세율에 16.5%를 추가하여 공제
  - 연간 R&D 지출이 1억 5,000만AUD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율만 공제율로 적용
- 납세액보다 공제액이 클 경우 초과공제액에 대한 환급이 가능하며, 환급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하지 않은 공제액은 다음 소득연도로 기한 없이 이월이 가능

<표 III-8> 호주의 연구개발 세액공제제도

구분	연구개발 세제혜택	
대상	적격기업으로 신청하여 등록된 기업	
조세지원 방식	세액공제(offset)	
공제방식	당기분(Volume-based tax credit)	
적격 지출	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위탁연구비, 기타비용	
세액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총매출 2,000만AUD 미만인 경우: 법인세율<sup>1)</sup> + 18.5%</li> <li>- 연간 총매출 2,000만AUD 이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지출 대비 R&amp;D 비중이 2% 이하분: 법인세율 + 8.5%</li> <li>• 총지출 대비 R&amp;D 비중이 2% 초과분: 법인세율 + 16.5%</li> </ul> </li> <li>- R&amp;D 지출 중 1억 5,000만AUD 초과 금액은 법인세율만 적용</li> </ul>	
환급	연간 총매출이 2,000만AUD 미만일 때만 환급 가능	
이월공제	무기한 이월공제(carry-forward) 가능	
한도	연구 개발비 인정 한도	없음
	공제 한도	없음

주: 1) 총매출액 5,000만AUD 이상의 기업에 30%, 미만인 기업에는 25%의 법인세율이 적용  
 자료: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income-deductions-and-concessions/incentives-and-concessions/research-and-development-tax-incentive-and-concessions/research-and-development-tax-incentive>, 검색일자: 2024. 7. 12.; 호주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2. 요약 및 시사점

- 해외 주요국은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별 상세한 제도 설계는 상이
  - 본 소절에서는 앞에 제시된 해외 주요국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을 도출
  
- 단, 국가별 경제 및 재정여건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아래에 제시한 국가별 비교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
  - 또한 기업 입장에서 조세지원뿐 아니라 재정 및 금융지원도 R&D에 있어 유의미한 정책 요인이므로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국가별 세부적인 정부 지원 내역이 모두 고려될 필요가 있음
  
- 해외 주요국 사례와 우리나라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 해외 주요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특정 기술 분야를 규정하여 조세지원 수준을 차등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
    - 미국은 비상업적 기초연구, 공익을 위한 특정 에너지 관련 연구 등에 일부 우대 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음
    - 특정 분야에 대한 지원은 미국의 『반도체과학법』(2022년 8월), 일본의 반도체 산업기반 긴급강화 패키지(2021년 11월) 등과 같이 재정 및 금융지원 방식이 더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
  - 해외 주요국의 공제율 수준은 대체로 우리나라의 일반 분야 공제율과 유사하고,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공제율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은 제도별 14~20%로 비교적 공제율이 높지만 특정에너지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제외하면 일정 금액 이상 지출한 ‘초과분’에 공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제율(일반 분야 증가분 기준 25~50%)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당기분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일본은 제도별 1~30%, 영국은 대기업의 경우 20% 세액공제, 중소기업은 186% 소득공제, 캐나다는 100% 소득공제와 15~30% 세액공제, 호주는 세액공제 25~43.5%를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일반 분야 당

- 기분 공제율과 대체로 유사하거나 조금 큰 수준인 것으로 판단
- 다만, 미국, 영국 등 국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들에게 세액공제액의 환급을 허용하고 있음
  - 다음으로 해외 주요국에서는 공제 한도를 설정하여 특정 기업이 과도한 조세 지원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미국, 일본은 세액에 연동된 공제 한도를, 영국은 정액의 감면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캐나다와 호주는 공제 한도를 설정하지 않음
    - 우리나라의 경우 별도로 적용되는 공제 한도는 없으며 일반법인에 대해서는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공제 한도는 존재하지 않음

〈표 III -9〉 주요국의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조세지원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연구세액공제</li> <li>- 대체간접세액공제</li> <li>- 기초연구개발비세액공제</li> <li>- 특정에너지연구개발비 세액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일반 연구개발비</li> <li>- 대체: 일반 연구개발비</li> <li>- 기초: 상업적 목적이 없는 과학적 지식 진보를 위한 기초연구개발비</li> <li>- 특정에너지: 공익을 위한 특정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실험연구비 세액공제</li> <li>- 특별실험연구비 세액공제</li> <li>- 중소기업기술기반강화 세액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연구개발 공제</li> <li>- 대기업 연구개발비 지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 및 실험개발 세제혜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 세제혜택</li> </ul>
공제적용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일반 연구개발비</li> <li>- 대체: 일반 연구개발비</li> <li>- 기초: 상업적 목적이 없는 과학적 지식 진보를 위한 기초연구개발비</li> <li>- 특정에너지: 공익을 위한 특정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일반 연구개발비</li> <li>- 특별: 특별연구기관, 대학, 특정 중소기업 등과 공동-위탁 연구한 실험연구비</li> <li>- 중소기업: 청채신고서 제출 중소기업·농협동조합이 지출한 연구개발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지출한 연구개발비</li> <li>- 대기업: 대기업이 지출한 연구개발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과 관련된 급여 및 임금, 재료·제조비용, 위탁 연구비, 간접비, 제3자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에 관련된 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위탁 연구비, 기타비용</li> </ul>	
공제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증가분(기준금액)<sup>1)</sup> 초과분</li> <li>- 대체: 증가분(직전 3년 평균 적격 연구비 지출 × 50%의 초과분)</li> <li>- 기초: 증가분(당해연도 기초 연구비용 증가분)</li> <li>- 특정에너지: 당기분(당해 연도 특정에너지 관련 연구개발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당기분</li> <li>- 특별: 당기분</li> <li>- 중소기업: 당기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당기분</li> <li>- 대기업: 당기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기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기분</li> </ul>	
위탁 연구비 인정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위탁연구비 65%</li> <li>- 과학연구기관과의 위탁연구비 75%</li> <li>- 적격 소기업, 고등교육기관·연방실험실의 에너지 연구를 위한 위탁연구비 1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위탁연구비 100%</li> <li>* 특별연구기관, 대학, 특정 중소기업 등에 위탁한 경우 특정실험연구세액공제에 따른 우대 공제를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위탁연구비의 65%</li> <li>- 대기업: 연결되지 않은 회사 65%, 연결된 회사는 조건 충족 시 100%까지 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연구비의 80%만 소득 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의 인정비용 없음</li> </ul>	

〈표 III -9〉의 계속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공제율	- 일반연구세액공제: 20% - 대체간편세액공제: 14% - 기초연구개발비세액공제: 20% - 특정에너지연구개발비 세액공제: 20%	- 일반실험연구비 세액공제: 1~16% - 특별실험연구비 세액공제: 20~30% - 중소기업기술기반강화세액공제: 12~17%	- 중소기업 연구개발 공제: 소득공제 186% - 대기업 연구개발비 지출 세액공제: 세액공제 20%	- 연구개발 관련 비용: 소득 공제 100% - 기본 세액공제: 15% - CCPC, 제외기업 세액공제 35%	- 연간 총매출 2,000만AUD 미만 세액공제: 법인세율 + 18.5% - 연간 총매출 2,000만AUD 이상 세액공제: 법인세율 + (8.5% 또는 16.5%) - R&D 지출 1.5억AUD 초과 세액공제: 법인세율
환급	- 소규모 창업기업에 한해 50만달러까지 환급 가능	- 없음	- 중소기업에 한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포기가능 손실 <sup>3)</sup> 의 10% 환급	- 기업 유형, 지출 규모에 따라 환급 여부가 결정되며 40% 또는 100% 환급 가능	- 연간 총매출 2,000만AUD 미만인 기업에 한해 초과 공제액에 대해서 환급 가능
이월공제	- 1년간 소급공제 또는 20년간 이월공제 가능	- 없음	- 무기한 이월 가능	- 3년간 소급공제 또는 20년간 이월공제 가능	- 무기한 이월 가능
공제 한도	- 순법인소득세-max[A, B] A: 감정최저한세 B: 25,000달러를 초과하는 순일반법인세의 25%	- 일반실험연구비 세액공제: 법인세 <sup>2)</sup> 액의 20~40% - 특별실험연구비 세액공제: 법인세액의 10% - 중소기업기술기반강화세액공제: 법인세액의 25~35%	- 중소기업은 프로젝트당 750만유로의 세금감면 한도 적용	- 없음	- 없음
기업규모별 차등적용	- 공제율은 일괄 적용 - 환급은 소규모 창업 기업에 한해 50만달러까지 환급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술기반강화세액공제 적용	- 중소기업에 한해 일정 규모의 환급이 가능하며 공제 한도 적용	- 지출규모(300만CAD)에 따라 공제율 차등적용	- 연간 총매출(2,000만AUD)을 기준으로 공제율 차등 적용 및 환급 여부 구분

주: 1) 기준금액은 이전 4년 동안의 평균 연간 총수입에 납세자의 고정부율을 곱해서 산출

2) 세액공제 적용 전 법인세율을 의미

3) 포기가능한 손실이란 공제되지 않은 사업결손금과 적격 연구개발비의 186% 중 작은 금액

자료: 각국 정부 홈페이지, OECD, Tax incentives for R&D and innovation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IV. 정책성 분석





## IV. 정책성 분석

### 1. 제도개편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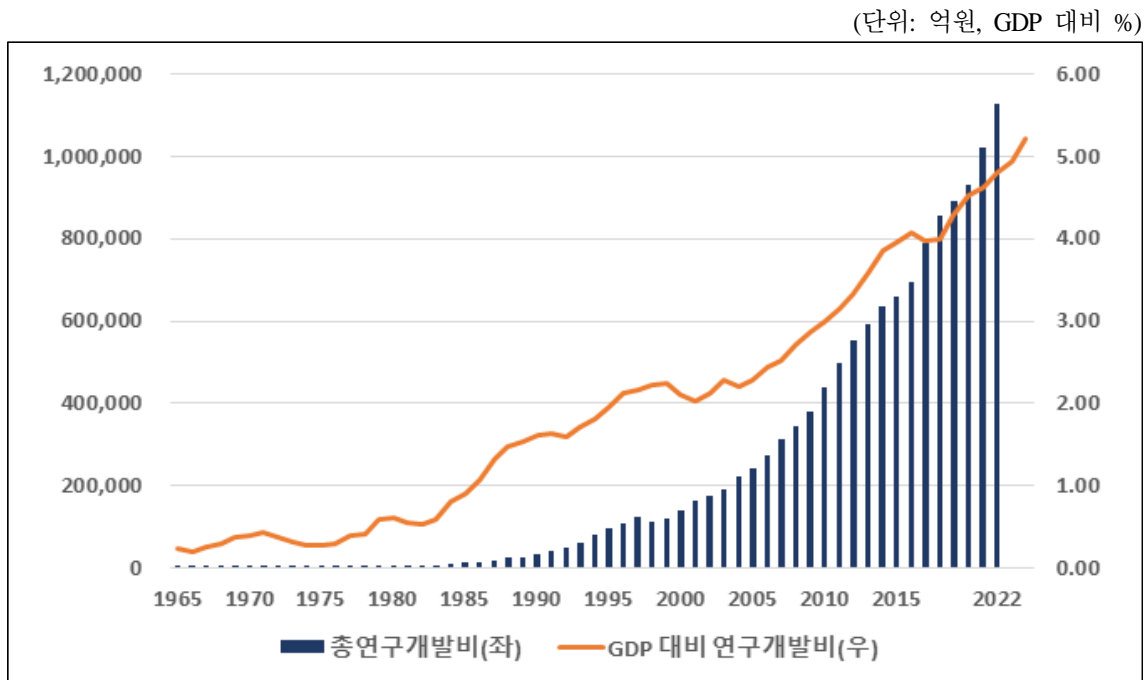
- 본 소절에서는 동 제도개편의 필요성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 R&D 지출 추이를 제시하고, 국제 비교를 수행
  - 우리나라의 민간 R&D가 둔화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R&D에 대한 조세지원 수준을 해외 주요국과 비교
  - 이를 통해 민간 R&D 확대를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검토

#### 가. 우리나라의 R&D 현황

- 『2022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는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인력 등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연구개발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보고서로서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제시
  - 동 보고서는 2022년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고 있으며 보다 최신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 소절에서 기업 실적,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논의
-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 규모 및 GDP 대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 총 연구개발비 규모는 전년 대비 10.3%, GDP 대비 비율은 6.1% 상승
  - 총 연구개발비 규모는 1980년대 중반부터 유의미하게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도 2018년 85.7조원, 2020년 93.1조원, 2022년 112.6조원으로 확대 추세가 계속
  - 총 연구개발비의 GDP 대비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최근에도 2018년 4.52%에서 2022년 5.21%로 증가
    - 1983년 이전: 1% 미만
    - 1984~1993년: 1~2%
    - 1994~2008년: 2~3%
    - 2009~2016년: 3~4%

- 2017~2021년: 4~5%
  - 2022년: 5% 이상
- 특히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 규모는 OECD 회원국 및 주요 비회원국<sup>46)</sup> 중 세계 6위 수준이며, GDP 대비 비중은 세계 2위에 해당
-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2022년 기준 87,225백만달러(PPP 기준)로 가장 규모가 큰 미국의 총 연구개발비의 10.8%이며, 일본 대비해서는 52.8% 수준
  - 우리나라의 GDP 대비 총 연구개발비 비중은 2022년 기준 5.21%로 미국(3.46%), 일본(2.43%)보다 높으며, 조사대상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인 국가는 이스라엘(5.56%)이 유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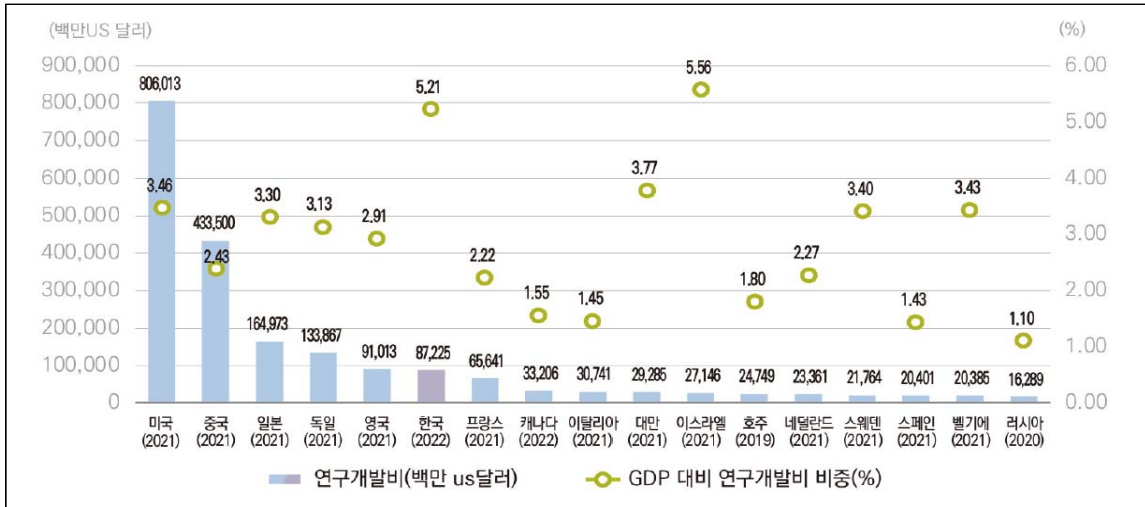
[그림 IV-1] 총 연구개발비 추이



주: 1) GDP는 2015년 기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2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23의 2022년 수치  
 자료: 과학기술통계서비스(<http://sts.ntis.g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2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23.

46) OECD(2023),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23-September*에서 집계한 국가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국가별 2022년 데이터가 공표되면 순위 변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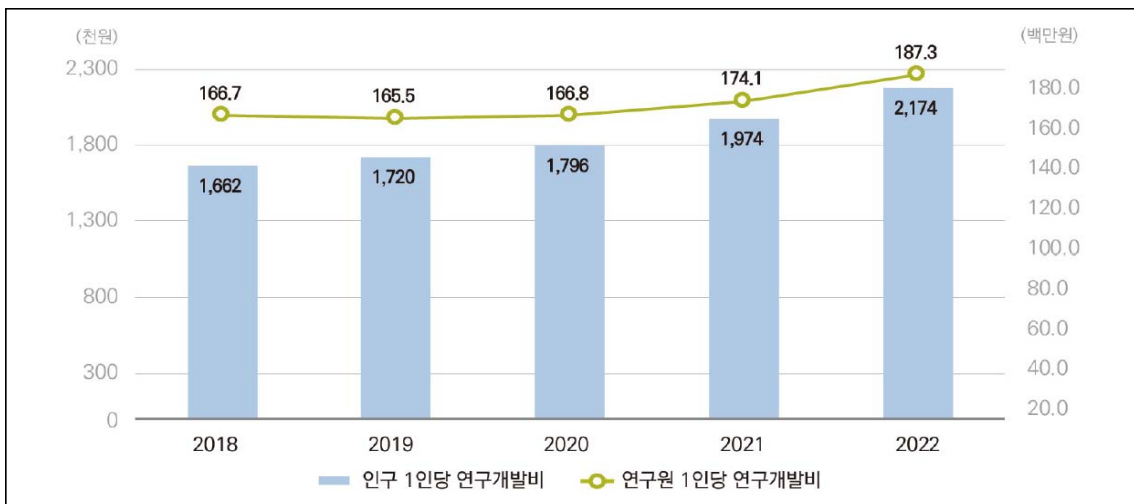
[그림 IV-2] 주요국의 연구개발비 규모 및 GDP 대비 비중 비교



주: 세계 순위는 OECD에서 집계·발표(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23-September)한 국가 (OECD 회원국과 주요 비회원국)의 가장 최근 자료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국가별 2022년 데이터가 공표(MSTI 2024-1)되면 순위 변동 가능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23;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 인구 1인당 연구개발비와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 역시 최근 증가하는 추세가 관측되어 우리나라의 민간 R&D가 둔화되고 있다는 통계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인구 1인당 연구개발비는 2018년 1.7백만원에서 2022년 2.2백만원으로 증가
-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 역시 2018년 1.7억원에서 2022년 1.9억원으로 증가

[그림 IV-3] 인구 및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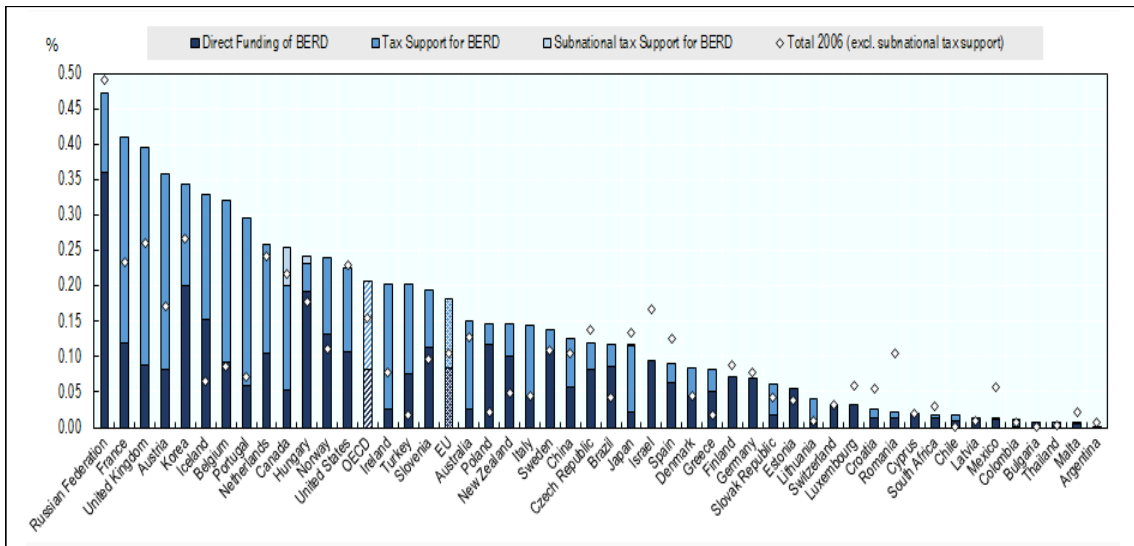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23.

- 또한 민간 R&D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
  -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기업 R&D(business enterprise expenditure on R&D)에 대한 정부 지원 비중은 0.35%로 OECD 평균인 0.21%를 상회
  -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지원 비중은 미국(0.26%), 일본(0.14%), 중국(0.13%)보다는 높고, 영국(0.48%), 프랑스(0.42%)보다는 낮은 수준
  - 정부 지원은 직접 자금지원(direct funding)과 조세지원(tax support)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자의 비중이 후자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
    - GDP 대비 R&D 직접 자금지원 비중은 0.22%, 조세지원 비중은 0.13%

[그림 IV-4] 2021년 OECD 회원국의 기업 R&D에 대한 재정 및 조세지원 규모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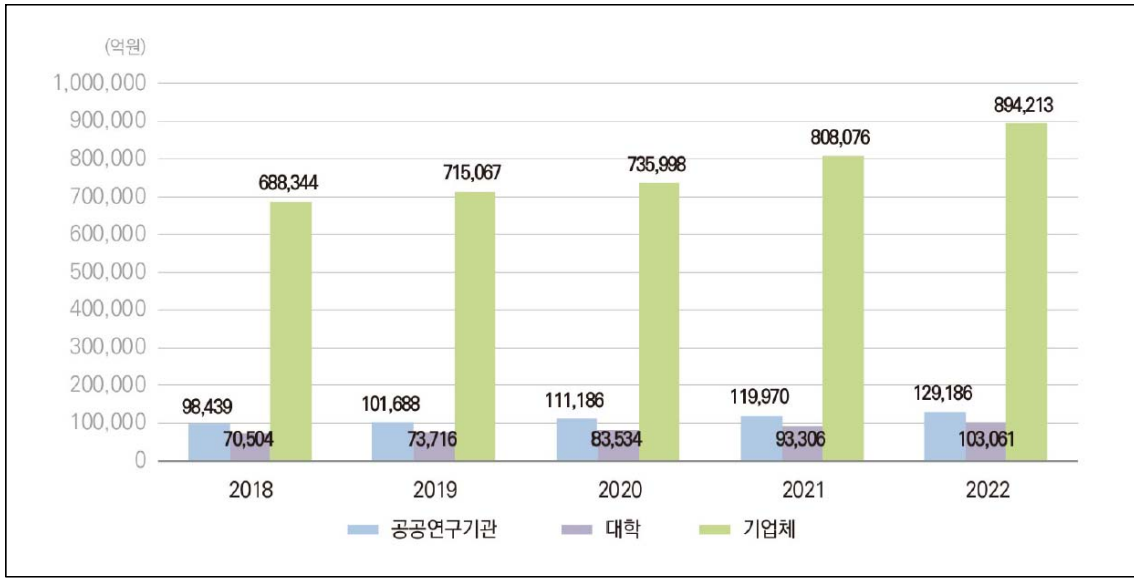


자료: OECD, Measuring Tax Support for R&D and Innovation(<http://www.oecd.org/sti/rd-tax-stats.htm>) 검색일자: 2024. 6. 25.

- 연구수행주체로 구분하여 통계를 살펴보면, 기업체에 의한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기업체가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89조 4,213억원으로 전체의 79.4%를 차지하였으며 공공연구기관은 11.5%인 12조 9,186억원, 대학은 9.1%인 10조 3,061억원 사용
  - 기업체, 공공연구기관, 대학 모두 최근 연구개발비가 증가하는 추세
    - 전년 대비 기업체가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10.7% 증가하였으며 공공연구기관과 대학도 각각 7.7%, 10.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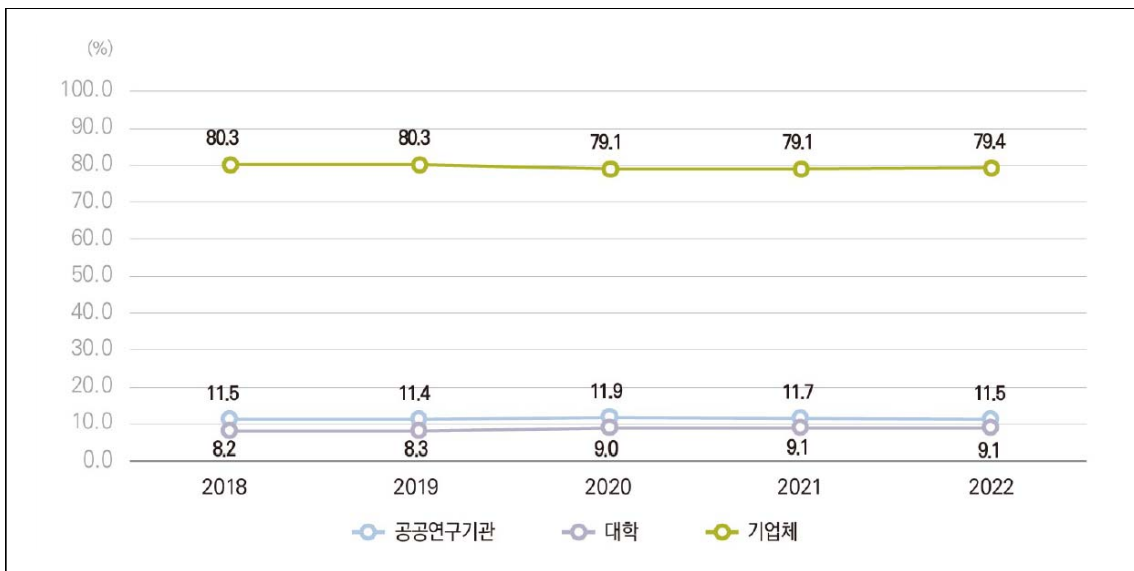
- 전체 연구개발비에서 기업체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간 80% 내외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
  - 즉, 최근 기업체, 공공연구기관, 대학의 연구개발비가 유사한 속도로 증가

[그림 IV-5]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 추이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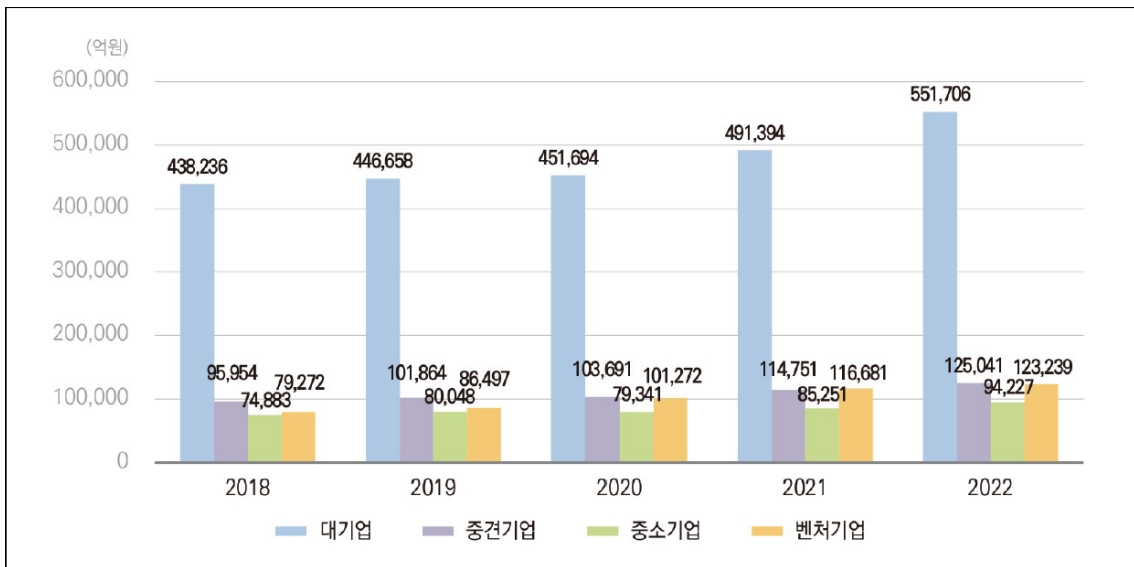
[그림 IV-6]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 비율 추이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23.

- 다음으로 기업유형별로 연구개발비 지출 추이를 살펴본 결과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그 비중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확인
  - 2022년 대기업 연구개발비는 55조 1,706억원, 중견기업은 12조 5,041억원, 중소기업은 9조 4,227억원, 벤처기업은 12조 3,239억원 수준
  - 기업 전체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61.7%, 중견기업은 14.0%, 중소기업은 10.5%, 벤처기업은 13.8%으로 대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
  - 추세적으로 모든 기업유형의 연구개발비 총액이 증가하였으나, 대기업의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
  - 그 결과 기업체 연구개발비 중 대기업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63.7%에서 2022년 61.7%로 소폭 하락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대기업 3.39%, 중견기업 2.15%, 중소기업 2.58%, 벤처기업은 6.38%
  -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규모가 큰 소수 기업이 전체 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벤처기업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sup>4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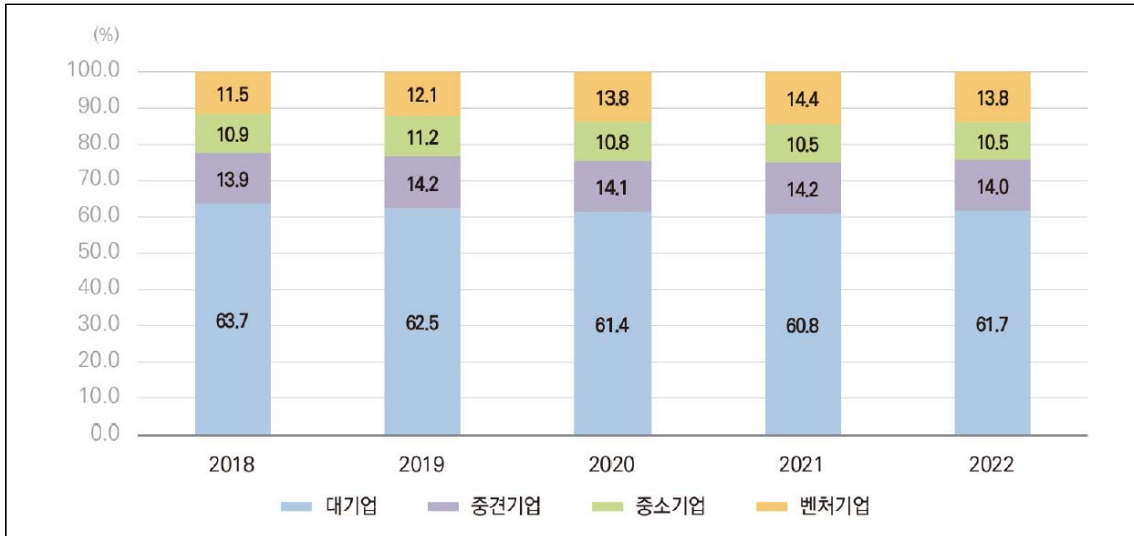
[그림 IV-7]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비 추이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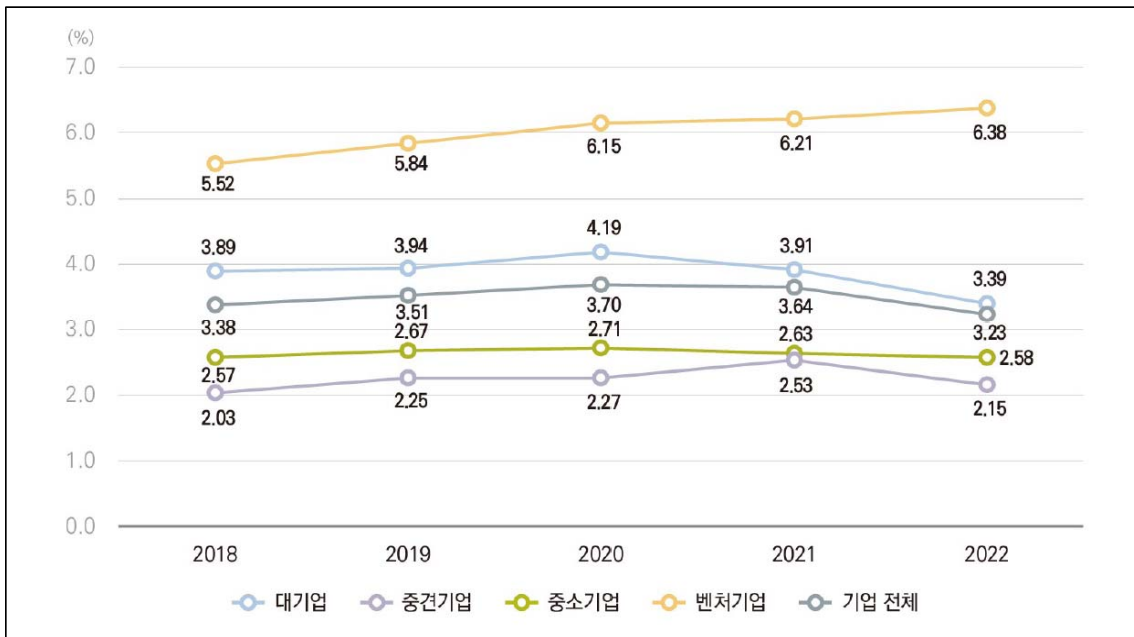
47) 『벤처기업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요건은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예비 벤처유형으로 구분. 이 중 연구개발유형(1항 2호의 나목)의 경우 연구개발비 규모 및 매출액 대비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가 해당. 따라서 [그림 IV-9]에서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 중 일부는 우리나라 벤처기업 정의에 의해 기인했을 것으로 추정

[그림 IV-8]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비 비율 추이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23.

[그림 IV-9] 기업유형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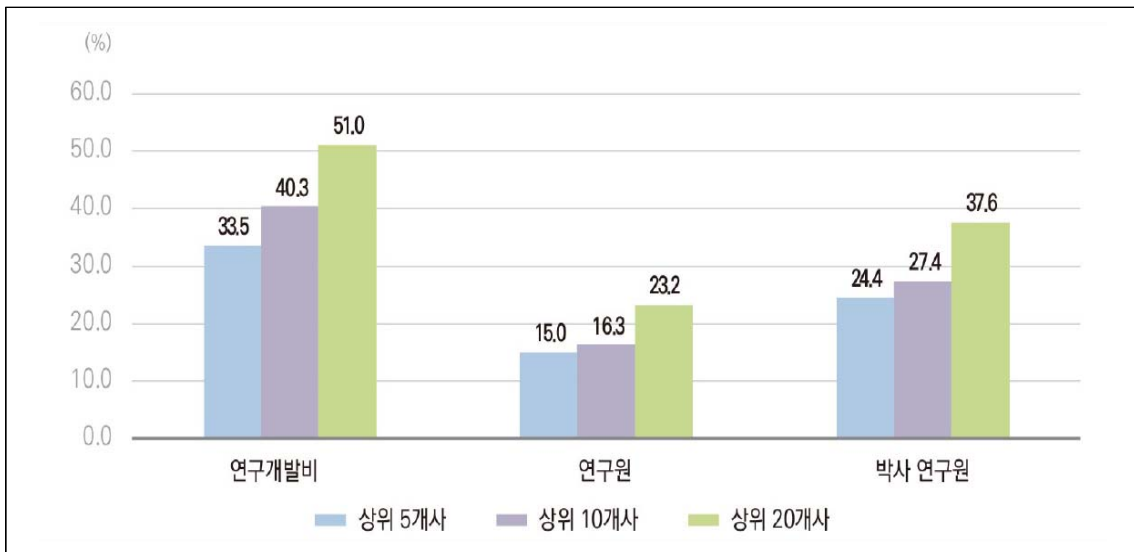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23.

- 기업 R&D가 소수 대기업에 집중된 현상은 [그림 IV-10]에서도 확인 가능
  - 매출액 상위 5개 기업은 전체 기업 연구개발비 지출의 3분의 1, 상위 20개 기업은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원, 박사 연구원 비중도 각각 15~23%, 24~38%로 나타남

- 이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같이 R&D 지출 수준과 연계된 조세지원 결과 일부 규모가 큰 기업이 받는 수혜액 규모가 상당히 클 여지가 있음을 시사
- 다만, 이러한 기업 R&D의 집중 패턴을 고려하여 동 제도의 대기업 공제율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음
  - 이와 별개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동 제도의 최저한세를 배제하는 한편, 중견 및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최저한세를 적용하여 제도에 의한 세액공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소절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기업당 평균 수혜액은 기업규모와 비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본 제도의 취지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생성되는 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 하기 위함이므로 대기업이 더 많은 R&D 비용을 지출하여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는다는 점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움

[그림 IV-10] 매출액 상위 기업 연구개발 집중도 현황(2022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23.

- 앞에 제시된 현황을 요약하여 우리나라 R&D 현황 및 추이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는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 정부 지원 수준 등 적어도 양적 측면에서는 R&D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R&D의 양적 성장은 지속

-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기업 R&D에 대한 정부 지원 비중은 0.35%로 OECD 평균인 0.21%를 상회
- 특히, 총 연구개발비 중 기업체에 의한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민간 R&D가 부진하다는 통계적 근거는 발견되지 않음
- 인구 1인당,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 규모 등 다른 지표에서도 민간의 혁신 활동은 지속 상승하고 있음을 시사
- 다만, 세부적인 연구개발 분야 또는 유형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R&D 지출이 일부 둔화되고 있을 가능성은 존재
- 우리나라 기업 R&D는 대기업, 그중에서도 소수의 상위 대기업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

#### 나. 제도개편 필요성 평가

- 우리나라 민간 R&D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R&D에 대한 조세지원 수준도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 규모, GDP 대비 비중은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민간 R&D가 둔화되고 있다는 명확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음
- 또한,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비 중 기업이 지출한 연구개발비 비중 역시 안정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 특히,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OECD 회원국 및 주요 비회원국<sup>48)</sup> 중 2위 수준
- 민간 R&D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
  -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기업 R&D(business enterprise expenditure on R&D)에 대한 정부 지원 비중은 0.35%로 OECD 평균인 0.21%를 상회
- 제Ⅲ장에 제시된 해외 주요국 사례를 바탕으로 R&D에 대한 조세지원 수준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지원 수준은 낮지 않은 것으로 평가
  - 해외 주요국의 공제율 수준은 대체로 우리나라의 일반 분야 공제율과 유사하고,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공제율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48) OECD(2023),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23-September*에서 집계한 국가 기준

-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조세지출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이는 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조세지출 실적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
- 『조세지출예산서』에서 구분하고 있는 R&D(연구개발) 관련 분야 조세지출은 2024년 5.2조원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감면총액의 6.9% 수준
  - 2019~2024년 동안 국세감면액에서 연구개발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5.3~7.3%를 기록
    - 2019~2022년 실적치는 5~6%대인 반면, 2023~2024년은 6~7%대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
  - 2019~2024년 연구개발 분야 총 조세지출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87.9~91.1% 수준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91.1%와 91.0%로 더욱 증가할 전망

〈표 IV-1〉 R&D 분야 조세지원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19 (실적)	2020 (실적)	2021 (실적)	2022 (실적)	2023 (전망)	2024 (전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a)	23,178	27,340	27,296	37,231	46,434	48,129
연구개발 분야(b)	26,370	30,488	30,270	41,443	50,945	52,873
(a)/(b)	87.9	89.7	90.2	89.8	91.1	91.0
국세감면액(c)	495,700	529,357	570,248	635,484	694,988	771,144
(b)/(c)	5.3	5.8	5.3	6.5	7.3	6.9

자료: 대한민국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다만, 본 제도의 조세지출 실적 증가는 주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 조세지출액 확대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2018~2022년 본 제도에 대한 활용기업 수 및 조세지출액 변화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조세지출액이 크게 증가한 반면, 일반 분야의 경우 큰 변화가 없었음
    - (일반) 30,121개, 2조 1,553억원 → 41,191개, 2조 2,858억원
    - (신성장·원천기술) 232개, 1,447억원 → 306개, 8,791억원
    - (국가전략기술) 24개, 4,524억원(2022 신고연도 신규)

<표 IV-2>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고 현황(2018~2022년)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일반 연구·인력개발	신성장· 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2018	중소기업	신고법인수(A)	28,659	175	-
		금액(B)	1,199,056	19,423	-
		평균금액(B/A)	42	111	-
	일반법인	신고법인수(A)	1,462	57	-
		금액(B)	956,259	125,040	-
		평균금액(B/A)	654	2,194	-
	합계	신고법인수(A)	30,121	232	-
		금액(B)	2,155,315	144,463	-
		평균금액(B/A)	72	623	-
2019	중소기업	신고법인수(A)	32,537	132	-
		금액(B)	1,241,793	22,930	-
		평균금액(B/A)	38	174	-
	일반법인	신고법인수(A)	1,388	65	-
		금액(B)	712,528	253,286	-
		평균금액(B/A)	513	3,897	-
	합계	신고법인수(A)	33,925	197	-
		금액(B)	1,954,321	276,216	-
		평균금액(B/A)	58	1,402	-
2020	중소기업	신고법인수(A)	35,849	150	-
		금액(B)	1,280,986	20,673	-
		평균금액(B/A)	36	138	-
	일반법인	신고법인수(A)	1,450	76	-
		금액(B)	916,398	424,959	-
		평균금액(B/A)	632	5,592	-
	합계	신고법인수(A)	37,299	226	-
		금액(B)	2,197,384	445,632	-
		평균금액(B/A)	59	1,972	-
2021	중소기업	신고법인수(A)	36,766	197	-
		금액(B)	1,266,156	27,133	-
		평균금액(B/A)	34	138	-
	일반법인	신고법인수(A)	1,364	86	-
		금액(B)	767,240	573,719	-
		평균금액(B/A)	562	6,671	-
	합계	신고법인수(A)	38,130	283	-
		금액(B)	2,033,396	600,852	-
		평균금액(B/A)	53	2,123	-

<표 IV-2>의 계속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일반 연구·인력개발	신성장· 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2022	중소기업	신고법인수(A)	39,652	205	8
		금액(B)	1,451,153	29,165	1,773
		평균금액(B/A)	37	142	222
	일반법인	신고법인수(A)	1,539	101	16
		금액(B)	834,606	849,963	450,662
		평균금액(B/A)	542	8,415	28,166
	합계	신고법인수(A)	41,191	306	24
		금액(B)	2,285,759	879,128	452,435
		평균금액(B/A)	55	2,873	18,851

주: 연도는 신고연도 기준  
 자료: 국세통계포털, 「국세통계연보 8-3-2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 현황」, 각 연도

- 한편, 최근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크게 악화되면서 기업의 R&D 지출 및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 한국은행의 「2023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전체기업) 2021년 17.7% → 2022년 16.9% → 2023년 -2.0%
    - (대기업) 2021년 18.6% → 2022년 18.1% → 2023년 -2.8%
    - (중소기업) 2021년 14.6% → 2022년 12.3% → 2023년 1.4%
  - 또한 매출액 세전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 등 전반적인 이익률 지표도 유의미하게 악화
    - (매출액 세전순이익률, 전체기업) 2021년 7.6% → 2022년 5.1% → 2023년 4.4%
    - (매출액 순이익률, 전체기업) 2021년 5.9% → 2022년 4.1% → 2023년 3.9%

<표 IV-3> 우리나라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및 이익률(2021~2023년)

(단위: %)

구분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전 산 업	전체	17.72	16.89	-2.03	7.56	5.12	4.44	5.86	4.05	3.92
	대기업	18.60	18.11	-2.78	8.06	5.37	4.81	6.31	4.32	4.39
	중소기업	14.55	12.28	1.44	5.67	3.96	2.86	4.16	2.80	1.83

<표 IV-3>의 계속

(단위: %)

구분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제조업	전체	19.71	16.41	-2.72	8.59	6.35	5.16	6.60	4.90	4.89
	대기업	21.25	17.26	-3.40	9.25	6.69	5.47	7.11	5.16	5.33
	중소기업	13.03	12.46	0.80	5.51	4.58	3.65	4.29	3.56	2.73
비제조	전체	15.33	17.47	-1.20	6.31	3.65	3.60	4.96	3.04	2.77
	대기업	15.14	19.24	-2.02	6.47	3.73	3.99	5.26	3.28	3.24
	중소기업	15.91	12.13	2.05	5.81	3.36	2.10	4.05	2.07	0.96

자료: 한국은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 결과」, 2024. 6. 12.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더라도 2023년 기업 실적은 크게 악화된 것으로 확인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2023사업연도 결산실적」에 따르면 매출액은 0.3%로 큰 변동이 없었으나 이익률이 크게 하락
    - (2022년 대비 2023년의 매출액 증감률) 0.3%
    - (2022년 대비 2023년의 영업이익 증감률) -24.5%
    - (2022년 대비 2023년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 증감률) -32.4%

<표 IV-4>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2022년 및 2023년 결산실적(12월 결산법인)

(단위: 억원, %, %p)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	증감률
매출액	28,157,130	28,251,607	94,476	0.34
영업이익	1,639,821	1,238,332	-401,489	-24.48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490,976	1,007,978	-482,997	-32.39
매출액영업이익률	5.82	4.38	-1.44	
매출액순이익률	4.79	2.86	-1.92	

주: 2023년 전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상장법인 696개사 중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한 615개사 기준  
 자료: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2023사업연도 결산실적」, 2024. 4. 4.

- 이러한 기업 실적의 악화는 현금흐름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면서 R&D, 투자, 고용 등 기업행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특히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비해 기업 실적이 더 크게 악화되었는데, 이는 최근 기업 실적 악화가 총 민간 R&D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 우리나라의 기업 R&D 지출은 일부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기 때문<sup>49)</sup>

- 실제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2024년 R&D 투자 및 연구인력 채용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기업의 R&D 지출은 202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이는 우리나라의 연구소 보유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2024년 R&D 지출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감소하고, 중소기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산업별로 살펴봐도 자동차, 서비스 등 2개 산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R&D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표 IV-5> 2023~2024년 RSI 기업규모별 비교

구분	2023 RSI	2024 RSI	증감p
대기업	101.5	95.3	-6.2
중견기업	89.5	92.8	3.3
중소기업	93.2	102.9	9.7

주: KOITA IRS(KOITA R&D Sentiment Index)는 IRS가 100 이상이면 연구개발이 해당 연도보다 증가, 100 미만이면 감소, 100은 해당 연도와 동일함을 의미( $0 \leq RSI \leq 200$ )하며, 항목별 5점 서열척도로 배분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후 전체 응답수를 반영하여 지수 산출

자료: 장세롬·이종민·김종훈, 『2024년 연구개발전망조사 결과 분석』,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업기술 혁신연구원, 2024.

<표 IV-6> 2023~2024년 RSI 산업별 비교

구분	2023 RSI	2024 RSI	증감p
건설	83.0	87.0	4.0
기계	99.0	96.4	-2.6
서비스	91.7	101.9	10.2
소재	104.2	95.1	-9.1
자동차	92.7	106.3	13.6

49) 이에 대해서는 앞 소절을 참고

<표 IV-6>의 계속

구분	2023 RSI	2024 RSI	증감p
전기전자	100.8	100.0	-0.8
정보통신	97.2	93.9	-3.3
화학	96.4	97.2	0.8
기타	89.0	93.9	4.9

주: KOITA IRS(KOITA R&D Sentiment Index)는 IRS가 100 이상이면 연구개발이 해당 연도보다 증가, 100 미만이면 감소, 100은 해당 연도와 동일함을 의미( $0 \leq RSI \leq 200$ )하며, 항목별 5점 서열척도로 배분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후 전체 응답수를 반영하여 지수 산출

자료: 장새롬·이종민·김중훈, 『2024년 연구개발전망조사 결과 분석』,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업기술 혁신연구원, 2024.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반 분야 증가분 공제율을 10%p 상향하는 본 제도개편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나 최근의 어려운 세수입 여건 및 재정 건전화 필요성,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본 제도의 조세지출액 규모 등도 고려할 필요
  - 2023년 이후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유의미하게 악화되면서 민간의 혁신활동 둔화가 우려되며 실제로 2024년 기업 R&D 지출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측면에서 동 제도개편을 통해 추가적인 R&D 지출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 특히, 미국, 일본, 대만 등 해외 주요국에서 투자, R&D 등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적극적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 반면, 최근의 세수입 여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본 제도의 조세지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는 경우 본 제도개편 필요성은 크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본 제도 조세지출액 증가가 주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고 일반 분야에 대한 제도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다는 점은 추가로 고려될 여지가 존재
  - 특정 산업 혹은 기업군 등 비교적 소수의 기업이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의 혜택을 받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과 달리 일반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은 보다 일반적인 기업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성격이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전반적인 연구개발 활동 촉진을 위해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정체되어 있는 일반 분야 연구·인력개발비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

- 다만, 본 제도는 연구개발 개념의 모호함으로 인해 제도 오남용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적격 R&D 비용을 지출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제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무행정적 노력이 뒷받침되는 것이 전제될 필요
- 「조특법」에서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으로 연구개발을 정의하고 있는데 특정 기업이 지출한 비용이 이러한 개념에 부합하는지는 정성적 판단 및 검증이 필요
- 적절한 사전적·사후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 제도개편이 민간 혁신 활동의 제고로 이어지지 않을 소지가 다분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 혜택을 일부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일반 분야 공제율 상향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동 제도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다 상세히 논의

- 추가적으로, 정부 정책 운영의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정부가 2024년 1월 제도개편을 추진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으므로 이러한 제도개편이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일부 기업들이 이미 행태를 변경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정부가 기 발표한 정책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정부의 다른 정책들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도 중요

## 2. 정책목표와의 일치성

- 본 소절에서는 동 제도개편이 민간 R&D에 추가적인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 정책수단인지에 대해 논의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 정부 지원 수준 등 적어도 양적 측면에서는 R&D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R&D의 양적 성장은 지속되고 있어 제도개편 필요성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

- 여기에서는 동 제도개편이 민간 R&D 확대라는 1차적 정책목표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를 수행
  
- 기본적으로, 동 제도개편은 민간 R&D 확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 정책수단인 것으로 평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R&D 지출과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이며, 해당 제도의 일부 공제율을 확대하는 동 제도개편은 기업의 R&D 수행 부담을 유의미하게 낮춤으로써 민간 R&D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적격 R&D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본 제도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R&D 수행에 들어가는 비용(가격)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어 기업이 R&D 지출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
    - 실제로, 김학수 외(2018), 김빛마로 외(2021) 등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기업의 R&D 지출에 대체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
    - 동 제도개편이 기업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효과성 평가 부분에서 보다 상세히 논의
  - 특히, 동 제도개편이 특정 기술이 아닌 일반적인 R&D에 적용되기 때문에 R&D 수행기업의 전반적인 세부담을 완화하고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평가
    - 특정 분야 또는 산업 지원의 목적이 아닌 우리나라 기업의 전반적인 혁신 활동 촉진이 정책목표라면, 일반 분야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동 제도개편이 더욱 적절할 수 있음
    - 반면, 반도체 등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일부 분야에 대한 혁신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거나 관련된 재정사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
  
- 다만, 적용 시점을 고려할 때 동 제도개편은 R&D 수행 기업에 대한 사후적 지원의 성격이 강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며 제도개편 발표 시점을 기점으로 R&D 지출 확대 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 있음

- 동 제도개편은 2024년 1년간 지출된 비용에 대해 혜택이 적용되나, 2024년 7월 현재까지 제도개편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
  - 정부는 2024년 1월 “경제정책방향”에서 일반 분야 R&D 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을 10%p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법령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만약, 제도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발표 시점 이후가 아니라 실제 제도 변경 시점 이후에 기업들의 행태 변화가 주로 나타난다면 동 제도개편에 의한 R&D 증대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음
  - 2024년이 절반 이상 경과한 현 시점까지 제도개편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기업들이 제도개편에 반응하여 행태를 변화할 여지가 있는 기간이 제도개편 확정 시점 이후부터 2024년 말까지 매우 제한적
- 제도개편의 확정 시점에 기업들이 주로 반응한다면 본 제도개편은 기업들의 R&D를 추가로 확대하는 효과보다는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R&D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사후적으로 보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
  - 즉, 전년 대비 R&D 지출을 확대한 기업들이 납부할 세액을 줄여주어 해당 기업들의 현금흐름 등이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
- 반면, 제도개편 발표 시점, 즉 2024년 1월에 R&D 지출을 확대하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한다면 제도에 의한 R&D 지출 확대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음
- 한편 현재 기업들은 당기분 방식과 증가분 방식 중 당기분 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어 증가분 공제율을 추가 상향하는 동 제도개편이 기업들 행태에 제한적인 영향만을 줄 가능성 역시 존재
  - 국세청 협조자료에 의하면, 증가분 방식 활용 기업 비중은 대기업 18.83%, 중견기업 8.26%, 중소기업 2.18% 수준<sup>50)</sup>
  - 다만, 이는 당기분과 증가분의 상대적 공제율 차이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기분 공제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증가분 공제율이 추가 확대될 경우 증가분 활용도는 유의미하게 높아질 것으로 판단
  - 실제로 당기분과 증가분 공제율 차이가 가장 큰 중소기업에서 증가분 활용 비중이 가장 낮은 반면, 공제율 차이가 가장 작은 대기업의 경우 증가분 활용

50) 2015~2022 신고연도에 대한 국세청 표본 미시자료상 기업 수 기준이며, 실제 활용 비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상기 논의를 종합할 때 동 제도개편은 민간 R&D를 일부 확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주로 R&D 비용 지출 기업에 대한 사후적 지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

### 3. 제도설계의 적절성

- 본 소절에서는 동 제도개편의 방식이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에 대해 평가
  - 제도개편의 기업규모별 차등, 한시적 도입 방식의 적절성 등의 측면에서 논의

#### 가. 기업규모별 차등 지원

- (기업규모별 차등) 먼저, 일반 분야 증가분 공제율을 중소, 중견, 일반기업 모두 10%p 상향하는 동 제도개편을 기업규모별 혜택 차등의 관점에서 평가
  - 제도개편 이전 공제율: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일반기업 25%
  - 제도개편 이후 공제율: 중소기업 60%, 중견기업 50%, 일반기업 35%
- 이에 대한 평가를 위해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 성립 여부에 대해 논의<sup>51)</sup>
-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 더 우대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논거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음
  - 1)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교정
  - 2)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세제상 불이익에 대한 보상
  - 3) 중소기업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 중소기업 조세지원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시장실패는 크게 ① 긍정적 외부 효과의 존재 및 ② 금융시장에서의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존재

51) 이하 내용은 이상엽·김빛마로·홍우형·윤성만(2018)의 제IV장 내용 일부를 참조하여 작성

- (시장실패: 긍정적 외부효과) 기업의 일부 행태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
  - 기업의 혁신, 투자, 고용 등의 행위는 사적 이익 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 외부효과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음
  - 기업은 사적 이익만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하게 공급
  - 이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을 지원하여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기업 행태를 장려할 필요성이 인정
  
- 긍정적 외부효과가 중소기업에 한정되어 발생하거나, 그 크기가 기업규모와 반비례한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세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더 혁신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치된 의견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 Santarelli et al.(1996) 등은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혁신적인 결과물을 더 많이 생산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음
  - 반면, Camison-Zornoza et al.(2004), Laforet(2013) 등은 반대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시장실패: 금융시장 정보 비대칭성)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역선택(adverse selection) 등 비효율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는 특히 중소기업에서 두드러지므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
  - 실제로는 잠재성이 있는 건실한 기업임에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이를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이들 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특히, 금융시장에서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더 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중소기업은 대체로 기업정보 공개 의무가 적고, 업력이 짧아 자금 공급자 입장에서 참고할 만한 과거 이력이 부족하기 때문
  - 또한 이상엽 외(2018)는 중소기업은 자금조달방식 중 대출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금공급자인 금융기관과 자금수요자인 기업 사이에 정보 비대칭성을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

- 따라서 금융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저리 대출 등 금융지원 방식이 더 적절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R&D지출과 연동된 세제지원은 연관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
  
-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 다음으로,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세제상 불이익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이러한 논리는 주로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과 관련<sup>52)</sup>
  
- 다수의 선행연구는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납세협력비용은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
  - 납세협력 비용 중 상당부분이 고정비용(fixed cost)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세한 기업은 규모의 경제 및 분업에 의한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기 쉽지 않음 (Cleary et al., 2017<sup>53)</sup>)
    -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를 위한 노력, 필요서류를 준비 및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은 고정비용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전체 납세순응 비용 중 이러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알려져 있음
  - Weichenrieder et al.(2008) 역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납세협력비용이 높아지는 것은 모든 OECD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관측된다는 결과를 제시
  - OECD에서도 소규모 법인은 납세협력에 있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기 어렵고, 전문 인력의 고용 등 규모가 큰 기업이 활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세제상 혜택이 필요하다고 권고<sup>54)</sup>
  
-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볼 때 중소기업의 과중한 납세협력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 다만,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신고·납부 과정의 전산화, 영세한 기업에

52) 납세협력비용과 관련된 논의는 이상엽·김빛마로(2018) 제IV장을 참조함

53) Era Dabla-Norris, Florian Misch, Duncan Cleary, and Munawar Khwaja, "Tax Administration and Firm Performance: New Data and Evidence for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IMF Working Paper. 2017/95

54) OECD, "Small Businesses, Job Creation and Growth: Facts, Obstacles and Best Practices," 1997.

대한 간소화된 신고 허용 등 세무행정 차원에서의 정책이 유효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부문은 국민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조세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
- 하지만 중소기업의 비중이 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이들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경제적 효율성만을 고려하면, 조세지원 혜택은 동일한 금액의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긍정적 외부효과를 갖는 결과물을 더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기업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
  - 하지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혁신, 고용 등을 더 효율적으로 창출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기업의 혁신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더 혁신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치된 의견이 없는 상황임
    - 중소기업이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지에 대해서도 일치된 견해는 없는 상황
- 요약하면,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시장실패의 교정 및 납세협력비용의 완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지만 R&D 지출에 대해 중소기업에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
- 이러한 논의를 종합할 때, 동 제도개편은 기업규모에 따른 조세 왜곡을 추가로 확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 기업규모에 연동된 차등적 조세정책은 기업의 성장 유인을 왜곡하고 효율적 자원배분을 저해하기 때문에 가능한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추가적인 연구개발비 지출이 생성하는 긍정적 외부효과의 크기가 기업규모와 반비례한다는 실증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규모에 따른 공제율 차이를 추가로 확대할 필요성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
  - 앞서 필요성이 인정된 영세한 기업에 대한 지원은 금융지원, 세무행정 차원의 지원 등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 나. 한시적 도입의 적절성

- 동 제도개편은 확대된 공제율을 2024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본 소절에서는 이러한 한시적 도입의 적절성을 평가
  - 제도개편을 항구적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비교
  
- 동 제도개편은 확대된 혜택이 1년 동안만 적용되고 차년도부터 기존 공제율로 회귀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차년도에 계획했던 R&D 지출의 시기를 앞당겨 세제 혜택의 크기를 극대화할 유인이 존재
  - 제도개편을 통해 2024년 R&D 지출액이 일부 증가할 수 있으나 이 중 상당수는 단순히 R&D 비용 지출 시기만을 앞당기는 효과일 수 있음
  
- 반면, 동 제도개편을 통한 공제율 상향을 항구적으로 적용할 경우 동 제도에 의한 조세지출액이 크게 증가하여 정부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제도에 의한 기업의 행태 변화도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동 제도의 조세지출액은 최근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동 제도개편이 항구적으로 적용될 경우 조세지출 규모 증가속도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음
  - 또한 공제율 상향 조치가 항구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R&D 지출에 대한 기업의 행태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음
    - 상향된 공제율이 지속된다면 기업들이 새롭게 R&D 비용을 지출하거나 R&D 시점을 앞당길 유인이 축소
    - 따라서 정부의 정책 목적이 상대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2024년의 민간 R&D 확대라고 한다면 제도개편을 항구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1년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
  
- 우리나라의 민간 R&D 수준이 대체로 증가하다가 2023년 이후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본 제도 조세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 제도개편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평가
  - 만약, 제도개편을 시행한다면 최근 어려워진 영업실적과 기업 R&D 지출이

2024년에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1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4. 지원의 유사·중복 검토

- 본 소절에서는 주요 재정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본 제도와의 유사·중복 정도를 간단하게 검토하고, 일반 R&D 분야의 세액혜택을 강화하는 본 제도개편의 적절성을 조세지원과 재정지원의 역할 분담 측면에서 논의
  - 본 예비타당성 평가는 기 운용되고 있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평가가 아닌 일반 분야 공제율을 상향하는 제도 변화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과제이므로 본 제도와 기타 제도의 유사·중복 여부에 대한 종합적 논의는 생략
  
- 연구개발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재정지원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2024년 기준 총 1,364개 세부사업(계속사업은 1,178개, 신규사업은 186개)으로 구성되며, 예산은 26.5조원 규모
  - 부처별 현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산업통상자원부(18.2%), 방위사업청(17.5%), 중소벤처기업부(5.2%), 교육부(4.8%) 순
  - 세부사업 수는 부처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81개로 가장 많고, 산업통상자원부 195개, 해양수산부 106개, 국토교통부 81개, 방위사업청 74개
  - 연구개발 단계별로 보면, 기초연구가 28.0%로 5조 8,024억원, 응용연구가 25.2%로 5조 2,338억원 그리고 개발연구가 46.8%로 9조 7,032억원 수준(2022년 집행 기준)<sup>55)</sup>
  - 연구수행주체별로 보면 출연연구소가 36.2%로 집행액이 가장 많으며, 대학이 24.3%, 중소기업이 19.6%, 중견기업이 6.5%, 국공립연구소가 4.5%, 대기업이 2.1% 순임(2022년 집행 기준)

5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통계』, 2022,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27&tblId=DT\\_127003\\_002&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27&tblId=DT_127003_002&conn_path=I2), 검색일자: 2024. 5. 29.)

<표 IV-7>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분	2024 세부사업수 <sup>1)</sup>			2023 예산	2024 예산	증감률 (%)	비중 (2024년)
	계속	신규	합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92	89	381	96,558	89,751	-7.1	33.8
산업통상자원부	177	18	195	54,324	48,322	-11.1	18.2
방위사업청	65	9	74	50,823	46,370	-8.8	17.5
중소벤처기업부	30	2	32	17,701	13,932	-21.3	5.2
교육부	9	-	9	28,804	12,869	-55.3	4.8
보건복지부	61	12	73	7,555	8,428	11.6	3.2
농촌진흥청	52	-	52	9,022	7,260	-19.5	2.7
해양수산부	96	10	106	8,824	7,307	-17.2	2.8
국무조정실	31	-	31	5,567	5,362	3.7	2.0
국토교통부	78	3	81	5,571	4,324	-22.4	1.6
기획재정부	70	3	73	5,830	4,315	-26.0	1.6
환경부	35	4	39	3,914	2,985	-23.7	1.1
질병관리청	21	2	23	2,008	2,1978	9.4	0.8
농림축산식품부	22	2	24	2,779	2,159	-22.3	0.8
식품의약품안전처	13	4	17	1,405	1,452	3.4	0.5
산림청	18	3	21	1,574	1,257	-20.1	0.5
행정안전부	22	4	26	1,262	1,040	-17.7	0.4
기상청	20	1	21	1,224	1,017	-16.9	0.4
문화체육관광부	9	4	13	1,354	1,001	-26.1	0.4
기타 부처	57	16	73	4,681	4,183	-10.6	1.6
합계	1,178	186	1,364	310,778	265,532	-14.6	100.0

주: 1) 2024년 세부사업수는 예산안 기준임

자료: 1.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상세재정통계,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을 이용

2. 세부사업 수는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예산안 총괄 분석Ⅲ』, 2023. 10., p. 7.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는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등 특정 기술과 관련된 지원사업(세부사업 기준)이 다수 존재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프로그램) - 창업성장기술개발: 기술기반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기업주도형 R&D 사업으로 2개의 내역 사업(디딤돌, TIPS)으로 구성하여 최대 1~3년, 1.2~15억원 지원

- (지원규모) '24년 기준 2,665개 기업, 2,485억원

- (지원대상) 공통사항: 창업 후 7년 이내, 매출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디딤돌) 최대 1년, 지원한도 1.2억원으로 정부출연금 비율 80% 이내 지원
- (TIPS) 일반형은 최대 2년, 5억원, 특화형은 최대 3년, 15억원으로 정부출연금 비율 80% 이내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프로그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혁신 역량 단계별 3개 내역사업(수출지향형<sup>56</sup>), 시장확대형<sup>57</sup>, 시장대응형<sup>58</sup>)으로 구분하여 최대 2~4년, 5~20억원을 지원하며, 내역사업별 총 연구개발비의 65%, 76% 이내 지원
  - (지원규모) 신규 1,801억원
  - (지원대상) 공통사항: 최근 연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중소기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첨단바이오 분야의 대표적 국제협력 플래그십 사업인 ‘보스톤코리아프로젝트’(과기정통부, 복지부, 산업부 공동)의 일환으로, 한국과 미국의 우수 연구자 간 공동연구를 통해 혁신적 진단기술 개발, 의과학자 양성 등 지원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과기정통부 150억원, 복지부 54억원의 예산을 공동 투입하여 10개 내외 과제를 선정
  - (지원대상) 산·학·연·병 연구자 및 일반 국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소재기술개발: 나노 및 소재분야 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형 사업으로 2024년에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연계하여 미래소재를 확보하고 기술난제를 해결하는 임무중심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국가전략기술소재개발에 330억원, 소재글로벌영커넥트에 79억원을 지원
  - (지원대상) 대학, 출연연, 기업 등
  - (지원방법) 출연 100% 지원
  - 국가전략기술소재개발 사업의 과제 규모는 연간 15억원 내외 총 5년간 지원하며, 2024년에는 26개 과제를 선정
  - 소재글로벌영커넥트의 과제별 연구기간은 4년(2+2, 2단계로 지원)이며, 2024년에는 8개 연구주제 RFP를 공고하고 각 RFP별로 두 팀을 선정하여 1단계 기간인 2년간 팀당 연간 약 7.5억원 내외를 지원

---

56) 매출액 50~100억원 이상, 직간접 수출액 100~500만달러 이상 또는 글로벌 역량을 확보한 중소기업  
 57)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최근 3년 이내 민간 투자 5~10억원 이상 유치실적을 보유하면서 전략분야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58)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전략분야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과학기술통신부, 산업통산자원부 - PIM인공지능반도체 핵심기술개발: PIM<sup>59)</sup> 반도체 핵심기술개발을 위해 과기정통부-산업부가 공동 추진하는 다부처 사업이며, 국정과제(24.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에 해당
  - (사업기간 및 규모) 2022~2028년까지 총 사업비 4,027억원이 투입되는 사업
  - (지원대상) 대학, 출연연, 기업 등
  - (지원방법) 출연 100%지원
- 과학기술통신부, 산업통산자원부 - 차세대지능형 반도체기술개발: BIG<sup>60)</sup> 및 국정과제(24.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에 해당하는 다부처 사업
  - (사업기간 및 규모) 소자, 설계, 공정, 장비 기술 개발에 10년간(2020~2029년) 10,096억원 투자(소자 2,405억)
  - (지원대상) 대학, 출연연, 기업 등
  - (지원방법) 출연 100%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 화합물 전력반도체 고도화기술개발: 국내 전력반도체 기술고도화를 통한 혁신기술 확보, 시장 선점 및 공급망 내재화를 목적으로 하며, 3개 내역사업에서 17개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전력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의 역량 강화
  - (사업기간 및 규모) 2024~2028년, '24년 사업비 140억원(신규)
  - (지원대상) 대학, 출연연, 기업 등
  - (지원방법) 출연 100%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 신시장 창출을 위한 수요연계시스템 반도체기술개발: 시장이 크고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5개 업종(자동차, 에너지, 드론·도심항공, 바이오·헬스케어, 모바일·스마트 가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의 심장인 전력반도체, 두뇌인 AI 반도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
  - (사업기간 및 규모) 2023~2027년, 총사업비 486억원(국비 375억원)
  - (지원대상) 대학, 출연연, 기업 등
  - (지원방법) 지원대상에 따라 차등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 자동차산업기술개발: 국가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와 미래차(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9개 내역사업(그린카,

59) Processing-In-Memory: 프로세스의 연산기능 일부를 메모리에 담당하게 하여 연산의 병목현상을 개선

60)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스마트카 등)으로 구성

- (사업기간 및 규모) 2009년~계속, 2024년 기준 3,484.9억원
- (지원방법) 출연, 총사업비의 100% 이내 정부매칭
- (지원대상) 과제별 상이(기업, 대학, 연구소 등)
- 내역사업 중 투자 규모가 가장 큰 그린카 사업의 경우 친환경차 요소부품 기술개발과 국내 내연기관 부품사의 미래차 전환 지원을 위해 2024년에 1,320억원 반영
- 산업통상자원부-바이오산업기술개발: 국가 성장전략 기반 바이오헬스 분야의 산업화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하여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 (사업기간 및 규모) 2009년~일몰, 2024년 기준 1,162억원원
  - (지원방법) 출연(민간매칭)
  - (지원대상) 기업, 연구소, 대학, 병원 등

□ 일반적인 조세지원과 재정지원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대상에 적용되는 분야는 조세지원이, 첨단 기술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원은 재정지원이 더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음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지원은 특정 수혜자에 대한 지원의 성격이 있으며 적절한 수혜대상 선정을 위해 선정 또는 검증 절차가 필요
  - 또한 지원 대상 기술 변경을 위해 세법 개정이 필요한 조세지원과 달리 재정지원의 경우 시의성 있는 기술 반영이 용이하기 때문에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등 특정 분야 지원에 더 적합
- 반면 일반 R&D 분야에 대한 지원은 다수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이고 활용 기업의 수가 방대하다는 점에서 조세지원이 더 적합한 측면이 있음
- 실제로 미국은 일반적인 R&D에 대해서는 조세지원 방식을,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재정지원(보조금) 방식<sup>61)</sup>을 주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61)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의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비에 대한 110억달러 규모 지원 및 국립과학기술재단(NSF)의 10대 핵심 기술 영역에 대한 163억달러 규모 지원 등

<표 IV-8> 정책수단으로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일반적인 적정성 판단 기준

구분	재정지출이 타당성이 높은 경우	조세지출이 타당성이 높은 경우
수혜자	- 세금부담과 무관한 경우 - 취약계층, 특정 수혜자에 대한 혜택인 경우 - 수혜자의 선택권이 없는 경우	- 세금부담이 있는 수혜자 - 일반 계층 다수에 대한 지원인 경우 (고소득자에게 집중 여부 별도 고려) - 시장이 존재하여 수혜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필요한 경우
보조방식	- 보조대상이 다양하고, 보조수준도 달라야 하는 경우 - 가격탄력성이 낮은 경우(생필품, 필수비용 등) - 보조수준이 높은 경우 - 취약계층에 더 높은 보조율을 적용하고 싶은 경우	- 보조대상이 단순하여 일률적 비율 적용이 가능한 경우 - 가격탄력성이 높은 경우(퇴직저축, 건강보험 등) - 보조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 - 효율적인 대상에 더 높은 보조를 하고 싶은 경우
지원시기	- 일시적·한시적 지원(시범사업 성격이거나, 지속 여부 불투명한 사업 등) - 초기, 사전적 지원에 적합	- 중장기적·항구적 지원(예측가능성, 안정성이 필요한 경우) - 초기 이후 지원에 적합
행정집행	- 재정지출시 관여기관, 인원, 선정절차 등이 용이할 경우 - 과다소비, 부정사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지원한도를 통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재정지출시 관여기관, 인원, 선정절차 등이 어려울 경우 - 과다소비, 부정사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소규모 지원으로 정부 재정에 영향이 적은 경우

자료: 김학수·박노옥(2013), p. 49, <표 III-1>

-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일반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 혜택을 추가로 확대하는 동 제도개편은 조세지원과 재정지원의 역할 분담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평가
  - 민간의 일반적인 혁신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재정 지원 방식보다는 본 제도개편과 같이 조세지원 방식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 앞서 제도 현황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동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의 숫자가 2022 신고연도 기준 41,191개<sup>62)</sup>로 매우 많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절차를 통해 국세청의 행정적 인프라 활용이 가능한 조세지원 방식이 더 적절한 측면
  - 반면 특정 분야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정절차가 내재되어 있는 재정지원 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에는 부합할 것으로 판단
  - 다만, 세제지원은 이익을 창출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기업들에게 더욱 유효<sup>63)</sup>한

62) 일반 분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총 활용 기업 숫자이며, 개인사업자는 제외한 수치

63) 공제 혜택의 이월 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납부할 세액이 있어 제도에 의해 즉시 공제를 받을 수

반면, 재정지원의 경우 기업의 이익 창출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하여 잠재성 있는 기업의 초기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상호보완적 성격이 존재하므로 두 가지 지원방식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 실제로 다수의 국가들에서는 R&D에 대한 조세지원과 재정지원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있는 기업들에게 보다 더 직접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할 여지가 있음

## V. 경제성 분석





## V. 경제성 분석

- 이번 장에서는 동 정책 변화가 도입되었을 경우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
  - 구체적으로 정책 변화에 따른 예상 조세지출에 대해 추정하고, 추가적인 조세지출에 의해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를 파악함
    - 추가적인 조세지출에 의해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는 연구개발비 증대에 따른 매출액 증대 효과와 고용창출 효과로 나누어 분석함
  
- 2018~2022년 국세청 미시자료를 통해 추정한 결과, 정책 변화에 따른 조세지출 대비 경제적 효과는 약 1.548 수준으로 1,538.8억원의 추가적 순편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정책 변화에 따른 예상 조세지출은 2,806.8억원 수준이며, 이에 따라 연구개발비가 840.5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연구개발비의 증대는 4,346.1억원의 추가적인 매출 증대 효과 기대
    - 이에 따라, 조세지출 대비 기업 매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1.548(=4346.1/2806.8)$  수준으로 1보다 크게 산출되어 순편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파악됨
    - 순편익은 매출 증대 효과에서 예상 조세지출을 차감한 것으로 볼 때, 약 1,538.8억원 수준으로 파악됨
  
- 국세청 미시자료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정책 변화에 따른 직접적인 고용 효과는 약 283명의 추가적인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해당 추정은 추가적인 조세지출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해 추정하였기에 매출액 증대에 따른 여러 파급효과들을 고려하면 정책 변화에 따른 경제적 실익은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됨

# 1. 비용 추정

## 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수혜 현황

- 신고연도 기준 2015~2022년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기업 수는 2015년 약 2.6만개에서 2022년 약 5.0만개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
  - 일반기업(대기업): 2015년 787개 → 2022년 595개로 감소
  - 중견기업: 2015년 927개 → 2022년 1,105개로 증가
  - 중소기업: 2015년 24,457개 → 2022년 48,507개로 증가

<표 V-1> 연구개발 세액공제 수혜기업 수 추이

(단위: 개)

신고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일반기업	787	839	775	655	598	568	549	595
중견기업	927	873	945	1,023	1,033	1,068	1,060	1,105
중소기업	24,457	28,667	31,651	34,379	39,152	43,110	44,908	48,507
소계	26,171	30,379	33,371	36,057	40,783	44,746	46,517	50,207

주: 국세청 제공 집계 자료를 중소기업에 기업을 제외하고 재작성

- 2015~2022년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는 2015년 약 2.9조원에서 2022년 약 3.0조원으로 큰 변화가 없는 비슷한 수준
  - 일반기업: 2015년 1.2조원 → 2022년 0.5조원으로 감소
  - 중견기업: 2015년 0.2조원 → 2022년 0.2조원으로 비슷한 수준
  - 중소기업: 2015년 1.5조원 → 2022년 2.3조원으로 크게 증가

<표 V-2> 세액공제 합계 추이

(단위: 억원)

신고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일반기업	12,340	7,647	7,009	6,185	5,352	6,573	5,375	4,742
중견기업	1,571	1,444	1,555	1,660	1,785	2,018	2,055	2,171
중소기업	15,055	16,783	17,934	18,691	19,918	20,917	21,274	23,498
소계	28,966	25,874	26,498	26,535	27,055	29,508	28,704	30,411

주: 국세청 제공 집계 자료에서 중소기업에 기업을 제외하고 재작성

- 세액공제 대상인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2015년 약 29.0조원에서 2022년 약 30.4조원으로 약 1.3조원 증가
  - 일반기업: 2015년 20.6조원 → 2022년 23.4조원으로 2.8조원 증가
    - COVID-19 팬데믹 초기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및 재택근무 시스템 확대 등으로 신고연도 기준 2020년 연구개발투자가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함
  - 중견기업: 2015년 1.7조원 → 2022년 2.6조원으로 0.9조원 증가
  - 중소기업: 2015년 5.9조원 → 2022년 9.2조원으로 3.3조원 증가

〈표 V-3〉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합계 추이

(단위: 억원)

신고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일반기업	206,249	205,326	208,064	211,774	233,937	252,489	245,176	234,469
중견기업	16,671	16,164	18,125	19,870	21,242	22,718	23,857	25,591
중소기업	59,308	66,424	70,916	74,146	78,841	82,629	83,909	92,105
소계	282,228	287,914	297,105	305,790	334,020	357,836	352,942	352,165

주: 국세청 제공 집계 자료에서 중소기업에 기업을 제외하고 제작성

#### 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증기분 및 당기분 식별

- 국세청 제공 미시자료는 신고연도 기준 2015~2022년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수혜기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당기분 및 증가분 그리고 최종세액공제가 포함되어 있어 개별 기업의 선택을 식별할 수 있음
  - 개별 기업의 종류(중소, 중견, 일반기업)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별지서식 1호의 정보가 포함된 국세청 제공자료를 이용하여 매칭하여 분석
- 국세청 제공 미시자료와 집계자료를 이용한 일반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주요 발견은 아래의 표와 같음
  - 신고연도 기준 2015~2022년 동안 해당 세액공제 수혜기업들 가운데 증가분을 선택한 기업의 비중은 2.5~6.2%로 나타났음

- 증가분을 선택한 기업의 비중은 2020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모습
- 2022년에는 2.5%로 가장 낮음
- 신고연도 기준 2015~2021년 동안 표본내 수혜기업 수는 전체 수혜기업 수의 12.8~17.4%로 나타남
  - 신고연도 기준 2015~2021년 동안(모집단 수혜기업수)/(표본 수혜기업수) 배율은 약 5.8~7.1로 나타남
  - 이는 전체 수혜기업 수가 표본내 수혜기업 수보다 약 5.8~7.1배임을 의미함

<표 V-4> 당기분 및 증가분 세액공제가 식별되는 표본

(단위: 개, %, 배)

신고연도	당기분 신청 기업수 (A)	증가분 신청 기업수 (B)	합계 (C=A+B)	증가분 선택 기업 비중 (=B/C, %)	모집단 수혜 기업수 (D)	표본/모집단 수혜기업 비율 (C/D)	모집단/표본 수혜기업 배율 (E=D/C)
2015	4,116	273	4,389	6.2	26,171	16.8	6.0
2016	4,925	267	5,192	5.1	30,379	17.1	5.9
2017	5,532	255	5,787	4.4	33,371	17.3	5.8
2018	6,056	220	6,276	3.5	36,057	17.4	5.7
2019	6,401	220	6,621	3.3	40,783	16.2	6.2
2020	6,548	233	6,781	3.4	44,746	15.2	6.6
2021	6,393	185	6,578	2.8	46,517	14.1	7.1
2022	6,241	161	6,402	2.5	50,207	12.8	7.8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증가분 및 당기분 세액공제 수혜기업 분포 추정 결과

- 국세청 제공 미시자료 표본을 이용하여 추정한 신고연도 기준 2018~2022년 기준 표본내 당기분 및 증가분 수혜기업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신고 연도별로 표본에서 증가분 및 당기분 수혜 기업을 식별하여 분포 파악
  - 표본내 일반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수혜기업 수와 모집단에서의 수혜기업 수의 비율을 이용하여 표본내 결과를 모집단에 적용할 때 활용
  -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순으로 배율이 큰 것으로 나타남

<표 V-5> 증가분 및 당기분 수혜기업 분포

표본내 증가분 신청 기업수

(단위: 개)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일반기업	32	43	41	36	31
중견기업	21	13	21	18	9
중소기업	167	164	171	131	121
소계	220	220	233	185	161

표본내 당기분 신청 기업수

(단위: 개)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일반기업	109	97	98	98	108
중견기업	167	166	161	175	182
중소기업	5,780	6,138	6,289	6,120	5,951
소계	6,056	6,401	6,548	6,393	6,241

총 수혜 기업수

(단위: 개)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일반기업	655	598	568	549	595
중견기업	1,023	1,033	1,068	1,060	1,105
중소기업	34,379	39,152	43,110	44,908	48,507
소계	36,057	40,783	44,746	46,517	50,207

배율 (=전체 수혜기업수/표본내 수혜기업수)

(단위: 배)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일반기업	4.6	4.3	4.1	4.1	4.3
중견기업	5.4	5.8	5.9	5.5	5.8
중소기업	5.8	6.2	6.7	7.2	8.3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 제도 도입이 세액공제 규모에 미치는 효과 분석**

- 과거 분포에 기초하여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10%p 높이는 경우의 세액공제 규모 변화 분석
  - 이는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 분석의 기초가 됨

- 동시에 이를 기초로 연구개발 증가 규모와 그에 따른 기업의 매출 증가 규모를 추정함으로써 편익 산출
- 고려하는 연구개발비 증가분 제도의 세액공제율 상향 효과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음
  - 중소기업의 경우 공제율을 50%에서 60%로 상향시키는 것은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을 때 세액공제를 20% 증가시킴
  - 중견기업의 경우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시키는 것은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을 때 세액공제를 25% 증가시킴
  - 일반기업의 경우 공제율을 25%에서 35%로 상향시키는 것은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을 때 세액공제를 40% 증가시킴
- 세액공제 확대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 가정
  - 세액공제율이 확대되더라도 개별 기업의 수용 가능성에 따라 최종적인 세액공제 확대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 이를 감안하여 기본 가정하의 분석과 제한 가정하의 분석으로 구분
  - 기본 가정
    -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모든 기업이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가정하고 분석
  - 제약 가정
    - 이미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고 있는 기업은 더 이상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없다는 제약을 가정하고 분석
    - 제약 가정이 상대적으로 더 현실적임

## 라. 기본 가정하에서의 세액공제 확대 효과 분석

- 신고연도 2015~2022 분포에 기초한 제도 도입의 효과 분석
  - 2018~2022년(신고연도 기준)의 분포에 적용한 결과 전체 연구개발 세액공제 규모는 연평균 약 3,03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기업들이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는 데 제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기업들이 연구개발 세액공제 신청시 ‘증가분’과 ‘당기분’ 선택과 관련된 행동이 변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의 분석 결과임

- 공제율 상향이라는 변화에 따라 기업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면 추정값이 달라질 수 있으나, 증가분 선택 기업의 비중이 낮은 데다 그 비중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그 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해당 제도가 1년만 실행되는 한시적인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들의 구조적인 행태 변화에 따른 효과는 매우 작을 것으로 추측됨

□ 기본 가정하의 분석결과

- 2018~2022년(신고연도 기준)의 분포하에서 해당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연간 평균적으로 약 3,030억원의 세액공제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연간 변동성이 작지 않으며, 약 1,110~7,708억원의 범위를 보임
- 중소기업은 해당 기간 동안 연평균 약 245억원의 세액공제가 증가
  - 해당 기간 동안 세액공제 증가 범위는 약 192~348억원으로 나타남
- 중견기업은 해당 기간 동안 연평균 약 168억원의 세액공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해당 기간 동안 세액공제 증가 범위는 약 99~271억원으로 나타남
- 일반기업은 해당 기간 동안 연평균 약 2,617억원의 세액공제가 증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중소·중견에 비하여 세액공제 증가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해당 기간 동안 세액공제 증가 범위는 약 779~7,171억원으로 나타남

<표 V-6> 제도 도입에 따른 세액공제 증가분 규모 추정

(단위: 억원)

신고연도	중소	중견	일반기업	총합
2018	202.7	110.3	796.8	1,109.8
2019	214.0	117.6	3,026.9	3,358.5
2020	267.0	270.5	7,170.7	7,708.2
2021	192.0	243.7	778.8	1,214.4
2022	348.0	99.3	1,311.1	1,758.4
평균	244.7	168.3	2,616.8	3,029.9

주: 기본 가정하의 연도별 분석 결과  
 자료: 저자 작성

□ 중소기업에 대한 해당 제도의 도입 효과 분석 상세 내용

- 기본 가정하에서 국세청 제공 미시자료를 이용한 신고연도별 분포에 적용하여 산출
  - 표본으로부터 세액공제 증가분을 구하고, 이를 중소기업의 모집단/표본 배율을 적용하여 산출

<표 V-7> 중소기업 세액공제 증가분 추정(기본 가정)

(단위: 개, 억원, 배)

신고연도	표본내 중소기업수	평균 (억원)	총액 (억원)	제도 적용시 표본내 세액공제 증가분 (=총액×0.2)	세액공제 증가분 (=표본내 증가분 ×중소기업배율)
2018	167	1.05	175.4	35.1	202.7
2019	164	1.05	172.2	34.4	214.0
2020	171	1.17	200.1	40.0	267.0
2021	131	1.02	133.6	26.7	192.0
2022	121	1.80	217.8	43.6	348.0

주: 1. 공제율이 50%에서 60%로 상향된 효과

2. 신고연도 기준

자료: 저자 작성

□ 중견기업에 대한 해당 제도의 도입 효과 분석 상세 내용

- 기본 가정하에서 중견기업에 대한 효과는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음
  - 표본으로부터 세액공제 증가분을 구하고, 이를 중견기업의 모집단/표본 배율을 적용하여 산출

<표 V-8> 중견기업 세액공제 증가분 추정(기본 가정)

(단위: 개, 억원, 배)

신고연도	표본내 중견기업수	평균 (억원)	총액 (억원)	제도 적용시 표본내 세액공제 증가분 (=총액×0.25)	세액공제 증가분 (=표본내 증가분 ×중견기업 배율)
2018	21	3.86	81.1	20.3	110.3
2019	13	6.27	81.5	20.4	117.6
2020	21	8.78	184.4	46.1	270.5
2021	18	9.86	177.5	44.4	243.7
2022	9	1.59	143.1	17.2	99.3

주: 1. 공제율이 50%에서 60%로 상향된 효과

2. 신고연도 기준

자료: 저자 작성

□ 일반기업에 대한 해당 제도의 도입 효과 분석 상세 내용

- 기본 가정하에서 일반기업에 대한 효과는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음
  - 표본으로부터 세액공제 증가분을 구하고, 이를 일반기업의 모집단/표본 배율을 적용하여 산출

<표 V-9> 일반기업 세액공제 증가분 추정(기본 가정)

(단위: 개, 억원, 배)

신고연도	표본내 일반기업수	평균 (억원)	총액 (억원)	제도 적용시 표본내 세액공제 증가분 (=총액×0.4)	세액공제 증가분 (=표본내 증가분 ×중견기업 배율)
2018	32	13.4	428.8	171.5	796.8
2019	43	41.2	1,771.6	708.6	3026.9
2020	41	107.0	4,387.0	1754.8	7170.7
2021	18	13.2	475.2	190.1	778.8
2022	9	24.7	765.7	306.3	1311.1

주: 1. 공제율이 25%에서 35%로 상향된 효과

2. 신고연도 기준

자료: 저자 작성

마. 제한 가정하에서의 세액공제 확대 효과 분석

- 이미 공제감면을 최대 한도로 받고 있는 기업을 제외한 경우의 효과 분석
  - 공제감면총액이 산출세액과 같아서 총부담세액이 0인 기업은 동 제도로 인한 추가적인 세액공제 수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가정
    - 그러한 기업은 ‘공제감면총액=산출세액’ 조건으로 식별
  - 앞절과 유사한 방식으로 세액공제 확대 효과 산출
    - 공제감면총액이 산출세액보다 작은 기업에만 해당 제도 도입에 따른 세액공제 확대 수혜 적용
  
- 제한 가정하의 분석 결과
  - 2018~2021년(신고연도 기준)의 분포에 적용한 결과, 전체 세액공제 규모는 약 923~7,538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추가 세액공제 수혜에 제약이 없었던 분석 결과의 범위 1,110~7,708억원 보다 하한과 상한이 모두 작아진 모습

- 연도별 변동성은 여전히 큰 모습인데 이는 COVID-19 팬데믹의 영향에 주로 기인함
- 해당 기간 연평균 세액공제 증가 규모는 약 2,807억원임
  - 이는 기본 가정하의 연평균 세액공제 증가 규모인 3,030억원보다 약 223억원 축소된 크기임
- 제도가 도입되었다면 중소기업은 해당 기간 동안 연평균 약 86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기본 가정하의 중소기업 세액공제 증가 규모인 245억원에 비하여 크게 줄어든 것인데, 그 주된 이유는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공제를 이미 최대 한도로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 추가적인 세액공제 확대 효과에 한계가 있기 때문임
  - 해당 기간 세액공제 확대 규모의 범위는 약 58~121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약이 없었던 기본 가정하의 범위 192~348억원보다 상한과 하한이 모두 크게 줄어든 모습
- 중견기업은 해당 기간 동안 연평균 약 144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기본 가정하의 세액공제 증가 규모인 168억원에 비하여 24억원이 줄어든 모습
  - 해당 기간 세액공제 증가 규모의 범위는 28~238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약이 없었던 경우의 범위 99~271억원과 비교하면 하한이 크게 축소된 모습임
- 일반기업은 해당 기간 동안 연평균 약 2,576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기본 가정하의 연평균인 2,617억원에 비하여 약 40억원 줄어든 모습
  - 해당 기간 세액공제 확대 규모의 범위는 637~7,178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본 가정하의 범위 779~7,171억원과 비교하여 하한은 줄어들었으나 상한이 아주 조금 높아진 모습
- 제한 가정하의 결과와 기본 가정하의 결과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일반기업 및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하여 세액공제를 최대 한도로 받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음

<표 V-10> 제한 가정하의 신고연도별 세액공제 증가 효과 요약

(단위: 억원)

신고연도	중소	중견	일반기업	총합
2018	86.6	109.1	726.8	922.5
2019	88.5	112.4	3107.3	3308.2
2020	121.3	238.1	7178.2	7537.6
2021	76.4	233.0	636.8	946.3
2022	58.1	28.1	1233.0	1319.2
평균	86.2	144.2	2576.4	2806.8

자료: 저자 작성

□ 중소기업에 대한 해당 제도의 도입 효과 분석 내용

- 제한 가정하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는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음
  - 표본으로부터 최대 한도에 이르지 않은 중소기업들의 세액공제 증가분을 구하고, 이를 수혜기업의 모집단/표본 배율을 적용하여 산출

<표 V-11> 중소기업 세액공제 증가분 추정(제한 가정)

(단위: 개, 억원, 배)

신고연도	표본내 중소기업수	평균 (억원)	총액 (억원)	제도 적용 증가분 (=총액×0.2)	중소기업 배율 적용시 세액공제 증가분 (=증가분×중소기업배율)
2018	73	1.01	73.7	14.7	86.6
2019	78	0.90	70.3	14.1	88.5
2020	94	0.96	89.8	18.0	121.3
2021	73	0.72	52.7	10.5	76.4
2022	60	0.60	36.0	7.2	58.1

주: 1. 공제율이 50%에서 60%로 상향된 효과

2. 신고연도 기준

자료: 저자 작성

□ 중견기업에 대한 해당 제도의 도입 효과 분석 내용

- 제한 가정하에서 중견기업에 대한 효과는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음
  - 표본으로부터 최대 한도에 이르지 않은 중견기업들의 세액공제 증가분을 구하고, 이를 수혜기업의 모집단/표본 배율을 적용하여 산출

<표 V-12> 중견기업 세액공제 증가분 추정(제한 가정)

(단위: 개, 억원, 배)

신고연도	표본내 중견기업수	평균 (억원)	총액 (억원)	제도 적용시 표본내 세액공제 증가분 (=총액×0.25)	세액공제 증가분 (=표본내 증가분 ×중견기업 배율)
2018	20	3.99	79.8	20.0	109.1
2019	10	7.66	76.6	19.2	112.4
2020	19	8.45	160.6	40.1	238.1
2021	17	9.93	168.8	42.2	233.0
2022	5	7.92	39.6	4.8	28.1

주: 1. 공제율이 40%에서 50%로 상향된 효과  
2. 신고연도 기준

자료: 저자 작성

□ 일반기업에 대한 해당 제도의 도입 효과 분석 내용

- 앞서 소개한 방식과 유사

<표 V-13> 일반기업 세액공제 증가분 추정(제한 가정)

(단위: 개, 억원, 배)

신고연도	표본내 일반기업수	평균 (억원)	총액 (억원)	제도 적용시 표본내 세액공제 증가분 (=총액×0.4)	세액공제 증가분 (=표본내 증가분 ×일반기업 배율)
2018	29	13.2	382.8	153.1	726.8
2019	39	45.3	1,766.7	706.7	3,107.3
2020	40	109.0	4,360.0	1,744.0	7,178.2
2021	29	12.7	368.3	147.3	636.8
2022	26	26.7	694.2	277.7	1,233.0

주: 1. 공제율이 25%에서 35%로 상향된 효과  
2. 신고연도 기준

자료: 저자 작성

## 2. 경제적 효과 분석

□ 해당 제도 도입의 경제적 효과 산출을 위한 비용과 편익은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음

- 해당 제도의 도입에 기인한 세액공제 증가는 조세지출로서 비용으로 고려
- 세액공제 증가에 따른 연구개발 규모의 증가와 그에 따른 기업의 매출 증가는 편익으로 고려

- 이하에서는 해당 제도 도입의 편익을 2단계 방식으로 산출하고자 함
  - 1단계는 해당 제도 도입에 따른 연구개발 증가 규모를 추정
  - 2단계에서는 연구개발 증가에 따른 기업 매출의 증가 규모를 추정

### 가. 해당 제도 도입에 따른 연구개발 증가 규모 추정

#### □ 연구개발에 미친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 연구개발 세액공제(TC)가 연구개발(‘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RnD)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국세청 제공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
-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가 연구개발을 유발하는 인과관계 측면에서의 분석은 주어진 자료에서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연구개발과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관계는 상관성(association)을 이용하여 분석
  - 구체적으로는 로그 연구개발(L\_RnD)를 로그 세액공제(L\_TC)에 회귀분석하는 방식을 이용하되, 연구개발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4년 전까지의 로그 세액공제를 설명변수로 이용
-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회귀분석을 수행
  - 개별 기업의 업종 등의 개별 고유의 특징을 고려하여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을 이용

#### □ 로그 연구개발 회귀분석 결과

- 중소기업에 대한 추정 결과
  - 당해년 연구개발은 전년과 당해년의 세액공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상관성이 나타남
  - 전년도와 당해년 계수의 합은 0.9980으로 이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의 세액공제 탄력성으로 정의하겠음
- 중견기업에 대한 추정 결과
  - 전년과 당해년의 세액공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상관성을 보임
  - 중견기업의 연구개발의 세액공제 탄력성은 0.8078로 추정
- 일반기업에 대한 추정 결과
  - 전년과 당해년의 세액공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상관성을 보임
  - 일반기업의 연구개발의 세액공제 탄력성은 0.2459로 추정

<표 V-14> 로그 연구개발(l\_RnD) 회귀분석 추정 결과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설명변수	추정값 (표준오차)	추정값 (표준오차)	추정값 (표준오차)
l_TC(t)	0.993** (0.001)	0.742** (0.043)	0.200** (0.028)
l_TC(t-1)	0.005** (0.001)	0.066** (0.023)	0.046** (0.017)
l_TC(t-2)	0.001 (0.001)	0.014 (0.014)	0.035 (0.022)
l_TC(t-3)	0.001 (0.001)	0.015 (0.013)	-0.025 (0.030)
l_TC(t-4)	0.000 (0.001)	0.015 (0.011)	-0.004 (0.031)
연도별 더미	○	○	○
기업 고정효과	○	○	○
관측치수	14,963	641	436
법인수	5,004	231	152

주: 1. \*\* 및 \* 는 각각 p-value가 0.01 및 0.05 이하인 것을 의미함

2. 표준오차는 HAC 표준오차

자료: 국세청 제공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V-15> 연구개발의 세액공제에 대한 탄력성( $\eta_{R,T}$ )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0.9980	0.8078	0.2459

주: 탄력성은 로그 연구개발 회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계수의 합

□ 회귀분석 결과를 이용한 연구개발 증가 규모 추산 방법

- 제한 가정하에서 산출된 세액공제 증가 규모를 기초로 하여 산출
  - 제한 가정하에서 산출된 세액공제 증가 규모는 기본 가정하에서 산출된 것보다 작지만 세액공제 확대의 현실적인 제약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더 크기 때문
- 탄성치를 표본내 개별 기업에 적용하되 제도 도입으로 인한 수혜기업에만 적용하는데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 탄력성  $\eta_{R,T} = \frac{\Delta RnD / RnD}{\Delta TC / TC}$  이며  $\Delta TC / TC$ 는 제도 적용을 받는 기업의 경우에는 각각 0.2(중소), 0.25(중견), 0.4(일반)임

- 따라서,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기업별로  $\Delta TC/TC$ 를 구하고, 추정된 탄력성과 기업별 연구개발비( $RnD$ )를 적용하여 연구개발비 증가분  $\Delta RnD = \eta_{R,T} \times (\Delta TC/TC) RnD$ 을 구하고, 제도 적용을 받는 기업에 한하여 표본내 증가분을 구하고, 배율(중소/중견/일반)을 적용하여 모집단 수준에서의 증가분을 추산
- 신고연도 기준 2018~2022년에 적용하는 경우, 해당 제도가 도입되었다면 발생하는 연구개발비 증가는 연평균 약 841억원으로 추정됨
  - 해당 기간 동안 제도 도입으로 인한 연구개발비 증가 규모의 범위는 약 353억원에서 2,076억원으로 추정됨
- 기업유형별로 보면 일반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순으로 총 연구개발 증가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제도 도입으로 일반기업은 연평균 약 633억원의 연구개발 증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 중견기업은 연간 평균적으로 약 122억원의 연구개발 증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 중소기업은 연간 평균적으로 약 86억원의 연구개발 증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그 규모가 가장 작음
  - 일반기업의 탄력성  $\eta_{R,T}$ 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 증가분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제도상 일반기업이 세액공제 증가율  $\Delta TC/TC$ 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데다 연구개발비( $RnD$ )도 중소/중견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임

<표 V-16> 연구개발비 증가 규모 추정

(단위: 억원)

신고연도	중소	중견	일반기업	총합
2018	86.2	88.2	178.9	353.3
2019	88.4	91.0	764.8	944.2
2020	121.3	192.8	1761.6	2075.7
2021	76.2	188.6	156.7	421.6
2022	58.1	47.3	302.5	407.8
평균	86.0	121.6	632.9	840.5

자료: 국세청 제공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나. 해당 제도 도입에 따른 매출 증가 규모 추정

- 연구개발 세액공제 수혜기업의 연구개발 증가가 매출에 미치는 효과 추정
  - ‘세액공제 확대 → 연구개발 증가 → 기업의 매출 증가’라는 경로를 고려
    - 매출에 대한 대리변수로 기업수입을 이용
  - 본 절에서는 로그 매출( $\ln\_Sales(t)$ )의 회귀분석 결과를 국세청 미시자료 분포를 이용하여 제도 도입의 편익을 추산함.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음
    - 과거의 로그 연구개발이 현재의 로그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피설명변수인 로그 매출의 시점을 미래로 바꾸어 시행. 구체적으로 5년 후의 로그 매출까지 고려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로그 연구개발비의 계수 추정값의 합인 탄성치를 구하여 미시자료상의 개별 기업에 적용하여 기업의 매출 증가분을 추정
    - 로그 연구개발(시차 변수 포함)과 기업유형(일반, 중견, 중소)의 교차항도 설명변수에 포함
    - 로그 매출을 로그 연구개발에 회귀분석. 회귀분석 시 개별 기업 고정효과, 연도별 고정효과, 기업유형에 따른 연도별 고정효과 등 다양한 고정효과를 고려하여 분석
    - 통제변수로 로그 자산 및 로그 부채를 고려

<표 V-17> 로그 매출 회귀분석 결과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피설명변수	$\ln\_Sales(t)$	$\ln\_Sales(t+1)$	$\ln\_Sales(t+2)$	$\ln\_Sales(t+3)$	$\ln\_Sales(t+4)$
설명변수	추정값 (표준오차)	추정값 (표준오차)	추정값 (표준오차)	추정값 (표준오차)	추정값 (표준오차)
$\ln\_RnD$	0.058** (0.003)	0.031** (0.004)	0.025** (0.005)	0.019** (0.006)	0.013 (0.008)
$\ln\_RnD$ *중견기업더미	-0.004 (0.011)	0.002 (0.014)	-0.010 (0.024)	-0.039 (0.029)	0.012 (0.035)
$\ln\_RnD$ *일반기업더미	0.013 (0.015)	0.025 (0.019)	0.010 (0.023)	-0.032 (0.027)	-0.009 (0.033)
통제변수	로그 자산(t), 로그 부채(t) 로그 자산(t-1), 로그 부채(t-1)				
고정효과	연도, 기업, 유형별(중견, 일반기업)×연도				

<표 V-17>의 계속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관측치수	42750	36071	29132	22156	15542
범인수	8065	7669	7049	6312	5552

주: 1. \*\* 및 \*는 각각 p-value가 0.01 및 0.05 이하인 것을 의미함

2. 표준오차는 HAC 표준오차

3. 5년후의 로그 매출의 회귀분석도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추정값이 없어서 표에 수록하지 않았음

자료: 국세청 제공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각 모형의 연구개발 설명변수들의 추정계수 가운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들의 합을 매출의 연구개발 탄성치로 이용하여 추산에 활용
  - 각 모형의 탄력성의 합(이하 ‘탄성치’)은 연구개발이 매출에 미치는 누계효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0.133으로 추정
  - 중견기업 및 일반기업이 중소기업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지 않음
  - 동일한 탄성치를 기업의 매출 증가분 추산에 이용

<표 V-18> 매출의 연구개발비 탄력성

구분	t	t+1	t+2	t+3	t+4	누계
중소	0.058	0.031	0.025	0.019	0.000	0.133
중견	0.058	0.031	0.025	0.019	0.000	0.133
일반	0.058	0.031	0.025	0.019	0.000	0.133

자료: 저자 작성

- 해당 제도 도입에 따른 매출 증가분을 추산한 결과,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신고연도 2018~2022년의 분포를 적용하면 연평균 약 4,346억원의 매출이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됨
  - 해당 기간 동안 매출 증가분의 범위는 약 2,638~7,288억원으로 추정
  - 일반기업의 연평균 수입 증가분은 약 3,216억원으로 추정되어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연평균 수입 증가분인 492억 및 639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편익의 발생이 주로 일반기업에서 발생함을 시사

<표 V-19>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 매출의 증가 효과

(단위: 억원)

신고연도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전체
2018	550.2	570.0	1517.4	2637.6
2019	502.4	284.8	4174.7	4962.0
2020	1060.1	647.7	5579.7	7287.5
2021	537.4	770.8	2042.1	3350.4
2022	542.2	185.0	2765.7	3492.8
평균	638.5	491.7	3215.9	4346.1

자료: 저자 작성

□ (순편익 추정) 순편익의 규모는 연평균 1,539억원 규모로 추정됨

- 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신고연도 기준 2018~2022년의 분포를 적용하면 발생하는 순편익의 범위는 -205.1~2,404.1억원으로 나타남
- 최근 5개 연도 중 4개 연도에서 제도 도입시 양(+)의 순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1개 연도에서는 음(-)의 순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 신고연도 2020년 음의 순편익 발생은 COVID-19 팬데믹 초기의 이례적인 연구개발의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확대에 주로 기인
  - 비용은 해당 연도에 당해년에 나타나는 반면, 편익은 다년간에 걸쳐서 발생

<표 V-20> 순편익 추정 결과

(단위: 억원)

신고연도	매출 증가분	조세지출	순편익
2018	2637.6	922.5	1715.1
2019	4962.0	3308.2	1653.7
2020	7287.5	7537.6	-250.1
2021	3350.4	946.3	2404.1
2022	3492.8	1321.4	2171.4
평균	4346.1	2807.2	1538.8

자료: 저자 작성

### 3. 고용영향평가

- 기획재정부훈령의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24조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특례 성과평가 시 고용영향평가 수행 기준」에 따라 고용영향평가는 조세특례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항목 중 하나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특례 성과평가 시 고용영향평가 수행 기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제5항에 따른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를 대상으로 고용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요건은 다음 중 하나와 같음
  - 『조세지출예산서』상의 조세지출 항목에서 고용과 관련된 조세특례 항목일 경우로 “고용”, “취업”, “일자리” 등이 명시된 항목
  -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특례제도의 조세지출규모가 1조원 이상인 경우
  - 신규 도입 또는 변경하려는 조세특례로서 예비타당성평가가 필요한 경우
  - 본 제도 개선안은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대상으로 고용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함
  
- 「조세특례 성과평가 시 고용영향평가 수행 기준」 제4조에 따라 고용영향평가의 평가방법에 따라 진행하며, 제시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음
  - 제1호: 기업의 고용정보와 재무·납세정보를 통합한 미시자료가 확보 가능한 경우, 해당 자료의 정보량 수준에 따라 이중차분법, 성향점수매칭기법, 도구변수법 등 고용영향평가에 활용 가능한 미시계량분석 방법 중 해당 조세특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분석
  - 제2호: 제1호의 미시계량 분석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취업유발효과를 분석
  - 제3호: 제1호나 제2호의 분석방법에 따른 효과분석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제1호나 제2호의 분석방법을 모두 활용할 수 없을 경우,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고용효과를 분석
  
- 본 예비타당성평가에서는 국세청 자료의 제한 및 정책 설계의 특징으로 인하여 제3호의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함
  - 국세청 미시자료의 기간인 2015~2022년 사이에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증가분의 전체 기업에 대한 정책 변화가 부재하고, 개별 기업의 고용 자료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1호의 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함

- 해당 제도 변화는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 R&D에 대한 인건비도 세액 공제의 혜택을 제공하지만, 산업연관표의 경우 기업에 대한 자금 투입(매출액) 변화에 대한 고용유발만 확인할 수 있어 직접적인 효과 추정과는 거리가 있음
- 이에 따라, 제3호의 연구방식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함

□ 설문조사 결과, 한시적으로 일반분야 증가분 방식의 세액공제율이 10%p가 향상될 경우 30.4%의 기업이 연구개발 인력의 고용을 증가시키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기존 인원 대비 2.13%의 고용 증가 의사를 보였음

- 일반분야 증가분 방식의 세액공제율이 10%p가 한시적으로 향상될 경우, 응답기업 중 30.4%가 고용인원을 증가시키겠다고 하였으며, 규모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대기업을 25.0%, 중견기업의 33.3%, 중소기업의 29.6%가 해당 제도 변화에 따라 고용을 증가시키겠다고 응답함
- 해당 정책 변화에 반응하여 기존 인원 대비 몇 %의 추가 고용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2.13%로 응답하였음

<표 V-21> 일반분야 증가분 방식 공제율의 10%p 한시적 향상 시 고용 증가 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유지	증가
전 체		(172)	69.6	30.4
기업규모	중소기업	(95)	70.4	29.6
	중견기업	(53)	66.7	33.3
	대기업	(24)	75.0	25.0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20)	75.0	25.0
	KOSDAQ시장 상장	(31)	51.6	48.4
	KONEX시장 상장	(3)	100.0	0.0
	비상장	(118)	74.1	25.9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21)	50.0	50.0
	6~10인 이하	(17)	66.7	33.3
	11~30명 이하	(44)	87.5	12.5
	31~100명 이하	(32)	72.7	27.3
	101~300명 이하	(30)	55.6	44.4
	300인 초과	(28)	72.7	27.3

자료: 저자 작성

- 위의 결과를 2022년 국세청의 표본 총합 자료와 연계해서 분석한 결과, 대략 222명의 추가 연구개발 인력의 고용이 예상됨
  - 2022년 기준 국세청 표본 내 일반 연구개발 인건비와 관련된 총 연구인원(A)은 175,962명이며, 이에 증가분 선택률(B) 2.5%를 곱하여 증가분 선택 기업의 표본 내 총 연구인원을 추정함
  - 이에 표본 대비 전수비율(C)을 곱하여 전체 인원을 추정한 후, 설문에서 파악한 해당 정책 변화 시 고용 증가 선택률(D)과 이들의 고용 증가율(E)를 곱하여 최종적으로 추가 고용인원을 추정하여 222명을 산출함
    - 2015년부 2022년의 평균치를 사용하여도 유사한 수준인 283명으로 추정됨
  - 이러한 결과는 R&D 재정지원의 고용효과를 다룬 최근 연구인 장필성·황석원(2019)의 수치인 R&D 재정지원 고용효과(H)를 적용할 때와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추정되었음
    - 앞서 추정한 정책 변화에 따른 예상 R&D 조세지출(G)을 장필성·황석원(2019)의 R&D 재정지원 고용효과(H)와 곱하여 산출하였으며, 2022년 기준 46~243명 수준으로 추정되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222명과 유사한 것을 확인
    - 다만 이 경우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효과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는 가정이 전제됨

<표 V-22> 일반분야 증가분 방식 공제율의 10%p 한시적 향상 시 고용 증가 추정

본 연구 추정방식	(A) 국세청 표본 내 일반연구개발인력	(B) 증가분 선택율	(C) 표본 대비 전수비율	(D) 고용증가 선택율	(E) 고용 증가율	(F=A×B×C×D×E) 추정 추가 고용인원
평균(2015~2022)	178,007명	3.9%	6.3배	30.4%	2.13%	283명
2022년	175,962명	2.5%	7.8배			222명
장필성·황석원 (2019)	(G) 예상 R&D 조세지출		(H) R&D 재정지원 고용효과		(I=G×H) 추정 추가 고용인원	
평균(2015~2022)	2,807.2억원		0.035~0.184명/억원		98~517명	
2022년	1,321.4억원				46~243명	

자료: 저자 작성



## VI. 형평성 분석





## VI. 형평성 분석

- 이번 장에서는 동 정책 변화가 도입되었을 경우의 경제적 효과들을 형평성의 관점에서 분석함
  - 과세형평은 조세공평(주의), 조세형평(주의), 응능부담의 원칙(ability-to-pay principle), 조세정의 등으로 불리며, 수평적 형평(horizontal equity)과 수직적 형평(vertical equity)로 나눌 수 있음
    - 수평적 형평이란 동일한 상황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은 동일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함
    - 수직적 형평은 보다 큰 부담을 능력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더 많은 세 부담을 요구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함
  - 본 보고서에서는 수평적 형평성 분석에서는 본 제도 변화에 따른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간 형평성과 업종 간 형평성을 분석하고, 수직적 형평성 분석에서는 본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규모별 형평성을 분석함
  - 다만, 동 정책 변화의 목표가 기업의 연구개발비의 증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질성이 나타나고 이에 따른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른 조세특례제도와 마찬가지로 불가피함
  
- 수평적 형평성 분석 결과, 동 제도 변화의 도입은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사이의 형평성과 업종 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음
  - 다만, 동 정책 변화로 인하여 비수혜기업이 추후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맞춰 행동 변화를 야기시키는 것이 목적 중 하나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수혜 여부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차이는 필수적임
  
- 동 제도 변화는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에서 일정 이상의 증분이 발생하고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기업에만 지원하는 정책이기에 수혜기업에 보다 많은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경향이 있음
  - 국세청 미시자료에서 최근 5개년(2018~2022년) 동안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수혜기업 중 증가분 방식을 선택하는 기업의 비율은 3.1%(1,337개)로 확인하였으며, 이는 매우 적은 수의 기업만이 동 제도 변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동 제도 변화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의 수 대비 국세통계의 총 신고법인의 비율을 살펴보면, 최근 5개년 평균 기준 이익법인 대비 0.24%, 신고법인 대비 0.15% 수준임

<표 VI-1>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 세액공제 활용 기업 비율

(단위: %, 개)

신고 연도	증가분 수혜법인수			국세통계 법인수		비율	
	증가분 선택률	세액공제 수혜법인	증가분 수혜법인	이익법인	신고법인	이익법인 대비	신고법인 대비
2018	3.5	36,057	1,262	476,432	740,215	0.26	0.17
2019	3.3	40,783	1,346	498,000	787,438	0.25	0.16
2020	3.4	44,746	1,521	524,490	838,008	0.24	0.15
2021	2.8	46,517	1,302	552,561	906,325	0.23	0.14
2022	2.5	50,207	1,255	608,443	982,456	0.21	0.13
평균	3.1	43,662	1,337	531,985	850,888	0.24	0.15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동 제도 변화의 가장 중요한 수혜 요건인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은 특정 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2015~2022년 국세청 표본 자료를 기준으로 파악한 결과, 특정 기술을 통해 영업활동과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들만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혜택을 수혜할 수 있음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16%)을 시작으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3.76%),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3.19%) 순으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분포하였음
    - 반면 광업, 담배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표본 내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수혜 기록이 없었음

- 동 제도 변화의 수혜기업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수혜받은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며, 이러한 기업 중 증가분이 유리한 기업들로 제한되기에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수혜 기록이 없는 산업군은 동 제도 변화의 수혜 가능성이 매우 낮음
- 수직적 형평성 분석 결과, 동 제도 변화의 도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경제적 혜택 차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음
  - 동 제도 변화는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증가분 세액공제율의 10%p 증가이며, 이는 기존의 세액공제율 격차를 상대적으로 감소시켜 수직적 형평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sup>64)</sup>
    - 대기업(25 → 35%, 40% ↑), 중견기업(40 → 50%, 25% ↑), 중소기업(50 → 60%, 20% ↑) 순으로 세액공제의 상대적인 혜택이 큼
    - 전체 세액공제율의 합 대비 기업규모별 세액공제율이 차지하는 비율(세액공제율의 집중도)의 Herfindahl-Hirschman Index는 0.3573에서 0.3484로 낮아져 기업규모별 세액공제율 격차는 낮아짐
  - 기업당 순매출효과의 경우에도 5개년도 평균 기준 중소기업은 1.06억원, 대기업은 4.73억원 수준으로 대기업에 돌아가는 기업당 매출효과가 상대적으로 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경제적 혜택 차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음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의 증가비율은 2(=40%/20%)이며, 기업당 순매출효과 비율은 4.46(=4.73/1.06)으로 세액공제율 증가에 대비해서도 대기업의 순매출효과 증가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수직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가 대기업에 대한 효과에 비해 커야 하는데 동 제도의 도입에 따른 변화는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수직적 형평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기업당 순매출효과의 경향성은 경제성 분석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대기업의 동 제도 변화에 따른 연구개발비 증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sup>65)</sup>

64) 수직적 형평성의 개념은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조세부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누진세의 도입은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시킨다고 알려져 있음

65) 경제성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매출의 연구개발 탄성치는 기업규모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기에 연구개발비 증가 규모가 주된 원인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즉, <표 V-1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소기업의 조세지출에 대한 연구개발비 탄력성이 0.9980인 반면 대기업의 탄력성은 0.2459 수준인데, 해당 제도 변화의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커 <표 V-16>과 같이 연구개발비 증대는 중소기업 86억원, 대기업 632.9억원으로 추정됨

<표 VI-2> 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기업당 순매출효과

(단위: 개, 억원)

신고연도	중소기업			대기업		
	순매출효과	추정기업수	기업당 매출효과	총 순효과	추정기업수	기업당 매출효과
2018	463.5	423	1.10	790.7	133	5.95
2019	413.9	484	0.86	1067.4	168	6.35
2020	938.9	630	1.49	-1598.5	164	-9.75
2021	461.0	526	0.88	1405.3	189	7.44
2022	481.8	498	0.97	1532.7	112	13.68
평균	551.8	512	1.06	639.5	153	4.73

주: 1. 순매출효과는 제도 변화 시 기대되는 매출액 증대에서 조세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함

2. 추정기업수는 국세청 표본에서 전체표본 대비 배율을 곱한 값으로 증가분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 추정기업수를 의미함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Ⅶ.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 VII.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 1. 계층화 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통한 종합평가

#### 가. AHP 분석의 개요

- 예비타당성평가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각 부문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최종 분석 결과를 도출하여야 하나 각기 다른 방법으로 진행된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시키는 것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함
  
-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관된 평가 체계하에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기준 분석(multi-criteria analysis) 방법 중 하나인 AHP를 이용한 분석으로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평가함
  - AHP는 Thomas Saaty에 의해 1970년대 초 개발된 분석 방법으로서 최근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정량적 판단이 어려운 다기준 의사결정 과정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분석 방법임
    - 본 연구와 같이 제도 도입 등에 대하여 시행된 다양한 효과성 분석을 동일 평가 기준에 따라 균집화하고 이를 다수의 분석 수준으로 분류하여 계층화한 후 각각의 수준 및 중요도에 따라 평가하여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임
    - 일반적으로 제1계층에서는 경제성, 정책성, 형평성 분석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제2계층에서는 제1계층 분석 기준의 세부적인 항목을 평가기준을 선정하여 하위 항목 각각에 대하여 평가함
    - 최종적으로 제1계층 및 제2계층의 평가결과에 각 평가기준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함
  
- 의사결정 과정은 대안들 간의 ① 계층적 구조설정 ② 상대적 중요도 설정 ③ 논리적 일관성의 유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AHP 분석 방법은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의 특성에 착안하여 개발되었음

- 예비타당성평가에서의 AHP 분석은 계층적 구조로 작성된 설문조사에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의 관련 전문가들이 평가자로 참여함
  - 동 분석은 각 평가 기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정량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으로 인식됨
- 본 보고서에서는 앞서 제시한 정책성 및 경제성, 형평성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계층적 구조의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전문가 9인의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1) 정책성 분석의 특징

- 예비타당성평가에서 정책성 분석이란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제도 운용의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지원방법 등을 분석하는 것임
- 본고에서는 정책성 분석의 4가지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제도의 도입 효과를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분석하였으며 AHP의 제2계층 분석을 활용하여 종합평가 결과를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함
    - 해당 평가항목들은 ① 제도의 필요성과 적시성 ②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③ 정부개입의 명확성과 적절성 ④ 제도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이며 AHP 분석 구조에서는 이들 항목이 제2계층을 구성하고 있음

### 2) 경제성 분석의 특징

- 예비타당성평가에서 경제성 분석이란 제도의 도입이 고용·투자 등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활용함
- 비용-편익 분석은 제도 도입으로 인한 사회 구성원의 행태 변화를 추정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편익 및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사회적 비용은 제도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특례금액과 관련 경비를 모두 합한 금액임
  - 비용-편익 분석으로 경제성 분석을 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비용-효과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음

- 그러나 비용-효과 분석은 비용-편익 분석과 달리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김정권 외, 2017, p. 19)

- 본 평가에서는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제도 도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다음 2가지 측면에서 수행함
  - 국세청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제도 도입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의 증가 규모, 그에 따른 기업의 매출 증가 규모를 정책효과로 고려하여 경제적 효과를 산출하였음
  -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영향평가를 수행하였음

### 3) 형평성 분석의 특징

- 예비타당성평가에서 형평성 분석이란 제도의 도입이 가구나 기업, 지역 등 사회 각 분야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함
  - 구체적 예로 가구의 소득 계층이나 기업규모에 따른 소득 격차의 변화 및 지역 간 소득 불균형의 변화 등 소득재분배 효과, 낙후지역 등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함
- 본 평가에서는 수혜·비수혜기업 및 업종 간 수평적 형평성과 기업규모 간 수직적 형평성을 논의함

### 4) AHP 분석 결과의 한계

- AHP 분석에서 경제성 분석은 설문조사 평가자들이 경제성 분석 측면에서 제도 도입이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한 점수를 활용함
  - 정책성 및 형평성 분석과 마찬가지로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치화하여 경제성 분석에 이용함
- 본 연구에서는 B/C 비율을 환산하여 AHP 경제성 분석에 이용하는 정량적 분석 대신 전문가의 의견을 수치화하여 활용하는 정성적 분석을 이용하였으므로 B/C 비율을 직접 이용한 AHP 분석 결과와 비교함에 있어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

- 하지만 B/C 비율을 이용하여 경제성 분석 측면에서 제도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AHP 분석도 평가척도 구간의 불균등성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의 방법론적 우열을 논할 수 없음(권태형, 2008)
- 오히려 해당 제도의 전문가들이 직접 제시한 점수를 이용하는 것이 평가척도 구간의 불균등성 문제에 노출되지 않아 보다 신뢰도 높은 AHP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음(이동규·송호신·김승래, 2017)

## 나. AHP 분석을 활용한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종합평가

### 1) 평가 대안

- 본 분석은 하나의 제도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척도를 통해 분석된 내용들을 통일된 기준으로 평가하여 제도 도입 대안과 미도입 대안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행함
  -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제도의 도입과 미도입을 평가 대안으로 하여 어느 안이 더 적절한지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본 조세특례 제도의 도입 여부를 판단함

### 2) 조사 대상 집단

- AHP 분석은 소수의 평가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여 의사결정 집단의 구성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선정해야 함
  - 설문 대상자 선정 시 조세특례 도입의 타당성을 평가할 만한 배경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신중히 고려하여야 함
  - 본 AHP 분석을 위하여 설문조사에 응한 전문가는 총 9명으로, 1명은 본 예비 타당성평가의 공동연구진이며 나머지 8명은 학계에서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선출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됨
  - 최종 결과 분석은 분석 결과의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종합평점에서 최솟값 및 최댓값이 나온 평가자 2인의 응답 내용을 제외하고 진행함

###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표 VII-1>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평가결과 요약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정책 대상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세) 및 법인세를 공제받는 법인
지원 방식		일반 분야의 R&D비용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모든 기업 유형에 대해 2024년 1년간 한시적으로 10%p 상향하는 방식을 검토함
세제지원방식		R&D 투자 확대와 이를 통한 매출·GDP 상승 및 고용 창출,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여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 상향을 통한 조세지원을 검토할 수 있음
운영기간		2024년(1년간)
정책성 분석	제도의 필요성과 적시성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전체 R&D 규모가 증가하여 필요성은 크지 않으나 기업 R&D 규모는 일부 소수의 상위 기업에 매우 집중되어 현 제도의 조세지출액의 일반 분야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으므로 해당 분야의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우리나라 기업의 전반적인 혁신활동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일반 R&D 분야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정책목표에 적절함
	정부개입의 명확성과 적절성	긍정적 외부효과 증대와 정보 비대칭성 완화 및 납세협력비용 감소를 위한 차원에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며 차등적 조세정책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영세기업 지원은 금융지원이나 세무행정 지원 등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제도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대상에 적용되는 분야는 조세지원이, 첨단기술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원은 재정지원이 더 적합하므로 조세지원과 재정지원의 역할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평가함
경제성 분석		- 해당 제도의 도입 비용은 세액공제 증가에 따른 조세지출이 있으며 편익으로는 연구개발 규모의 증가와 기업 매출 증가 및 고용 창출이 있음 - 세액공제를 받는 모든 기업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세액공제 규모가 약 1,110~7,708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 이미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는 기업이 더 이상 추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제약 아래에서는 약 923~7,538억원의 세액공제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공제율 상향에 따른 연구개발 증가 규모 범위는 353~2,076억원으로 추정 - 기업의 매출 증가분은 2,638~7,288억원으로 추정되며 순편익의 예상 규모 범위는 -205억~2,404억원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추가 연구개발 인력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약 222명의 추가 고용이 예상됨
형평성 분석		- 수평적 형평성 측면에서는 해당 제도 변화는 일정 수준 이상의 증분이 발생하고 순익을 거둔 기업에만 지원하는 정책이므로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사이의 형평성과 산업 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음 - 수직적 형평성 측면에서 세액공제율의 상대적 혜택의 크기 차이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형평성이 낮아질 수 있음

- 본 분석은 <표 VII-1>의 경제성, 정책성, 형평성 분석에서 도출된 결과를 활용하여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제도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음
  - 경제성 분석은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확인한 각 평가자가 이를 바탕으로 평가한 점수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정성적 분석 방법을 택함
  - 정책성 분석은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하위 평가기준 각각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 하위 평가기준인 제2계층을 구성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음
    - 제도의 필요성과 적시성
    -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 정부개입의 명확성과 적절성
    - 제도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 형평성 분석은 해당 제도 도입의 경제적 효과들을 수평적·수직적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함
  - <표 VII-2>에서 제1계층 평가기준 각각의 가중치 산정범위를 제시함

<표 VII-2> 가중치 산정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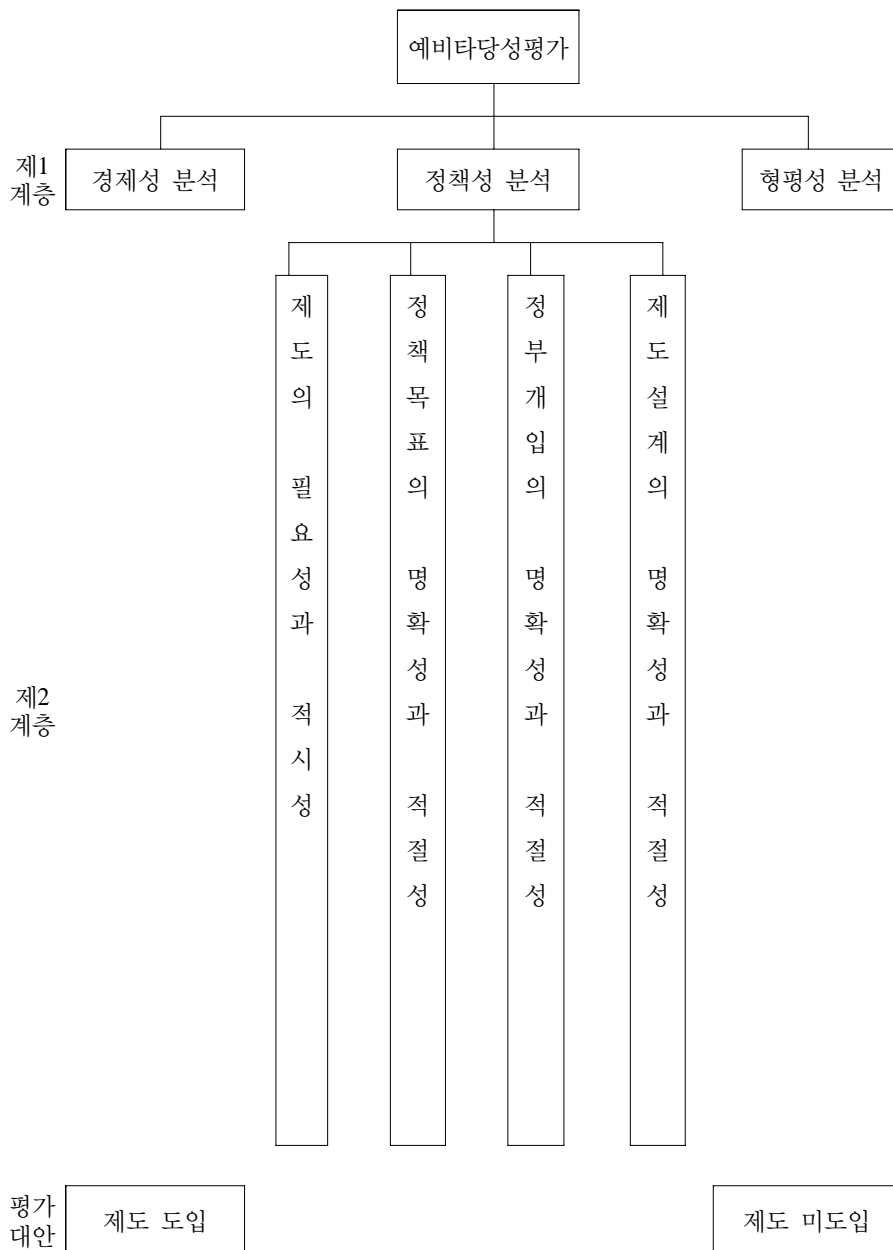
(단위: %)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형평성 분석
30~50	30~40	20~30

-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2개의 계층으로 구성된 AHP 분석을 수행함
  - 제1계층에서는 경제성, 정책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전문가가 바라본 제도 도입의 타당성 정도를 점수로 제시함
  - 제2계층에서는 정책성 분석의 하위 평가기준 4가지인 ① 제도의 필요성과 적시성 ②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③ 정부개입의 명확성과 적절성 ④ 제도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의 측면에서 전문가들이 바라본 제도 도입의 타당성 정도를 점수로 제시함
  - 이렇게 제시된 제1계층 및 제2계층의 점수에 각 평가기준의 가중치를 곱하여 AHP 분석의 종합점수를 도출함

- 본 평가에서는 평가자들이 설문문의 마지막에 해당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음
-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작성된 점수와 AHP 분석의 종합점수를 비교함으로써 AHP 분석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도모함

[그림 VII-1]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예비타당성평가의 AHP 계층 구조



**<표 VII-3>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예비타당성평가의 AHP 평가항목 요약**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점기준
경제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 측면에서의 제도 도입 타당성</li> <li>○ 비용-편익 분석 결과의 타당성</li> <li>○ 비용-편익 분석 활용 근거의 타당성</li> </ul>	연구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평가자의 개인의견을 종합하여 정성적으로 판단
<b>정책성 분석</b>		
제도의 필요성과 적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 개편의 필요성</li> <li>○ 제도 개편의 적시성</li> <li>○ 여타 제도와의 중복성</li> </ul>	연구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평가자의 개인의견을 종합하여 정성적으로 판단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목표의 적절성</li> <li>○ 정책목표와의 일치성</li> </ul>	
정부개입의 명확성과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개입의 필요성</li> <li>○ 정부개입의 적절성</li> </ul>	
제도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요소의 명확성</li> <li>○ 유인제공의 명확성</li> <li>○ 제도설계의 적절성</li> </ul>	
형평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평성 측면에서의 제도 도입 타당성</li> </ul>	연구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평가자의 개인의견을 종합하여 정성적으로 판단

#### 4) AHP 분석 결과

- AHP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평가자들은 쌍대비교 설문을 통해 각 계층별로 평가항목이 갖는 가중치를 산정함
  - 이때 평가항목의 가중치란 평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의미함
  - 평가자들은 제1계층 평가항목인 경제성, 정책성, 형평성 분석의 가중치를 「조세 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에 따라 주어진 가중치 범위 내에서 선택함
    - 이때 평가자들이 선택한 각 항목 가중치의 합은 100점이 되어야 하며, 각 항목의 가중치 선택 범위는 <표 VII-2>에 제시함
  - 제2계층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Saaty(1990)의 AHP분석 기본모형인 9점 척도 모형을 활용하여 선택할 수 있음
  - 평가자들의 비일관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Saaty(2008)의 Random Index를 이용한

검증 과정을 활용하였으며 응답 비일관도가 0.15 이상일 경우 설문을 재설시 및 제외하여 논리적으로 일관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도모함

- Saaty(2008)에 의하면 응답 비일관도가 0.1 미만일 경우, 설문 결과에 합리적인 일관성이 있으며, 0.2 미만일 경우, 용인 가능한 수준의 일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0.15를 기준으로 응답의 일관성 여부를 판단함

- 제도 도입의 타당성 정도는 Saaty의 9점 척도 모형을 활용하여 수치화하였으며 이러한 AHP 표준점수와 조세특례 도입 적합도를 연계하여 AHP 분석에 활용함
  - 표준점수 9는 제도 도입이 매우 적절하다는 의견이며, 표준점수 -9는 제도 도입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반영하며, 이를 1부터 0까지의 조세특례 도입 적합도 범위에 균등하게 매치되도록 연결함(<표 VII-4> 참고)
  - 조세특례 도입 적합도에서 1은 해당 제도 도입이 매우 적절하다는 의미이고, 0은 해당 제도 도입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의미임
  - 또한 조세특례 도입 적합도가 0.5인 경우는 제도의 도입안과 미도입안 사이에 차등을 둘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AHP 표준점수 1과 매치됨
  - AHP 표준점수가 1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 도입 적합도가 0.5를 초과하여 해당 평가자가 제도 도입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 가능함
  - 반대로 AHP 표준점수가 1 미만이며 조세특례 도입 적합도가 0.5 미만인 경우 제도 미도입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AHP 표준점수에 대한 해석은 개별 평가자의 응답 결과를 기준으로 해석한 것이고, 여러 평가자의 설문을 종합하여 해석할 때에는 AHP 표준점수 1을 기준으로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표 VII-4> AHP 표준점수에 따른 제도 도입 적합도

AHP 표준점수	제도 도입 적합도
9	1
8	0.9375
7	0.875
6	0.8125
5	0.75

<표 VII-4>의 계속

AHP 표준점수	제도 도입 적합도
4	0.6875
3	0.625
2	0.5625
1	0.5
-2	0.4375
-3	0.375
-4	0.3125
-5	0.25
-6	0.1875
-7	0.125
-8	0.0625
-9	0

자료: 이상엽·한종석, 『2015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 신설』, 2015. 9.

- 제1계층 설문에 대하여 가중치 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제성 분석의 중요도가 다른 분석의 중요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표 VII-5> 참고)
  - 평가자들은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형평성 분석 순으로 중요도가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종합평가 결과 평균 약 40:35:24의 가중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종합평가 결과로 도출된 각 항목의 가중치는 개별 평가자들이 응답한 설문 결과를 기하평균하여 도출하였으므로 세 가중치의 합이 100이 아닐 수 있음
  - 정책성 분석의 제2계층 항목에 대한 가중치는 각 항목 간 쌍대비교 설문 응답을 이용한 행렬의 정규화 과정을 통하여 도출함
    - 제2계층 종합평가 결과도 제1계층과 마찬가지로 각 평가자들의 설문 응답 내용을 기하평균하여 도출하였으므로 제2계층 가중치의 총합이 ‘정책성 분석’ 항목의 종합 가중치와 다를 수 있음
    - 세부적으로는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이 9.4%로 중요도가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제도의 필요성과 적시성’이 8.2%를 차지함
    - 다음 순위로는 ‘제도 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의 중요도가 약 5.1%로 평가되었으며 ‘정부개입의 명확성과 적절성’의 중요도가 3.7%로 가장 낮음

<표 VII-5>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평가항목	평가자 1	평가자 2	평가자 3	평가자 4	평가자 5	평가자 6	평가자 7	종합
경제성 분석	0.40	0.35	0.40	0.30	0.50	0.40	0.50	0.40
정책성 분석	0.30	0.40	0.40	0.40	0.30	0.35	0.30	0.35
- 제도의 필요성과 적시성	0.14	0.04	0.10	0.20	0.08	0.02	0.17	0.08
-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0.05	0.22	0.24	0.09	0.02	0.19	0.08	0.09
- 정부개입의 명확성과 적절성	0.03	0.02	0.04	0.06	0.02	0.10	0.03	0.04
- 제도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0.08	0.13	0.02	0.05	0.19	0.04	0.02	0.05
형평성 분석	0.30	0.25	0.20	0.30	0.20	0.25	0.20	0.24

주: 1. 종합은 각 평가자 가중치의 기하평균값  
2. 분석 결괏값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각 항목의 제도 도입에 대한 평점과 가중치를 이용하여 제도 도입에 대한 종합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도 도입에 대한 종합평점(weighted sum)은 0.49로 나타나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이 도출되었으나 점수의 극단값으로 인해 산출된 경향이 있어 이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표 VII-6> 참고)

- 일반적으로 AHP 설문 결과 해석은 종합평점 0.5 기준 미만인 경우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방향의 의견으로, 초과인 경우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의 의견으로 해석함
  - 다만, 해당 수치가 극단값에 의해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응답 분포를 고려하여 종합평점의 영역 해석에 주의를 요하는 구간을 설정하고 있음
- 개별 평가자들의 종합 분석 결괏값을 살펴보면 최저 0.24부터 최고 0.75까지 다양한 결괏값을 보였으며 이에 대한 표준편차는 0.19로 산출됨
  - 본 설문은 다양한 집단에서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므로 각 전문가의 배경이나 소속 집단에서의 이해관계 등이 설문 응답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특히, 본 제도 변화에 대한 개별 평가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제도 미도입(2명)에 비해 제도 도입이 과반수 이상(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합 분석의 점수의

표준편차도 높은 편으로 파악되어, 단순히 종합 점수만으로 제도 도입 여부 판단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sup>66)</sup>

<표 VII-6> AHP 평가 결과

평가자	제도 도입	제도 미도입
종합	0.49	0.44
평가자 1	0.62	0.38
평가자 2	0.75	0.25
평가자 3	0.55	0.45
평가자 4	0.60	0.40
평가자 5	0.29	0.71
평가자 6	0.64	0.36
평가자 7	0.24	0.76

주: 1. 종합은 각 평가자 가중치의 기하평균값  
 2. 분석 결과값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끝으로 설문 마지막에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직접적으로 물어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종합점수 0.49로 일치된 결과를 보이니, 해당 결과도 앞의 결과와 동일하게 일부 극단값에 의해 산출된 경향이 있음(<표 VII-7> 참고)
  - 제도 도입에 대한 직접 설문 응답에서의 종합 결과는 0.49로 앞서 언급한 0.5 기준 미만이므로 직접 설문 응답과 AHP 평가 결과 모두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해석할 수 있음
  - 다만, 직접 설문 응답과 AHP 종합평가 결과 모두 평가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AHP 종합 평가 결과, 제도 도입과 미도입 대안의 차이가 미세하여 의사결정의 강건성(robustness)이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앞의 문제와 동일하게 개별 평가자 중 과반수 이상인 5명이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점수를 내놓았기에, 단순히 종합점수만으로 제도 도입 여부 판단을 결정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66) 이상엽·한종석(2015); 한국개발연구원(2008)

<표 VII-7> 설문 응답에서의 제도 도입 점수

평가자	제도 도입	제도 미도입
총 합	0.49	0.47
평가자 1	0.54	0.46
평가자 2	0.65	0.35
평가자 3	0.55	0.45
평가자 4	0.60	0.40
평가자 5	0.25	0.75
평가자 6	0.65	0.35
평가자 7	0.35	0.65

주: 1. 종합은 각 평가자 가중치의 기하평균값  
 2. 분석 결과값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한국개발연구원(2008)에 따르면 AHP 설문 응답 내용을 해석하여 제도 도입과 미도입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경우 종합평점 0.5를 기준으로 결과를 해석하는 것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AHP 설문은 구조상 평가자가 각 항목에 대해서 양자택일의 답변을 선택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얻은 평가 결과 또한 절반을 기준으로 어느 한쪽의 대안만을 선택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다양한 전문가 집단 소속 평가자들의 의견이 특정 방향으로 완전히 수렴되지 않는 경우, 결과값이 0.5를 기준으로 어느 한쪽에 속해 있다고 하여 전체 설문 해석을 결과값에 따라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이러한 경우 개별 평가자들의 의견을 더 세밀하게 분석하여 결과 해석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이상엽·한중석(2015)에 따라 개별 평가자들의 의견이 어느 한 대안을 강하게 지지한다고 판단할 수 없을 시 종합평점 해석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색영역을 설정함

$$0.5 - 0.05 < \text{AHP 종합평점} < 0.5 + 0.05,$$

$$\text{즉, } 0.45 < \text{AHP 종합평점} < 0.55$$

- 회색영역이란 설문 평가자의 구성이 바뀔 경우 응답 결과가 변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하며 이 영역 내 종합평점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해석함에 있어 신중해야 하는 구간을 의미함

- 평가자들의 제도 도입과 미도입에 대한 의견이 정확히 동률이 나오거나 의견의 차이가 미미한 경우 설문을 재검토하거나 재시행하기 위하여 회색 영역을 설정함
- 본 설문은 경우 종합평점과 개별 평가자들의 제도 도입에 대한 직접 설문 점수 모두 0.49로 회색영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종적으로 본 조세지출 제도에 대한 AHP 평가의 경우 개별 평가자들의 제도 도입에 대한 직접 설문 점수와 종합평점 분석 결과에서는 0.49로 산출되었으나, 이는 결과의 회색영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단순히 종합점수로 제도 도입 여부 판단을 내리지 말고 결론을 내릴 때 신중을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sup>67)</sup>

- 특히, 본 제도 변화에 대한 개별 평가자의 분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도 도입에 찬성한 인원이 과반수 이상이며, 종합점수가 제도 도입 반대 인원의 극단값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있어 해당 결과를 단순하게 의사판단의 결정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음

## 2. 결론 및 정책제언

□ (정책성 분석) 제도 도입에 있어 일부 필요성이 인정되나, 최근의 어려운 세수입 여건 및 재정 건전화 필요성,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본 제도의 조세지출액 규모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

- 2023년 이후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유의미하게 악화되면서 민간의 혁신 활동 둔화가 우려되고 실제로 2024년 기업 R&D 지출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측면에서 동 제도개편을 통해 추가적인 R&D 지출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 제도를 개편하는 경우, 정부 재정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하여 1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

---

67) 한국개발연구원(2016)

- (경제성 분석) 2018~2022년 국세청 미시자료를 통해 추정된 결과, 정책 변화에 따른 조세지출 대비 경제적 효과는 약 1.548 수준으로 1,538.8억원의 추가적 순편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정책 변화에 따른 직접적인 고용효과는 약 283명의 추가적인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해당 추정은 추가적인 조세지출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해 추정하였기에 매출액 증대에 따른 여러 파급효과들을 고려하면 정책 변화에 따른 경제적 실익은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됨
  
- (형평성 분석) 정책 목표와 설계상 수평적 및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할 요소들이 존재하나, 정책 변화의 목표가 기업의 연구개발비의 증대 유도이므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질성이 나타나고 이에 따른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른 조세특례 제도와 마찬가지로 불가피함
  
- (AHP 평가) AHP 종합평점과 개별 평가자들의 제도 도입에 대한 직접 설문 점수가 0.49로 회색 영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제도 도입에 찬성한 인원이 과반수 이상(71.43% = 5/7)이며, 종합점수가 제도 도입 반대인원의 극단값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있어 해당 결과를 단순하게 의사판단의 결정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참고문헌

### <국내 문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2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23.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각 연도.
- \_\_\_\_\_,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각 연도.
- \_\_\_\_\_, 『조세특례제한법』, 각 연도.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_\_\_\_\_, 『개정세법해설』, 각 연도.
- 국제금융센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주요 내용 및 평가』, 2022. 8. 11.
-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예산안 총괄 분석Ⅲ』, 2023. 10.
- 권태형, 『공공사업 타당성평가에서 다기준분석의 의의와 한계』, 『한국공공관리학보』 22(3), 2008, pp. 31~51.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 \_\_\_\_\_, 『세법개정안』, 각 연도.
- 기획재정부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23. 11.
- 김동준·김동영·홍인기·임상수, 『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VI)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KDI, 2020. 9.
- 김빛마로·오유나·이형민·조승수, 『특정목적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 김빛마로·우석진·이동규,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II)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9.
- 김빛마로·윤성주,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1)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9.
- 김빛마로·홍병진·홍용기, 『기업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12.
- 김우철·구자은·송은주, 『주요국의 투자 관련 조세지원제도 비교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8.

- 김우현·윤성주·홍우형, 『2019 조세특례임의심층평가(Ⅲ)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9.
- 김정권·이태근·이일환·김동근·최주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비용효과 분석 방향 연구 - 시스템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
- 김준동·이성봉·김혁황, 『국내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 12.
- 김학수·박기백·손원익·전영준,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연구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9.
- 김학수·박노옥,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6.
- 노용환,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창업기업 생존효과 분석』, 『중소기업금융연구』 42(2), 2022, pp. 29~54.
- 대한민국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산업기술정책단, 『일본의 DX 투자촉진 조세제도(개정) 현황』, 2023.
-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신재생에너지 -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 찾는 투자 기회』, 2022, 10. 13.
- 이동규·송호신·김승래, 『2017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I) 중소기업이 지출한 특허비용 세액공제』,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이상엽·김빛마로·홍우형·윤성만,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XI)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9.
- 이상엽·한종석, 『2015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 신설』,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9.
- 장세롬·이종민·김종훈, 『2024년 연구개발전망조사 결과 분석』,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업기술혁신연구원, 2024.
- 장필성·황석원, 『산업기술 R&D의 경제사회적 효과 분석 및 제고 방안』, 『STEPI Insight』 232, 2019, pp. 1~27.
- 전용일·손동희·한응용,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과 고용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 『국제지역연구』 19(3), 2015, pp. 177~194.
- 전병목·송은주·이서현, 『혁신성장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연구』, 세법연구 21-0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12.
- 정훈·김동구,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국의 입법 전략과 국내

대응방안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2023. 12. 31.  
 중소기업벤처기업부·한국세무사회, 『2022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022.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2023사업연도 결산실적』, 2024. 4. 4.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연구』 제5판, 2008.  
 한국은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 결과』, 2024. 6. 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특례 성과평가 시 고용영향평가 수행 기준』

### <외국 문헌>

일본 경제산업성, 『令和6年度(2024年度)經濟産業關係 税制改正について』, 2023. 12.  
 \_\_\_\_\_, 『産業競争力強化法における事業適応計画について』, 2023.  
 \_\_\_\_\_, 『2050年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に伴うグリーン成長戦略』, 2020.  
 일본 재무성, 『租税特別措置の適用実態調査の結果に関する報告書』, 2024. 2. 6.  
 \_\_\_\_\_, 『令和6年度税制改正(案)のポイント』, 2024. 2.  
 \_\_\_\_\_, 『令和6年度税制改正の大綱の概要』, 2023.  
 經濟部産業發展署, 『産業創新條例第十條之二, 第七十二條修正總說明』, 2023.

Camisón-Zornoza, C., Lapiedra-Alcamí, R., Segarra-Ciprés, M., & Boronat-Navarro, M.,  
 “A Meta-analysis of Innovation and Organizational Size,” *Organization Studies*,  
 25(3), 2004, pp. 331~361.

CRS, “Energy Tax Credits and the Global Minimum Tax,” 2023. 7. 21.

Era Dabla-Norris, Florian Misch, Duncan Cleary, and Munawer Khwaja, “Tax  
 Administration and Firm Performance: New Data and Evidence for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IMF Working Paper, 2017/95

Hong, C., and Lee, J. D., “Macroeconomic effects of R&D tax credits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conomic Systems Research*, 28(4), 2016, pp. 467~481.

IBFD, “Canada’s Budget 2023: Business Tax Measures Support Green Economy,” 2023. 3. 31.

Laforet, S., “Organizational innovation outcomes in SMEs: Effects of age, size, and  
 sector,” *Journal of World business*, 48(4), 2013, pp. 490~502.

Lucking, B., Bloom, N., and Van Reenen, J., “Have R&D spillovers declined in the 21st  
 century?,” *Fiscal Studies*, 40(4), 2019, pp. 561~590.

- OECD, “Small Businesses, Job Creation and Growth: Facts, Obstacles and Best Practices,” 1997.
- \_\_\_\_\_,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23-September*, 2023. 9
- PWC, “Samil Global Tax Update,” August 2022.
- Saaty, T. L,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I, AHP series, RWS Publication, 1990.
- \_\_\_\_\_, “The Analytic Hierarchy and Analytic Network Measurement Process: Applications to Decisions under Risk,” *European Journal of Pure and Applied Mathematics*, Vol.1, No.1, 2008, pp. 122~196
- Santarelli, E., and Piergiovanni, R., “Analyzing literature-based innovation output indicators: the Italian experience,” *Research Policy*, 25(5), 1996, pp. 689~711.
- Stock, G. N., Greis, N. P., and Fischer, W. A., “Firm size and dynamic technological innovation,” *Technovation*, 22(9), 2002, pp. 537-549.
- Weichenrieder, A. J., and Windischbauer, H., “Thin-Capitalization Rules and Company Responses Experience from German Legislation,” CESifo Working Paper, No. 2456, 2008.
- Yair Holtzman, “U.S.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Credit,” *The CPA Journal*, 2017.10

#### <웹사이트>

- 국세청 국세통계, <https://stats.nts.go.kr>.
- 국세청, <http://www.nts.go.kr>.
- 기획재정부, <http://www.moef.go.kr>.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s://www.kotra.or.kr/>.
- 미국 IRS, <https://www.irs.gov/>.
- 미국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
- 미국 법전, <https://uscode.house.gov/>.
- 영국 법령시스템, <https://www.legislation.gov.uk/>.
- 영국 정부, <https://www.gov.uk/>.
-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
- 일본 법령시스템, <https://elaws.e-gov.go.jp/>.

일본 재무성, <https://www.mof.go.jp/>.

캐나다 정부, <https://www.canada.ca/>.

코넬 법률정보연구소, <https://www.law.cornell.edu/>.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

호주 정부 기업 지원 웹사이트, <https://business.gov.au/>

# 부 록





## <부록 1>

###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예비타당성평가 AHP 분석을 위한 설문

본 설문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관련 조세특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평가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를 전문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의 일관성이 낮은 경우 설문을 다시 하게 되오니 신중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성 명 : \_\_\_\_\_ (서 명)

소 속 : \_\_\_\_\_

직 위 : \_\_\_\_\_

연락처 : ☎ \_\_\_\_\_ E-mail: \_\_\_\_\_

#### AHP(계층화 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는

평가에서 고려되는 평가항목들을 계층화한 다음, 평가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여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의사결정 기법입니다.

#### ◎ 설문작성시 유의사항 ◎

첫째, 본 설문지는 연구진이 선정한 최적대안에 대하여 ‘제도 도입’, ‘제도 미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둘째, 평가항목 간 비교는 평가항목 A가 B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또는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셋째, p. 2~7에서 제시하는 평가 요령, 평가항목의 계층구조와 평가내용, 평가결과 요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설문에 응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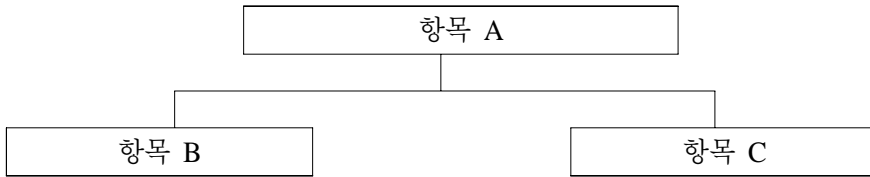
# 1. AHP 설문 응답 시 유의사항

## 1. 응답 예

예) 항목 A의 평가기준에서 판단할 때 항목 B가 항목 C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래와 같이 기입하면 됩니다.

평가 항목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 요	약간 중요	같 다	약간 중요	중 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평가 항목								
항목 B	⑨	⑧	⑦ ☑ ✓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항목 C

[그림 1] 평가 예



## 2. 응답 일관도

□ AHP 분석에서는 분석의 부산물로 비일관도 지수가 생성됩니다. 비일관도 지수가 0.15 이상이 될 경우 응답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재설문하게 됩니다. 비일관도 지수가 높게 나오는 데는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가 해당됩니다.

[원인 1] 서수적 일관성 결여(A > B > C의 순위가 바뀌게 응답)

예) A가 B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B가 C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을 경우  
A가 C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응답할 경우  
※ A > B, B > C → A > C라고 응답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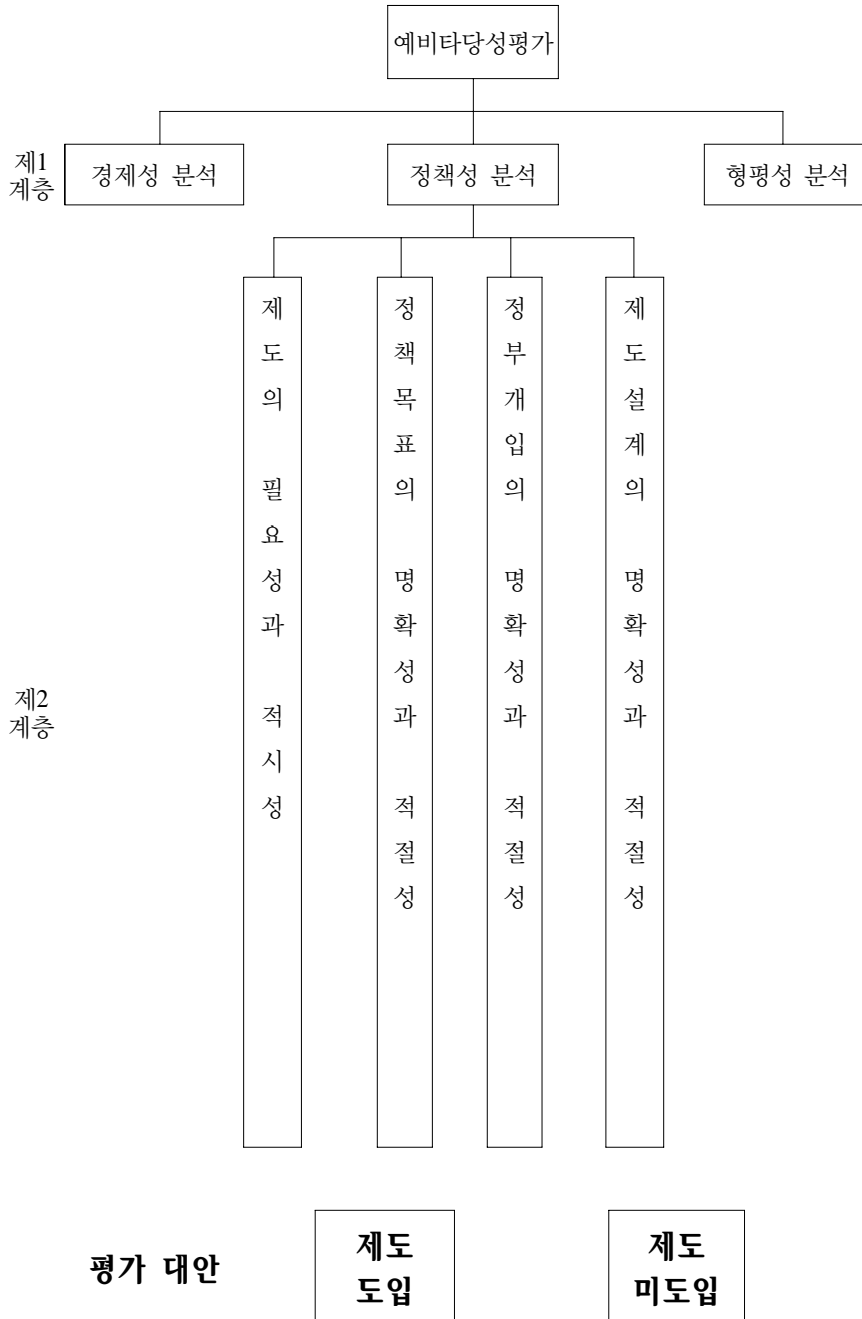
[원인 2] 기수적 일관성 결여

예) A가 B보다 2배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A가 C보다 4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을  
경우, B가 C보다 2배 중요하다고 응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B가 C보다 9배 중  
요하다고 응답할 경우

※ 상대적 중요도 평가 설문은 특히 응답일관도에 유념하여 설문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 2. AHP 평가구조 및 평가내용

[그림 2]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예비타당성평가의 AHP 계층 구조



〈표 1〉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예비타당성평가의 AHP  
평가항목 요약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점기준
경제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 측면에서의 제도 도입 타당성</li> <li>○ 비용-편익 분석 결과의 타당성</li> <li>○ 비용-편익 분석 활용 근거의 타당성</li> </ul>	연구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평가자의 개인 의견을 종합하여 정성적으로 판단
<b>정책성 분석</b>		
제도의 필요성과 적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 개편의 필요성</li> <li>○ 제도 개편의 적시성</li> <li>○ 여타 제도와의 중복성</li> </ul>	연구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평가자의 개인 의견을 종합하여 정성적으로 판단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목표의 적절성</li> <li>○ 정책목표와의 일치성</li> </ul>	
정부개입의 명확성과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개입의 필요성</li> <li>○ 정부개입의 적절성</li> </ul>	
제도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요소의 명확성</li> <li>○ 유인제공의 명확성</li> <li>○ 제도설계의 적절성</li> </ul>	
형평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평성 측면에서의 제도 도입 타당성</li> </ul>	연구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평가자의 개인 의견을 종합하여 정성적으로 판단

### 3. AHP 평가를 위한 설문(가중치 선정)

□ 다음 설문 I은 p. 3. 구조도 중 제1계층인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그리고 형평성 분석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제도에 있어서 어느 요인이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신중히 판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I. 본 제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형평성 분석 간의 상대적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100점 만점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 45 : 35 : 20)

- 아래 <표 2>의 가중치 산정범위 안에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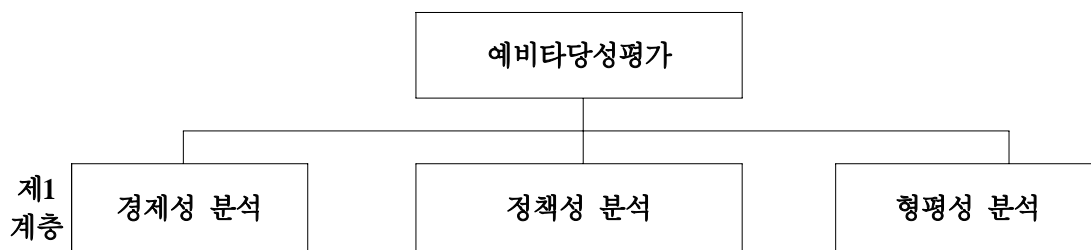
경제성 분석 : 정책성 분석 : 형평성 분석 = \_\_\_\_\_ : \_\_\_\_\_ : \_\_\_\_\_

<표 2> 가중치 산정범위

(단위: %)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형평성 분석
30 ~ 50	30 ~ 40	20 ~ 30

[그림 3] 제1계층 중요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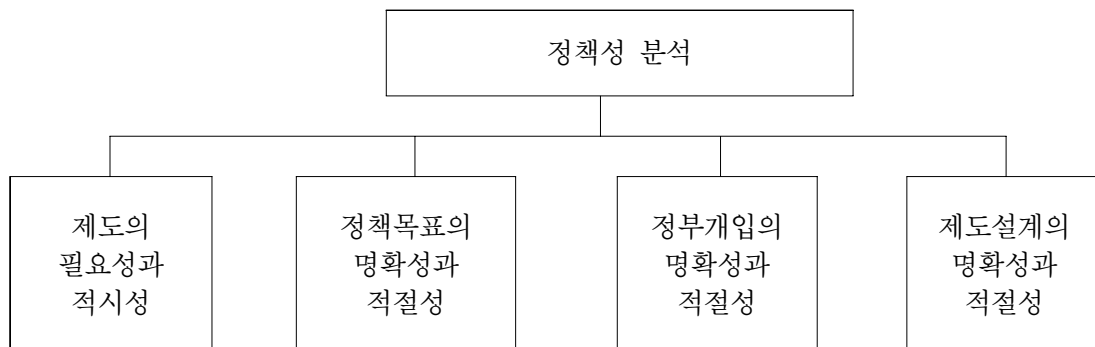


□ 설문 II는 제2계층의 평가항목들 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신중히 응답해 주십시오(p. 2의 응답 시 유의사항 참조).

II. 제2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정책성 분석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항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제도의 필요성과 적시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제도의 필요성과 적시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정부개입의 명확성과 적절성
제도의 필요성과 적시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제도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정부개입의 명확성과 적절성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제도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정부개입의 명확성과 적절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제도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그림 4] 제2계층 중요도 평가



#### 4. AHP 평가를 위한 설문(평점 부여)

□ 다음 설문 III은 본 제도의 도입과 미도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도를 도입하는 대안(제도 도입)과 도입하지 않는 대안(제도 미도입)중 어느 대안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숫자에 √표 하십시오.

III. 각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제도 도입 대안이 제도 미도입 대안보다 얼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항목	대안	절대적절	매우적절	적절	약간적절	같다	약간적절	적절	매우적절	절대적절	대안								
경제성 분석	제도 도입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제도 미도입
제도의 필요성과 적시성	제도 도입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제도 미도입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제도 도입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제도 미도입
정부개입의 명확성과 적절성	제도 도입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제도 미도입
제도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제도 도입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제도 미도입
형평성 분석	제도 도입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제도 미도입

IV. 본 제도는 각 분석의 관점에서 제도 도입 대안이 제도 미도입 대안보다 얼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점 만점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 55 : 45)

제도 도입 : 제도 미도입 = \_\_\_\_\_ : \_\_\_\_\_

◆ 수 고 하 셴 습 니 다 ◆

<부록 2>

---

「일반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서

---

2024. 6.

목 차

<b>I. 서론</b> .....	<b>165</b>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	165
2. 조사 설계 .....	165
3. 조사 내용 .....	166
4. 응답자 특성 .....	166
<b>II. 조사결과</b> .....	<b>167</b>
1. 기업 일반현황 .....	167
1) 설립연도 .....	167
2) 기업유형 .....	169
3) 기업규모 .....	170
4) 주식시장 상장유형 .....	171
5) 결산 월 .....	172
6) 상시근로자 수 .....	173
7) 업종 .....	175
8) 업태 .....	177
2. 기업 R&D 투자 요인 .....	179
1) 기업투자 결정요인 .....	179
2) 투자시기 결정요인 .....	183
3) 투자위치 결정요인 .....	187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인식 및 활용 .....	191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경험 .....	191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행 인지 여부 .....	193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알지 못한 이유 .....	195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이유 .....	198
5) 연구·인력개발에 지출한 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경험 .....	201
6) 연구·인력개발에 지출한 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받지 않은 이유 .....	203
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따른 투자 활성화 여부 .....	206

8)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	208
9)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따른 연구인력 양적성장 도움 여부 .....	211
10) 연구인력 양적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	213
1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따른 연구인력 질적성장 도움 여부 .....	216
12) 연구인력 질적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	218
1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혜택을 받은 항목 .....	221
14) 항목별 비용분포_일반(당기분) .....	225
14) 항목별 비용분포_일반(증가분) .....	226
14) 항목별 비용분포_신성장·원천기술 .....	227
14) 항목별 비용분포_국가전략기술 .....	228
15) 증가분이 아닌 당기분을 선택한 이유(중복응답) .....	229
16) 당기분 방식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기 위한 증가분 수준 .....	231
17) 실제 지출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지출 수준 .....	233
18) 실제 고용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고용 수준 .....	237
19) 일반분야 증가분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발비 및 고용 수준 .....	241
20) 일반분야 당기분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발비 및 고용수준 수준 .....	244
21) 일반분야 증가분 세액공제율이 일괄적으로 1% 향상될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발비 및 고용 수준 .....	247
22) 한시적으로 일반분야 증가분 방식의 세액공제율이 10%p 향상될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발비 및 고용 수준 .....	250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개선방향 .....	253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통한 현행 조세지원 수준 .....	253
2) 조세지원 축소 비율 .....	255
3) 조세지원 확대 비율 .....	257
4)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	259

### III. 설문지 ..... 261

# I. 서론

##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기획재정부 조세지출 심층평가의 일환으로 「일반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에 대한 조사」에 대한 연구와 함께 평가의 일부로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함
- 금융업을 제외한 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 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그동안 해당 제도의 운영성과 평가와 함께 향후 제도 개선방향 등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함

## 2. 조사 설계

- 본 조사는 전국의 금융업을 제외한 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정량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구체적인 조사 설계는 아래와 같음

<부표 I -1> 조사 설계

구분	일반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에 대한 조사
조사 대상	금융업을 제외한 영리법인
표본수	172명(중소기업 95개, 중견기업 53개, 대기업 24개)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
조사 기간	2024년 4월 19일 ~ 5월 19일
조사 기관	(주)리서치앤리서치

### 3. 조사 내용

설문조사 대상별로 주요 설문 항목은 아래와 같음

<부표 I -2> 주요 설문조사 세부 항목

구 분	세부 항목
설문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일반현황</li> <li>○ 기업 R&amp;D 투자 요인</li> <li>○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인식 및 활용</li> <li>○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개선방향</li> </ul>

### 4. 응답자 특성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음

<부표 I -3> 기업유형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중
전 체		172	100.0
기업규모	중소기업	95	55.2
	중견기업	53	30.8
	대기업	24	14.0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20	11.6
	KOSDAQ시장 상장	31	18.0
	KONEX시장 상장	3	1.7
	비상장	118	68.6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80	46.5
	없음	92	53.5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21	12.2
	6~10명 이하	17	9.9
	11~30명 이하	44	25.6
	31~100명 이하	32	18.6
	101~300명 이하	30	17.4
	300명 초과	28	16.3

## II.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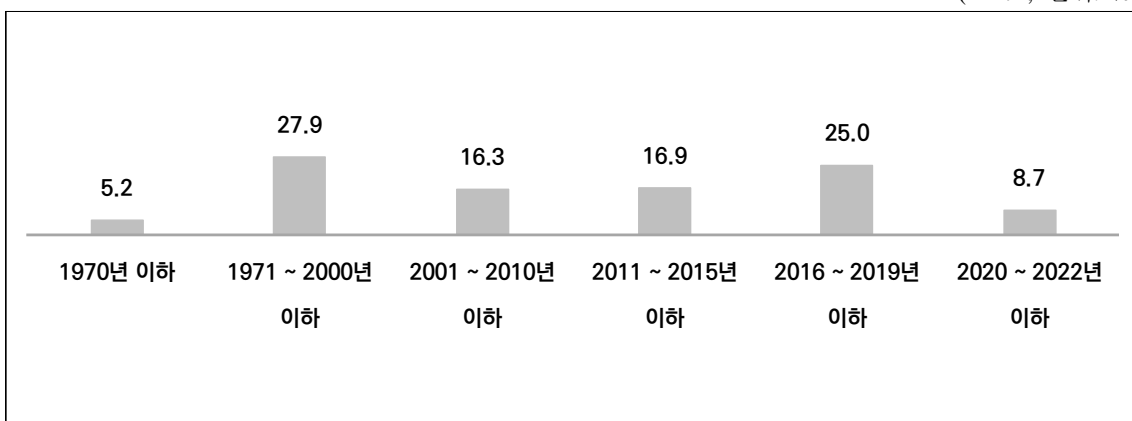
### 1. 기업 일반현황

#### 1) 설립연도

- 설립연도에 대해 알아본 결과, '1971~2000년 이하'가 27.9%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2016~2019년 이하'(25.0%), '2001~2010년 이하'(16.3%)로 나타남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2016~2019년 이하'(42.1%)에서 '중견기업'은 '1971~2000년 이하'(58.5%)에서 대기업은 '1971~2000년 이하'(41.7%)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별로 살펴보면 '있음'은 '1971~2000년 이하'(31.3%)에서 가장 높았고, '없음'은 '1971~2000년 이하'(25.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부도 II -1] 설립연도

(n=172, 단위: %)



<부표 II -1> 설립연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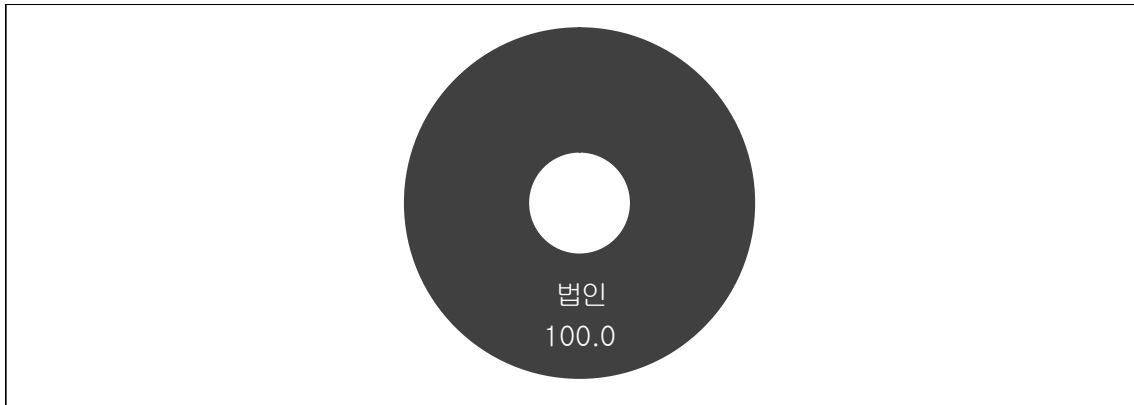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1970년 이하	1971~ 2000년 이하	2001~ 2010년 이하	2011~ 2015년 이하	2016~ 2019년 이하	2020~ 2022년 이하
전 체		(172)	5.2	27.9	16.3	16.9	25.0	8.7
기업규모	중소기업	(95)	0.0	7.4	13.7	22.1	42.1	14.7
	중견기업	(53)	13.2	58.5	15.1	7.5	5.7	0.0
	대기업	(24)	8.3	41.7	29.2	16.7	0.0	4.2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20)	20.0	55.0	10.0	5.0	5.0	5.0
	KOSDAQ시장 상장	(31)	6.5	67.7	22.6	0.0	3.2	0.0
	KONEX시장 상장	(3)	0.0	0.0	66.7	0.0	33.3	0.0
	비상장	(118)	2.5	13.6	14.4	23.7	33.9	11.9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80)	3.8	31.3	16.3	15.0	26.3	7.5
	없음	(92)	6.5	25.0	16.3	18.5	23.9	9.8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21)	0.0	4.8	4.8	19.0	47.6	23.8
	6~10명 이하	(17)	0.0	5.9	5.9	29.4	41.2	17.6
	11~30명 이하	(44)	0.0	6.8	20.5	22.7	38.6	11.4
	31~100명 이하	(32)	6.3	18.8	25.0	25.0	21.9	3.1
	101~300명 이하	(30)	3.3	76.7	16.7	3.3	0.0	0.0
	300명 초과	(28)	21.4	50.0	14.3	3.6	7.1	3.6

## 2) 기업유형

□ 기업유형에 대해 알아본 결과, ‘법인’이 100%로 나타남

[부도 II -2] 기업유형

(n=172, 단위: %)



<부표 II -2> 기업유형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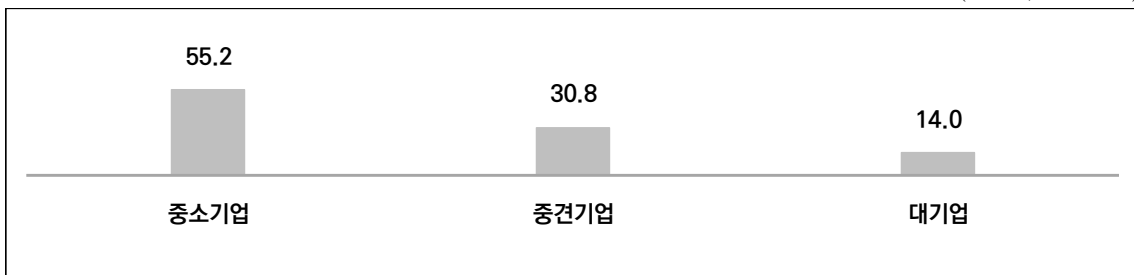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법인
전체	(172)	100.0
기업규모	중소기업	(95) 100.0
	중견기업	(53) 100.0
	대기업	(24) 100.0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20) 100.0
	KOSDAQ시장 상장	(31) 100.0
	KONEX시장 상장	(3) 100.0
	비상장	(118) 100.0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80) 100.0
	없음	(92) 100.0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21) 100.0
	6~10명 이하	(17) 100.0
	11~30명 이하	(44) 100.0
	31~100명 이하	(32) 100.0
	101~300명 이하	(30) 100.0
	300명 초과	(28) 100.0

### 3) 기업규모

- 기업규모에 대해 알아본 결과, ‘중소기업’이 55.2%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30.8%), ‘대기업’(14.0%) 순으로 나타남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수혜 여부별로 살펴보면 ‘있음’은 ‘중소기업’(60.0%)에서 가장 높았고, ‘없음’도 ‘중소기업’(51.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부도 II -3] 기업규모

(n=172, 단위: %)



<부표 II -3> 기업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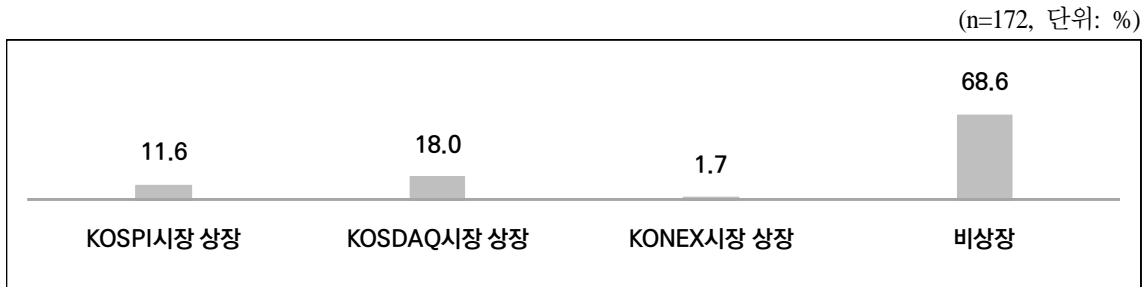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전 체		(172)	55.2	30.8	14.0
기업규모	중소기업	(95)	100.0	0.0	0.0
	중견기업	(53)	0.0	100.0	0.0
	대기업	(24)	0.0	0.0	100.0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20)	0.0	65.0	35.0
	KOSDAQ시장 상장	(31)	12.9	80.6	6.5
	KONEX시장 상장	(3)	100.0	0.0	0.0
	비상장	(118)	74.6	12.7	12.7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80)	60.0	32.5	7.5
	없음	(92)	51.1	29.3	19.6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21)	95.2	0.0	4.8
	6~10명 이하	(17)	94.1	0.0	5.9
	11~30명 이하	(44)	81.8	6.8	11.4
	31~100명 이하	(32)	59.4	25.0	15.6
	101~300명 이하	(30)	10.0	80.0	10.0
	300명 초과	(28)	3.6	64.3	32.1

#### 4) 주식시장 상장유형

- 주식시장 상장유형에 대해 알아본 결과, ‘비상장’이 68.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KOSDAQ 시장상장’(18.0%), ‘KOSPI 시장상장’(11.6%), ‘KONEX 시장상장’(1.7%) 순으로 나타남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비상장’(92.6%)에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은 ‘KOSDAQ 시장상장’(47.2%), ‘대기업’은 ‘비상장’(62.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수혜 여부별로 살펴보면 ‘있음’은 ‘비상장’(61.3%)에서 가장 높았고, ‘없음’은 ‘비상장’(75.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부도 II -4] 주식시장 상장유형



<부표 II -4> 주식시장 상장유형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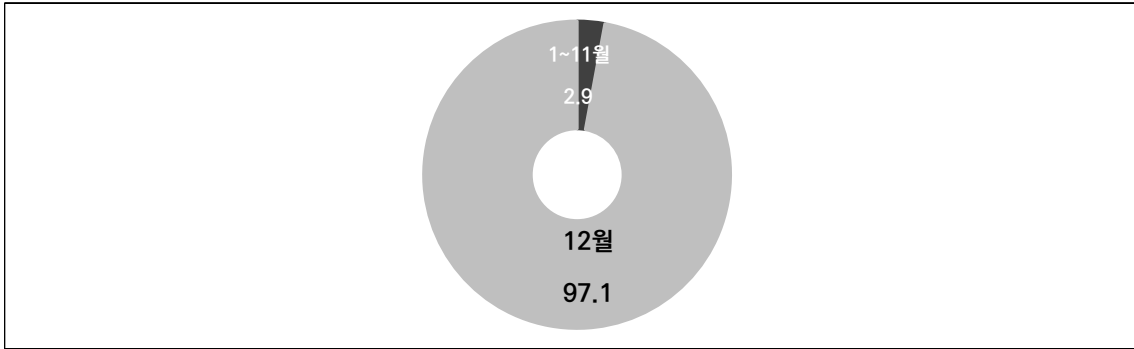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KOSPI 시장 상장	KOSDAQ 시장 상장	KONEX 시장 상장	비상장	
전 체	(172)	11.6	18.0	1.7	68.6	
기업규모	중소기업	(95)	0.0	4.2	3.2	92.6
	중견기업	(53)	24.5	47.2	0.0	28.3
	대기업	(24)	29.2	8.3	0.0	62.5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20)	100.0	0.0	0.0	0.0
	KOSDAQ시장 상장	(31)	0.0	100.0	0.0	0.0
	KONEX시장 상장	(3)	0.0	0.0	100.0	0.0
	비상장	(118)	0.0	0.0	0.0	100.0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80)	12.5	25.0	1.3	61.3
	없음	(92)	10.9	12.0	2.2	75.0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21)	0.0	0.0	0.0	100.0
	6~10명 이하	(17)	0.0	0.0	0.0	100.0
	11~30명 이하	(44)	2.3	2.3	2.3	93.2
	31~100명 이하	(32)	3.1	15.6	6.3	75.0
	101~300명 이하	(30)	6.7	60.0	0.0	33.3
	300명 초과	(28)	57.1	25.0	0.0	17.9

## 5) 결산 월

- 결산월에 대해 알아본 결과, ‘12월’이 97.1%로 압도적으로 나타남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모두 ‘12월’이 90.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나타남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별로 살펴보면 ‘있음’, ‘없음’ 모두 ‘12월’이 90.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나타남

[부도 II -5] 결산 월

(n=172, 단위: %)



<부표 II -5> 결산 월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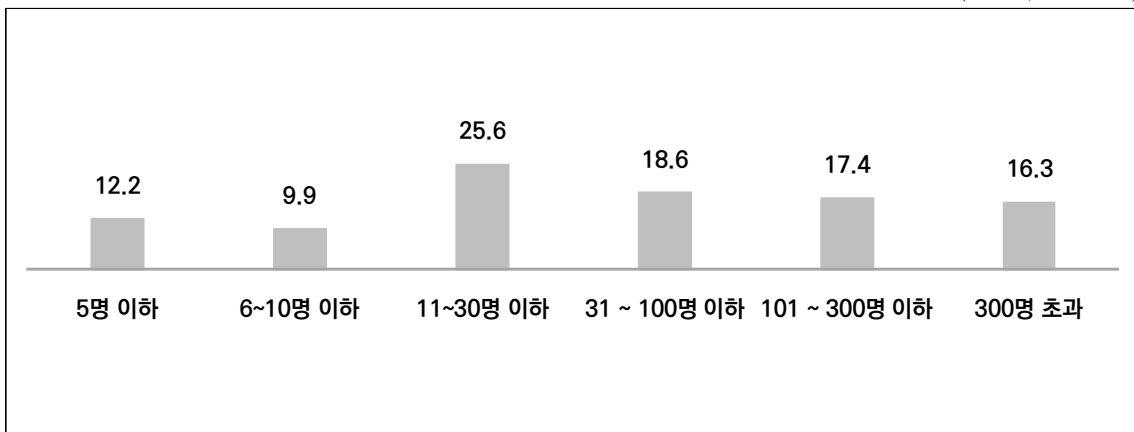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1~11월	12월
전 체		(172)	2.9	97.1
기업규모	중소기업	(95)	3.2	96.8
	중견기업	(53)	3.8	96.2
	대기업	(24)	0.0	100.0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20)	5.0	95.0
	KOSDAQ시장 상장	(31)	0.0	100.0
	KONEX시장 상장	(3)	0.0	100.0
	비상장	(118)	3.4	96.6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80)	2.5	97.5
	없음	(92)	3.3	96.7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21)	4.8	95.2
	6~10명 이하	(17)	5.9	94.1
	11~30명 이하	(44)	2.3	97.7
	31~100명 이하	(32)	3.1	96.9
	101~300명 이하	(30)	0.0	100.0
	300명 초과	(28)	3.6	96.4

## 6) 상시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알아본 결과, ‘11~30명 이하’가 2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31~100명 이하’(18.6%), ‘101~300명 이하’(1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11~30명 이하’(37.9%)에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은 ‘101~300명 이하’(45.3%), ‘대기업’은 ‘300명 초과’(37.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수혜 여부별로 살펴보면 ‘있음’은 ‘101~300명 이하’(22.5%)에서 가장 높았고, ‘없음’은 ‘11~30명 이하’(29.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부도 II -6] 상시근로자 수

(n=172, 단위: %)



<부표 II -6> 상시근로자 수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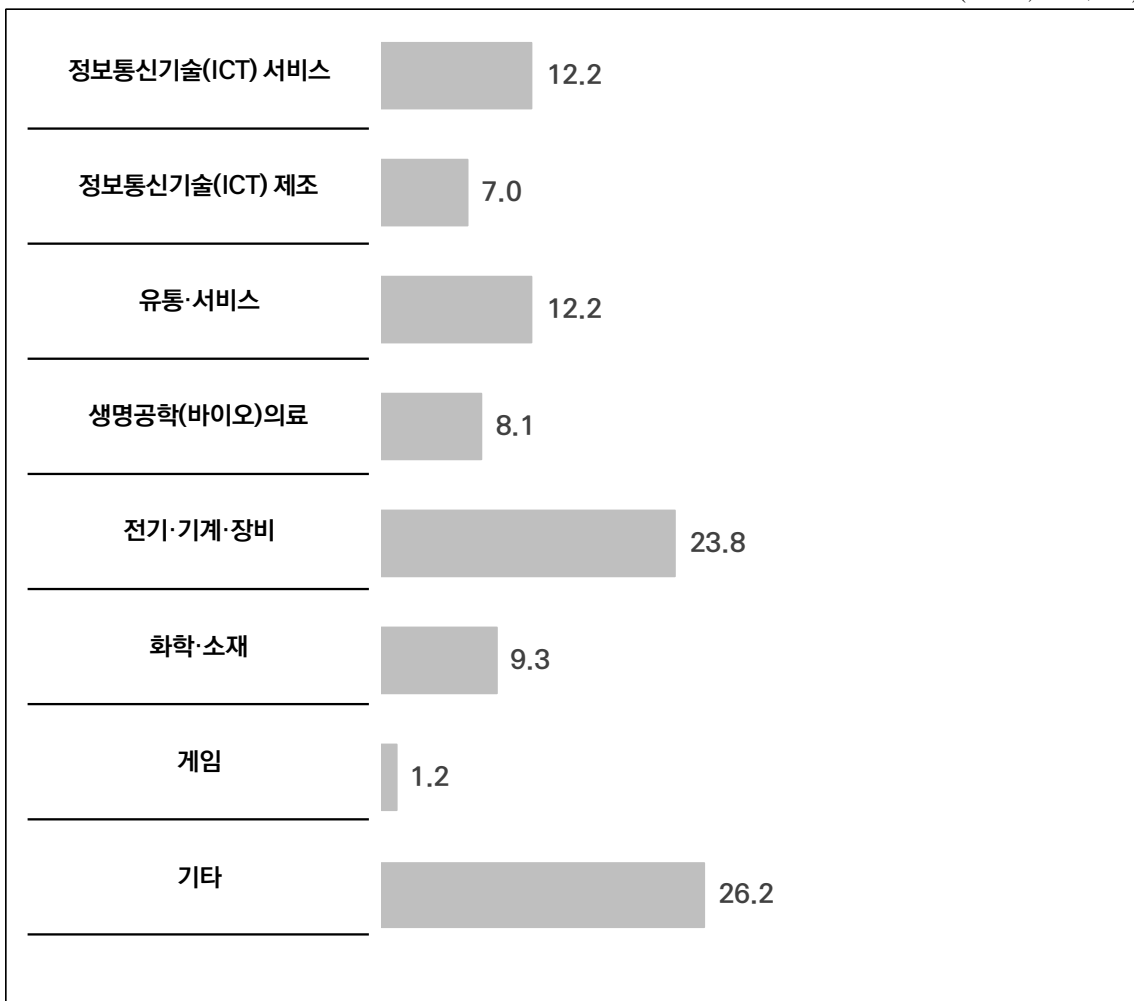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5명 이하	6~10명 이하	11~30명 이하	31~100명 이하	101~300명 이하	300명 초과
전 체		(172)	12.2	9.9	25.6	18.6	17.4	16.3
기업규모	중소기업	(156)	21.1	16.8	37.9	20.0	3.2	1.1
	중견기업	(89)	0.0	0.0	5.7	15.1	45.3	34.0
	대기업	(23)	4.2	4.2	20.8	20.8	12.5	37.5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28)	0.0	0.0	5.0	5.0	10.0	80.0
	KOSDAQ시장 상장	(10)	0.0	0.0	3.2	16.1	58.1	22.6
	KONEX시장 상장	(4)	0.0	0.0	33.3	66.7	0.0	0.0
	비상장	(226)	17.8	14.4	34.7	20.3	8.5	4.2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45)	7.5	11.3	21.3	17.5	22.5	20.0
	없음	(223)	16.3	8.7	29.3	19.6	13.0	13.0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26)	100.0	0.0	0.0	0.0	0.0	0.0
	6~10명 이하	(31)	0.0	100.0	0.0	0.0	0.0	0.0
	11~30명 이하	(62)	0.0	0.0	100.0	0.0	0.0	0.0
	31~100명 이하	(65)	0.0	0.0	0.0	100.0	0.0	0.0
	101~300명 이하	(47)	0.0	0.0	0.0	0.0	100.0	0.0
	300명 초과	(37)	0.0	0.0	0.0	0.0	0.0	100.0

## 7) 업종

- 업종에 대해 알아본 결과, ‘기타’가 26.2%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전기·기계·장비’(2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에서는 ‘전기·기계·장비’가 22.1%,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기타’가 각 50.9%,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남

[부도 II -7] 산업분류

(n=172, 단위: %)



<부표 II -7> 업종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 체		(172)	12.2	7.0	12.2	8.1	23.8	9.3	1.2	26.2
기업규모	중소기업	(95)	21.1	11.6	11.6	12.6	22.1	10.5	2.1	8.4
	중견기업	(53)	1.9	0.0	11.3	1.9	30.2	3.8	0.0	50.9
	대기업	(24)	0.0	4.2	16.7	4.2	16.7	16.7	0.0	41.7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20)	0.0	0.0	5.0	5.0	20.0	10.0	0.0	60.0
	KOSDAQ시장 상장	(31)	0.0	3.2	9.7	3.2	48.4	3.2	0.0	32.3
	KONEX시장 상장	(3)	0.0	33.3	0.0	0.0	33.3	33.3	0.0	0.0
	비상장	(118)	17.8	8.5	14.4	10.2	17.8	10.2	1.7	19.5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80)	11.3	6.3	5.0	13.8	32.5	8.8	0.0	22.5
	없음	(92)	13.0	7.6	18.5	3.3	16.3	9.8	2.2	29.3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21)	19.0	14.3	19.0	9.5	23.8	0.0	0.0	14.3
	6~10명 이하	(17)	35.3	5.9	5.9	23.5	23.5	5.9	0.0	0.0
	11~30명 이하	(44)	15.9	11.4	9.1	13.6	18.2	15.9	2.3	13.6
	31~100명 이하	(32)	9.4	6.3	21.9	0.0	15.6	15.6	3.1	28.1
	101~300명 이하	(30)	0.0	3.3	13.3	3.3	36.7	6.7	0.0	36.7
	300명 초과	(28)	3.6	0.0	3.6	3.6	28.6	3.6	0.0	57.1

- ①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 ② 정보통신기술(ICT) 제조
- ③ 유통·서비스
- ④ 생명공학(바이오)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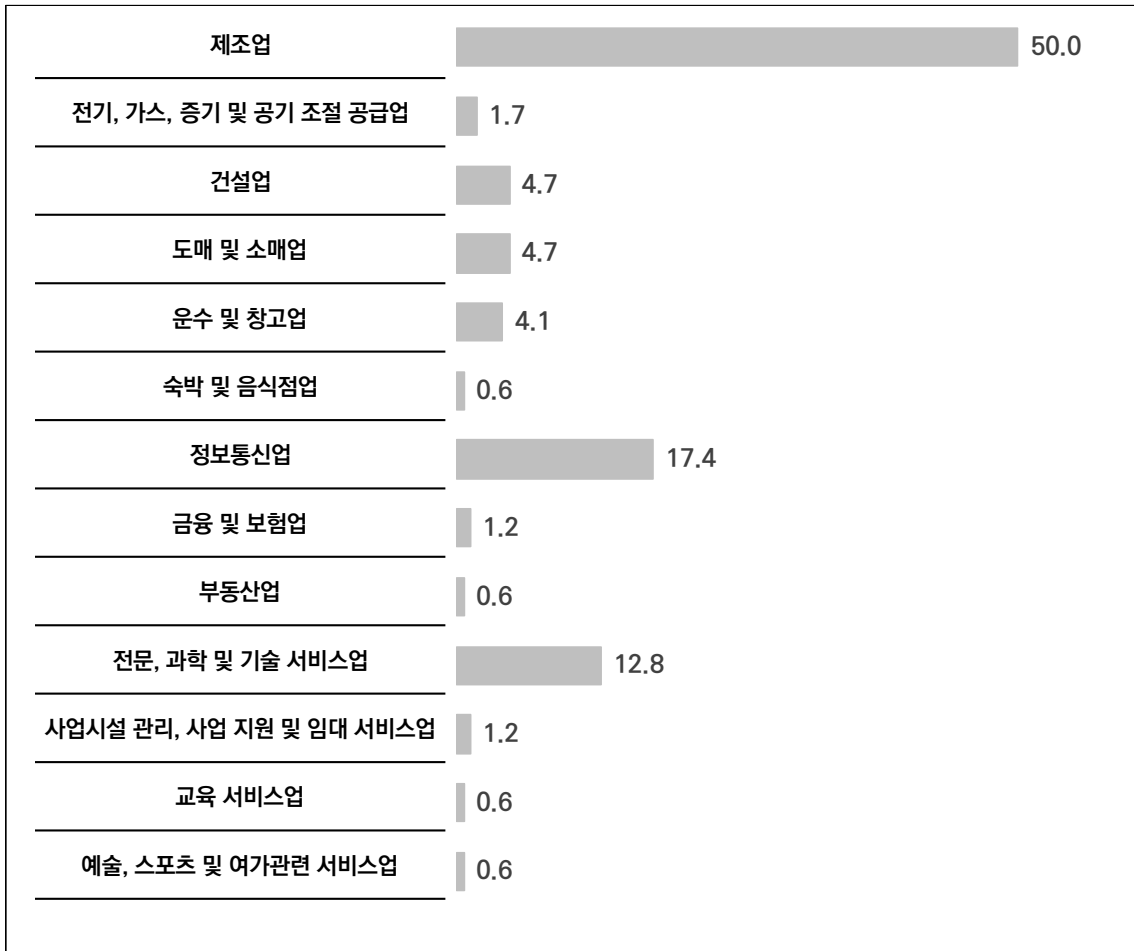
- ⑤ 전기·기계·장비
- ⑥ 화학·소재
- ⑦ 게임
- ⑧ 기타

## 8) 업태

- 산업분류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제조업’이 50.0%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정보통신업’(17.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45.3%)’, ‘중견기업’(54.7%), ‘대기업’(58.3%) 모두 ‘제조업’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수혜 여부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있음’에서 62.5%, ‘없음’에서 39.1%로 나타남

[부도 II -8] 업태

(n=172, 단위: %)



<부표 II -8> 업태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전 체		(172)	50.0	1.7	4.7	4.7	4.1	0.6	17.4	1.2	0.6	12.8	1.2	0.6	0.6
기업규모	중소기업	(95)	45.3	1.1	0.0	3.2	0.0	0.0	26.3	0.0	0.0	23.2	0.0	1.1	0.0
	중견기업	(53)	54.7	0.0	15.1	9.4	7.5	1.9	5.7	3.8	0.0	0.0	0.0	0.0	1.9
	대기업	(24)	58.3	8.3	0.0	0.0	12.5	0.0	8.3	0.0	4.2	0.0	8.3	0.0	0.0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20)	60.0	0.0	10.0	10.0	5.0	0.0	0.0	5.0	0.0	0.0	5.0	0.0	5.0
	KOSDAQ시장 상장	(31)	83.9	0.0	6.5	3.2	0.0	0.0	3.2	0.0	0.0	3.2	0.0	0.0	0.0
	KONEX시장 상장	(3)	66.7	0.0	0.0	0.0	0.0	0.0	0.0	0.0	0.0	33.3	0.0	0.0	0.0
	비상장	(118)	39.0	2.5	3.4	4.2	5.1	0.8	24.6	0.8	0.8	16.9	0.8	0.8	0.0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80)	62.5	1.3	3.8	1.3	0.0	0.0	15.0	0.0	0.0	16.3	0.0	0.0	0.0
	없음	(92)	39.1	2.2	5.4	7.6	7.6	1.1	19.6	2.2	1.1	9.8	2.2	1.1	1.1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21)	42.9	0.0	0.0	14.3	0.0	0.0	28.6	0.0	0.0	9.5	4.8	0.0	0.0
	6~10명 이하	(17)	29.4	5.9	0.0	0.0	0.0	0.0	29.4	0.0	0.0	29.4	0.0	5.9	0.0
	11~30명 이하	(44)	45.5	2.3	0.0	4.5	4.5	0.0	22.7	2.3	0.0	18.2	0.0	0.0	0.0
	31~100명 이하	(32)	37.5	3.1	6.3	0.0	3.1	3.1	18.8	3.1	3.1	21.9	0.0	0.0	0.0
	101~300명 이하	(30)	73.3	0.0	10.0	6.7	3.3	0.0	6.7	0.0	0.0	0.0	0.0	0.0	0.0
	300명 초과	(28)	64.3	0.0	10.7	3.6	10.7	0.0	3.6	0.0	0.0	0.0	3.6	0.0	3.6

- ① 제조업
- ②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③ 건설업
- ④ 도매 및 소매업
- ⑤ 운수 및 창고업
- ⑥ 숙박 및 음식점업
- ⑦ 정보통신업
- ⑧ 금융 및 보험업
- ⑨ 부동산업
- ⑩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⑪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⑫ 교육 서비스업
- ⑬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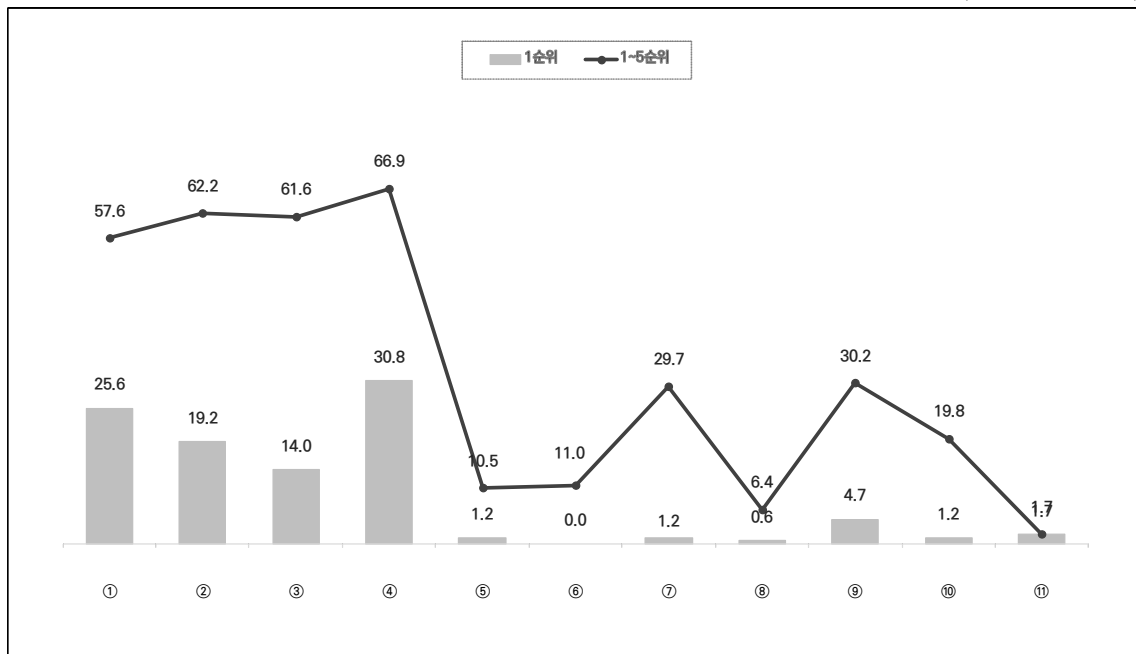
## 2. 기업 R&D 투자 요인

### 1) 기업투자 결정요인

- 기업투자 결정요인에 대해 알아본 결과 1순위, 1~5순위 모두 ‘기술 투자로부터 기대 가능한 미래 성과: 투자 시 기대되는 수익, 생산성, 시장점유율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1순위에서 ‘현재 기업이 직면하는 재무적 제약: 부채 비율, 현금 비중 등’(28.4%)에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은 ‘기술 투자로부터 기대 가능한 미래 성과: 투자 시 기대되는 수익, 생산성, 시장점유율 등’(39.6%), ‘대기업’은 ‘기술 투자로부터 기대 가능한 미래 성과: 투자 시 기대되는 수익, 생산성, 시장점유율 등’(33.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별로 살펴보면 1순위에서 ‘있음’은 ‘기술 투자로부터 기대 가능한 미래 성과: 투자 시 기대되는 수익, 생산성, 시장점유율 등’(41.3%)에서 가장 높았고, ‘현재 기업이 직면하는 재무적 제약: 부채 비율, 현금 비중 등’(30.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부도 II -9] 기업투자 결정요인

(n=172, 단위: %)



<부표 II -9> 기업투자 결정요인(1순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전 체		(172)	25.6	19.2	14.0	30.8	1.2	0.0	1.2	0.6	4.7	1.2	1.7
기업규모	중소기업	(95)	28.4	27.4	8.4	25.3	0.0	0.0	1.1	1.1	7.4	1.1	0.0
	중견기업	(53)	26.4	9.4	17.0	39.6	1.9	0.0	1.9	0.0	1.9	0.0	1.9
	대기업	(24)	12.5	8.3	29.2	33.3	4.2	0.0	0.0	0.0	0.0	4.2	8.3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20)	20.0	10.0	25.0	45.0	0.0	0.0	0.0	0.0	0.0	0.0	0.0
	KOSDAQ시장 상장	(31)	16.1	22.6	19.4	32.3	0.0	0.0	3.2	0.0	3.2	0.0	3.2
	KONEX시장 상장	(3)	66.7	33.3	0.0	0.0	0.0	0.0	0.0	0.0	0.0	0.0	0.0
	비상장	(118)	28.0	19.5	11.0	28.8	1.7	0.0	0.8	0.8	5.9	1.7	1.7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80)	20.0	15.0	12.5	41.3	0.0	0.0	2.5	1.3	5.0	1.3	1.3
	없음	(92)	30.4	22.8	15.2	21.7	2.2	0.0	0.0	0.0	4.3	1.1	2.2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21)	52.4	14.3	9.5	19.0	0.0	0.0	0.0	0.0	0.0	4.8	0.0
	6~10명 이하	(17)	23.5	29.4	5.9	5.9	0.0	0.0	0.0	5.9	23.5	0.0	5.9
	11~30명 이하	(44)	18.2	31.8	9.1	34.1	0.0	0.0	0.0	0.0	4.5	2.3	0.0
	31~100명 이하	(32)	21.9	12.5	15.6	40.6	3.1	0.0	3.1	0.0	3.1	0.0	0.0
	101~300명 이하	(30)	23.3	13.3	26.7	30.0	0.0	0.0	0.0	0.0	3.3	0.0	3.3
	300명 초과	(28)	25.0	10.7	14.3	39.3	3.6	0.0	3.6	0.0	0.0	0.0	3.6

- ① 현재 기업이 직면하는 재무적 제약: 부채 비율, 현금 비중 등
- ② 현재 기업의 보유 기술 수준: 기술의 복잡성, 독보성 등
- ③ 기업의 현재 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시장점유율, 생산성 등
- ④ 기술 투자로부터 기대 가능한 미래 성과: 투자 시 기대되는 수익, 생산성, 시장점유율 등
- ⑤ 기업지배구조: 경영자원의 조달과 운용 및 수익의 분배 등에 대한 의사결정과정과 이에 대한 감시기능
- ⑥ 거시적 환경 및 경제 여건: 경제성장률, 금리, 환율 등
- ⑦ 관련 산업 경쟁수준: 경쟁사 보유 기술 및 관련 투자 상황, 시장 규모 대비 경쟁 기업 수 등
- ⑧ 관련 산업 규율 및 규제: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 절차, 동물 실험 금지, ISO 및 KS 인증 범위 등
- ⑨ 연구개발 관련 재정 지원(R&D 투자 보조금 직접 지원, 기술보증 등)
- ⑩ 연구개발 관련 조세 지원(R&D 세액공제 등)
- ⑪ 기타

<부표 II -10> 기업투자 결정요인(1~5순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전 체		(172)	57.6	62.2	61.6	66.9	10.5	11.0	29.7	6.4	30.2	19.8	1.7
기업규모	중소기업	(95)	58.9	68.4	56.8	65.3	10.5	7.4	25.3	3.2	38.9	22.1	0.0
	중견기업	(53)	60.4	50.9	66.0	69.8	9.4	17.0	30.2	11.3	24.5	18.9	1.9
	대기업	(24)	45.8	62.5	70.8	66.7	12.5	12.5	45.8	8.3	8.3	12.5	8.3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20)	60.0	70.0	80.0	90.0	0.0	15.0	45.0	10.0	20.0	10.0	0.0
	KOSDAQ시장 상장	(31)	48.4	51.6	64.5	64.5	9.7	19.4	38.7	12.9	32.3	22.6	3.2
	KONEX시장 상장	(3)	66.7	66.7	0.0	66.7	0.0	0.0	0.0	0.0	33.3	0.0	0.0
	비상장	(118)	59.3	63.6	59.3	63.6	12.7	8.5	25.4	4.2	31.4	21.2	1.7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80)	52.5	56.3	68.8	71.3	3.8	7.5	36.3	8.8	40.0	27.5	1.3
	없음	(92)	62.0	67.4	55.4	63.0	16.3	14.1	23.9	4.3	21.7	13.0	2.2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21)	85.7	61.9	76.2	66.7	19.0	19.0	19.0	0.0	33.3	14.3	0.0
	6~10명 이하	(17)	41.2	70.6	58.8	52.9	11.8	0.0	23.5	5.9	41.2	23.5	5.9
	11~30명 이하	(44)	47.7	68.2	45.5	68.2	9.1	11.4	27.3	9.1	29.5	25.0	0.0
	31~100명 이하	(32)	68.8	62.5	62.5	68.8	9.4	3.1	21.9	0.0	37.5	15.6	0.0
	101~300명 이하	(30)	50.0	50.0	60.0	63.3	10.0	13.3	36.7	13.3	30.0	26.7	3.3
	300명 초과	(28)	57.1	60.7	78.6	75.0	7.1	17.9	46.4	7.1	14.3	10.7	3.6

- ① 현재 기업이 직면하는 재무적 제약: 부채 비율, 현금 비중 등
- ② 현재 기업의 보유 기술 수준: 기술의 복잡성, 독보성 등
- ③ 기업의 현재 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시장점유율, 생산성 등
- ④ 기술 투자로부터 기대 가능한 미래 성과: 투자 시 기대되는 수익, 생산성, 시장점유율 등
- ⑤ 기업지배구조: 경영자원의 조달과 운용 및 수익의 분배 등에 대한 의사결정과정과 이에 대한 감시기능
- ⑥ 거시적 환경 및 경제 여건: 경제성장률, 금리, 환율 등
- ⑦ 관련 산업 경쟁수준: 경쟁사 보유 기술 및 관련 투자 상황, 시장 규모 대비 경쟁 기업 수 등
- ⑧ 관련 산업 규율 및 규제: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 절차, 동물 실험 금지, ISO 및 KS 인증 범위 등
- ⑨ 연구개발 관련 재정 지원(R&D 투자 보조금 직접 지원, 기술보증 등)
- ⑩ 연구개발 관련 조세 지원(R&D 세액공제 등)
- ⑪ 기타

<부표 II -11> 기업투자 결정요인(비중)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전 체		(172)	18.7	17.5	17.2	21.5	2.4	2.3	5.7	1.7	6.6	4.3	2.1
기업규모	중소기업	(95)	19.9	22.0	13.9	21.3	1.9	2.0	4.1	1.5	8.9	4.2	0.3
	중견기업	(53)	20.4	11.5	19.9	22.9	2.7	3.4	7.4	2.0	4.1	3.4	2.3
	대기업	(24)	10.1	12.8	24.0	19.2	3.7	1.5	8.3	2.0	2.5	7.0	8.8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20)	14.6	15.1	26.2	24.0	1.5	3.0	7.7	1.9	3.3	2.1	0.8
	KOSDAQ시장 상장	(31)	13.4	15.7	18.8	22.3	2.3	3.7	10.1	1.5	4.8	3.9	3.5
	KONEX시장 상장	(3)	28.0	33.3	0.0	27.7	0.0	0.0	0.0	0.0	11.0	0.0	0.0
	비상장	(118)	20.5	17.9	15.7	20.7	2.6	1.9	4.4	1.8	7.5	4.9	2.1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80)	14.5	14.7	17.6	25.7	1.6	2.1	6.6	2.2	7.7	5.7	1.6
	없음	(92)	22.3	19.9	16.8	17.8	3.1	2.5	4.9	1.3	5.5	3.2	2.6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21)	29.4	14.0	15.8	16.6	2.1	3.5	3.2	1.5	6.2	6.9	0.7
	6~10명 이하	(17)	13.7	19.9	14.8	15.6	3.3	1.8	2.6	3.8	13.8	4.1	6.5
	11~30명 이하	(44)	15.3	24.7	14.2	23.8	2.0	2.3	4.2	1.5	7.0	4.7	0.3
	31~100명 이하	(32)	22.2	17.2	17.0	26.1	2.3	0.8	4.5	0.6	6.7	2.3	0.3
	101~300명 이하	(30)	15.8	11.3	20.9	18.2	2.1	3.0	10.6	2.0	5.9	6.7	3.6
	300명 초과	(28)	18.0	14.1	20.5	23.4	3.0	2.9	8.0	1.8	2.3	1.9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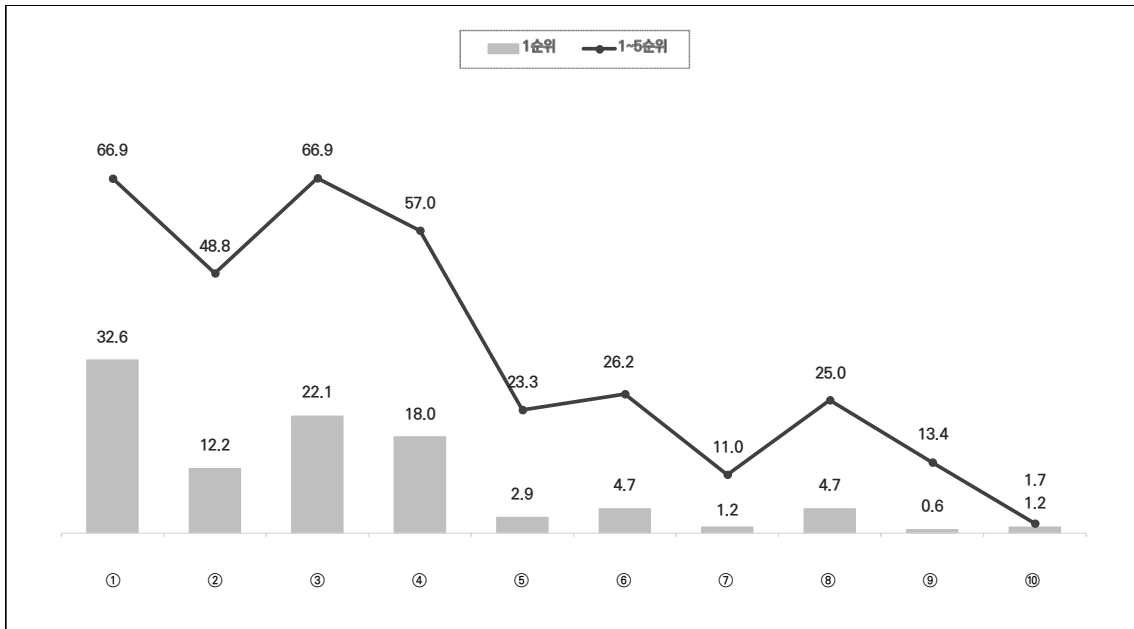
- ① 현재 기업이 직면하는 재무적 제약: 부채 비율, 현금 비중 등
- ② 현재 기업의 보유 기술 수준: 기술의 복잡성, 독보성 등
- ③ 기업의 현재 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시장점유율, 생산성 등
- ④ 기술 투자로부터 기대 가능한 미래 성과: 투자 시 기대되는 수익, 생산성, 시장점유율 등
- ⑤ 기업지배구조: 경영자원의 조달과 운용 및 수익의 분배 등에 대한 의사결정과정과 이에 대한 감시기능
- ⑥ 거시적 환경 및 경제 여건: 경제성장률, 금리, 환율 등
- ⑦ 관련 산업 경쟁수준: 경쟁사 보유 기술 및 관련 투자 상황, 시장 규모 대비 경쟁 기업 수 등
- ⑧ 관련 산업 규율 및 규제: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 절차, 동물 실험 금지, ISO 및 KS 인증 범위 등
- ⑨ 연구개발 관련 재정 지원(R&D 투자 보조금 직접 지원, 기술보증 등)
- ⑩ 연구개발 관련 조세 지원(R&D 세액공제 등)
- ⑪ 기타

## 2) 투자시기 결정요인

- 투자시기 결정요인에 대해 알아본 결과, 1순위, 1~5순위 모두 ‘현재 기업이 직면하는 재무적 제약: 부채 비율, 현금 비중 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1순위에서 ‘중소기업’은 ‘현재 기업이 직면하는 재무적 제약: 부채 비율, 현금 비중 등’(34.7%)에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은 ‘현재 기업이 직면하는 재무적 제약: 부채 비율, 현금 비중 등’(32.1%), ‘대기업’은 ‘기업의 현재 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시장점유율, 생산성 등’(37.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수혜 여부별로 살펴보면 1순위에서 ‘있음’은 ‘현재 기업이 직면하는 재무적 제약: 부채 비율, 현금 비중 등’(32.5%)에서 가장 높았고, ‘없음’은 ‘현재 기업이 직면하는 재무적 제약: 부채 비율, 현금 비중 등’(32.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부도 II -10] 투자시기 결정요인

(n=172, 단위: %)



<부표 II -12> 투자시기 결정요인(1순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 체		(172)	32.6	12.2	22.1	18.0	2.9	4.7	1.2	4.7	0.6	1.2
기업규모	중소기업	(95)	34.7	13.7	20.0	15.8	3.2	3.2	1.1	7.4	1.1	0.0
	중견기업	(53)	32.1	11.3	18.9	22.6	3.8	7.5	0.0	1.9	0.0	1.9
	대기업	(24)	25.0	8.3	37.5	16.7	0.0	4.2	4.2	0.0	0.0	4.2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20)	40.0	10.0	20.0	25.0	0.0	5.0	0.0	0.0	0.0	0.0
	KOSDAQ시장 상장	(31)	25.8	19.4	9.7	22.6	6.5	9.7	3.2	3.2	0.0	0.0
	KONEX시장 상장	(3)	33.3	33.3	0.0	33.3	0.0	0.0	0.0	0.0	0.0	0.0
	비상장	(118)	33.1	10.2	26.3	15.3	2.5	3.4	0.8	5.9	0.8	1.7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80)	32.5	11.3	20.0	17.5	2.5	5.0	2.5	7.5	1.3	0.0
	없음	(92)	32.6	13.0	23.9	18.5	3.3	4.3	0.0	2.2	0.0	2.2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21)	52.4	4.8	23.8	4.8	4.8	0.0	0.0	9.5	0.0	0.0
	6~10명 이하	(17)	29.4	17.6	23.5	5.9	0.0	0.0	5.9	11.8	0.0	5.9
	11~30명 이하	(44)	25.0	18.2	20.5	20.5	2.3	4.5	0.0	6.8	2.3	0.0
	31~100명 이하	(32)	37.5	6.3	21.9	28.1	3.1	3.1	0.0	0.0	0.0	0.0
	101~300명 이하	(30)	26.7	13.3	30.0	10.0	6.7	6.7	0.0	3.3	0.0	3.3
	300명 초과	(28)	32.1	10.7	14.3	28.6	0.0	10.7	3.6	0.0	0.0	0.0

- ① 현재 기업이 직면하는 재무적 제약: 부채 비율, 현금 비중 등
- ② 현재 기업의 보유 기술 수준: 기술의 복잡성, 독보성 등
- ③ 기업의 현재 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시장점유율, 생산성 등
- ④ 해당 기술을 활용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 ⑤ 거시적 환경 및 경제 여건: 경제성장률, 금리, 환율 등
- ⑥ 관련 산업 경쟁수준: 경쟁사 보유 기술 및 관련 투자 상황, 시장 규모 대비 경쟁 기업 수 등
- ⑦ 관련 산업 규율 및 규제: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 절차, 동물 실험 금지, ISO 및 KS 인증 범위 등
- ⑧ 연구개발 관련 재정 지원(R&D 투자 보조금 직접 지원, 기술보증 등)
- ⑨ 연구개발 관련 조세 지원(R&D 세액공제 등)
- ⑩ 기타

<부표 II -13> 투자시기 결정요인(1~5순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 체		(172)	66.9	48.8	66.9	57.0	23.3	26.2	11.0	25.0	13.4	1.7
기업규모	중소기업	(95)	67.4	54.7	66.3	58.9	18.9	21.1	9.5	27.4	13.7	0.0
	중견기업	(53)	67.9	37.7	62.3	52.8	34.0	34.0	13.2	26.4	15.1	3.8
	대기업	(24)	62.5	50.0	79.2	58.3	16.7	29.2	12.5	12.5	8.3	4.2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20)	75.0	40.0	70.0	70.0	30.0	40.0	15.0	20.0	5.0	0.0
	KOSDAQ시장 상장	(31)	61.3	48.4	51.6	48.4	32.3	35.5	12.9	29.0	22.6	3.2
	KONEX시장 상장	(3)	66.7	66.7	0.0	66.7	0.0	0.0	33.3	0.0	0.0	0.0
	비상장	(118)	66.9	50.0	72.0	56.8	20.3	22.0	9.3	25.4	12.7	1.7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80)	63.8	46.3	72.5	55.0	17.5	25.0	15.0	32.5	20.0	1.3
	없음	(92)	69.6	51.1	62.0	58.7	28.3	27.2	7.6	18.5	7.6	2.2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21)	95.2	57.1	66.7	57.1	23.8	23.8	0.0	28.6	9.5	0.0
	6~10명 이하	(17)	58.8	47.1	64.7	47.1	17.6	11.8	11.8	35.3	23.5	5.9
	11~30명 이하	(44)	54.5	54.5	63.6	59.1	18.2	25.0	13.6	20.5	6.8	0.0
	31~100명 이하	(32)	78.1	46.9	68.8	59.4	28.1	25.0	9.4	21.9	9.4	0.0
	101~300명 이하	(30)	53.3	46.7	63.3	46.7	23.3	26.7	20.0	40.0	26.7	6.7
	300명 초과	(28)	71.4	39.3	75.0	67.9	28.6	39.3	7.1	10.7	10.7	0.0

- ① 현재 기업이 직면하는 재무적 제약: 부채 비율, 현금 비중 등
- ② 현재 기업의 보유 기술 수준: 기술의 복잡성, 독보성 등
- ③ 기업의 현재 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시장점유율, 생산성 등
- ④ 해당 기술을 활용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 ⑤ 거시적 환경 및 경제 여건: 경제성장률, 금리, 환율 등
- ⑥ 관련 산업 경쟁수준: 경쟁사 보유 기술 및 관련 투자 상황, 시장 규모 대비 경쟁 기업 수 등
- ⑦ 관련 산업 규율 및 규제: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 절차, 동물 실험 금지, ISO 및 KS 인증 범위 등
- ⑧ 연구개발 관련 재정 지원(R&D 투자 보조금 직접 지원, 기술보증 등)
- ⑨ 연구개발 관련 조세 지원(R&D 세액공제 등)
- ⑩ 기타

<부표 II -14> 투자시기 결정요인(비중)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 체		(172)	22.8	12.8	23.1	15.9	4.7	5.8	3.3	6.6	3.3	1.6
기업규모	중소기업	(95)	22.6	16.2	22.5	16.1	3.9	4.1	3.0	7.6	3.5	0.5
	중견기업	(53)	24.2	8.4	21.3	15.9	6.8	8.8	2.8	6.2	3.2	2.5
	대기업	(24)	20.8	9.2	29.2	14.9	3.2	5.9	5.9	3.6	3.0	4.3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172)	24.3	8.5	25.2	19.2	5.2	7.7	3.6	3.7	2.3	0.6
	KOSDAQ시장 상장	(20)	20.5	12.3	15.7	16.5	6.9	10.4	5.1	7.7	4.3	0.6
	KONEX시장 상장	(31)	26.7	33.3	0.0	33.3	0.0	0.0	6.7	0.0	0.0	0.0
	비상장	(3)	23.1	13.1	25.2	14.7	4.2	4.4	2.7	7.0	3.3	2.1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118)	20.6	11.2	24.5	15.2	3.6	6.3	4.7	8.4	5.1	0.4
	없음	(80)	24.8	14.2	21.8	16.4	5.8	5.4	2.1	5.0	1.8	2.7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92)	37.8	11.7	19.5	11.4	3.4	2.9	1.4	8.7	2.3	0.9
	6~10명 이하	(21)	19.7	12.6	28.9	10.3	3.3	1.9	4.2	9.6	2.5	6.9
	11~30명 이하	(17)	16.6	19.3	23.5	18.2	4.0	6.3	2.1	6.3	3.5	0.3
	31~100명 이하	(44)	27.2	10.8	21.9	17.8	7.3	3.9	3.9	5.2	1.9	0.2
	101~300명 이하	(32)	20.6	9.1	22.6	11.9	4.4	7.7	3.7	9.3	6.7	3.9
	300명 초과	(30)	20.8	9.8	23.3	21.0	5.1	9.8	5.0	2.5	2.3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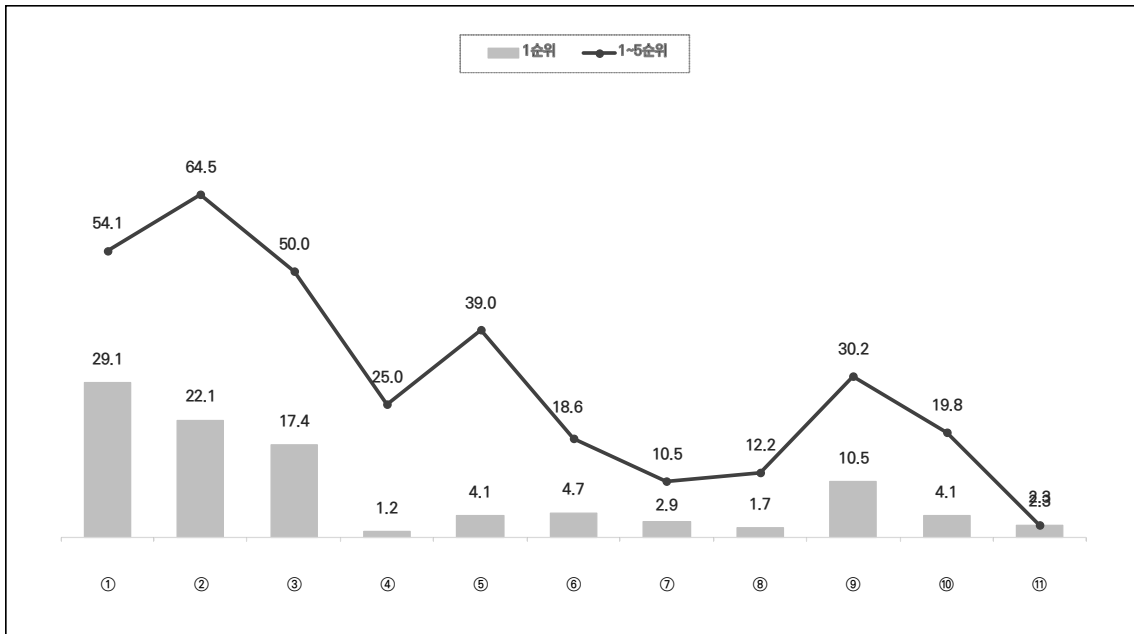
- ① 현재 기업이 직면하는 재무적 제약: 부채 비율, 현금 비중 등
- ② 현재 기업의 보유 기술 수준: 기술의 복잡성, 독보성 등
- ③ 기업의 현재 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시장점유율, 생산성 등
- ④ 해당 기술을 활용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 ⑤ 거시적 환경 및 경제 여건: 경제성장률, 금리, 환율 등
- ⑥ 관련 산업 경쟁수준: 경쟁사 보유 기술 및 관련 투자 상황, 시장 규모 대비 경쟁 기업 수 등
- ⑦ 관련 산업 규율 및 규제: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 절차, 동물 실험 금지, ISO 및 KS 인증 범위 등
- ⑧ 연구개발 관련 재정 지원(R&D 투자 보조금 직접 지원, 기술보증 등)
- ⑨ 연구개발 관련 조세 지원(R&D 세액공제 등)
- ⑩ 기타

### 3) 투자위치 결정요인

- 투자위치 결정요인에 대해 알아본 결과, 1순위, 1~5순위 모두 ‘시장 접근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1순위에서 ‘중소기업’은 ‘시장 접근성’(23.2%)에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은 ‘시장 접근성’(35.8%), ‘대기업’은 ‘시장 접근성’(33.7%)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부도 II -11] 투자위치 결정요인

(n=172, 단위: %)



<부표 II -15> 투자위치 결정요인(1순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전 체		(172)	29.1	22.1	17.4	1.2	4.1	4.7	2.9	1.7	10.5	4.1	2.3
기업규모	중소기업	(95)	23.2	21.1	20.0	1.1	5.3	4.2	2.1	2.1	14.7	5.3	1.1
	중견기업	(53)	35.8	26.4	11.3	0.0	3.8	7.5	3.8	0.0	3.8	3.8	3.8
	대기업	(24)	37.5	16.7	20.8	4.2	0.0	0.0	4.2	4.2	8.3	0.0	4.2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20)	30.0	25.0	15.0	0.0	0.0	5.0	10.0	0.0	10.0	5.0	0.0
	KOSDAQ시장 상장	(31)	32.3	25.8	9.7	0.0	3.2	9.7	3.2	0.0	6.5	3.2	6.5
	KONEX시장 상장	(3)	66.7	0.0	33.3	0.0	0.0	0.0	0.0	0.0	0.0	0.0	0.0
	비상장	(118)	27.1	21.2	19.5	1.7	5.1	3.4	1.7	2.5	11.9	4.2	1.7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80)	23.8	26.3	17.5	0.0	0.0	6.3	2.5	2.5	10.0	8.8	2.5
	없음	(92)	33.7	18.5	17.4	2.2	7.6	3.3	3.3	1.1	10.9	0.0	2.2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21)	28.6	9.5	33.3	0.0	9.5	4.8	4.8	0.0	0.0	4.8	4.8
	6~10명 이하	(17)	29.4	29.4	5.9	0.0	0.0	0.0	0.0	5.9	29.4	0.0	0.0
	11~30명 이하	(44)	18.2	20.5	27.3	2.3	4.5	4.5	2.3	2.3	15.9	2.3	0.0
	31~100명 이하	(32)	40.6	25.0	12.5	3.1	3.1	0.0	3.1	0.0	6.3	6.3	0.0
	101~300명 이하	(30)	30.0	26.7	3.3	0.0	3.3	13.3	0.0	3.3	6.7	10.0	3.3
	300명 초과	(28)	32.1	21.4	17.9	0.0	3.6	3.6	7.1	0.0	7.1	0.0	7.1

- ① 시장 접근성
- ② 해당 위치에 연구·인력개발 관련 설비투자 시 드는 비용
- ③ 노동 시장 접근성
- ④ 산학연계의 용이성
- ⑤ 지자체로부터의 지원
- ⑥ 관련 및 경쟁 업체와의 접근성
- ⑦ 환경 규제: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 절차, 생태 독성 배출 허용 평가시험 등
- ⑧ 환경 규제를 제외한 정부 규제: ISO, KS, 의료기기/의약품 인증 기준 변화 등
- ⑨ 연구개발 관련 재정 지원
- ⑩ 연구개발 관련 조세 지원
- ⑪ 기타

<부표 II -16> 투자위치 결정요인(1~5순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전 체		(172)	54.1	64.5	50.0	25.0	39.0	18.6	10.5	12.2	30.2	19.8	2.3
기업규모	중소기업	(95)	44.2	65.3	51.6	26.3	44.2	11.6	8.4	14.7	38.9	18.9	1.1
	중견기업	(53)	66.0	62.3	43.4	18.9	32.1	34.0	13.2	9.4	22.6	22.6	3.8
	대기업	(24)	66.7	66.7	58.3	33.3	33.3	12.5	12.5	8.3	12.5	16.7	4.2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20)	70.0	75.0	65.0	30.0	30.0	15.0	20.0	10.0	20.0	20.0	0.0
	KOSDAQ시장 상장	(31)	58.1	58.1	38.7	12.9	25.8	38.7	16.1	12.9	25.8	25.8	6.5
	KONEX시장 상장	(3)	66.7	100.0	33.3	0.0	0.0	0.0	0.0	0.0	0.0	0.0	0.0
	비상장	(118)	50.0	63.6	50.8	28.0	44.9	14.4	7.6	12.7	33.9	18.6	1.7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80)	51.3	62.5	52.5	27.5	31.3	18.8	11.3	15.0	33.8	27.5	2.5
	없음	(92)	56.5	66.3	47.8	22.8	45.7	18.5	9.8	9.8	27.2	13.0	2.2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21)	47.6	61.9	52.4	38.1	66.7	19.0	4.8	14.3	33.3	19.0	4.8
	6~10명 이하	(17)	64.7	64.7	47.1	11.8	41.2	5.9	11.8	17.6	47.1	11.8	0.0
	11~30명 이하	(44)	40.9	70.5	54.5	25.0	40.9	15.9	11.4	11.4	36.4	18.2	0.0
	31~100명 이하	(32)	62.5	68.8	46.9	25.0	31.3	15.6	6.3	12.5	25.0	15.6	0.0
	101~300명 이하	(30)	53.3	50.0	36.7	16.7	30.0	33.3	10.0	13.3	33.3	43.3	3.3
	300명 초과	(28)	64.3	67.9	60.7	32.1	32.1	17.9	17.9	7.1	10.7	7.1	7.1

- ① 시장 접근성
- ② 해당 위치에 연구·인력개발 관련 설비투자 시 드는 비용
- ③ 노동 시장 접근성
- ④ 산학연계의 용이성
- ⑤ 지자체로부터의 지원
- ⑥ 관련 및 경쟁 업체와의 접근성
- ⑦ 환경 규제: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 절차, 생태 독성 배출 허용 평가시험 등
- ⑧ 환경 규제를 제외한 정부 규제: ISO, KS, 의료기기/의약품 인증 기준 변화 등
- ⑨ 연구개발 관련 재정 지원
- ⑩ 연구개발 관련 조세 지원
- ⑪ 기타

<부표 II -17> 투자위치 결정요인(비중)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전 체		(172)	18.8	20.4	14.6	4.6	8.7	6.7	3.1	3.8	10.7	6.1	2.6
기업규모	중소기업	(95)	14.6	20.1	16.6	4.7	10.9	4.9	2.9	3.7	13.9	6.3	1.4
	중견기업	(53)	22.6	21.2	9.6	3.2	6.5	11.6	3.7	4.0	7.7	5.8	4.1
	대기업	(24)	27.1	19.8	17.5	7.0	4.6	2.8	2.4	4.0	4.8	5.8	4.3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20)	20.0	23.0	16.4	4.5	4.9	8.5	4.4	4.9	6.4	6.7	0.6
	KOSDAQ시장 상장	(31)	20.2	20.5	9.8	2.3	5.2	13.4	3.5	4.2	8.5	5.8	6.6
	KONEX시장 상장	(3)	33.3	50.0	16.7	0.0	0.0	0.0	0.0	0.0	0.0	0.0	0.0
	비상장	(118)	17.9	19.2	15.4	5.3	10.5	4.8	2.8	3.7	12.3	6.2	2.0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80)	16.0	19.6	14.4	4.5	6.3	7.8	3.0	5.5	11.4	8.6	2.8
	없음	(92)	21.3	21.0	14.7	4.6	10.8	5.7	3.1	2.4	10.1	3.8	2.5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21)	17.1	14.4	16.8	6.2	16.5	6.5	2.2	2.7	7.6	4.5	5.5
	6~10명 이하	(17)	21.4	14.5	10.9	2.8	8.3	3.9	2.1	7.6	24.8	3.2	0.5
	11~30명 이하	(44)	12.7	22.4	19.1	5.2	10.0	4.1	3.9	2.9	12.9	6.5	0.3
	31~100명 이하	(32)	25.6	26.6	14.4	5.0	6.6	4.2	3.0	2.3	7.3	4.8	0.2
	101~300명 이하	(30)	18.3	18.3	8.4	2.2	5.7	11.7	2.6	5.4	11.5	12.4	3.4
	300명 초과	(28)	20.9	20.4	14.8	5.5	6.6	9.9	3.6	4.0	4.0	2.9	7.6

- ① 시장 접근성
- ② 해당 위치에 연구·인력개발 관련 설비투자 시 드는 비용
- ③ 노동 시장 접근성
- ④ 산학연계의 용이성
- ⑤ 지자체로부터의 지원
- ⑥ 관련 및 경쟁 업체와의 접근성
- ⑦ 환경 규제: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 절차, 생태 독성 배출 허용 평가시험 등
- ⑧ 환경 규제를 제외한 정부 규제: ISO, KS, 의료기기/의약품 인증 기준 변화 등
- ⑨ 연구개발 관련 재정 지원
- ⑩ 연구개발 관련 조세 지원
- ⑪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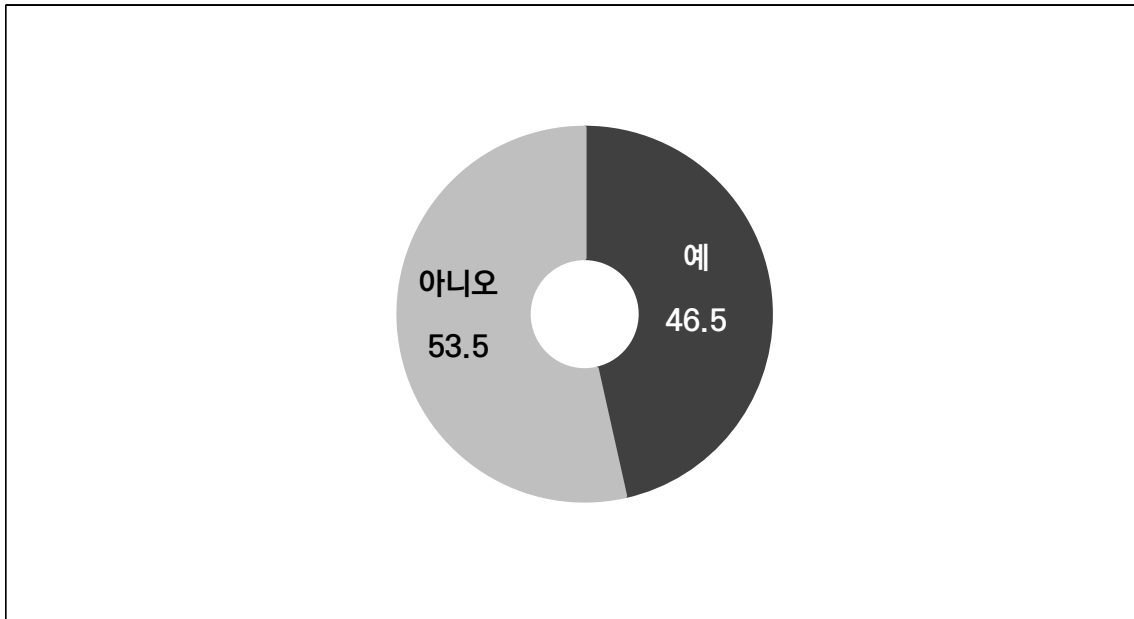
###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인식 및 활용

####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경험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경험에 대해 알아본 결과, ‘아니오’가 53.5%로 ‘예’(46.5%)보다 높게 나타남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예’가 50.5%, ‘중견기업’ 49.1%, ‘대기업’ 25.0%로 나타남

[부도 II -1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경험

(n=172, 단위: %)



<부표 II -18>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경험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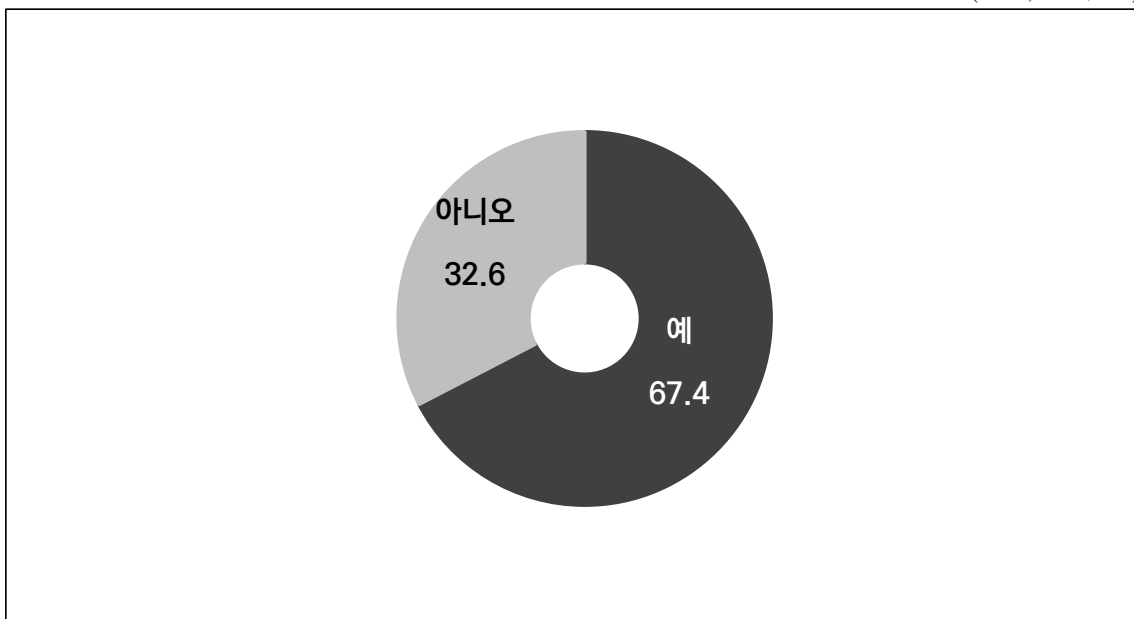
구 분		사 례 수	예	아 니 오
전 체		(172)	46.5	53.5
기업규모	중소기업	(95)	50.5	49.5
	중견기업	(53)	49.1	50.9
	대기업	(24)	25.0	75.0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20)	50.0	50.0
	KOSDAQ시장 상장	(31)	64.5	35.5
	KONEX시장 상장	(3)	33.3	66.7
	비상장	(118)	41.5	58.5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80)	100.0	0.0
	없음	(92)	0.0	100.0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21)	28.6	71.4
	6~10인 이하	(17)	52.9	47.1
	11~30명 이하	(44)	38.6	61.4
	31~100명 이하	(32)	43.8	56.3
	101~300명 이하	(30)	60.0	40.0
	300인 초과	(28)	57.1	42.9

##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행 인지 여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행 인지 여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아니오’가 67.4%로 ‘예’(32.6%)보다 높게 나타남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예’가 66.0%, ‘중견기업’ 63.0%, ‘대기업’ 77.8%로 나타남

[부도 II -1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행 인지 여부

(n=92, 단위: %)



<부표 II -19>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행 인지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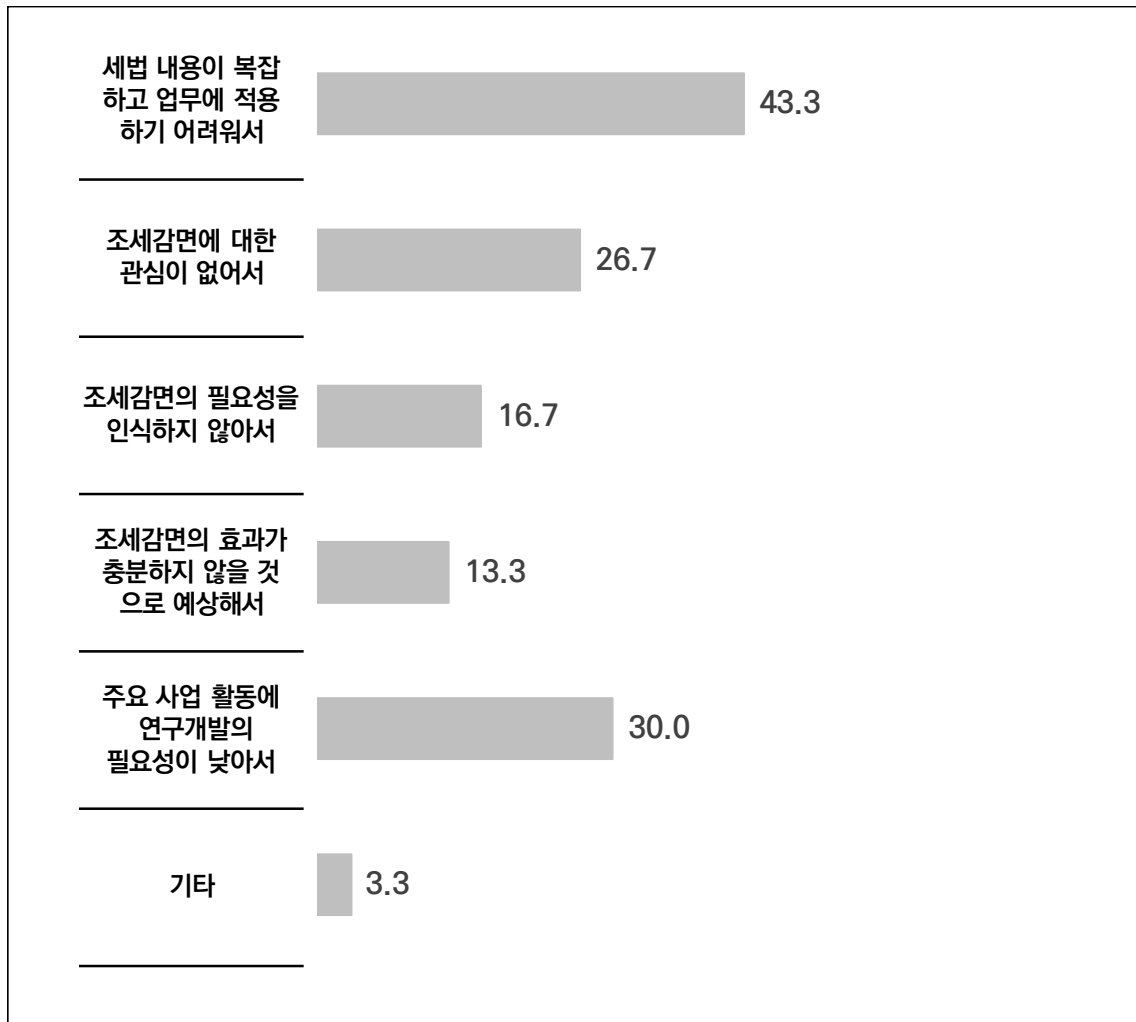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92)	67.4	32.6
기업규모	중소기업	(47)	66.0	34.0
	중견기업	(27)	63.0	37.0
	대기업	(18)	77.8	22.2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10)	80.0	20.0
	KOSDAQ시장 상장	(11)	72.7	27.3
	KONEX시장 상장	(2)	0.0	100.0
	비상장	(69)	66.7	33.3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0)	-	-
	없음	(92)	67.4	32.6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15)	60.0	40.0
	6~10인 이하	(8)	62.5	37.5
	11~30명 이하	(27)	70.4	29.6
	31~100명 이하	(18)	72.2	27.8
	101~300명 이하	(12)	66.7	33.3
	300인 초과	(12)	66.7	33.3

###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알지 못한 이유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알지 못한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세법 내용이 복잡하고 업무에 적용하기 어려워서’가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세법 내용이 복잡하고 업무에 적용하기 어려워서’가 ‘중소기업’(62.5%), ‘중견기업’(30.0%), ‘대기업’(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부도 II -1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알지 못한 이유

(n=30, 단위: %)



<부표 II -20>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알지 못한 이유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세법 내용이 복잡하고 업무에 적용하기 어려워서	조세감면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조세감면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아서	
전 체	(30)	43.3	26.7	16.7	
기업규모	중소기업	(16)	62.5	25.0	25.0
	중견기업	(10)	30.0	30.0	10.0
	대기업	(4)	0.0	25.0	0.0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2)	0.0	0.0	0.0
	KOSDAQ시장 상장	(3)	66.7	66.7	33.3
	KONEX시장 상장	(2)	100.0	0.0	0.0
	비상장	(23)	39.1	26.1	17.4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0)	-	-	-
	없음	(30)	43.3	26.7	16.7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6)	33.3	50.0	33.3
	6~10인 이하	(3)	33.3	33.3	0.0
	11~30명 이하	(8)	62.5	25.0	25.0
	31~100명 이하	(5)	40.0	0.0	0.0
	101~300명 이하	(4)	50.0	50.0	25.0
	300인 초과	(4)	25.0	0.0	0.0

<부표 II -20>의 계속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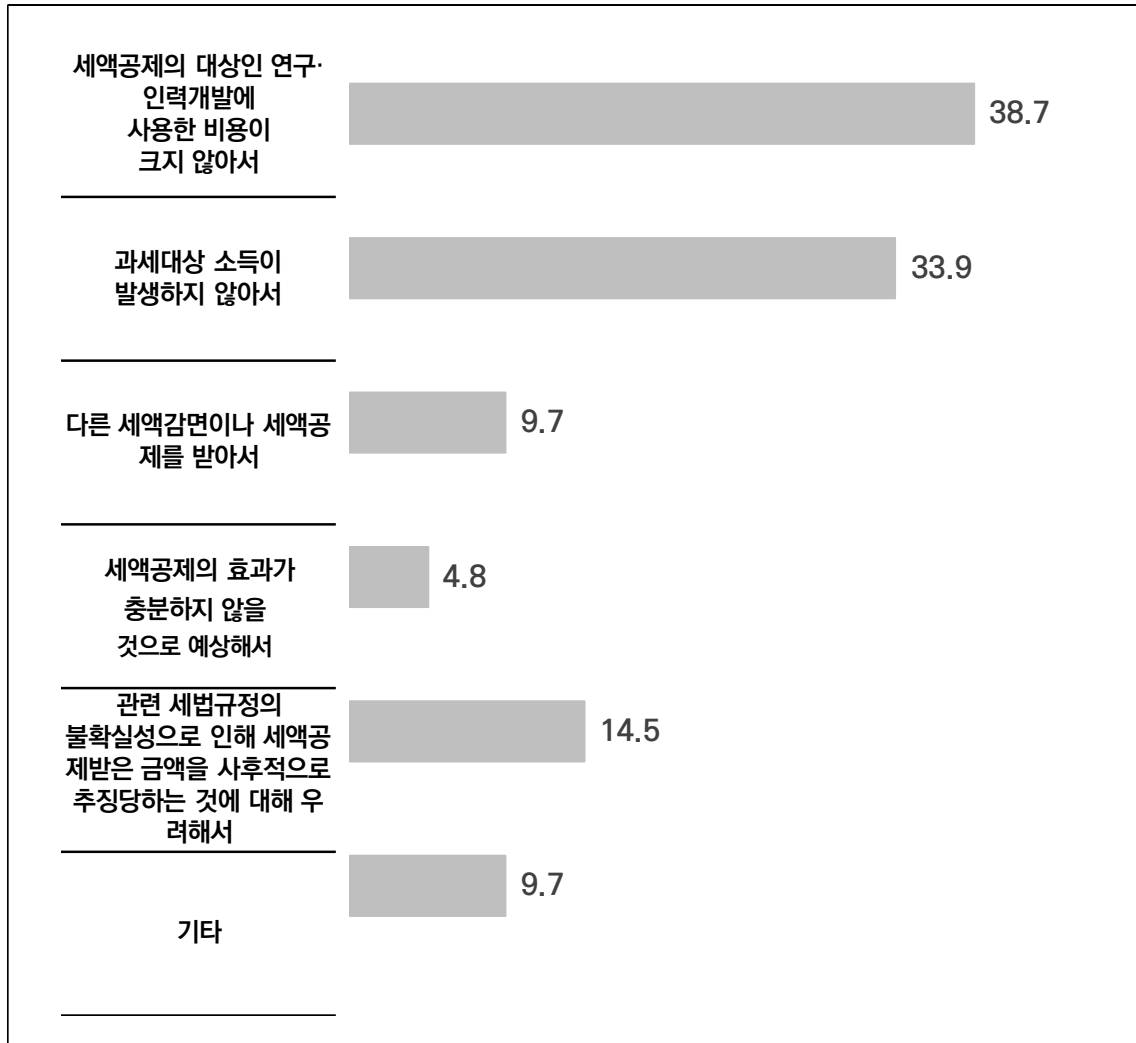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조세감면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	주요 사업 활동에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낮아서	기타
전 체		(30)	13.3	30.0	3.3
기업규모	중소기업	(16)	6.3	6.3	0.0
	중견기업	(10)	20.0	60.0	10.0
	대기업	(4)	25.0	50.0	0.0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2)	50.0	50.0	0.0
	KOSDAQ시장 상장	(3)	33.3	33.3	0.0
	KONEX시장 상장	(2)	0.0	0.0	0.0
	비상장	(23)	8.7	30.4	4.3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0)	-	-	-
	없음	(30)	13.3	30.0	3.3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6)	16.7	16.7	0.0
	6~10인 이하	(3)	0.0	33.3	0.0
	11~30명 이하	(8)	0.0	12.5	0.0
	31~100명 이하	(5)	0.0	60.0	0.0
	101~300명 이하	(4)	50.0	25.0	0.0
	300인 초과	(4)	25.0	50.0	25.0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이유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세액공제의 대상인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한 비용이 크지 않아서’가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세액공제의 대상인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한 비용이 크지 않아서’가 ‘중소기업’(16.1%) ‘중견기업’(70.6%), ‘대기업’(50.0%)으로 나타남

[부도 II -1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이유

(n=62, 단위: %)



〈부표 II -2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세액공제의 대상인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한 비용이 크지 않아서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서	다른 세액감면이 세액공제를 받아서
전 체		(62)	38.7	33.9	9.7
기업규모	중소기업	(31)	16.1	54.8	12.9
	중견기업	(17)	70.6	5.9	5.9
	대기업	(14)	50.0	21.4	7.1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8)	62.5	12.5	12.5
	KOSDAQ시장 상장	(8)	62.5	0.0	12.5
	KONEX시장 상장	(46)	30.4	43.5	8.7
	비상장	(0)	-	-	-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62)	38.7	33.9	9.7
	없음	(9)	22.2	44.4	22.2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5)	60.0	40.0	0.0
	6~10인 이하	(19)	26.3	47.4	5.3
	11~30명 이하	(13)	38.5	38.5	7.7
	31~100명 이하	(8)	62.5	0.0	12.5
	101~300명 이하	(8)	50.0	12.5	12.5
	300인 초과	(11)	45.5	18.2	0.0

<부표 II -21>의 계속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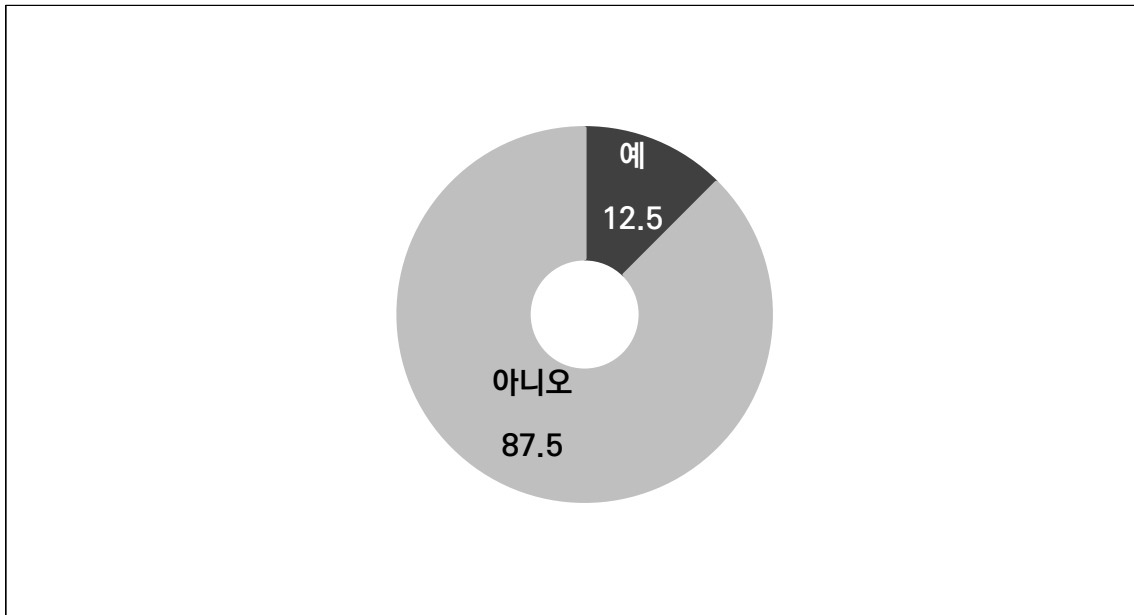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세액공제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	관련 세법규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사후적으로 추징당하는 것에 대해 우려해서	기타
전 체		(62)	4.8	14.5	9.7
기업규모	중소기업	(31)	6.5	6.5	6.5
	중견기업	(17)	5.9	17.6	5.9
	대기업	(14)	0.0	28.6	21.4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8)	12.5	12.5	0.0
	KOSDAQ시장 상장	(8)	0.0	25.0	12.5
	KONEX시장 상장	(46)	4.3	13.0	10.9
	비상장	(0)	-	-	-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62)	4.8	14.5	9.7
	없음	(9)	0.0	0.0	11.1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5)	0.0	0.0	0.0
	6~10인 이하	(19)	5.3	21.1	10.5
	11~30명 이하	(13)	7.7	23.1	7.7
	31~100명 이하	(8)	0.0	25.0	12.5
	101~300명 이하	(8)	12.5	0.0	12.5
	300인 초과	(11)	27.3	9.1	0.0

### 5) 연구·인력개발에 지출한 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경험

- 연구·인력개발에 지출한 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경험에 대해 알아본 결과, ‘아니오’가 87.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아니오’가 ‘중소기업’(89.6%), ‘중견기업’(84.6%), ‘대기업’(83.3%)으로 나타남

[부도 II -16] 연구·인력개발에 지출한 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경험

(n=80, 단위: %)



<부표 II -22> 연구·인력개발에 지출한 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경험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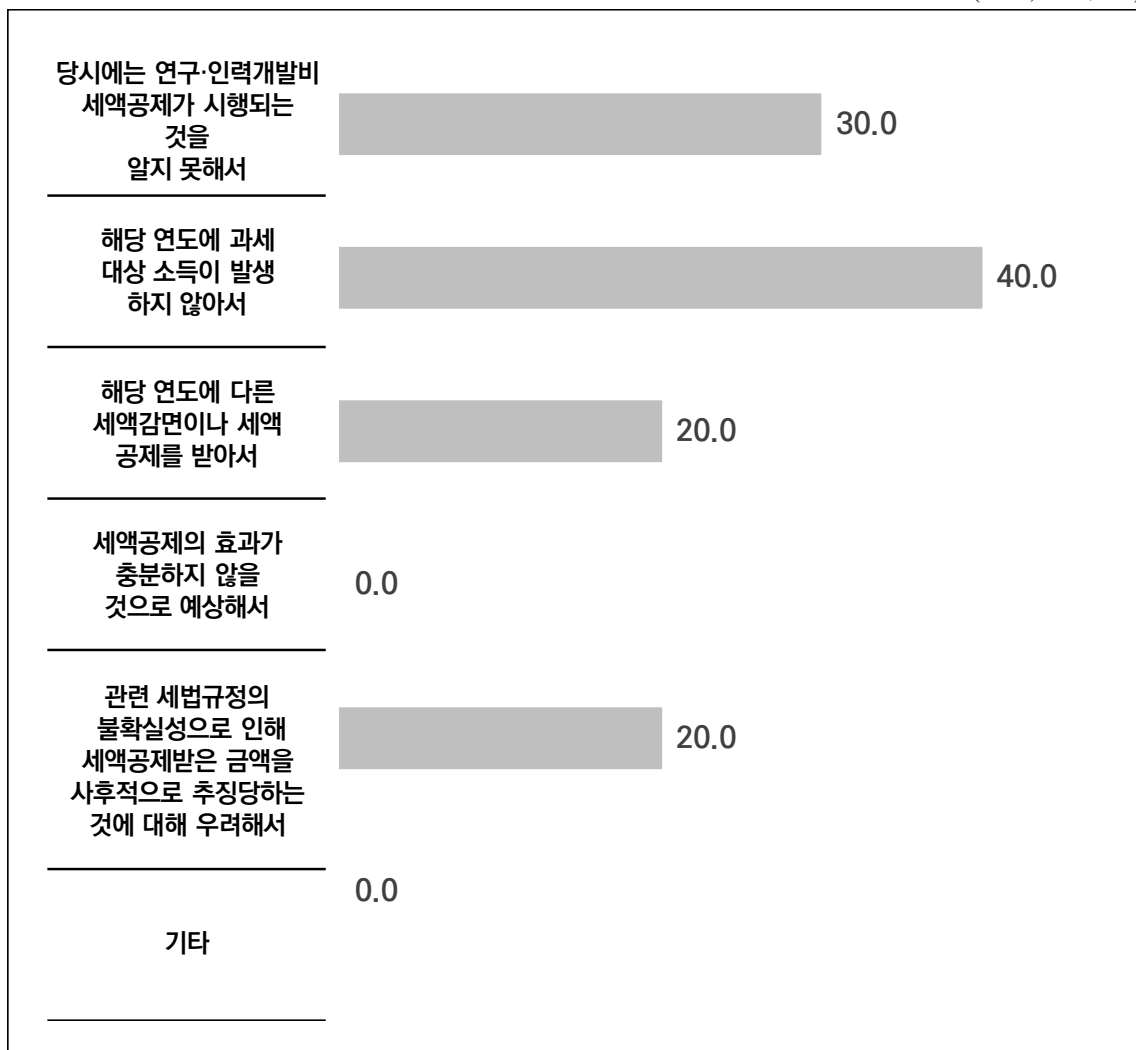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80)	12.5	87.5
기업규모	중소기업	(48)	10.4	89.6
	중견기업	(26)	15.4	84.6
	대기업	(6)	16.7	83.3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10)	30.0	70.0
	KOSDAQ시장 상장	(20)	5.0	95.0
	KONEX시장 상장	(1)	0.0	100.0
	비상장	(49)	12.2	87.8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80)	12.5	87.5
	없음	(0)	-	-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6)	33.3	66.7
	6~10인 이하	(9)	22.2	77.8
	11~30명 이하	(17)	5.9	94.1
	31~100명 이하	(14)	0.0	100.0
	101~300명 이하	(18)	0.0	100.0
	300인 초과	(16)	31.3	68.8

6) 연구·인력개발에 지출한 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받지 않은 이유

- 연구·인력개발에 지출한 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해당 연도에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서’가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부도 II -17] 연구·인력개발에 지출한 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받지 않은 이유

(n=10, 단위: %)



〈부표 II -23〉 연구·인력개발에 지출한 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받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당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시행 되는 것을 몰라서	해당 연도에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서	해당 연도에 다른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받아서
전 체		(10)	30.0	40.0	20.0
기업규모	중소기업	(5)	20.0	60.0	40.0
	중견기업	(4)	50.0	25.0	0.0
	대기업	(1)	0.0	0.0	0.0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3)	33.3	33.3	0.0
	KOSDAQ시장 상장	(1)	100.0	0.0	0.0
	KONEX시장 상장	(0)	-	-	-
	비상장	(6)	16.7	50.0	33.3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10)	30.0	40.0	20.0
	없음	(0)	-	-	-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2)	0.0	100.0	0.0
	6~10인 이하	(2)	50.0	0.0	100.0
	11~30명 이하	(1)	0.0	100.0	0.0
	31~100명 이하	(0)	-	-	-
	101~300명 이하	(0)	-	-	-
	300인 초과	(5)	40.0	20.0	0.0

<부표 II -23>의 계속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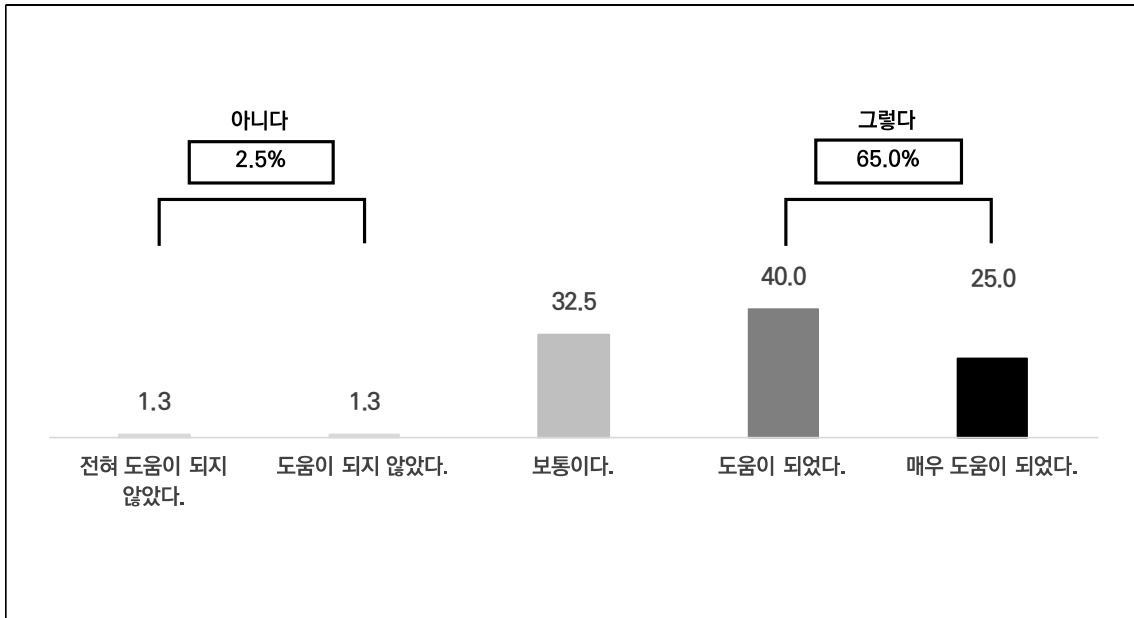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세액공제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	사후적 추징을 우려해서	기타
전 체		(10)	0.0	20.0	0.0
기업규모	중소기업	(5)	0.0	0.0	0.0
	중견기업	(4)	0.0	25.0	0.0
	대기업	(1)	0.0	100.0	0.0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3)	0.0	33.3	0.0
	KOSDAQ시장 상장	(1)	0.0	0.0	0.0
	KONEX시장 상장	(0)	-	-	-
	비상장	(6)	0.0	16.7	0.0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10)	0.0	20.0	0.0
	없음	(0)	-	-	-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2)	0.0	0.0	0.0
	6~10인 이하	(2)	0.0	0.0	0.0
	11~30명 이하	(1)	0.0	0.0	0.0
	31~100명 이하	(0)	-	-	-
	101~300명 이하	(0)	-	-	-
	300인 초과	(5)	0.0	40.0	0.0

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따른 투자 활성화 여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따른 투자 활성화 여부에 대해 알아본 결과, ‘그렇다’ (도움이 되었다 + 매우 도움이 되었다)가 65.0%로 ‘아니다’(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도움이 되지 않았다)(2.5%)보다 높게 나타남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그렇다’(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가 64.6%, ‘중견기업’ 69.2%, ‘대기업’ 50.0%로 나타남

[부도 II -18]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따른 투자 활성화 여부

(n=80, 단위: %)



<부표 II -2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따른 투자 활성화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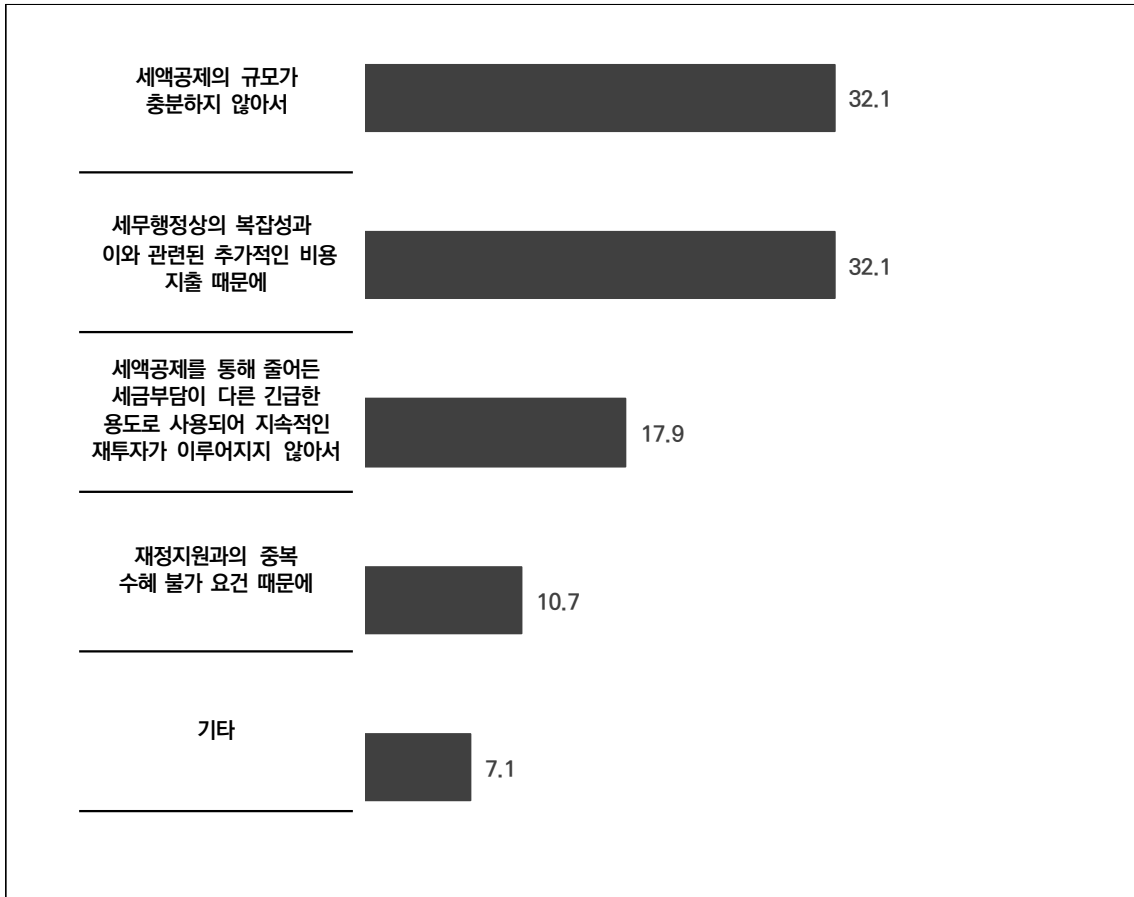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전 체		(80)	1.3	1.3	32.5	40.0	25.0
기업규모	중소기업	(48)	0.0	2.1	33.3	35.4	29.2
	중견기업	(26)	3.8	0.0	26.9	46.2	23.1
	대기업	(6)	0.0	0.0	50.0	50.0	0.0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10)	0.0	0.0	20.0	80.0	0.0
	KOSDAQ시장 상장	(20)	5.0	0.0	35.0	30.0	30.0
	KONEX시장 상장	(1)	0.0	0.0	100.0	0.0	0.0
	비상장	(49)	0.0	2.0	32.7	36.7	28.6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80)	1.3	1.3	32.5	40.0	25.0
	없음	(0)	0.0	0.0	0.0	0.0	0.0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6)	0.0	0.0	16.7	50.0	33.3
	6~10인 이하	(9)	0.0	11.1	33.3	22.2	33.3
	11~30명 이하	(17)	0.0	0.0	35.3	47.1	17.6
	31~100명 이하	(14)	0.0	0.0	35.7	28.6	35.7
	101~300명 이하	(18)	0.0	0.0	33.3	38.9	27.8
	300인 초과	(16)	6.3	0.0	31.3	50.0	12.5

8)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세액공제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서’와 ‘세무행정상의 복잡성과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비용 지출 때문에’가 각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세액공제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서’와 ‘세무행정상의 복잡성과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비용 지출 때문에’(각 29.4%)에 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은 ‘세액공제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서’(50.0%), ‘대기업’은 ‘세무행정상의 복잡성과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비용 지출 때문에’, ‘세액공제를 통해 줄어든 세금부담이 다른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어 지속적인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타’(각 33.3%)가 가장 높게 나타남

[부도 II -19]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n=28, 단위: %)



<부표 II -2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세액공제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서	세무행정상의 복잡성과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비용 지출 때문에
전 체		(28)	32.1	32.1
기업규모	중소기업	(17)	29.4	29.4
	중견기업	(8)	50.0	37.5
	대기업	(3)	0.0	33.3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2)	0.0	100.0
	KOSDAQ시장 상장	(8)	50.0	12.5
	KONEX시장 상장	(1)	0.0	100.0
	비상장	(17)	29.4	29.4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28)	32.1	32.1
	없음	(0)	0.0	0.0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1)	0.0	100.0
	6~10인 이하	(4)	50.0	25.0
	11~30명 이하	(6)	33.3	0.0
	31~100명 이하	(5)	0.0	60.0
	101~300명 이하	(6)	50.0	33.3
	300인 초과	(6)	33.3	33.3

<부표 II -25>의 계속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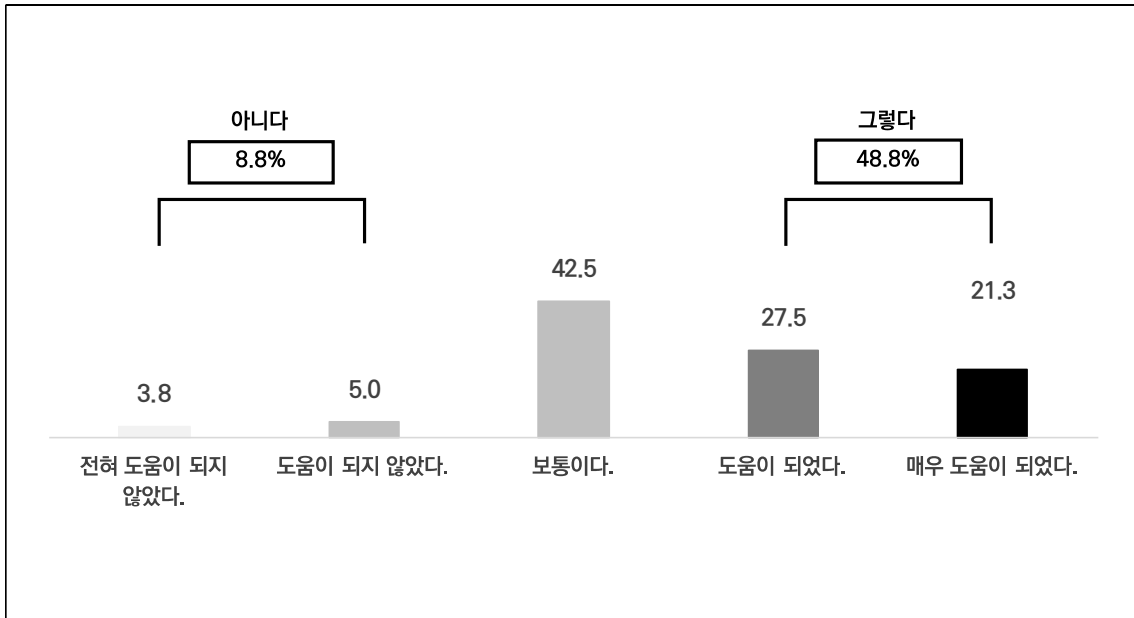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세액공제를 통해 줄어든 세금부담이 다른 긴급한 용으로 사용되어 지속적인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정지원과의 중복 수혜 불가 요건 때문에	기타
전 체		(28)	17.9	10.7	7.1
기업규모	중소기업	(17)	17.6	17.6	5.9
	중견기업	(8)	12.5	0.0	0.0
	대기업	(3)	33.3	0.0	33.3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2)	0.0	0.0	0.0
	KOSDAQ시장 상장	(8)	25.0	0.0	12.5
	KONEX시장 상장	(1)	0.0	0.0	0.0
	비상장	(17)	17.6	17.6	5.9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28)	17.9	10.7	7.1
	없음	(0)	0.0	0.0	0.0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1)	0.0	0.0	0.0
	6~10인 이하	(4)	0.0	25.0	0.0
	11~30명 이하	(6)	16.7	33.3	16.7
	31~100명 이하	(5)	40.0	0.0	0.0
	101~300명 이하	(6)	16.7	0.0	0.0
	300인 초과	(6)	16.7	0.0	16.7

9)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따른 연구인력 양적성장 도움 여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따른 연구인력 양적성장 도움 여부에 대해 알아본 결과, ‘그렇다’(도움이 되었다 + 매우 도움이 되었다)가 48.8%로 ‘아니다’(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도움이 되지 않았다)(8.8%)보다 높게 나타남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그렇다’(도움이 되었다 + 매우 도움이 되었다)가 52.1%, ‘중견기업’ 46.2%, ‘대기업’ 33.3%로 나타남

[부도 II -20]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따른 연구인력 양적성장 도움 여부

(n=80, 단위: %)



<부표 II -2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따른 연구인력 양적성장 도움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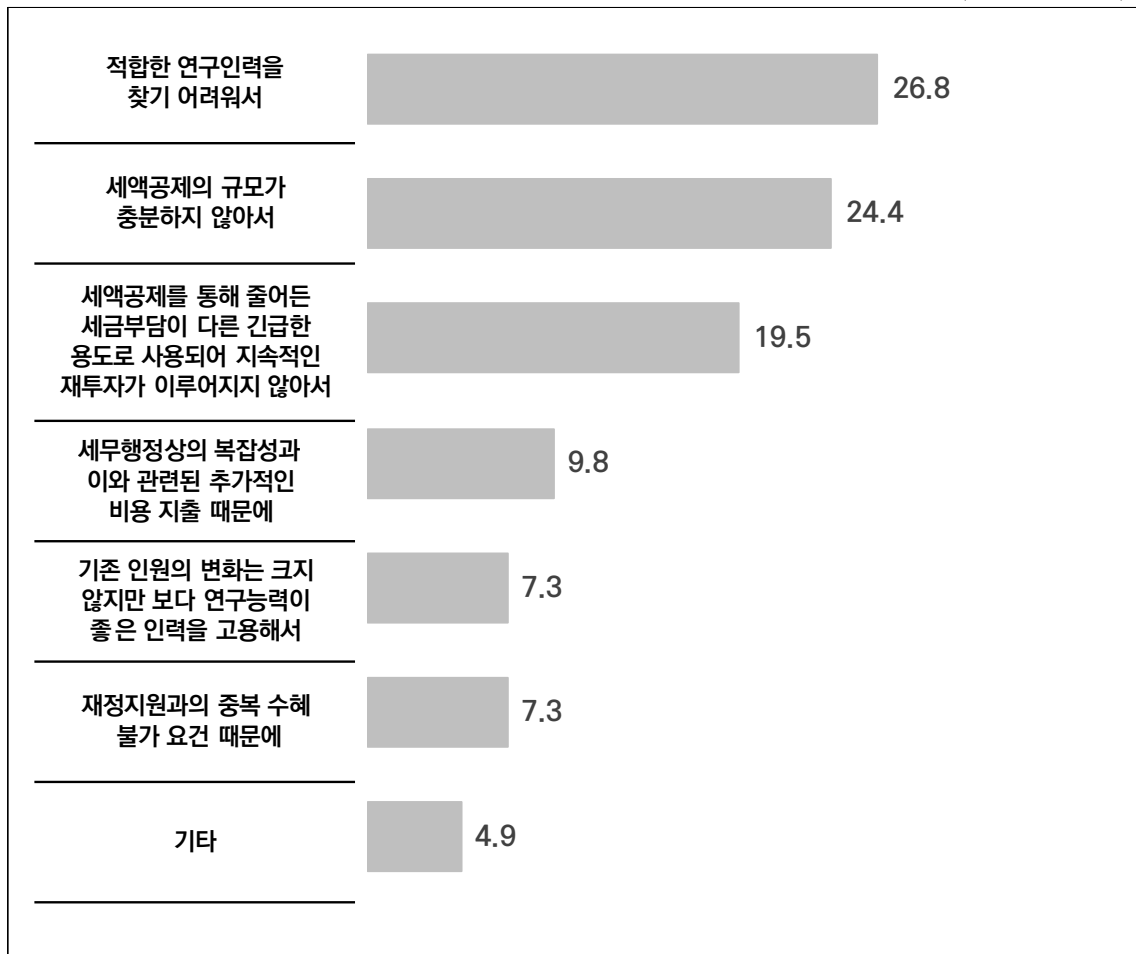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전 체	(80)	3.8	5.0	42.5	27.5	21.3	
기업규모	중소기업	(48)	4.2	8.3	35.4	27.1	25.0
	중견기업	(26)	3.8	0.0	50.0	26.9	19.2
	대기업	(6)	0.0	0.0	66.7	33.3	0.0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10)	0.0	0.0	50.0	50.0	0.0
	KOSDAQ시장 상장	(20)	5.0	5.0	45.0	20.0	25.0
	KONEX시장 상장	(1)	0.0	100.0	0.0	0.0	0.0
	비상장	(49)	4.1	4.1	40.8	26.5	24.5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80)	3.8	5.0	42.5	27.5	21.3
	없음	(0)	0.0	0.0	0.0	0.0	0.0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6)	0.0	16.7	33.3	16.7	33.3
	6~10인 이하	(9)	11.1	11.1	44.4	11.1	22.2
	11~30명 이하	(17)	5.9	0.0	41.2	29.4	23.5
	31~100명 이하	(14)	0.0	14.3	21.4	42.9	21.4
	101~300명 이하	(18)	0.0	0.0	50.0	27.8	22.2
	300인 초과	(16)	6.3	0.0	56.3	25.0	12.5

### 10) 연구인력 양적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 연구인력 양적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적합한 연구인력을 찾기 어려워서’가 26.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적합한 연구인력을 찾기 어려워서’, ‘세액공제를 통해 줄어든 세금부담이 다른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어 지속적인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각 26.1%)에서, ‘중견기업’은 ‘세액공제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서’(42.9%)에서, ‘대기업’은 ‘세액공제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서’, ‘세액공제를 통해 줄어든 세금부담이 다른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어 지속적인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세무행정상의 복잡성과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비용 지출 때문에’, ‘기타’(각 25.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부도 II -21] 연구인력 양적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n=41, 단위: %)



<부표 II -2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연구·인력 양적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적절한 연구 인력을 찾기 어려워서	세액공제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서	세액공제를 통해 줄어든 세금부담이 다른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어 지속적인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세무행정 상의 복잡성과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비용 지출 때문에	
전 체	(41)	26.8	24.4	19.5	9.8	
기업규모	중소기업	(23)	26.1	13.0	26.1	4.3
	중견기업	(14)	35.7	42.9	7.1	14.3
	대기업	(4)	0.0	25.0	25.0	25.0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5)	40.0	40.0	0.0	20.0
	KOSDAQ시장 상장	(11)	18.2	36.4	9.1	18.2
	KONEX시장 상장	(1)	0.0	0.0	100.0	0.0
	비상장	(24)	29.2	16.7	25.0	4.2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41)	26.8	24.4	19.5	9.8
	없음	(0)	0.0	0.0	0.0	0.0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3)	66.7	0.0	33.3	0.0
	6~10인 이하	(6)	16.7	16.7	33.3	0.0
	11~30명 이하	(8)	25.0	12.5	12.5	0.0
	31~100명 이하	(5)	40.0	20.0	40.0	0.0
	101~300명 이하	(9)	11.1	44.4	11.1	22.2
	300인 초과	(10)	30.0	30.0	10.0	20.0

<부표 II -27>의 계속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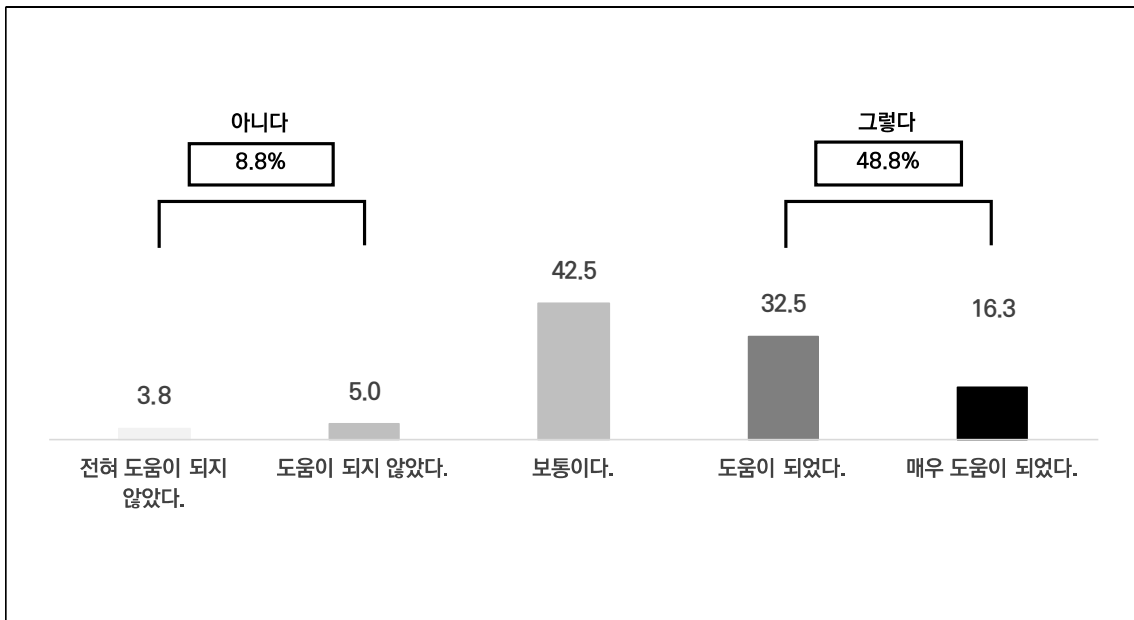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기존 인원의 변화는 크지 않지만 보다 연구능력이 좋은 인력을 고용해서	재정지원과의 중복 수혜 불가 요건 때문에	기타
전 체		(41)	7.3	7.3	4.9
기업규모	중소기업	(23)	13.0	13.0	4.3
	중견기업	(14)	0.0	0.0	0.0
	대기업	(4)	0.0	0.0	25.0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5)	0.0	0.0	0.0
	KOSDAQ시장 상장	(11)	9.1	0.0	9.1
	KONEX시장 상장	(1)	0.0	0.0	0.0
	비상장	(24)	8.3	12.5	4.2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41)	7.3	7.3	4.9
	없음	(0)	0.0	0.0	0.0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3)	0.0	0.0	0.0
	6~10인 이하	(6)	16.7	16.7	0.0
	11~30명 이하	(8)	12.5	25.0	12.5
	31~100명 이하	(5)	0.0	0.0	0.0
	101~300명 이하	(9)	11.1	0.0	0.0
	300인 초과	(10)	0.0	0.0	10.0

1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따른 연구인력 절적성장 도움 여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따른 연구인력 절적성장 도움 여부에 대해 알아본 결과, ‘그렇다’(도움이 되었다 + 매우 도움이 되었다)가 48.8%로 ‘아니다’(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도움이 되지 않았다)(8.8%)보다 높게 나타남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그렇다’(도움이 되었다 + 매우 도움이 되었다)가 54.2%, ‘중견기업’ 42.3%, ‘대기업’ 33.3%로 나타남

[부도 II -2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따른 연구인력 절적성장 도움 여부

(n=80, 단위: %)



<부표 II -28>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따른 연구인력 절적성장 도움 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전 체	(80)	3.8	5.0	42.5	32.5	16.3	
기업규모	중소기업	(48)	4.2	8.3	33.3	37.5	16.7
	중견기업	(26)	3.8	0.0	53.8	23.1	19.2
	대기업	(6)	0.0	0.0	66.7	33.3	0.0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10)	0.0	0.0	50.0	50.0	0.0
	KOSDAQ시장 상장	(20)	5.0	5.0	50.0	15.0	25.0
	KONEX시장 상장	(1)	0.0	0.0	100.0	0.0	0.0
	비상장	(49)	4.1	6.1	36.7	36.7	16.3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80)	3.8	5.0	42.5	32.5	16.3
	없음	(0)	0.0	0.0	0.0	0.0	0.0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6)	0.0	16.7	16.7	50.0	16.7
	6~10인 이하	(9)	11.1	11.1	44.4	11.1	22.2
	11~30명 이하	(17)	5.9	5.9	29.4	47.1	11.8
	31~100명 이하	(14)	0.0	7.1	35.7	42.9	14.3
	101~300명 이하	(18)	0.0	0.0	55.6	22.2	22.2
	300인 초과	(16)	6.3	0.0	56.3	25.0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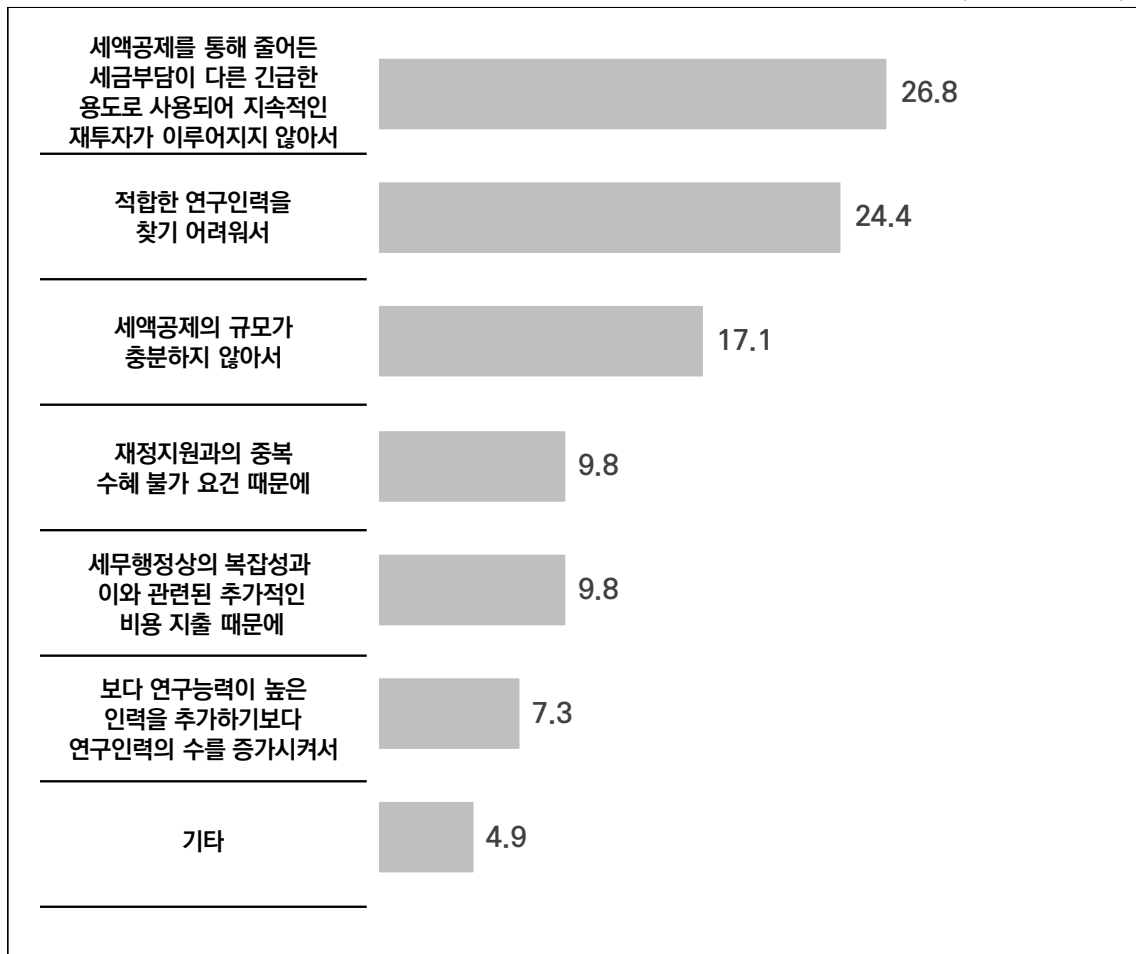
## 12) 연구인력 질적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 연구인력 질적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26.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세액공제를 통해 줄어든 세금부담이 다른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어 지속적인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40.9%)에서, ‘중견기업’은 ‘세액공제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서’(40.0%)에서, 대기업은 ‘세액공제를 통해 줄어든 세금부담이 다른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어 지속적인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세액공제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서’, ‘세무행정상의 복잡성과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비용 지출 때문에’, ‘기타’(각 25.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부도 II -23] 연구인력 질적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n=41, 단위: %)



<부표 II -29> 연구인력 질적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세액공제를 통해 줄어든 세금부담이 다른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어 지속적인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적절한 연구인력을 찾기 어려워서	세액공제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서	재정지원과의 중복 수혜 불가 요건 때문에	
전 체	(41)	26.8	24.4	17.1	9.8	
기업규모	중소기업	(22)	40.9	36.4	0.0	9.1
	중견기업	(15)	6.7	13.3	40.0	13.3
	대기업	(4)	25.0	0.0	25.0	0.0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5)	0.0	20.0	40.0	20.0
	KOSDAQ시장 상장	(12)	0.0	25.0	33.3	8.3
	KONEX시장 상장	(1)	100.0	0.0	0.0	0.0
	비상장	(23)	43.5	26.1	4.3	8.7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41)	26.8	24.4	17.1	9.8
	없음	(0)	0.0	0.0	0.0	0.0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2)	50.0	50.0	0.0	0.0
	6~10인 이하	(6)	66.7	33.3	0.0	0.0
	11~30명 이하	(7)	28.6	14.3	0.0	28.6
	31~100명 이하	(6)	33.3	50.0	0.0	0.0
	101~300명 이하	(10)	20.0	20.0	40.0	0.0
	300인 초과	(10)	0.0	10.0	30.0	20.0

<부표 II -29>의 계속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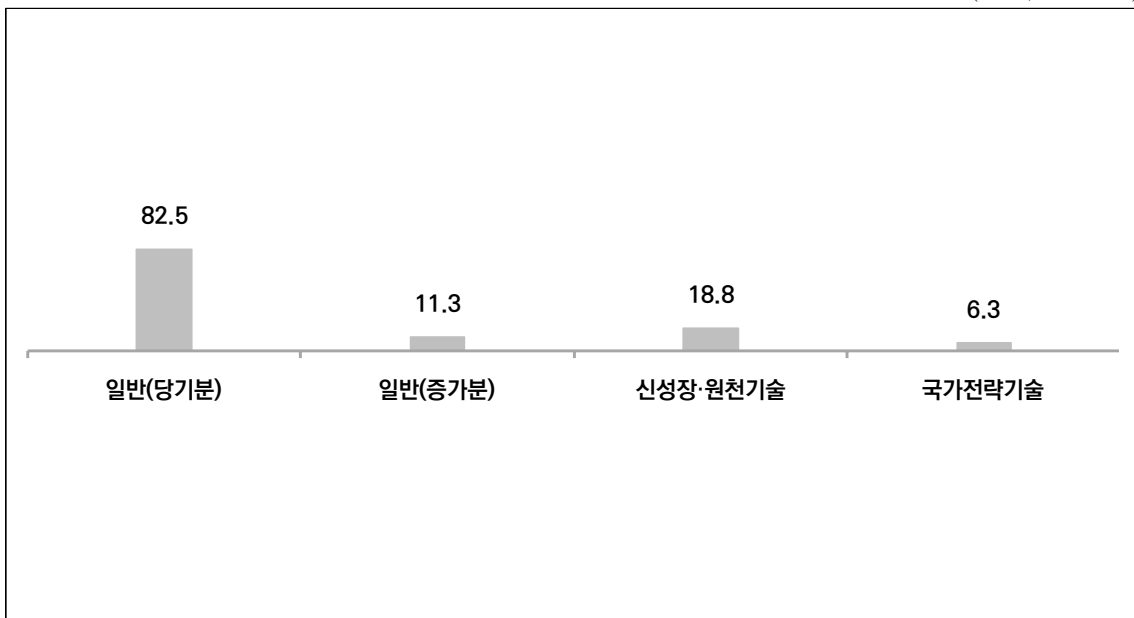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세무행정 상의 복잡성과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비용 지출 때문에	기존 인원의 변화는 크지 않지만 보다 연구능력이 좋은 인력을 고용해서	기타	
전 체	(41)	9.8	7.3	4.9	
기업규모	중소기업	(22)	4.5	4.5	4.5
	중견기업	(15)	13.3	13.3	0.0
	대기업	(4)	25.0	0.0	25.0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5)	20.0	0.0	0.0
	KOSDAQ시장 상장	(12)	16.7	8.3	8.3
	KONEX시장 상장	(1)	0.0	0.0	0.0
	비상장	(23)	4.3	8.7	4.3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41)	9.8	7.3	4.9
	없음	(0)	0.0	0.0	0.0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2)	0.0	0.0	0.0
	6~10인 이하	(6)	0.0	0.0	0.0
	11~30명 이하	(7)	0.0	14.3	14.3
	31~100명 이하	(6)	0.0	16.7	0.0
	101~300명 이하	(10)	20.0	0.0	0.0
	300인 초과	(10)	20.0	10.0	10.0

### 1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혜택을 받은 항목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혜택을 받은 항목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일반(당기분)’이 82.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일반(당기분)’이 ‘중소기업’(83.3%), ‘중견기업’(80.8%), ‘대기업’(83.3%)로 나타남

[부도 II -2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혜택을 받은 항목

(n=80, 단위: %)



<부표 II -30>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혜택을 받은 항목(수혜 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일반 (당기분)	일반 (증가분)	신성장· 원천기술	국가전략 기술
전 체		(80)	82.5	11.3	18.8	6.3
기업규모	중소기업	(48)	83.3	8.3	22.9	8.3
	중견기업	(26)	80.8	15.4	7.7	0.0
	대기업	(6)	83.3	16.7	33.3	16.7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10)	70.0	30.0	10.0	10.0
	KOSDAQ시장 상장	(20)	85.0	10.0	10.0	0.0
	KONEX시장 상장	(1)	100.0	0.0	0.0	0.0
	비상장	(49)	83.7	8.2	24.5	8.2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80)	82.5	11.3	18.8	6.3
	없음	(0)	-	-	-	-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6)	100.0	0.0	0.0	0.0
	6~10인 이하	(9)	88.9	0.0	33.3	11.1
	11~30명 이하	(17)	76.5	17.6	29.4	17.6
	31~100명 이하	(14)	85.7	0.0	21.4	0.0
	101~300명 이하	(18)	83.3	11.1	16.7	0.0
	300인 초과	(16)	75.0	25.0	6.3	6.3

<부표 II -3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혜택을 받은 항목(대상 비용)

(단위: 명, 만원)

구 분		사례수	일반 (당기분)	일반 (증가분)	신성장· 원천기술	국가전략 기술
전 체		(80)	169,607	140,764	407,385	327,190
기업규모	중소기업	(48)	57,638	15,764	499,697	550
	중견기업	(26)	253,972	244,461	193,571	-
	대기업	(6)	711,022	225,979	113,490	1,633,749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10)	598,683	81,370	225,979	1,633,749
	KOSDAQ시장 상장	(20)	259,405	479,856	193,571	-
	KONEX시장 상장	(1)	92,843	-	-	-
	비상장	(49)	60,988	15,764	458,139	550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80)	169,607	140,764	407,385	327,190
	없음	(0)	-	-	-	-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6)	10,819		13,229	100
	6~10인 이하	(9)	46,025	1,842	24,877	700
	11~30명 이하	(17)	132,163	-	1,777,530	-
	31~100명 이하	(14)	115,213	479,856	129,380	-
	101~300명 이하	(18)	594,937	75,410	225,979	1,633,749
	300인 초과	(16)	6.3	0.0	56.3	25.0

<부표 II -3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혜택을 받은 항목(공제세액)

(단위: 명,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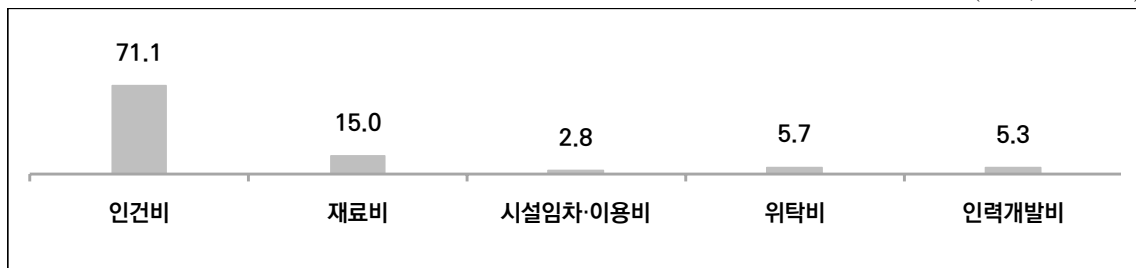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일반 (당기분)	일반 (증가분)	신성장· 원천기술	국가전략 기술
전 체		(80)	16,392	34,586	18,519	112,891
기업규모	중소기업	(48)	15,138	2,839	6,312	325
	중견기업	(26)	21,000	60,855	75,928	-
	대기업	(6)	7,078	56,495	28,253	563,153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10)	10,699	20,336	56,495	563,153
	KOSDAQ시장 상장	(20)	27,164	119,453	75,928	-
	KONEX시장 상장	(1)	23,210	-	-	-
	비상장	(49)	12,732	2,839	5,787	325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80)	16,392	34,586	18,519	112,891
	없음	(0)	-	-	-	-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6)	1,540	-	600	100
	6~10인 이하	(9)	12,543	435	5,271	400
	11~30명 이하	(17)	33,803	-	13,759	-
	31~100명 이하	(14)	11,002	119,453	50,622	-
	101~300명 이하	(18)	27,038	17,765	56,495	563,153
	300인 초과	(16)	6.3	0.0	56.3	25.0

14) 항목별 비용분포\_일반(당기분)

- 항목별 비용분포\_일반(당기분)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인건비’가 71.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재료비’(15.0%), ‘위탁비’(5.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인건비’(71.5%)에서, ‘중견기업’은 ‘인건비’(70.9%)에서, ‘대기업’은 ‘인건비’(69.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부도 II -25] 항목별 비용분포\_일반(당기분)

(n=66, 단위: %)



<부표 II -33> 항목별 비용분포\_일반(당기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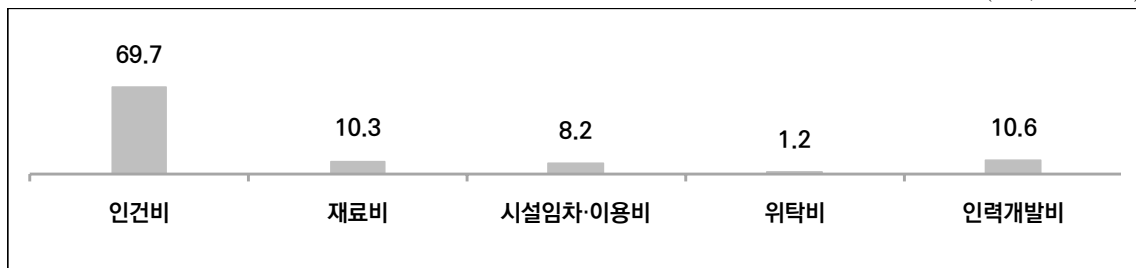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이용비	위탁비	인력개발비	
전체	(66)	71.1	15.0	2.8	5.7	5.3	
기업규모	중소기업	(40)	71.5	14.4	3.4	6.6	4.2
	중견기업	(21)	70.9	16.0	1.4	3.2	8.5
	대기업	(5)	69.2	15.6	4.2	9.8	1.2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7)	68.0	13.0	1.6	5.1	12.3
	KOSDAQ시장 상장	(17)	73.9	17.5	1.2	1.9	5.5
	KONEX시장 상장	(1)	70.0	30.0	0.0	0.0	0.0
	비상장	(41)	70.5	14.0	3.8	7.6	4.2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66)	71.1	15.0	2.8	5.7	5.3
	없음	(0)	-	-	-	-	-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6)	67.5	26.7	2.5	1.7	1.7
	6~10인 이하	(8)	77.5	10.0	3.8	2.5	6.3
	11~30명 이하	(13)	61.1	15.6	6.1	10.6	6.6
	31~100명 이하	(12)	80.8	8.8	0.8	7.9	1.7
	101~300명 이하	(15)	73.8	13.2	2.7	1.7	8.7
	300인 초과	(12)	66.6	20.4	0.9	7.6	4.5

14) 항목별 비용분포\_일반(증가분)

- 항목별 비용분포\_일반(증가분)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인건비’가 69.7%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인력개발비’(10.6%), ‘재료비’(1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인건비’(80.0%)에서, ‘중견기업’은 ‘인건비’(66.0%)에서, ‘대기업’은 ‘인건비’(43.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부도 II -26] 항목별 비용분포\_일반(증가분)

(n=9, 단위: %)



<부표 II -34> 항목별 비용분포\_일반(증가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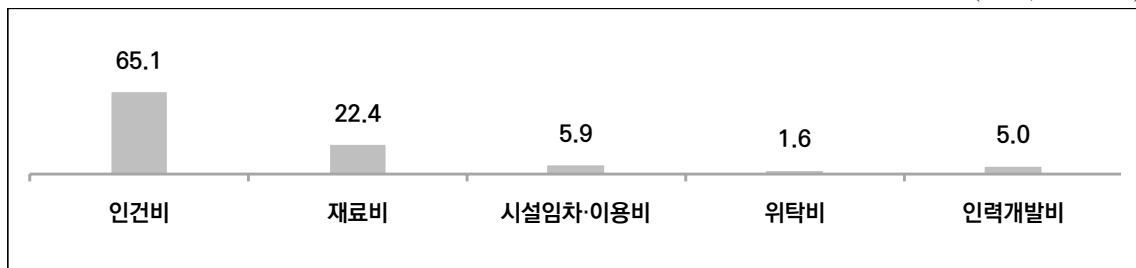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이용비	위탁비	인력개발비	
전체	(9)	69.7	10.3	8.2	1.2	10.6	
기업규모	중소기업	(4)	80.0	15.0	5.0	0.0	0.0
	중견기업	(4)	66.0	5.3	2.5	2.5	23.8
	대기업	(1)	43.0	12.0	44.0	1.0	0.0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3)	62.3	11.0	18.0	3.7	5.0
	KOSDAQ시장 상장	(2)	60.0	0.0	0.0	0.0	40.0
	KONEX시장 상장	(0)	-	-	-	-	-
	비상장	(4)	80.0	15.0	5.0	0.0	0.0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9)	69.7	10.3	8.2	1.2	10.6
	없음	(0)	-	-	-	-	-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0)	-	-	-	-	-
	6~10인 이하	(0)	-	-	-	-	-
	11~30명 이하	(3)	73.3	20.0	6.7	0.0	0.0
	31~100명 이하	(0)	-	-	-	-	-
	101~300명 이하	(2)	60.0	0.0	0.0	0.0	40.0
	300인 초과	(4)	71.8	8.3	13.5	2.8	3.8

14) 항목별 비용분포\_신성장·원천기술

- 항목별 비용분포\_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인건비’가 65.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재료비’(22.4%), ‘시설임차·이용비’(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인건비’(72.7%)에서, ‘중견기업’은 ‘재료비’(58.5%)에서, ‘대기업’은 ‘인건비’(51.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부도 II -27] 항목별 비용분포\_신성장·원천기술

(n=15, 단위: %)



<부표 II -35> 항목별 비용분포\_신성장·원천기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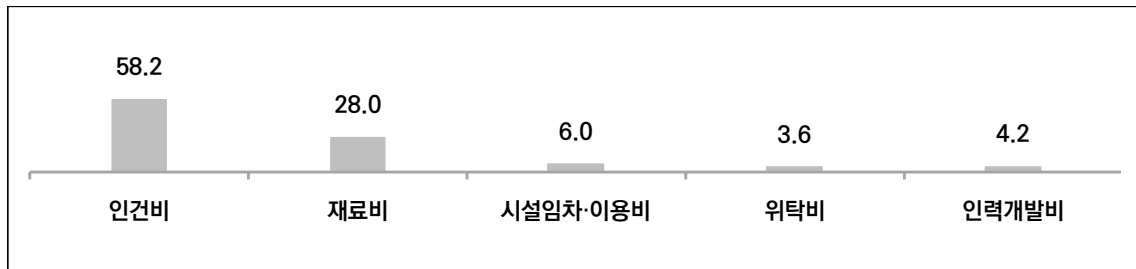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이용비	위탁비	인력개발비	
전체	(15)	65.1	22.4	5.9	1.6	5.0	
기업규모	중소기업	(11)	72.7	17.0	3.2	1.6	5.5
	중견기업	(2)	36.5	58.5	0.0	0.0	5.0
	대기업	(2)	51.5	16.0	27.0	3.0	2.5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1)	43.0	12.0	44.0	1.0	0.0
	KOSDAQ시장 상장	(2)	36.5	58.5	0.0	0.0	5.0
	KONEX시장 상장	(12)	71.7	17.3	3.8	1.9	5.4
	비상장	(0)	-	-	-	-	-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15)	65.1	22.4	5.9	1.6	5.0
	없음	(0)	-	-	-	-	-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0)	-	-	-	-	-
	6~10인 이하	(3)	80.0	13.3	3.3	0.0	3.3
	11~30명 이하	(5)	58.0	23.4	5.0	3.6	10.0
	31~100명 이하	(3)	90.0	10.0	0.0	0.0	0.0
	101~300명 이하	(3)	44.3	45.7	3.3	1.7	5.0
	300인 초과	(1)	43.0	12.0	44.0	1.0	0.0

#### 14) 항목별 비용분포\_국가전략기술

- 항목별 비용분포\_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인건비’가 58.2%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재료비’(28.0%), ‘시설임차·이용비’(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인건비’(67.5%)에서, ‘대기업’은 ‘재료비’(50.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부도 II -28] 항목별 비용분포\_국가전략기술

(n=5, 단위: %)



<부표 II -36> 항목별 비용분포\_국가전략기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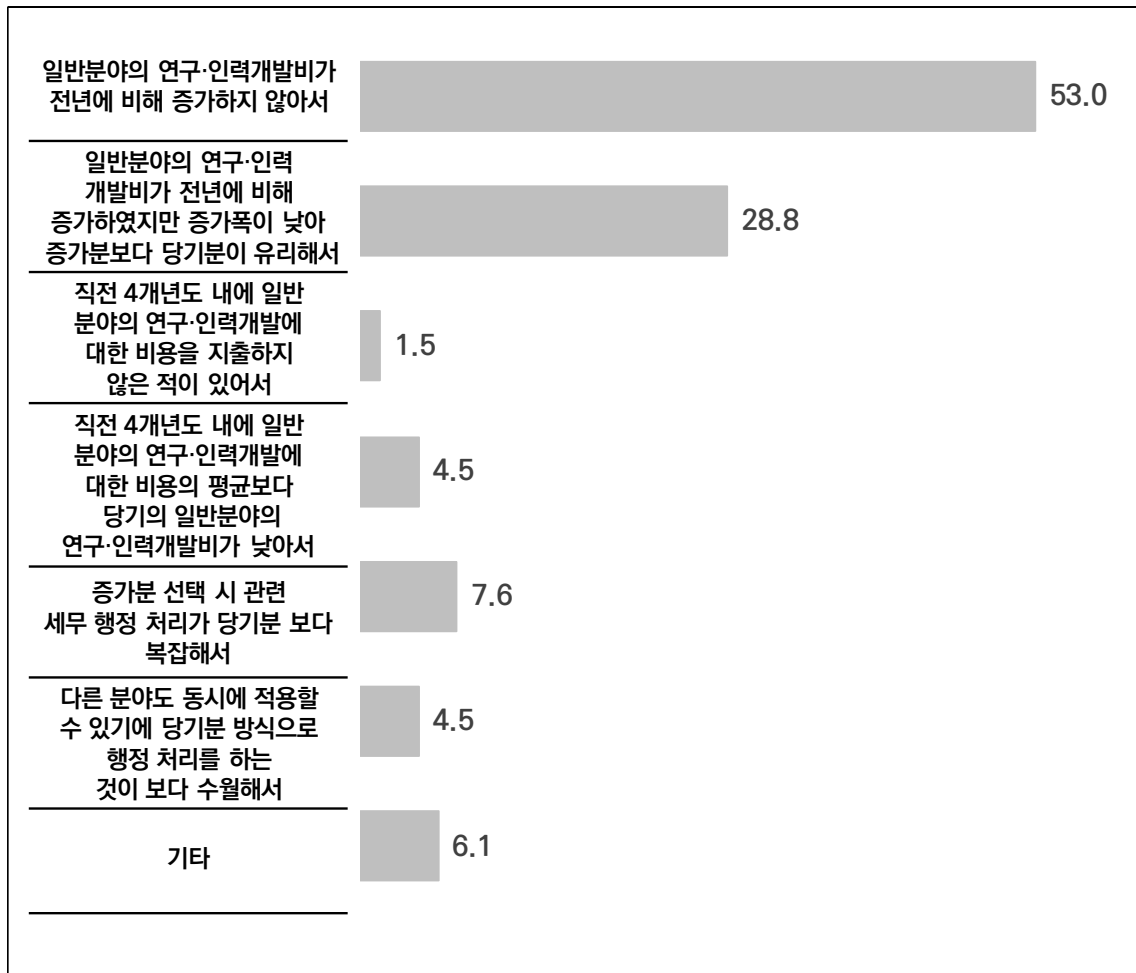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이용비	위탁비	인력개발비	
전체	(5)	58.2	28.0	6.0	3.6	4.2	
기업규모	중소기업	(4)	67.5	22.5	5.0	0.0	5.0
	중견기업	(0)	-	-	-	-	-
	대기업	(1)	21.0	50.0	10.0	18.0	1.0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1)	21.0	50.0	10.0	18.0	1.0
	KOSDAQ시장 상장	(0)	-	-	-	-	-
	KONEX시장 상장	(0)	-	-	-	-	-
	비상장	(4)	67.5	22.5	5.0	0.0	5.0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5)	58.2	28.0	6.0	3.6	4.2
	없음	(0)	-	-	-	-	-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0)	-	-	-	-	-
	6~10인 이하	(0)	-	-	-	-	-
	11~30명 이하	(0)	-	-	-	-	-
	31~100명 이하	(1)	50.0	30.0	0.0	0.0	20.0
	101~300명 이하	(3)	73.3	20.0	6.7	0.0	0.0
	300인 초과	(1)	21.0	50.0	10.0	18.0	1.0

15) 증가분이 아닌 당기분을 선택한 이유(중복응답)

- 증가분이 아닌 당기분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일반분야의 연구·인력 개발비가 전년에 비해 증가하지 않아서’가 53.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일반분야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전년에 비해 증가하지 않아서’가 ‘중소기업’(52.5%), ‘중견기업’(52.4%), ‘대기업’(60.0%)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남

[부도 II -29] 증가분이 아닌 당기분을 선택한 이유(중복응답)

(n=66, 단위: %)



<부표 II -37> 증가분이 아닌 당기분을 선택한 이유(중복응답)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 체		(66)	53.0	28.8	1.5	4.5	7.6	4.5	6.1
기업규모	중소기업	(40)	52.5	32.5	0.0	5.0	7.5	7.5	2.5
	중견기업	(21)	52.4	28.6	0.0	4.8	9.5	0.0	9.5
	대기업	(5)	60.0	0.0	20.0	0.0	0.0	0.0	20.0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7)	57.1	14.3	14.3	0.0	14.3	0.0	0.0
	KOSDAQ시장 상장	(17)	47.1	35.3	0.0	0.0	0.0	5.9	17.6
	KONEX시장 상장	(1)	0.0	0.0	0.0	0.0	100.0	0.0	0.0
	비상장	(41)	56.1	29.3	0.0	7.3	7.3	4.9	2.4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66)	53.0	28.8	1.5	4.5	7.6	4.5	6.1
	없음	(0)	-	-	-	-	-	-	-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6)	66.7	33.3	0.0	0.0	0.0	16.7	0.0
	6~10인 이하	(8)	62.5	25.0	0.0	0.0	12.5	0.0	0.0
	11~30명 이하	(13)	38.5	38.5	0.0	15.4	7.7	7.7	7.7
	31~100명 이하	(12)	58.3	25.0	0.0	8.3	8.3	0.0	0.0
	101~300명 이하	(15)	60.0	26.7	0.0	0.0	0.0	6.7	13.3
	300인 초과	(12)	41.7	25.0	8.3	0.0	16.7	0.0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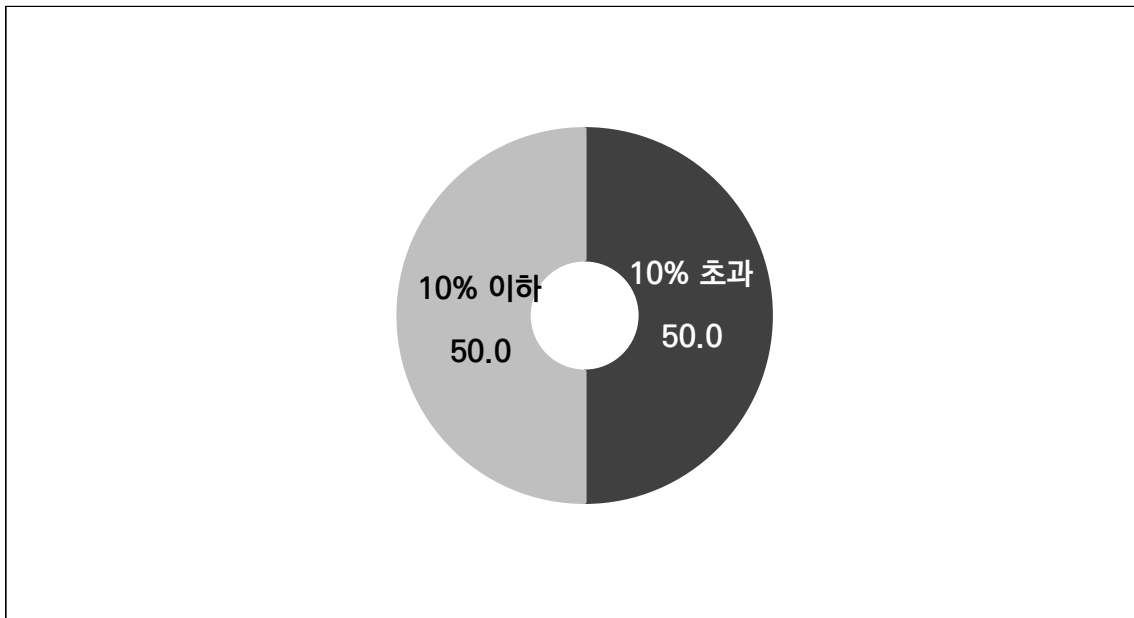
- ① 일반분야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전년에 비해 증가하지 않아서
- ② 일반분야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지만 증가폭이 낮아 증가분보다 당기분이 유리해서
- ③ 직전 4개년도 내에 일반분야의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적이 있어서
- ④ 직전 4개년도 내에 일반분야의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비용의 평균보다 당기의 일반분야의 연구·인력개발비가 낮아서
- ⑤ 증가분 선택 시 관련 세무 행정 처리가 당기분보다 복잡해서
- ⑥ 다른 분야도 동시에 적용할 수 있기에 당기분 방식으로 행정 처리를 하는 것이 보다 수월해서
- ⑦ 기타

16) 당기분 방식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기 위한 증가분 수준

- 당기분 방식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기 위한 증가분 수준에 대해 알아본 결과, ‘10% 이하’, ‘10% 초과’ 모두 50.0%로 나타났고, 평균 20.4%로 나타남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10% 이하’가 ‘중소기업’(41.3%), ‘중견기업’(59.1%), ‘대기업’(83.3%)으로 나타남

[부도 II -30] 당기분 방식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기 위한 증가분 수준

(n=74, 단위: %)



<부표 II -38> 당기분 방식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기 위한 증가분 수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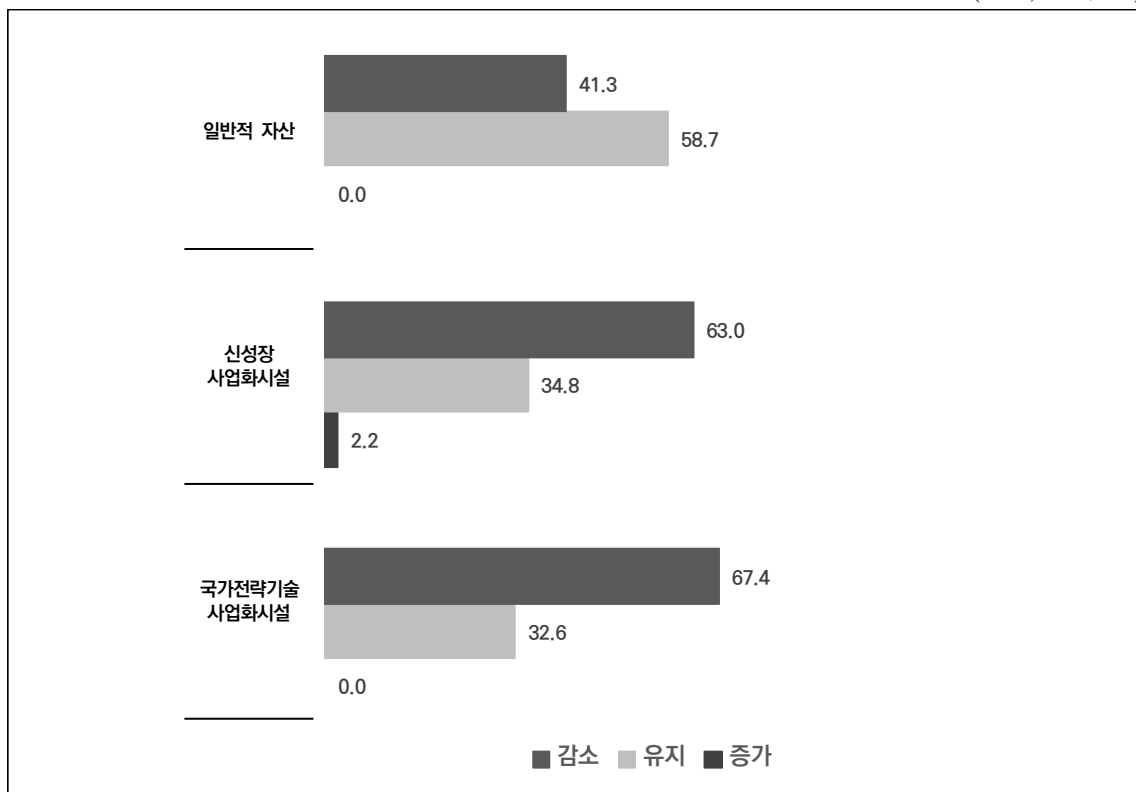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10% 이하	10% 초과	평균
전 체		(74)	50.0	50.0	20.4
기업규모	중소기업	(46)	41.3	58.7	23.7
	중견기업	(22)	59.1	40.9	15.8
	대기업	(6)	83.3	16.7	11.7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8)	87.5	12.5	10.6
	KOSDAQ시장 상장	(18)	50.0	50.0	16.3
	KONEX시장 상장	(1)	0.0	100.0	60.0
	비상장	(47)	44.7	55.3	22.7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74)	50.0	50.0	20.4
	없음	(0)	0.0	0.0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6)	50.0	50.0	15.8
	6~10인 이하	(9)	33.3	66.7	33.0
	11~30명 이하	(16)	37.5	62.5	22.3
	31~100명 이하	(14)	50.0	50.0	22.5
	101~300명 이하	(16)	68.8	31.3	12.7
	300인 초과	(13)	53.8	46.2	18.5

17) 실제 지출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지출 수준

- 실제 지출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지출 수준은 ‘일반’에서 ‘감소’가 41.3%, ‘유지’는 58.7%, ‘증가’는 0.0%로 나타났으며 평균 0.9배로 나타남
- 실제 지출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지출 수준은 ‘신성장·원천기술’에서 ‘감소’가 63.0%, ‘유지’는 34.8%, ‘증가’는 2.2%로 나타났으며 평균 0.5배로 나타남
- 실제 지출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지출 수준은 ‘국가전략기술’에서 ‘감소’가 67.4%, ‘유지’는 32.6%, ‘증가’는 0.0%로 나타났으며 평균 0.4배로 나타남

[부도 II -31] 실제 지출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지출 수준

(n=46, 단위: %)



**<부표 II -39> 실제 지출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지출 수준(일반)**

(단위: 명, %, 배)

구 분		사례수	감소	유지	증가	평균
전 체		(46)	41.3	58.7	0.0	0.9
기업규모	중소기업	(27)	37.0	63.0	0.0	0.8
	중견기업	(15)	46.7	53.3	0.0	0.9
	대기업	(4)	50.0	50.0	0.0	0.9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8)	62.5	37.5	0.0	0.9
	KOSDAQ시장 상장	(10)	40.0	60.0	0.0	1.0
	KONEX시장 상장	(1)	0.0	100.0	0.0	1.0
	비상장	(27)	37.0	63.0	0.0	0.8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46)	41.3	58.7	0.0	0.9
	없음	(0)	-	-	-	-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4)	75.0	25.0	0.0	0.6
	6~10인 이하	(3)	33.3	66.7	0.0	1.0
	11~30명 이하	(8)	12.5	87.5	0.0	1.0
	31~100명 이하	(11)	36.4	63.6	0.0	0.8
	101~300명 이하	(9)	55.6	44.4	0.0	0.9
	300인 초과	(11)	45.5	54.5	0.0	1.0

**<부표 II -40> 실제 지출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지출 수준(신성장·원천기술)**

(단위: 명, %, 배)

구 분		사례수	감소	유지	증가	평균
전 체		(46)	63.0	34.8	2.2	0.5
기업규모	중소기업	(27)	51.9	48.1	0.0	0.6
	중견기업	(15)	80.0	13.3	6.7	0.3
	대기업	(4)	75.0	25.0	0.0	0.6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8)	75.0	25.0	0.0	0.3
	KOSDAQ시장 상장	(10)	70.0	20.0	10.0	0.4
	KONEX시장 상장	(1)	100.0	0.0	0.0	0.0
	비상장	(27)	55.6	44.4	0.0	0.6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46)	63.0	34.8	2.2	0.5
	없음	(0)	-	-	-	-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4)	75.0	25.0	0.0	0.3
	6~10인 이하	(3)	33.3	66.7	0.0	0.7
	11~30명 이하	(8)	37.5	62.5	0.0	0.7
	31~100명 이하	(11)	45.5	54.5	0.0	0.6
	101~300명 이하	(9)	77.8	11.1	11.1	0.5
	300인 초과	(11)	90.9	9.1	0.0	0.2

〈부표 II -41〉 실제 지출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지출 수준(국가전략기술)

(단위: 명, %,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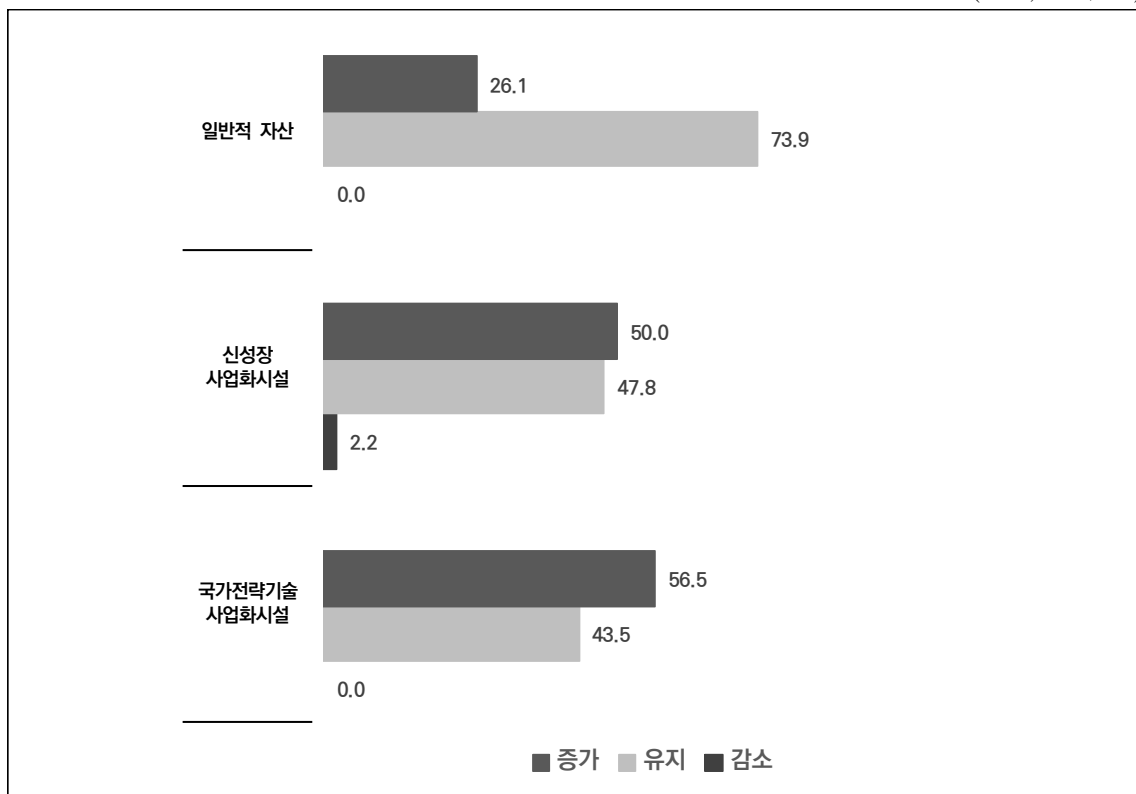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감소	유지	증가	평균
전 체		(46)	67.4	32.6	0.0	0.4
기업규모	중소기업	(27)	59.3	40.7	0.0	0.5
	중견기업	(15)	80.0	20.0	0.0	0.3
	대기업	(4)	75.0	25.0	0.0	0.6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8)	75.0	25.0	0.0	0.4
	KOSDAQ시장 상장	(10)	70.0	30.0	0.0	0.4
	KONEX시장 상장	(1)	100.0	0.0	0.0	0.0
	비상장	(27)	63.0	37.0	0.0	0.5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46)	67.4	32.6	0.0	0.4
	없음	(0)	-	-	-	-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4)	75.0	25.0	0.0	0.3
	6~10인 이하	(3)	33.3	66.7	0.0	0.7
	11~30명 이하	(8)	37.5	62.5	0.0	0.7
	31~100명 이하	(11)	63.6	36.4	0.0	0.4
	101~300명 이하	(9)	77.8	22.2	0.0	0.5
	300인 초과	(11)	90.9	9.1	0.0	0.2

18) 실제 고용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고용 수준

- 실제 고용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고용 수준은 ‘일반’에서 ‘감소’가 26.1%, ‘유지’는 73.9%, ‘증가’는 0.9%로 나타났으며 평균 0.9배로 나타남
- 실제 고용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고용 수준은 ‘신성장·원천기술’에서 ‘감소’가 50.0%, ‘유지’는 47.8%, ‘증가’는 2.2%로 나타났으며 평균 0.6배로 나타남
- 실제 고용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고용 수준은 ‘국가전략기술’에서 ‘감소’가 56.5%, ‘유지’는 43.5%, ‘증가’는 0.0%로 나타났으며 평균 0.5배로 나타남

[부도 II -32] 실제 고용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고용 수준

(n=46, 단위: %)



〈부표 II -42〉 실제 고용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고용 수준(일반)

(단위: 명, %, 배)

구 분		사례수	감소	유지	증가	평균
전 체		(46)	26.1	73.9	0.0	0.9
기업규모	중소기업	(27)	25.9	74.1	0.0	0.9
	중견기업	(15)	20.0	80.0	0.0	1.0
	대기업	(4)	50.0	50.0	0.0	0.9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8)	37.5	62.5	0.0	0.9
	KOSDAQ시장 상장	(10)	20.0	80.0	0.0	1.0
	KONEX시장 상장	(1)	0.0	100.0	0.0	1.0
	비상장	(27)	25.9	74.1	0.0	0.9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46)	26.1	73.9	0.0	0.9
	없음	(0)	-	-	-	-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4)	25.0	75.0	0.0	0.8
	6~10인 이하	(3)	33.3	66.7	0.0	1.0
	11~30명 이하	(8)	12.5	87.5	0.0	1.0
	31~100명 이하	(11)	36.4	63.6	0.0	0.8
	101~300명 이하	(9)	33.3	66.7	0.0	0.9
	300인 초과	(11)	18.2	81.8	0.0	1.0

〈부표 II -43〉 실제 고용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고용 수준(신성장·원천기술)

(단위: 명, %, 배)

구 분		사례수	감소	유지	증가	평균
전 체		(46)	50.0	47.8	2.2	0.6
기업규모	중소기업	(27)	37.0	63.0	0.0	0.7
	중견기업	(15)	66.7	26.7	6.7	0.3
	대기업	(4)	75.0	25.0	0.0	0.6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8)	75.0	25.0	0.0	0.3
	KOSDAQ시장 상장	(10)	50.0	40.0	10.0	0.5
	KONEX시장 상장	(1)	100.0	0.0	0.0	0.0
	비상장	(27)	40.7	59.3	0.0	0.7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46)	50.0	47.8	2.2	0.6
	없음	(0)	-	-	-	-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4)	25.0	75.0	0.0	0.9
	6~10인 이하	(3)	33.3	66.7	0.0	0.7
	11~30명 이하	(8)	37.5	62.5	0.0	0.7
	31~100명 이하	(11)	36.4	63.6	0.0	0.7
	101~300명 이하	(9)	55.6	33.3	11.1	0.5
	300인 초과	(11)	81.8	18.2	0.0	0.3

〈부표 II -44〉 실제 고용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고용 수준(국가전략기술)

(단위: 명, %,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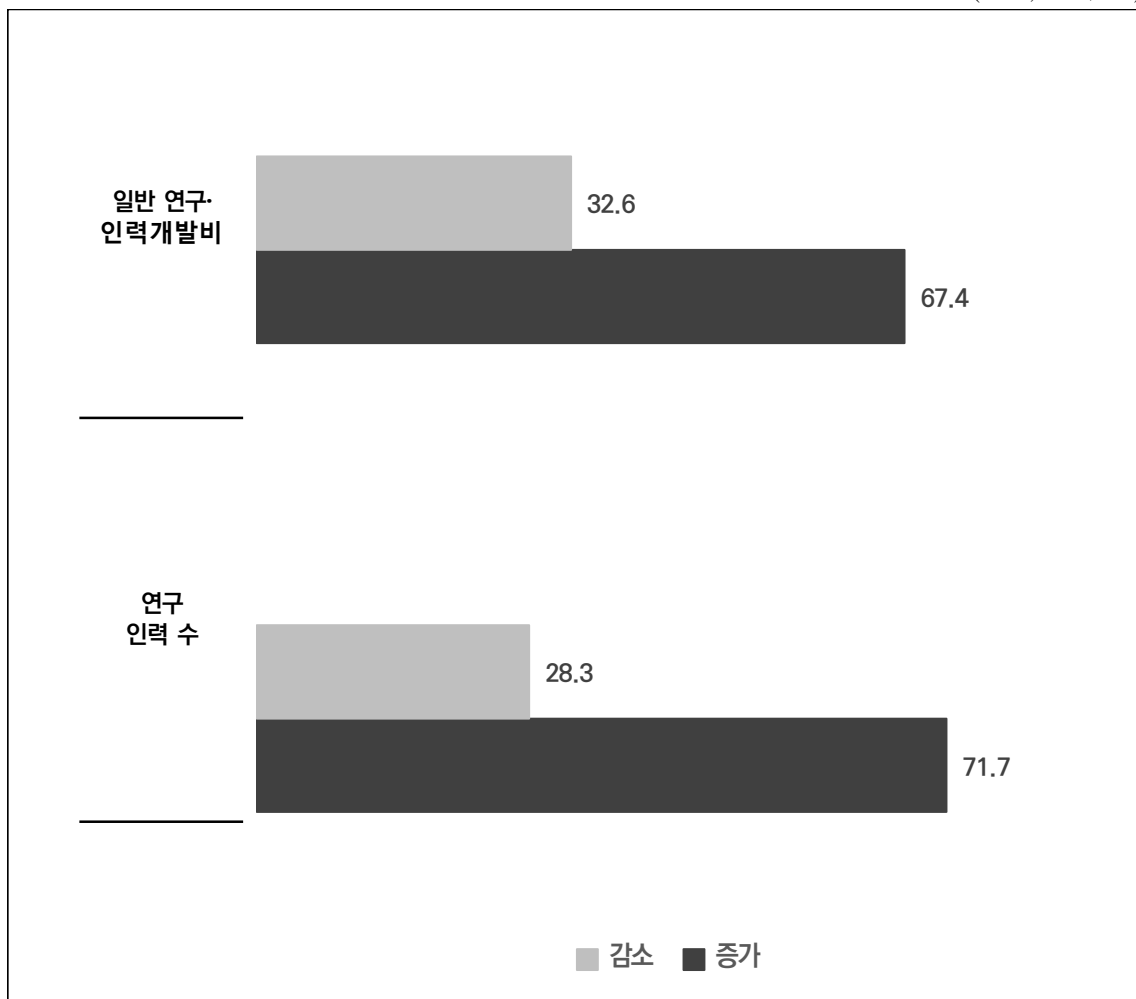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감소	유지	증가	평균
전 체		(46)	56.5	43.5	0.0	0.5
기업규모	중소기업	(27)	44.4	55.6	0.0	0.7
	중견기업	(15)	73.3	26.7	0.0	0.3
	대기업	(4)	75.0	25.0	0.0	0.6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8)	75.0	25.0	0.0	0.4
	KOSDAQ시장 상장	(10)	60.0	40.0	0.0	0.4
	KONEX시장 상장	(1)	100.0	0.0	0.0	0.0
	비상장	(27)	48.1	51.9	0.0	0.6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46)	56.5	43.5	0.0	0.5
	없음	(0)	-	-	-	-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4)	25.0	75.0	0.0	0.9
	6~10인 이하	(3)	33.3	66.7	0.0	0.7
	11~30명 이하	(8)	37.5	62.5	0.0	0.7
	31~100명 이하	(11)	54.5	45.5	0.0	0.5
	101~300명 이하	(9)	55.6	44.4	0.0	0.5
	300인 초과	(11)	90.9	9.1	0.0	0.2

19) 일반분야 증가분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발비 및 고용 수준

- 일반분야 증가분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발비 수준은 ‘감소’가 32.6%, ‘증가’가 67.4%로 나타났으며 평균 0.9배로 나타남
- 일반분야 증가분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 수준은 ‘감소’가 28.3%, ‘증가’가 71.7%로 나타났으며 평균 0.9배로 나타남

[부도 II -33] 일반분야 증가분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발비 및 고용 수준

(n=46, 단위: %)



〈부표 II -45〉 일반분야 증가분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발비 수준

(단위: 명, %, 배)

구 분		사례수	감소	유지	평균
전 체		(46)	32.6	67.4	0.9
기업규모	중소기업	(27)	22.2	77.8	1.0
	중견기업	(15)	46.7	53.3	0.9
	대기업	(4)	50.0	50.0	0.8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8)	50.0	50.0	0.9
	KOSDAQ시장 상장	(10)	50.0	50.0	0.9
	KONEX시장 상장	(1)	0.0	100.0	1.0
	비상장	(27)	22.2	77.8	1.0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46)	32.6	67.4	0.9
	없음	(0)	-	-	-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4)	25.0	75.0	0.9
	6~10인 이하	(3)	33.3	66.7	1.0
	11~30명 이하	(8)	12.5	87.5	1.0
	31~100명 이하	(11)	27.3	72.7	1.0
	101~300명 이하	(9)	55.6	44.4	0.9
	300인 초과	(11)	36.4	63.6	1.0

〈부표 II -46〉 일반분야 증가분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 수준

(단위: 명, %, 배)

구 분		사례수	감소	유지	평균
전 체		(46)	28.3	71.7	0.9
기업규모	중소기업	(27)	22.2	77.8	1.0
	중견기업	(15)	33.3	66.7	0.9
	대기업	(4)	50.0	50.0	0.8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8)	37.5	62.5	0.9
	KOSDAQ시장 상장	(10)	40.0	60.0	1.0
	KONEX시장 상장	(1)	0.0	100.0	1.0
	비상장	(27)	22.2	77.8	1.0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46)	28.3	71.7	0.9
	없음	(0)	-	-	-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4)	25.0	75.0	0.9
	6~10인 이하	(3)	33.3	66.7	1.0
	11~30명 이하	(8)	12.5	87.5	1.0
	31~100명 이하	(11)	27.3	72.7	1.0
	101~300명 이하	(9)	55.6	44.4	0.8
	300인 초과	(11)	18.2	81.8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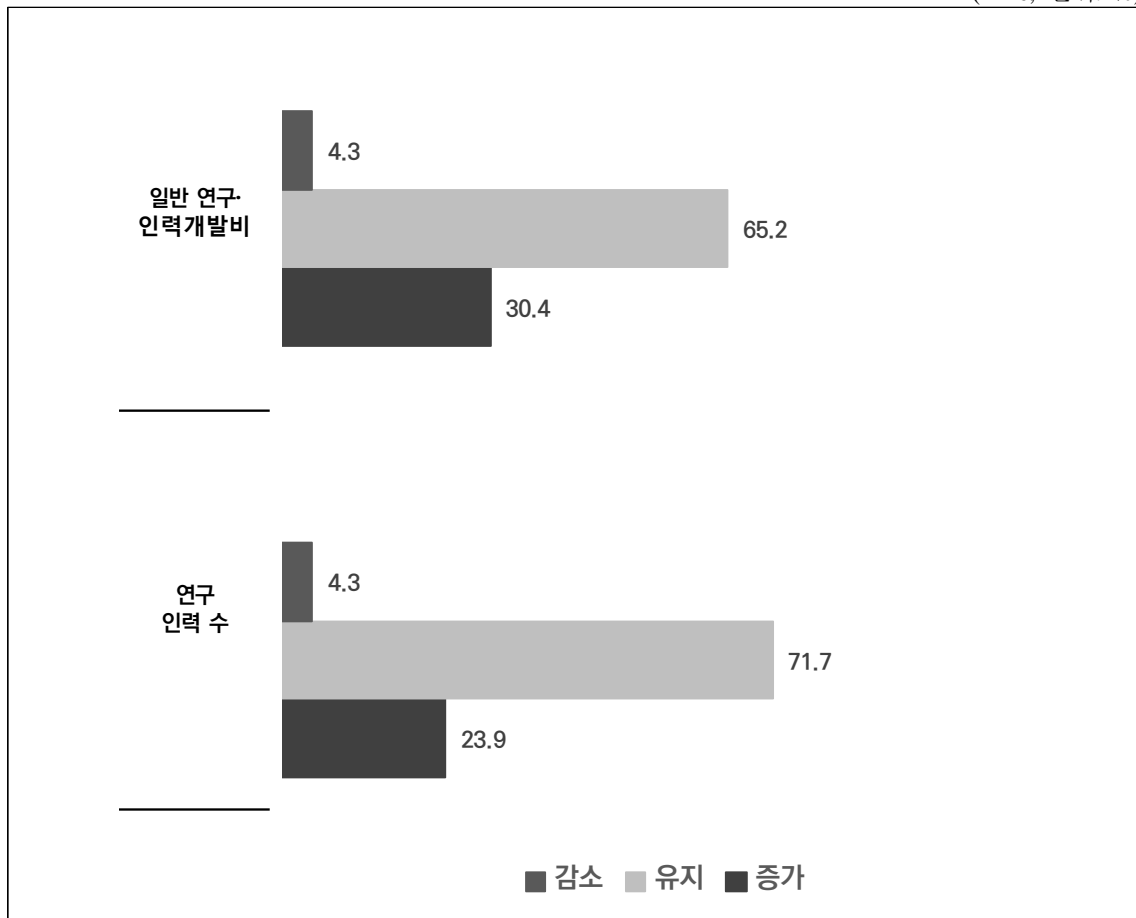
20) 일반분야 당기분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발비 및 고용 수준

□ 일반분야 당기분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발비 수준은 ‘감소’가 4.3%, ‘유지’가 65.2%, ‘증가’가 30.4%로 나타났으며 평균 1.0배로 나타남

□ 일반분야 당기분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 수준은 ‘감소’가 4.3%, ‘유지’가 71.7%, ‘증가’가 23.9%로 나타났으며 평균 1.0배로 나타남

[부도 II -34] 일반분야 당기분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발비 및 고용 수준

(n=46, 단위: %)



〈부표 II -47〉 일반분야 당기분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발비 수준

(단위: 명, %, 배)

구 분		사례수	감소	유지	증가	평균
전 체		(46)	4.3	65.2	30.4	1.0
기업규모	중소기업	(27)	0.0	74.1	25.9	1.0
	중견기업	(15)	6.7	46.7	46.7	1.0
	대기업	(4)	25.0	75.0	0.0	0.9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8)	12.5	50.0	37.5	1.0
	KOSDAQ시장 상장	(10)	0.0	40.0	60.0	1.0
	KONEX시장 상장	(1)	0.0	100.0	0.0	1.0
	비상장	(27)	3.7	77.8	18.5	1.0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46)	4.3	65.2	30.4	1.0
	없음	(0)	-	-	-	-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4)	0.0	50.0	50.0	1.1
	6~10인 이하	(3)	0.0	66.7	33.3	1.0
	11~30명 이하	(8)	0.0	87.5	12.5	1.0
	31~100명 이하	(11)	0.0	72.7	27.3	1.0
	101~300명 이하	(9)	22.2	44.4	33.3	0.9
	300인 초과	(11)	0.0	63.6	36.4	1.0

〈부표 II -48〉 일반분야 당기분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 수준

(단위: 명, %, 배)

구 분		사례수	감소	유지	증가	평균
전 체		(46)	4.3	71.7	23.9	1.0
기업규모	중소기업	(27)	0.0	74.1	25.9	1.0
	중견기업	(15)	6.7	66.7	26.7	1.0
	대기업	(4)	25.0	75.0	0.0	0.9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8)	12.5	75.0	12.5	0.9
	KOSDAQ시장 상장	(10)	0.0	50.0	50.0	1.0
	KONEX시장 상장	(1)	0.0	100.0	0.0	1.0
	비상장	(27)	3.7	77.8	18.5	1.0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46)	4.3	71.7	23.9	1.0
	없음	(0)	-	-	-	-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4)	0.0	50.0	50.0	1.1
	6~10인 이하	(3)	0.0	66.7	33.3	1.0
	11~30명 이하	(8)	0.0	87.5	12.5	1.0
	31~100명 이하	(11)	0.0	72.7	27.3	1.0
	101~300명 이하	(9)	22.2	44.4	33.3	0.9
	300인 초과	(11)	0.0	90.9	9.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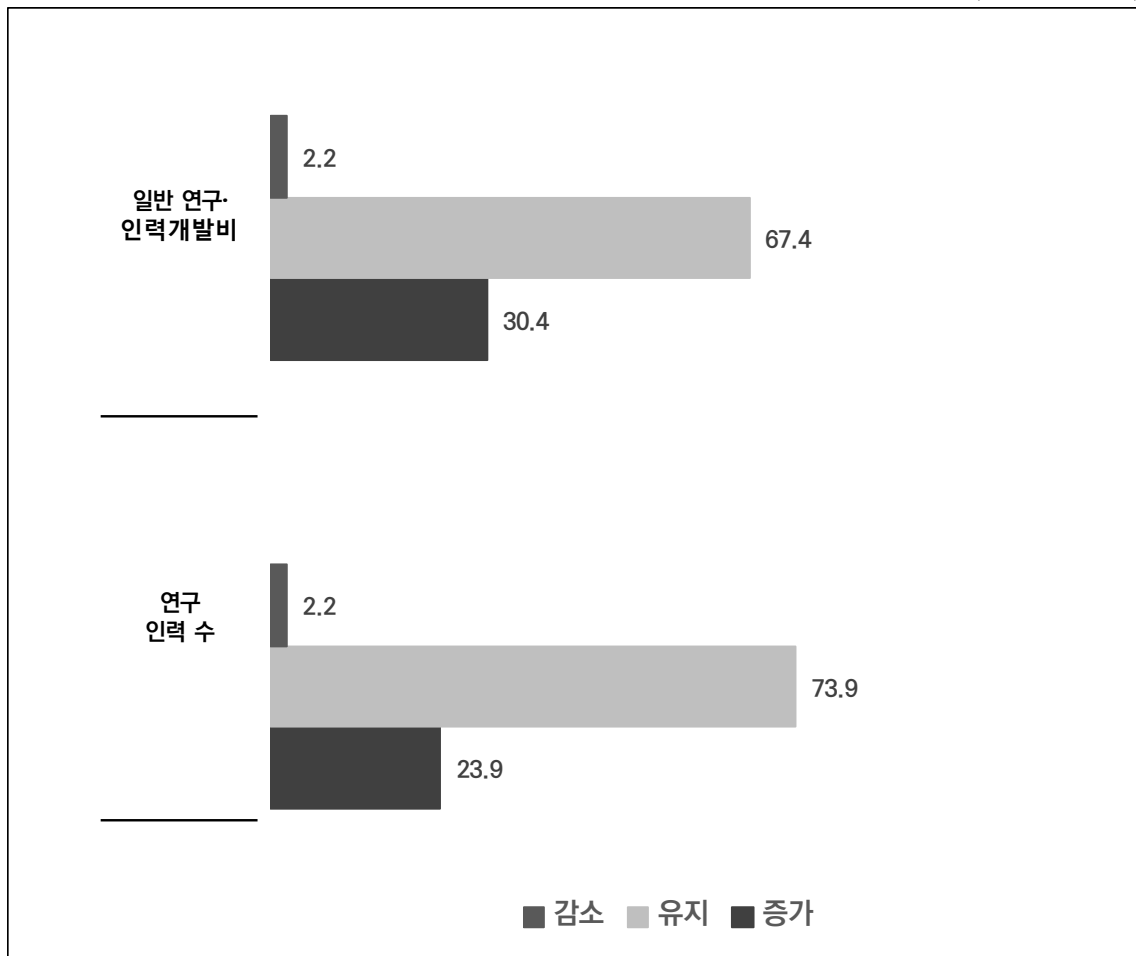
21) 일반분야 증가분 세액공제율이 일괄적으로 1% 향상될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발비 및 고용 수준

□ 일반분야 증가분 세액공제율이 일괄적으로 1% 향상될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발비 수준은 ‘감소’가 2.2%, ‘유지’가 67.4%, ‘증가’가 30.4%로 나타났으며 평균 1.0배로 나타남

□ 일반분야 증가분 세액공제율이 일괄적으로 1% 향상될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 수준은 ‘감소’가 2.2%, ‘유지’가 73.9%, ‘증가’가 23.9%로 나타났으며 평균 1.0배로 나타남

[부도 II -35] 일반분야 증가분 세액공제율이 일괄적으로 1% 향상될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발비 및 고용 수준

(n=46, 단위: %)



〈부표 II -49〉 일반분야 증가분 세액공제율이 일괄적으로 1% 향상될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발비 수준

(단위: 명, %, 배)

구 분		사례수	감소	유지	증가	평균
전 체		(46)	2.2	67.4	30.4	1.0
기업규모	중소기업	(27)	0.0	74.1	25.9	1.0
	중견기업	(15)	6.7	53.3	40.0	1.0
	대기업	(4)	0.0	75.0	25.0	1.0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8)	12.5	62.5	25.0	1.0
	KOSDAQ시장 상장	(10)	0.0	40.0	60.0	1.1
	KONEX시장 상장	(1)	0.0	100.0	0.0	1.0
	비상장	(27)	0.0	77.8	22.2	1.0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46)	2.2	67.4	30.4	1.0
	없음	(0)	-	-	-	-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4)	0.0	50.0	50.0	1.0
	6~10인 이하	(3)	0.0	66.7	33.3	1.0
	11~30명 이하	(8)	0.0	87.5	12.5	1.0
	31~100명 이하	(11)	0.0	72.7	27.3	1.0
	101~300명 이하	(9)	11.1	44.4	44.4	1.0
	300인 초과	(11)	0.0	72.7	27.3	1.0

**<부표 II -50> 일반분야 증가분 세액공제율이 일괄적으로 1% 향상될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 수준**

(단위: 명, %, 배)

구 분		사례수	감소	유지	증가	평균
전 체		(46)	2.2	73.9	23.9	1.0
기업규모	중소기업	(27)	0.0	74.1	25.9	1.0
	중견기업	(15)	6.7	73.3	20.0	1.0
	대기업	(4)	0.0	75.0	25.0	1.0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8)	12.5	75.0	12.5	0.9
	KOSDAQ시장 상장	(10)	0.0	60.0	40.0	1.0
	KONEX시장 상장	(1)	0.0	100.0	0.0	1.0
	비상장	(27)	0.0	77.8	22.2	1.0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46)	2.2	73.9	23.9	1.0
	없음	(0)	-	-	-	-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4)	0.0	50.0	50.0	1.0
	6~10인 이하	(3)	0.0	66.7	33.3	1.0
	11~30명 이하	(8)	0.0	87.5	12.5	1.0
	31~100명 이하	(11)	0.0	81.8	18.2	1.0
	101~300명 이하	(9)	11.1	44.4	44.4	1.0
	300인 초과	(11)	0.0	90.9	9.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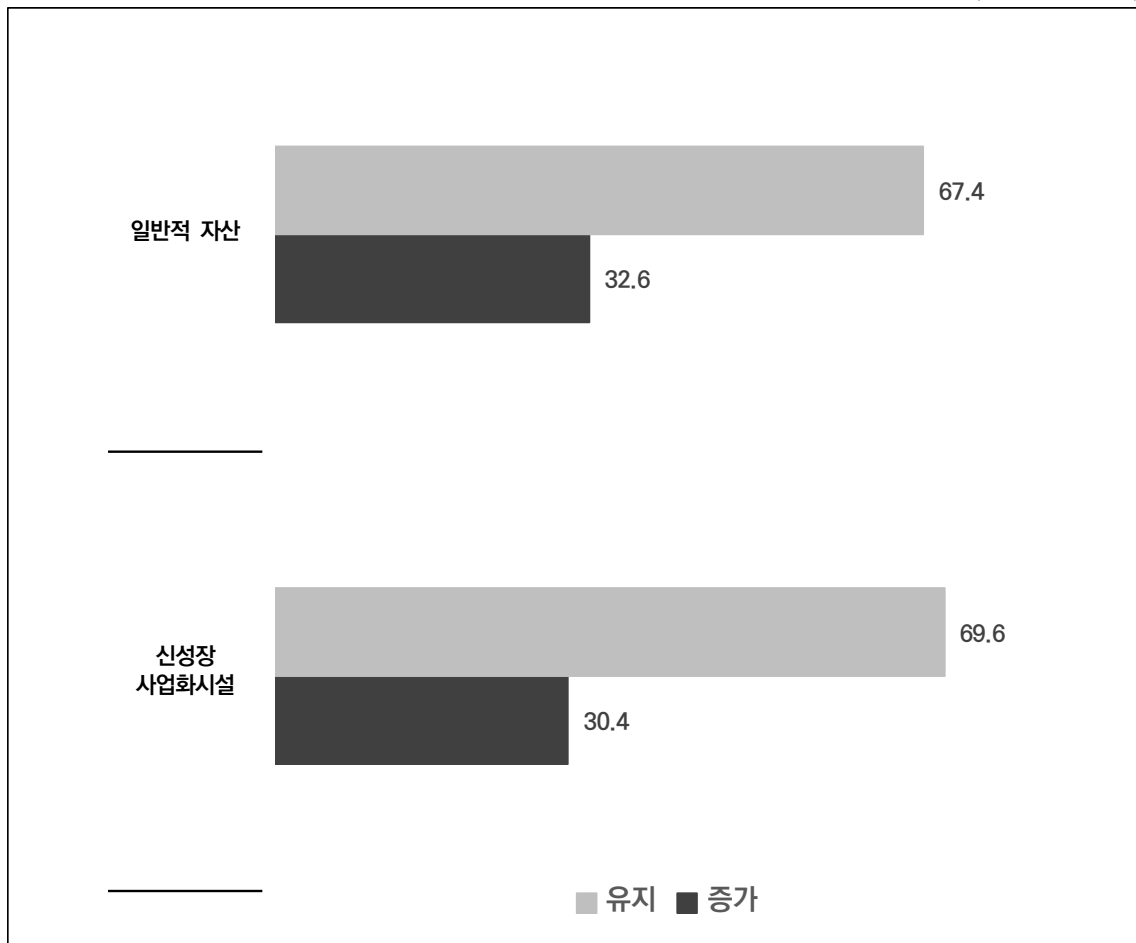
22) 한시적으로 일반분야 증가분 방식의 세액공제율이 10%p 향상될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발비 및 고용 수준

□ 한시적으로 일반분야 증가분 방식의 세액공제율이 10%p 향상될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발비 수준은 ‘유지’가 67.4%, ‘증가’가 32.6%로 나타났으며 평균 1.0배로 나타남

□ 한시적으로 일반분야 증가분 방식의 세액공제율이 10%p 향상될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 수준은 ‘유지’가 69.6%, ‘증가’가 30.4%로 나타났으며 평균 1.0배로 나타남

[부도 II -36] 한시적으로 일반분야 증가분 방식의 세액공제율이 10%p 향상될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발비 및 고용 수준

(n=46, 단위: %)



<부표 II -51> 한시적으로 일반분야 증가분 방식의 세액공제율이 10%p 향상될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발비 수준

(단위: 명, %, 배)

구 분		사례수	감소	유지	평균
전 체		(46)	67.4	32.6	1.0
기업규모	중소기업	(27)	74.1	25.9	1.0
	중견기업	(15)	53.3	46.7	1.0
	대기업	(4)	75.0	25.0	1.0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8)	62.5	37.5	1.0
	KOSDAQ시장 상장	(10)	40.0	60.0	1.0
	KONEX시장 상장	(1)	100.0	0.0	1.0
	비상장	(27)	77.8	22.2	1.0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46)	67.4	32.6	1.0
	없음	(0)	-	-	-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4)	75.0	25.0	1.1
	6~10인 이하	(3)	66.7	33.3	1.0
	11~30명 이하	(8)	87.5	12.5	1.0
	31~100명 이하	(11)	63.6	36.4	1.0
	101~300명 이하	(9)	55.6	44.4	1.0
	300인 초과	(11)	63.6	36.4	1.0

<부표 II -52> 한시적으로 일반분야 증가분 방식의 세액공제율이 10%p 향상될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 수준

(단위: 명, %, 배)

구 분		사례수	감소	유지	평균
전 체		(46)	69.6	30.4	1.0
기업규모	중소기업	(27)	70.4	29.6	1.0
	중견기업	(15)	66.7	33.3	1.0
	대기업	(4)	75.0	25.0	1.0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8)	75.0	25.0	1.0
	KOSDAQ시장 상장	(10)	50.0	50.0	1.0
	KONEX시장 상장	(1)	100.0	0.0	1.0
	비상장	(27)	74.1	25.9	1.0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46)	69.6	30.4	1.0
	없음	(0)	-	-	-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4)	50.0	50.0	1.1
	6~10인 이하	(3)	66.7	33.3	1.0
	11~30명 이하	(8)	87.5	12.5	1.0
	31~100명 이하	(11)	72.7	27.3	1.0
	101~300명 이하	(9)	55.6	44.4	1.0
	300인 초과	(11)	72.7	27.3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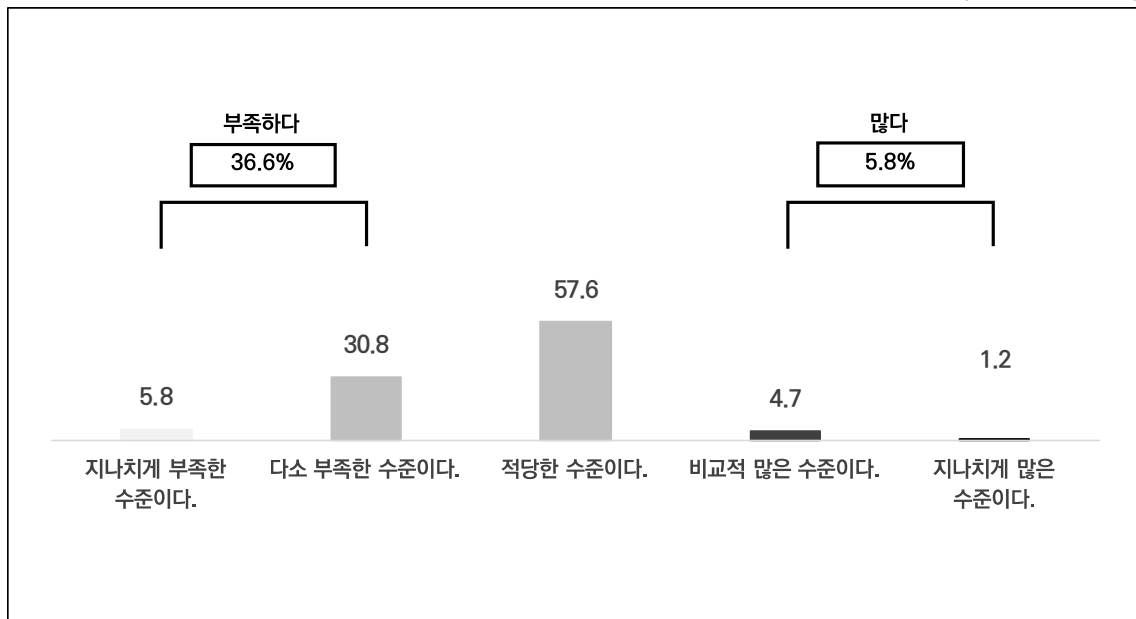
####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개선방향

#####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통한 현행 조세지원 수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지원 수준에 대해 알아본 결과, ‘부족하다’(지나치게 부족한 수준이다 + 다소 부족한 수준이다)이 36.6%로 ‘많다’(비교적 많은 수준이다 +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다)(5.8%)보다 높게 나타남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부족하다’가 36.9%, ‘중견기업’ 35.9%, ‘대기업’ 37.5%로 나타남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수혜 여부별로 살펴보면 ‘부족하다’가 ‘있음’에서 43.8%, ‘없음’에서 30.4%로 나타남

[부도 II -3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통한 현행 조세지원 수준

(n=172, 단위: %)



<부표 II -5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통한 현행 조세지원 수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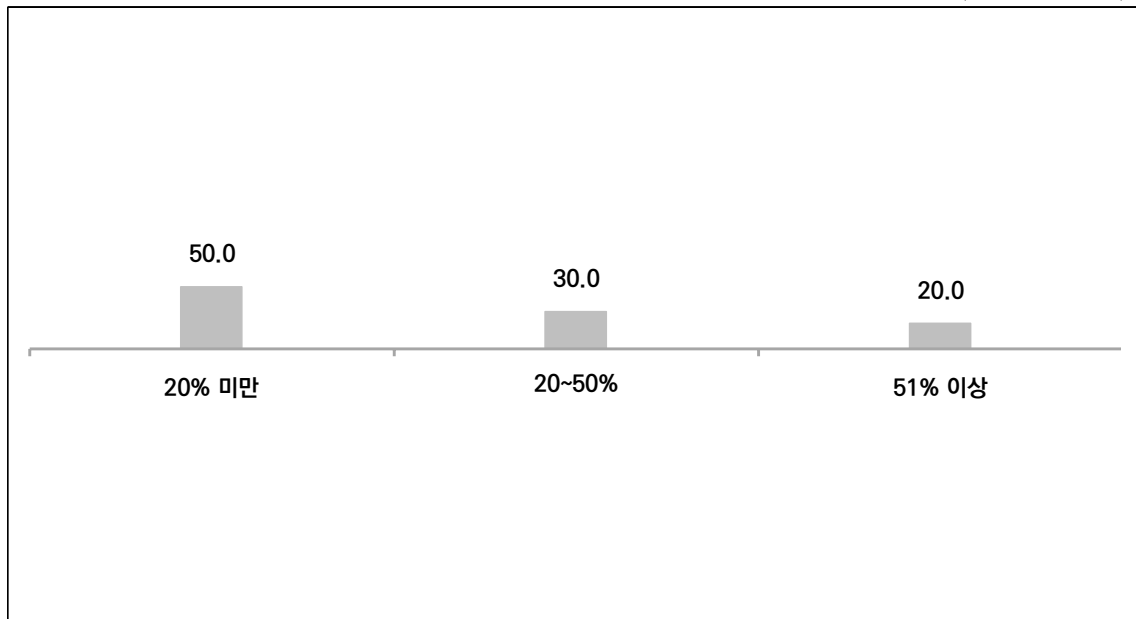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지나치게 부족한 수준이다	다소 부족한 수준이다	적당한 수준이다	비교적 많은 수준이다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다
전 체		(172)	5.8	30.8	57.6	4.7	1.2
기업규모	중소기업	(95)	7.4	29.5	56.8	5.3	1.1
	중견기업	(53)	3.8	32.1	60.4	3.8	0.0
	대기업	(24)	4.2	33.3	54.2	4.2	4.2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20)	0.0	45.0	55.0	0.0	0.0
	KOSDAQ시장 상장	(31)	6.5	35.5	51.6	6.5	0.0
	KONEX시장 상장	(3)	33.3	0.0	66.7	0.0	0.0
	비상장	(118)	5.9	28.0	59.3	5.1	1.7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80)	5.0	38.8	52.5	3.8	0.0
	없음	(92)	6.5	23.9	62.0	5.4	2.2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21)	9.5	28.6	52.4	4.8	4.8
	6~10인 이하	(17)	17.6	35.3	41.2	5.9	0.0
	11~30명 이하	(44)	2.3	27.3	65.9	4.5	0.0
	31~100명 이하	(32)	3.1	25.0	65.6	3.1	3.1
	101~300명 이하	(30)	6.7	33.3	56.7	3.3	0.0
	300인 초과	(28)	3.6	39.3	50.0	7.1	0.0

## 2) 조세지원 축소 비율

- 조세지원 축소 비율에 대해 알아본 결과, '20% 미만'이 50.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20~50%'(30.0%), '51% 이상'(20.0%) 순으로 나타남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모두 동일하게 나왔으며, '중견기업'은 '20% 이하'가 100.0%, '대기업'은 '20% 이하'와 '21~50%'에서 각 50.0%로 나타남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수혜 여부별로 살펴보면 '있음'은 '20% 이하'(66.7%)에서 가장 높았고, '없음'은 '20% 이하', '21~50% 이하'(각 42.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부도 II -38] 조세지원 축소 비율

(n=10, 단위: %)



<부표 II -54> 조세지원 축소 비율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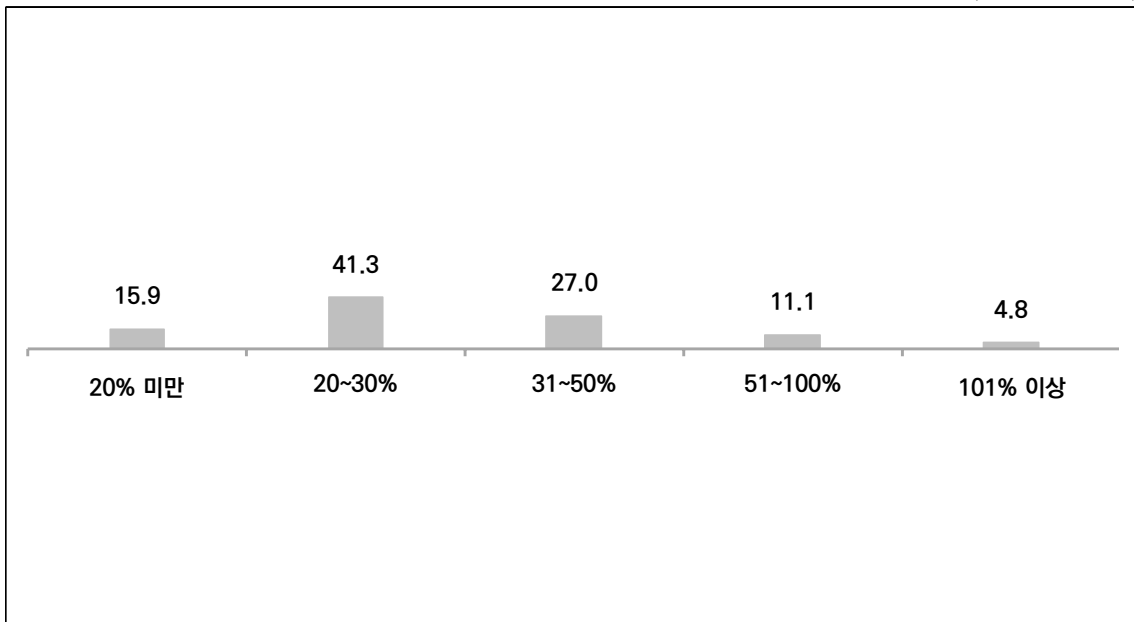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20% 이하	21~50% 이하	51% 이상
전 체		(10)	50.0	30.0	20.0
기업규모	중소기업	(6)	33.3	33.3	33.3
	중견기업	(2)	100.0	0.0	0.0
	대기업	(2)	50.0	50.0	0.0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0)	0.0	0.0	0.0
	KOSDAQ시장 상장	(2)	100.0	0.0	0.0
	KONEX시장 상장	(0)	0.0	0.0	0.0
	비상장	(8)	37.5	37.5	25.0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3)	66.7	0.0	33.3
	없음	(7)	42.9	42.9	14.3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2)	50.0	50.0	0.0
	6~10인 이하	(1)	100.0	0.0	0.0
	11~30명 이하	(2)	0.0	50.0	50.0
	31~100명 이하	(2)	50.0	50.0	0.0
	101~300명 이하	(1)	100.0	0.0	0.0
	300인 초과	(2)	50.0	0.0	50.0

### 3) 조세지원 확대 비율

- 조세지원 확대 비율에 대해 알아본 결과, '20~30%'에서 41.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31~50%'(27.0%), '51~100%'(1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20~30%'(42.9%)에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은 '20~30%'(42.1%), '대기업'은 '20% 미만', '30~30%', '31~50%'(각 33.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수혜 여부별로 살펴보면 '있음'은 '20~30%'(40.0%)에서 가장 높았고, '없음'은 '20~30%'(42.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부도 II -39] 조세지원 확대 비율

(n=63, 단위: %)



<부표 II -55> 조세지원 확대 비율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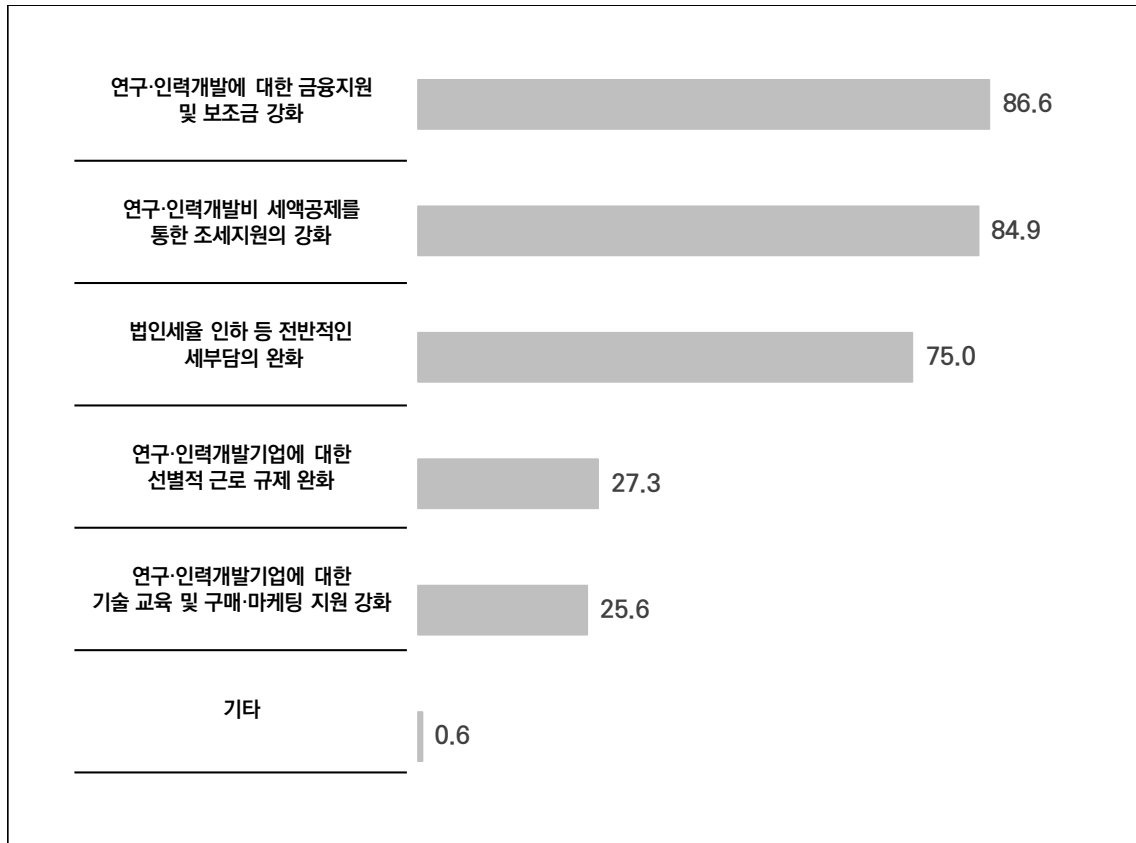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20% 미만	20~30%	31~50%	51~100%	101% 이상
전 체		(63)	15.9	41.3	27.0	11.1	4.8
기업규모	중소기업	(35)	8.6	42.9	28.6	11.4	8.6
	중견기업	(19)	21.1	42.1	21.1	15.8	0.0
	대기업	(9)	33.3	33.3	33.3	0.0	0.0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9)	11.1	44.4	33.3	11.1	0.0
	KOSDAQ시장 상장	(13)	23.1	30.8	30.8	15.4	0.0
	KONEX시장 상장	(1)	0.0	0.0	100.0	0.0	0.0
	비상장	(40)	15.0	45.0	22.5	10.0	7.5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35)	17.1	40.0	25.7	14.3	2.9
	없음	(28)	14.3	42.9	28.6	7.1	7.1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8)	25.0	25.0	25.0	12.5	12.5
	6~10인 이하	(9)	0.0	44.4	33.3	22.2	0.0
	11~30명 이하	(13)	0.0	69.2	23.1	7.7	0.0
	31~100명 이하	(9)	22.2	33.3	22.2	0.0	22.2
	101~300명 이하	(12)	33.3	33.3	16.7	16.7	0.0
	300인 초과	(12)	16.7	33.3	41.7	8.3	0.0

#### 4)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대해 알아본 결과,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금융지원 및 보조금 강화’에서 8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통한 조세지원의 강화’(84.9%), ‘법인세율 인하 등 전반적인 세부담의 완화’(7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에서는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금융지원 및 보조금 강화’가 89.5%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통한 조세지원의 강화’가 94.3%, ‘대기업’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통한 조세지원의 강화’가 91.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수혜 여부별로 살펴보면 ‘있음’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통한 조세지원의 강화’이 87.5%로 가장 높았고, ‘없음’은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금융지원 및 보조금 강화’가 88.0%로 가장 높게 나타남

[부도 II -40]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n=172, 단위: %)



<부표 II -56>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1~3순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전 체		(172)	86.6	84.9	75.0	27.3	25.6	0.6
기업규모	중소기업	(95)	89.5	77.9	72.6	27.4	31.6	1.1
	중견기업	(53)	84.9	94.3	77.4	22.6	20.8	0.0
	대기업	(24)	79.2	91.7	79.2	37.5	12.5	0.0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20)	70.0	90.0	75.0	35.0	30.0	0.0
	KOSDAQ시장 상장	(31)	87.1	93.5	80.6	22.6	16.1	0.0
	KONEX시장 상장	(3)	66.7	33.3	33.3	66.7	100.0	0.0
	비상장	(118)	89.8	83.1	74.6	26.3	25.4	0.8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80)	85.0	87.5	80.0	23.8	23.8	0.0
	없음	(92)	88.0	82.6	70.7	30.4	27.2	1.1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21)	90.5	66.7	47.6	42.9	47.6	4.8
	6~10인 이하	(17)	88.2	76.5	64.7	23.5	47.1	0.0
	11~30명 이하	(44)	90.9	81.8	79.5	29.5	18.2	0.0
	31~100명 이하	(32)	87.5	93.8	81.3	18.8	18.8	0.0
	101~300명 이하	(30)	83.3	96.7	86.7	16.7	16.7	0.0
	300인 초과	(28)	78.6	85.7	75.0	35.7	25.0	0.0

- ①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금융지원 및 보조금 강화
- ②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통한 조세지원의 강화
- ③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통한 과세상 불이익의 강화
- ④ 투자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및 보조금 지급
- ⑤ 투자기업에 대한 선별적 근로 규제 완화
- ⑥ 투자기업에 대한 기술 교육 및 구매·마케팅 지원
- ⑦ 기타

## < 부 록 > : 설문지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설문조사 >

아래의 설문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세제혜택과 관련된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답변해주신 내용은 오직 통계적인 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귀하의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해 철저히 보호됨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올바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 <표지>

#### 기업정보)

기업명: ( )

기업 소재지: ( )시·도 ( )시·군·구

#### <I. 기업 일반현황>

문1) 2023년 12월 31일 기준 귀사의 일반현황을 응답해 주십시오.

문1-1) 설립연도: ( )년

문1-2) 사업자등록번호: ( - - )

문1-3) 기업유형

① 법인

② 개인사업자 (문1-7)로 이동)

문1-4) 기업규모 및 성장단계

- ① 중소기업 (최초 중소기업 적용연도: 년)
- ② 중견기업 (최초 중견기업 적용연도: 년)
- ③ 대기업 (과거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었던 경우에 마지막으로 적용되었던 연도: 년, 계열사 여부: )

문1-5) 주식시장 상장 유형

- ① KOSPI시장 상장 (상장연도: 년)
- ② KOSDAQ시장 상장 (상장연도: 년)
- ③ KONEX시장 상장 (상장연도: 년)
- ④ 비상장

문1-6) 결산월: ( 월) -

문1-7) 상시근로자 수: ( 명)

문1-8) 업종\*: ( )

\* 아래의 참고자료 참조

문1-9) 업태\* ( )

\* 아래의 참고자료 참조

## <참고자료>

### 가. 업종코드

- A.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 B. 정보통신기술(ICT) 제조
- C. 유통·서비스
- C. 생명공학(바이오)의료
- D. 영상·공연·음반
- E. 전기·기계·장비
- F. 화학·소재
- G. 게임
- H. 기타(직접입력:            )

### 나. 업태코드

- A. 농업, 임업 및 어업
- B. 광업
- C. 제조업
-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F. 건설업
- G. 도매 및 소매업
- H. 운수 및 창고업
- I. 숙박 및 음식점업
- J. 정보통신업
- K. 금융 및 보험업
- L. 부동산업
-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O.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P. 교육 서비스업
-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 U. 국제 및 외국기관

< II. 기업 R&D 투자 요인 >

문2-1) 기업은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를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이득을 취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 연구·인력개발 투자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귀사가 생각하는 기업 연구·인력개발 투자 결정의 요인은 무엇입니까?

구분	항목	비중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10순위		
11순위		
합계		100%

연구·인력개발 투자 결정의 요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재 기업이 직면하는 재무적 제약: 부채 비율, 현금 비중 등</li> <li>2. 현재 기업의 보유 기술 수준: 기술의 복잡성, 독보성 등</li> <li>3. 기업의 현재 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시장점유율, 생산성 등</li> <li>4. 기술 투자로부터 기대 가능한 미래 성과: 투자 시 기대되는 수익, 생산성, 시장점유율 등</li> <li>5. 기업지배구조: 경영자원의 조달과 운용 및 수익의 분배 등에 대한 의사결정과정과 이에 대한 감시기능(주주 구조, 이사회 독립성 등)</li> <li>6. 거시적 환경 및 경제 여건: 경제성장률, 금리, 환율 등</li> <li>7. 관련 산업 경쟁수준: 경쟁사 보유 기술 및 관련 투자 상황, 시장 규모 대비 경쟁 기업 수 등</li> <li>8. 관련 산업 규율 및 규제: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 절차, 동물 실험 금지, ISO 및 KS 인증 범위 등</li> <li>9. 연구개발 관련 재정 지원(R&amp;D 투자 보조금 직접 지원, 기술보증 등)</li> <li>10. 연구개발 관련 조세 지원(R&amp;D 세액공제 등)</li> <li>11. 기타 ( )</li> </ol>

문2-2) 귀사가 특정 연구·인력개발 투자를 결정하였다고 한다면, 투자의 **시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  
 입니까?

구분	항목	비중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10순위		
합계		100%

연구·인력개발 투자 시기 결정 요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재 기업이 직면하는 재무적 제약: 부채 비율, 현금 비중 등</li> <li>2. 현재 기업의 보유 기술 수준: 기술의 복잡성, 독보성 등</li> <li>3. 기업의 현재 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시장점유율, 생산성 등</li> <li>4. 해당 기술을 활용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li> <li>5. 거시적 환경 및 경제 여건: 경제성장률, 금리, 환율 등</li> <li>6. 관련 산업 경쟁수준: 경쟁사 보유 기술 및 관련 투자 상황, 시장 규모 대비 경쟁 기업 수 등</li> <li>7. 관련 산업 규율 및 규제: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 절차, 동물 실험 금지, ISO 및 KS 인증 범위 등</li> <li>8. 연구개발 관련 재정 지원(R&amp;D 투자 보조금 직접 지원, 기술보증 등)</li> <li>9. 연구개발 관련 조세 지원(R&amp;D 세액공제 등)</li> <li>10. 기타 ( )</li> </ol>

문2-3) 귀사가 특정 연구·인력개발 투자를 결정하였다고 한다면, 투자의 **위치**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  
 입니까?

구분	항목	비중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10순위		
11순위		
합계		100%

연구·인력개발 투자 위치 결정 요인
1. 시장 접근성(주요 고객사와의 거리, 공항 및 철도 등과의 거리 등) 2. 해당 위치에 연구·인력개발 관련 설비투자 시 드는 비용(임대, 부동산 등) 3. 노동 시장 접근성(고용을 위한 위치 선정 등) 4. 산학연계의 용이성(주변 연구기관 및 대학교) 5. 지자체로부터의 지원 6. 관련 및 경쟁 업체와의 접근성 7. 환경 규제: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 절차, 생태 독성 배출 허용 평가시험 등 8. 환경 규제를 제외한 정부 규제: ISO, KS, 의료기기/의약품 인증 기준 변화 등 9. 연구개발 관련 재정 지원(투자 보조금 직접 지원, 기술보증 등) 10. 연구개발 관련 조세 지원((R&D 세액공제 등) 11. 기타 ( )





문3-6) 귀사가 세액공제의 대상인 연구·인력개발에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당시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시행되는 것을 알지 못해서
- ② 해당 연도에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서(해당 연도에는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했지만, 이월결손금공제가 적용된 경우를 포함)
- ③ 해당 연도에 다른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받아서(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아서)
- ④ 세액공제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
- ⑤ 관련 세법규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사후적으로 추징당하는 것에 대해 우려해서
-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문3-7) 귀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것이 연구·인력개발 활성화(고용 제외)에 충분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②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도움이 되었다. (문3-9)로 이동)
- 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문3-9)로 이동)

문3-8) 귀사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인력개발 활성화(고용 제외)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세액공제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서
- ② 세액공제를 통해 줄어든 세금부담이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지출 외의 경영 악화 또는 사업 다양화 등의 이유로 다른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어 지속적인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 ③ 재정지원(보조금, 융자 지원 등)과의 중복 수혜 불가 요건 때문에
- ④ 세무행정상의 복잡성과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비용 지출 때문에
- ⑤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문3-9) 귀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것이 연구인력 고용의 양적성장(고용인의 수)에 충분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②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도움이 되었다. (문3-11)로 이동)
- 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문3-11)로 이동)

문3-10) 귀사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인력 고용의 양적성장**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적합한 연구인력을 찾기 어려워서
- ② 기존 인원의 변화는 크지 않지만 보다 연구능력이 좋은 인력을 고용해서
- ③ 세액공제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서
- ④ 세액공제를 통해 줄어든 세금부담이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지출 외의 경영 악화 또는 사업 다양화 등의 이유로 다른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어 지속적인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 ⑤ 재정지원(보조금, 융자 지원 등)과의 중복 수혜 불가 요건 때문에
- ⑥ 세무행정상의 복잡성과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비용 지출 때문에
-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문3-11) 귀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것이 **연구인력 고용의 질적성장(피고용인의 수준)**에 충분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②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도움이 되었다. (문3-13)로 이동)
- 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문3-13)로 이동)

문3-12) 귀사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인력 고용의 질적성장**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적합한 연구인력을 찾기 어려워서
- ② 보다 연구능력이 높은 인력을 추가하기보다 연구인력의 수를 증가시켜서
- ③ 세액공제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서
- ④ 세액공제를 통해 줄어든 세금부담이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지출 외의 경영 악화 또는 사업 다양화 등의 이유로 다른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어 지속적인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 ⑤ 재정지원(보조금, 융자 지원 등)과의 중복 수혜 불가 요건 때문에

- ⑥ 세무행정상의 복잡성과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비용 지출 때문에
-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문3-13) 2023년 기준 귀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어느 항목에 대해 혜택을 받았습니까?

(단위: 만원)

구분		수혜 여부	대상 비용	공제 세액
택 1	일반(당기분)			
	일반(증가분)			
택 1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 일반(당기분) 선택시 문3-14 완료 후 문3-15으로 진행하고, 일반(증가분) 선택시 문3-14 완료 후 문3-17로 진행함

문3-14) 귀사가 받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대상 비용의 분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로 답변)

구분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이용비	위탁비	인력개발비
택 1	일반(당기분)					
	일반(증가분)					
택 1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문3-15) 일반분야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증가분이 아닌 당기분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일반분야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전년에 비해 증가하지 않아서
- ② 일반분야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지만 증가폭이 낮아 증가분보다 당기분이 유리해서
- ③ 일반분야의 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 요건 불충족: 직전 4개년도 내에 일반분야의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적이 있어서
- ④ 일반분야의 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 요건 불충족: 직전 4개년도 내에 일반분야의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비용의 평균보다 당기의 일반분야의 연구·인력개발비가 낮아서
- ⑤ 증가분 선택 시 관련 세무행정 처리가 당기분보다 복잡해서
- ⑥ 다른 분야(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도 동시에 적용할 수 있기에 당기분 방식으로 행정 처리를 하는 것이 보다 수월해서
-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문3-16) 만일 2023년의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높아졌다고 가정할 때, 현재 수준과 비교하여 최소한 몇 %p가 증가해야 당기분 방식의 수준과 세액공제 혜택이 유사해질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귀사가 중소기업일 경우, 현재 당기분에 대해서 25%, 증가분에 대해서 5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증가분의 세액공제율이 60%가 될 경우 현재의 당기분의 25% 혜택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면, 10%p(= 60%~50%)로 입력하세요.)

( )%p

구분 기업규모		세액공제율		
		중소	중견	일반
일반 (택 1)	당기분*1	25%	8~15%	최대 2%
	증가분*2	50%	40%	25%
해당 시 택 1	신성장·원천기술	30~40%	20~40%*3	20~30%
	국가전략기술	40~50%	30~40%	

\*1 해당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적용

\*2 해당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적용

\*3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25~40%, 그 외의 경우에는 20~30% 적용

문3-17) 2023년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귀사가 연구·인력개발비에 지출했을 금액은 해당 연도에 실제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 대비 몇 배입니까? 연구 분야별로 구분해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2023년
일반	배
신성장·원천기술	배
국가전략기술	배

\* 2023년 연구·인력개발비 지출 금액이 1억원이었는데, 만일 이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9,500만원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0.95배"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3-18) 2023년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귀사에서 고용했을 연구 인력의 수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고용한 연구 인력의 수 대비 몇 배입니까? 연구 분야별로 구분해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2023년
일반	배
신성장·원천기술	배
국가전략기술	배

\* 2023년 연구인력이 100명이었는데, 만일 이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98명만 유지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0.98배"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3-19) 2023년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일반분야의 증가분 방식(일반분야의 당기분 방식,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는 유지)**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귀사가 연구·인력개발비에 지출했을 금액과 고용했을 연구 인력의 수는 해당 연도 실제값 대비 몇 배입니까?

구분	2023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1	배
연구인력 수*2	배

\*1 2023년 연구·인력개발비 지출 금액이 1억원이었는데, 만일 이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9,500만원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0.95배"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 연구인력이 100명이었는데, 만일 이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98명만 유지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0.98배"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세액공제율		
		중소	중견	일반
일반 (택 1)	당기분*1	25%	8~15%	최대 2%
	증가분*2	50% → 0%	40% → 0%	25% → 0%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는 현행 유지

\*1 해당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적용

\*2 해당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적용

문3-20) 2023년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일반분야의 당기분 세액공제율만 일괄적으로 1%p가 상향되었다고(아래 변화 표 참조)** 가정하면 귀사가 연구·인력개발비에 지출했을 금액과 고용했을 연구인력의 수는 해당 연도 실제값 대비 몇 배입니까?

구분	2023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1	배
연구인력 수*2	배

\*1 2023년 연구·인력개발비 지출 금액이 1억원이었는데, 만일 이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1억500만원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05배"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 연구인력이 100명이었는데, 만일 이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가정하면 102명으로 2명을 추가 고용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02배"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세액공제율		
기업규모		중소	중견	일반
일반 (택 1)	당기분*1	25% → 26%	8~15% → 9~16%	최대 2% → 최대 3%
	증가분*2	50%	40%	25%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는 현행 유지

\*1 해당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적용

\*2 해당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적용

문3-21) 2023년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일반분야의 증가분 세액공제율만 일괄적으로 1%p가 상향되었다고(아래 변화 표 참조)** 가정하면 귀사가 연구·인력개발비에 지출했을 금액과 고용했을 연구인력의 수는 해당 연도 실제값 대비 몇 배입니까?

구분	2023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1	배
연구인력 수*2	배

\*1 2023년 연구·인력개발비 지출 금액이 1억원이었는데, 만일 이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1억500만원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05배"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 연구인력이 100명이었는데, 만일 이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가정하면 102명으로 2명을 추가 고용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02배"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세액공제율		
기업규모		중소	중견	일반
일반 (택 1)	당기분*1	25%	8~15%	최대 2%
	증가분*2	50% → 51%	40% → 41%	25% → 26%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는 현행 유지

\*1 해당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적용

\*2 해당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적용

문3-22) 2023년에 **한시적으로(2024년 이후에는 원래대로 복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일반분야의 증가분 방식의 세액공제율만 10%p 상향되었다고** 가정하면 귀사가 연구·인력개발비에 지출했을 금액과 고용했을 연구 인력의 수는 해당 연도 실제값 대비 몇 배입니까?

구분	2023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1	배
연구인력 수*2	배

- \*1 2023년 연구·인력개발비 지출 금액이 1억원이었는데, 만일 이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1억500만원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05배”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2 2023년 연구인력이 100명이었는데, 만일 이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가정하면 102명으로 2명을 추가 고용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02배”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세액공제율		
기업규모			중소	중견	일반
2022 이전	일반 (택 1)	당기분*1	25%	8~15%	최대 2%
		증가분*2	50%	40%	25%
2023 한시적용	일반 (택 1)	당기분*1	25%	8~15%	최대 2%
		증가분*2	50% → 60%	40% → 50%	25% → 25%
2024 이후	일반 (택 1)	당기분*1	25%	8~15%	최대 2%
		증가분*2	50%	40%	25%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는 현행 유지

\*1 해당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적용

\*2 해당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적용



문4-3) 귀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개편해서 새로운 조세감면을 통해 조세지원의 규모를 얼마나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예컨대, 조세지원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0%”로 답변하고, 조세지원의 규모를 현행 수준의 1.5배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50%”로, 조세지원의 규모를 현행 수준의 2배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100%”로 답변해 주십시오.

문4-4) 귀사는 연구·인력개발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유형의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우선순위에 따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통한 조세지원의 강화
  - ② 법인세율 인하 등 전반적인 세부담의 완화
  - ③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금융지원 및 보조금 강화
  - ④ 연구·인력개발기업에 대한 선별적 근로 규제 완화
  - ⑤ 연구·인력개발기업에 대한 기술 교육 및 구매·마케팅 지원 강화
  -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V.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

문5-1) 귀사의 최근 2년간(2022년-2023년) 매 과세연도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기재해 주십시오.

(단위: 만원)

구분	2022	2023
문2-11) 자산총계		
문2-12) 자본총계		
문2-13) 부채총계		
문2-14) 상시근로자 수		
문2-15) 수입금액*1		
문2-16) 영업이익		
문2-17) 당기순이익		
문2-18) 소득금액*2		
문2-19) 과세표준*3		
문2-20) 산출세액*3		
문2-20) 최저한세 적용 여부*4		
문2-21) 공제감면세액(합계)*3		
문2-22) 총부담세액*3		

\*1 법인의 경우에는 매출액,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2 법인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3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 해당분(퇴직소득 및 양도소득분은 제외)

\*4 해당 과세기간에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감면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제된 경우에는 "1"로 표시해 주십시오.

<설문 종료>